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7호

2024. 6. 27.(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제2024-190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5

◈ 고 시

제2024-29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안) ····· 137
제2024-3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 138
제2024-307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39
제2024-308호 노해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0
제2024-309호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65
제2024-310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제정 고시 ····· 201
제2024-311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2
제2024-31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31
제2024-313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233
제2024-314호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고시 ····· 237
제2024-316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61
제2024-31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고시 ····· 303
제2024-318호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업무 위탁 고시 ····· 321
제2024-319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22

◈ 공 고

제2024-180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360
제2024-1804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62
제2024-180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63
제2024-181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64
제2024-1826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365

제2024-182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66
제2024-1830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 367
제2024-1831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 368
제2024-1835호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공시송달 공고 ····· 385
제2024-183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86
제2024-184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주)경원디앤피] ····· 388
제2024-184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용마터널) ····· 397
제2024-184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강남순환로) ····· 399
제2024-184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신월여의지하도로) ····· 401
제2024-184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서부간선지하도로) ····· 403
제2024-184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405
제2024-1851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06
제2024-185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 411
제2024-185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439
제2024-186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40
제2024-18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42
제2024-187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44
제2024-187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45
제2024-187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46
제2024-1878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447
제2024-1879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48
제2024-1880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49
제2024-188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50
제2024-188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51
제2024-188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52
제2024-188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53
제2024-188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54
제2024-188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55
제2024-188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56
제2024-1892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457
제2024-189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467
제2024-1896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 통보 ····· 468
제2024-1897호 도시관리계획(상계 · 중계 · 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470
제2024-189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472
제2024-190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474

제2024-1902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479
제2024-1906호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체납)고지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481
제2024-19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 482
제2024-191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485
제2024-1922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수정공고 ····· 486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5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 489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08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494

◈ 구 고 시

제2024-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 496
제2024-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 498
제2024-79호 행당6,7구역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 522
제2024-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 531
제2024-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취소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실효) 고시(동작구) ····· 533
제2024-8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 536

◈ 구 공 고

제2024-101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성동구) ····· 538
제2024-1194호 도시관리계획[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540
제2024-1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동작구) ····· 541
제2024-12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안) 열람공고(동작구) ····· 544

◈ 사업소공고

제2024-169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546

◈ 기 타

제2024-2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동대문소방서) ····· 559
제2024-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60
제2024-22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61
제2023-23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62
제2024-232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63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0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우리시 조례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본 규정도 개정함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2024.1.8.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함

2. 주요 내용

○ 동 규정의 제명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 용어를 ‘전승교육사’로 일괄 변경함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2024.1.8.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신설함

– ‘일반전승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신설

○ 조사단 조건을 일부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개인종목 보유자·전승교육사 세부 제출자료 항목을 일부 변경함(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 개인종목 인정 지표)

3. 의견 제출

○ 이 규정의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정책과(전화: 02-2133-2616, FAX: 02-768-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이 규정안은 확정된 고시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9조·제21조”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9조·제21조”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 지정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이하 “보유자 등의 인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평가, 조사결과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심의”란 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말한다.
3. “일반전승자”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2조 및 조례 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다. 무형유산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2장(제3조 및 제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제3조(조사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 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종목 공고) ① 시장은 제3조의 조사계획에 따른 인정 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누리집을 통하여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인정: 법 제19조·제26조·제32조, 조례 제21조·제35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
2. 보유단체 인정: 조례 제19조에 제시된 인정 기준을 갖춘 단체
3. 전승교육사 인정: 조례 제21조 및 규칙 제4조에 제시된 요건을 갖춘 이수자

제3조 앞에 "제3장 조사운영"을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조사운영

제11조 앞에 "제4장 심 의"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조사 대상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 전수교육조교"를 "등의"로, "별지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별지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조사단"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위원 및 무형문화재전문위원"을 "무형유산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직하거"를 "재직중이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를 "무형유산 보유자 등 실기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체 없"을 각각 "지체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제5호 서식)를"을 "(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로, "(별지제6호 서

식)” 을 “(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기 · 예능” 을 “기능 또는 예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기 · 예능 등 보유” 를 “기능 또는 예능 등 보유” 로, “기 · 예능 등을” 을 “기능 또는 예능 등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 · 예능” 을 “기능 또는 예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 을 “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 으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지정,” 을 “시무형유산 지정,” 으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으로, “등이” 를 “등의” 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분야별” 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1항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 를 “전승교육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심의 용도” 를 “심의용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해” 를 “한정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밖에” 를 “밖의” 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심 의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안건” 을 “심의안건” 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3항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 를 각각 “시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를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 로, “동” 을 “해당”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제9조 관련)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학술성 (15점)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8점)	○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7점)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예술성·기술성 (20점)	고유성의 수준(5점)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형식미·내용미·표현미의 수준(10점)	○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기능성 정도(5점)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정성
대표성 (15점)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7점)	○ 서울의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8점)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사회문화적 가치 (20점)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	○ 현재의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	정성
	관련 공동체·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10점)	○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지속가능성 (10점)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5점)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정성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5점)	○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정성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전승활동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	정량
	전승단체 내 전승 활동의 활성화 정도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여부	정성
	전승활동 실적	○ 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전승활동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전승단체의 시설 수준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수준	정성
	전승단체의 인적 기반	○ 단체의 필수 인원에 대한 충족도	정성
전승의지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	○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	정성

다. 전수활동 참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참여도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참여도	○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참여 정도	정성

3.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	○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및 전승역량 (65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50점)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해당 종목의 이해도(10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리더십 및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0점)	전승활동 실적(5점)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2점)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2점)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3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3점)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5점)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5점)	○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정도	정성

6.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ㅇ 해당 종목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ㅇ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승활동 실적	ㅇ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발표,전시,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ㅇ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	ㅇ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ㅇ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ㅇ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 정도	정성

[별표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측정산식(제10조 관련)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7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역사성
(20점)</td><td>전승된 기간(10점)</td><td>o 지표정의 : 전승된 연수(年數)
o 측정산식 : 전승된 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h>환산율</th><td>100%
(100년 이상)</td><td>90%
(99~81년)</td><td>80%
(80~61년)</td><td>70%
(60~41년)</td><td>60%
(40~21년)</td><td>50%
(20~11년)</td><td>40%
(10년 미만)</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유산이 현재까지 전승된 기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함.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복원되었다면 복원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전승기간으로 산정함.
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r><td>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td><td>o 지표정의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o 측정산식 : 역사적 근거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관련 문헌 자료 및 면담 자료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인 근거의 높고 낮음을 정성적으로 조사함.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td></tr>
<tr><td rowspan="2">학술성
(15점)</td><td>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8점)</td><td>
ㅇ 지표정의 :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ㅇ 측정산식 :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적 가치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학술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설명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수준을 조사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td></tr>
<tr><td>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7점)</td><td>
ㅇ 지표정의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ㅇ 측정산식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o 조사주안점 : 학술적인 면에서 현재와 미래에 연구할 만한 자료 가치의 수준을 조사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r><td rowspan="2">예술성/
기술성
(20점)</td><td>고유성의 수준(5점)</td><td>o 지표정의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o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고유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국내외 유사한 종목과의 관련 기·예능과 비교하여 독자적인 고유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고유성의 수준 정도를 조사하되 유사한 종목이 없을 경우 해당 종목의 특징과 그 특징이 갖는 가치를 판단하여 조사
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r><td>형식미· 내용미·표현미의 수준
(10점)</td><td>o 지표정의 :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의 수준 정도
o 측정산식 :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의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 기·예능의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가 그 분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조사함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r><td></td><td>기능성 정도(5점)</td><td>o 지표정의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o 측정산식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과거에 그 사회와 문화 형성에 기능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성 조사함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r><td>대표성
(15점)</td><td>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7점)</td><td>o 지표정의 : 서울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o 측정산식 : 서울의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서울의 지리, 역사적 배경과의 일치 및 서울의 삶과 문화 형성에 일정한 작용을 하였으며, 서울의 일반적 정서와 문화에 비추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정도를 조사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8점)</td><td>o 지표정의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o 측정산식 : 타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한국이라는 공간의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전통적인 한국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를 심층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able>

나. 전승환경(3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사회문화적 가치 (20점)</td><td>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td><td>o 지표정의 : 현재의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
o 측정산식 : 무형유산 형태의 변형 정도를 정성평가. 무형유산의 변형정도가 심할수록 미흡에 가까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현재 무형유산의 형태가 이전의 모습에서 변형된 정도를 판단함.
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r><td>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10점)</td><td>o 지표정의 :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o 측정산식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심층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td></tr>
</table>

<table>
<tr>
<td></td>
<td>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td>
<td>
ㅇ 지표정의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
ㅇ 측정산식 : 해당 무형유산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유산이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정도를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td>
</tr>
<tr>
<td>지속 가능성 (10점)</td>
<td>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5점)</td>
<td>
ㅇ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ㅇ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활발히 전승되던 시점의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 범위에 비하여 현재의 전승환경에서 이행되는 빈도와 범위를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td>
</tr>
</table>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5점)	ㅇ 지표정의 :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ㅇ 측정산식 : 전승주체의 인원 수 및 구성원의 연령, 조직의 규모, 인원 내 전수교육, 전시, 발표, 공연 등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제출한 자료 및 필요한 경우 전승주체의 면담을 통하여 활동 내용 및 수준을 심층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능력(75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승기량
(50점)</td><td>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td><td>※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td></tr>
<tr><td>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td><td>o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o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조사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td></tr>
<tr><td>전승활동
(25점)</td><td>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7점)</td><td>o지표정의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
o측정산식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50년 이상)</td><td>90%
(50년 미만)</td><td>80%
(40년 미만)</td><td>70%
(30년 미만)</td><td>60%
(20년 미만)</td><td>50%
(10년 미만)</td><td>40%
(5년 미만)</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o 조사주안점 : 조사대상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을 조사. 다만, 전승단체의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제출 단체와 연속성을 갖는 단체가 이전에 존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그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정량 평가</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3"></td><td></td><td>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r><td>전승단체 내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8점)</td><td>o 지표정의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정도
o 측정산식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제출한 자료 및 면담을 통하여 활동 내용 및 수준을 심층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r><td>전승활동 실적(10점)</td><td>o 지표정의 : 공연·발표·전시·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의 전승활동 실적
o 측정산식 : 매년 공연·발표·전시·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의 전승활동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 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7회 이상)</td><td>90%
(6회)</td><td>80%
(5회)</td><td>70%
(4회)</td><td>60%
(3회)</td><td>50%
(2회)</td><td>40%
(1회)</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전승활동으로서 전승활동의 공식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여 평가함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able>

나. 전승환경(2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승기반
(10점)</td><td>전승단체의 시설 수준(3점)</td><td>ㅇ 지표정의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ㅇ 측정산식 : 전승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전승 장소)
ㅇ 조사주안점 : 전승 장소 시설의 구비율 및 수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3점)</td><td>ㅇ 지표정의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수준
ㅇ 측정산식 :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필수장비의 수준을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ㅇ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실연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를 파악하고 구비 수준을 정성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전승단체의 인적 기반(4점)</td><td>ㅇ 지표정의 : 단체의 필수 인원에 대한 충족도
ㅇ 측정산식 : 단체의 필수 인원의 충족도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단체의 필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수준을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r><td>전승의지
(10점)</td><td>전승주체의 전승 의지(10점)</td><td>ㅇ 지표정의 : 전승주체가 해당 유산을 전승하려는 전승의지
ㅇ 측정산식 : 전승주체의 전승계획 및 전승의지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ㅇ 조사방법 : 면담조사
ㅇ 조사주안점 :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의 수준을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동영상, 면담자료</td></tr>
</table>

다. 전수활동 참여도(5점)

<table>
<tr><th>구 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전수활동
참여도
(5점)</td><td>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참여도(5점)</td><td>o 지표정의 :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참여도
o 측정산식 :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조사
o 조사주안점 :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의 수준을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면담자료</td></tr>
</table>

3.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5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3">전승기량 및 역량
(55점)</td><td>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td><td>※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td></tr>
<tr><td>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td><td>o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o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조사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td></tr>
<tr><td>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o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o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전승활동
(20점)</td><td>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td><td>o 지표정의 :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기간 또는 이수자 등록 여부
o 측정산식 :
·전승교육사의 경우 조사시점부터 전승교육사 인정기간을 구간화하여 3단계 척도(5~3점)로 가점 처리함.
·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로 등록된 자는 2점을 가점 처리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교육사 경력>
<table><tr><th>가점</th><th>5점</th><th>4점</th><th>3점</th></tr><tr><td>등급</td><td>11년 이상</td><td>10~6년</td><td>5년 미만</td></tr></table>
<이수자 등록 여부> : 2점 처리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o 조사주안점 : 전승교육사 인정된 기간 및 이수자로 등록 여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td></tr>
<tr><td>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td><td>o 지표정의 : 최근 10년 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o 측정산식 : 최근 10년 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에 따른 정량적 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
(10회 이상)</td><td>90%
(9회)</td><td>80%
(8회)</td><td>70%
(7회)</td><td>60%
(6회)</td><td>50%
(5회)</td><td>40%
(4회~)</td></tr></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횟수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개행사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td></tr>
<tr><td></td><td>관련 분야 입상 실적(7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받은 입상 실적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가 받은 상격 및 빈도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
- 조사척도 : 상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상격의 가점×수상 빈도)
· 상격의 단계(가점) : 대통령상(3점), 국무총리상(2점), 기타 관계기관장상(1점)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10점 이상)</td><td>90%
(9점)</td><td>80%
(8점)</td><td>70%
(7점)</td><td>60%
(6점)</td><td>50%
(5점)</td><td>40%
(4점~)</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한 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입상 실적 및 수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입상 상장 혹은 증빙 기록)</td></tr>
</table>

나. 전승환경(2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승기반
(10점)</td><td>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5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면담 및 조사대상자에 일반적인 평판 평가
o 조사주안점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수준 및 주변의 전승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5점)</td><td>o 지표정의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실연, 면담
o 조사주안점 : 실연 및 면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전승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파악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able>

<table>
<tr>
<td>전승의지
(10점)</td>
<td>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td>
<td>o 지표정의 : 전승주체가 해당 유산을 전승하려는 전승의지
o 측정산식 : 전승주체의 전승계획 및 전승의지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조사
o 조사주안점 :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의 수준을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동영상, 면담자료</td>
</tr>
</table>

다. 전수활동 기여도(5점)

<table>
<tr><th>구 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
<td>전수활동
기여도
(5점)</td>
<td>보유단체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5점)</td>
<td>o 지표정의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도
o 측정산식 : 보유단체가 조사대상자를 평가한 결과를 정량평가(보유단체의 장은 3인 이상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한 뒤, 이를 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제출)
- 조사척도 : 정량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100~96점)</td><td>90%
(95~91점)</td><td>80%
(90~86점)</td><td>70%
(85~81점)</td><td>60%
(80~76점)</td><td>50%
(75~71점)</td><td>40%
(70점~)</td></tr>
</table>
o 조사방법 : 보유단체가 제출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함
o 조사주안점 : 보유단체의 점수에 의거하여 정량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보유단체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하여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보유단체의 평가서
※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함</td>
</tr>
</table>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5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3">전승기량 및 역량
(65점)</td><td>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50점)</td><td>※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td></tr>
<tr><td>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td><td>o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o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조사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 조사
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td></tr>
<tr><td>리더십 및 교수능력(5)</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o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o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전승활동
(10점)</td><td>전승활동 실적(5점)</td><td>○ 지표정의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정량평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그 외에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을 적용함. 단, 공개행사 이외의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적용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활동 실적>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
(10회 이상)</td><td>90%
(9회)</td><td>80%
(8회)</td><td>70%
(7회)</td><td>60%
(6회)</td><td>50%
(5회)</td><td>40%
(4회 ~)</td></tr></table>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함.</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전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td></tr>
<tr><td></td><td>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받은 입상 실적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가 받은 상격 및 빈도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
- 조사척도 : 상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상격의 가점×수상 빈도)
· 상격의 단계(가점) : 대통령상(3점), 국무총리상(2점), 기타 관계기관장상(1점)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10점 이상)</td><td>90%
(9점)</td><td>80%
(8점)</td><td>70%
(7점)</td><td>60%
(6점)</td><td>50%
(5점)</td><td>40%
(4점~)</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한 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입상 실적 및 수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입상 상장 혹은 증빙 기록)</td></tr>
</table>

나. 전승환경(2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승기반
(10점)</td><td>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2점)</td><td>o 지표정의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전승 장소)
o 조사주안점 : 전승 장소 시설의 구비율 및 수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2점)</td><td>o 지표정의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필수장비의 수준을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실연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를 파악하고 구비 수준을 정성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td><td>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3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및 조사대상자에 일반적인 평판 평가
o 조사주안점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수준 및 주변의 전승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3점)</td><td>o 지표정의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실연, 면담
o 조사주안점 : 실연 및 면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전승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파악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전승의지
(10점)</td><td>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해당 유산을 전승하려는 전승의지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의 전승계획 및 전승의지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조사
o 조사주안점 :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의 수준을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동영상, 면담자료</td></tr>
</table>

다. 전수활동 기여도(5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수활동
기여도(5점)</td><td rowspan="2">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5점)</td><td>ㅇ 지표정의 :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정도
ㅇ 측정산식 : 보유자가 전승자에게 평가한 결과를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100~96점)</td><td>90%
(95~91점)</td><td>80%
(90~86점)</td><td>70%
(85~81점)</td><td>60%
(80~76점)</td><td>50%
(75~71점)</td><td>40%
(7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전승자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함
ㅇ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평가 점수에 의거하여 정량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하여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ㅇ 증빙 자료 : 보유자의 평가서</td></tr>
<tr><td>※ 보유자가 없는 경우,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을 적용
ㅇ 지표정의 :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기간 또는 이수자 등록 여부
ㅇ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승교육사의 경우 조사 시점부터 전승교육사 인정기간을 구간화하여 3단계 척도(5~3점)로 가점 처리함.
·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로 등록된 자는 2점을 가점 처리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교육사 경력>
<table>
<tr><th>가점</th><th>5점</th><th>4점</th><th>3점</th></tr>
<tr><td>등급</td><td>11년 이상</td><td>10~6년</td><td>5년 미만</td></tr>
</table>
<이수자 등록 여부> : 2점 처리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ㅇ 조사주안점 : 전승교육사 선정된 기간 및 이수자로 등록 여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td></tr>
</table>

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3">전승기량 및 역량
(50점)</td><td>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td><td>※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td></tr>
<tr><td>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5점)</td><td>ㅇ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ㅇ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면담 조사
ㅇ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 조사
ㅇ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td></tr>
<tr><td>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td><td>ㅇ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ㅇ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ㅇ 조사방법 : 면담
ㅇ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 rowspan="2">전승활동
(20점)</td><td>이수자 경력(5점)</td><td>○ 지표정의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 측정산식 :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이수자 경력>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
(12년 이상)</td><td>90%
(11~10년)</td><td>80%
(9~8년)</td><td>70%
(7~6년)</td><td>60%
(5~4년)</td><td>50%
(3~2년)</td><td>40%
(1년~)</td></tr></table>○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 조사주안점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td></tr>
<tr><td>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td><td>○ 지표정의 : 최근 5년 간 조사대상자가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횟수
○ 측정산식 : 최근 5년 간 조사대상자가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횟수의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
(5회 이상)</td><td>90%
(4회)</td><td>80%
(3회)</td><td>70%
(2회)</td><td>60%
(1회)</td><td>50%
(0회)</td><td>40%
(0회~)</td></tr></table>○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횟수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전시·공연 등의 팸플릿 등)</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관련 분야 입상 실적(7점)</td><td>
ㅇ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받은 수상 횟수
ㅇ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가 받은 상격 및 빈도수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상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상격의 가점×수상 빈도)
· 상격의 단계(가점) : 대통령상(3점), 국무총리상(2점), 기타 관계기관장상(1점)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6점 이상)</td><td>90%
(5점)</td><td>80%
(4점)</td><td>70%
(3점)</td><td>60%
(2점)</td><td>50%
(1점)</td><td>40%
(0점)</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한 자료 검토
ㅇ 조사주안점 : 입상 실적 및 수준
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입상 상장 혹은 증빙 기록)
</td></tr>
</table>

나. 전승환경(2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승기반
(10점)</td><td>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5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면담 및 조사대상자에 일반적인 평판 평가
o 조사주안점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수준 및 주변의 전승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5점)</td><td>o 지표정의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실연, 면담
o 조사주안점 : 실연 및 면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전승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파악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전승의지
(10점)</td><td>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해당 유산을 전승하려는 전승의지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의 전승계획 및 전승의지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td></tr>
</table>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조사 ○ 조사주안점 :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의 수준을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면담자료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수활동 기여도(10점)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 지표정의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도 ○ 측정산식 : 보유단체가 조사대상자를 평가한 결과를 정량평가(보유단체의 장은 3인 이상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한 뒤, 이를 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제출) - 조사척도 : 정량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100~96점) | 90% (95~91점) | 80% (90~86점) | 70% (85~81점) | 60% (80~76점) | 50% (75~71점) | 40% (70점~) ○ 조사방법 : 보유단체가 제출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함 ○ 조사주안점 : 보유단체의 점수에 의거하여 정량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보유단체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하여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보유단체의 평가서 ※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6.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3">전승기량 및 역량 (50점)</td><td>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td><td>※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td></tr>
<tr><td>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5점)</td><td>o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o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조사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o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td></tr>
<tr><td>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o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면담
o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td><td>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 rowspan="2">전승활동
(20점)</td><td>이수자 경력(5점)</td><td>o 지표정의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o 측정산식 :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이수자 경력>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
(20년 이상)</td><td>90%
(19~16년)</td><td>80%
(15~13년)</td><td>70%
(12~10년)</td><td>60%
(9~7년)</td><td>50%
(6~4년)</td><td>40%
(3년~)</td></tr></table>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o 조사주안점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td></tr>
<tr><td>전승활동 실적(10점)</td><td>o 지표정의 :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o 측정산식 :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을 정량평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그 외에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를 적용함. 단, 공개행사 이외의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적용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
(5회 이상)</td><td>90%
(4회)</td><td>80%
(3회)</td><td>70%
(2회)</td><td>60%
(1회)</td><td>50%
(0회)</td><td>40%
(0회~)</td></tr></table>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공개행사 및 전승활동 참여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td><td></td><td>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td></tr>
<tr><td>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받은 수상 횟수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가 받은 상격 및 빈도수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상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상격의 가점×수상 빈도)
· 상격의 단계(가점) : 대통령상(3점), 국무총리상(2점), 기타 관계기관장상(1점)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
(6점 이상)</td><td>90%
(5점)</td><td>80%
(4점)</td><td>70%
(3점)</td><td>60%
(2점)</td><td>50%
(1점)</td><td>40%
(0점)</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한 자료 검토
o 조사주안점 : 입상 실적 및 수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입상 상장 혹은 증빙 기록)</td></tr>
</table>

나. 전승환경(2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전승기반
(10점)</td><td>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2점)</td><td>o 지표정의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전승 장소)
o 조사주안점 : 전승 장소 시설의 구비율 및 수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td></tr>
</table>

<table>
<tr><td></td><td></td><td>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td><td>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2점)</td><td>o 지표정의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필수장비의 수준을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o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실연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를 파악하고 구비 수준을 정성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td><td>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3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면담 및 조사대상자에 일반적인 평판 평가
o 조사주안점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수준 및 주변의 전승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td><td>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3점)</td><td>o 지표정의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o 측정산식 : 전승활동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실연, 면담
o 조사주안점 : 실연 및 면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전승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파악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td></tr>
</table>

<table>
<tr><td></td><td></td><td>o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td></tr>
<tr><td>전승의지
(10점)</td><td>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td><td>o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가 해당 유산을 전승하려는 전승의지
o 측정산식 : 조사대상자의 전승계획 및 전승의지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o 조사방법 : 면담조사
o 조사주안점 :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의 수준을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o 증빙 자료 : 동영상, 면담자료</td></tr>
</table>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전수활동
기여도
(10점)</td><td>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도(10점)</td><td>o 지표정의 :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정도
o 측정산식 : 보유자가 조사대상자에게 평가한 결과를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
<table><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tr><td>환산율</td><td>100%
(100~96점)</td><td>90%
(95~91점)</td><td>80%
(90~86점)</td><td>70%
(85~81점)</td><td>60%
(80~76점)</td><td>50%
(75~71점)</td><td>40%
(70점~)</td></tr></table>o 조사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함
o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평가 점수에 의거하여 정량 평가
o 보고서 작성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하여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o 증빙 자료 : 보유자의 평가서</td></tr>
</table>

[별표 3]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제9조 관련)

1. 음악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정성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25점)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정성
	공력의 깊이(10점)	○ 공력의 정도	정성

2. 무용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복식의 전통성(10점)	○ 복식의 전통성 정도	정성
춤의 미적 완성도 (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정성
	춤과 공간의 어울림(10점)	○ 춤과 공간의 어울림 수준	정성
	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	○ 춤과 음악의 어울림 수준	정성

3. 놀이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50점)	○ 전통 놀이의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종합적인 구현 능력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정성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수준	정성

4. 연극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50점)	○ 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정성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 수준	정성

5. 음식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40점)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10점)	○ 전통적인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정도	정성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10점)	○ 전통적인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정도	정성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20점)	○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60점)	조리 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40점)	○ 조리 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 수준	정성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 사이의 조화(20점)	○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 정도	정성

6.의식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50점)	○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의례,소도구,제상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30점)	○ 악기,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정성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10점)	○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수준	정성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10점)	○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	정성

7. 무예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40점)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40점)	○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의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40점)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40점)	○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수준	정성
특수성(20점)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20점)	○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 수준	정성

8. 공예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40점)	재료의 적합성(20점)	○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정성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20점)	○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예술적 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60점)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20점)	○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정성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20점)	○ 완성된 작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정성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20점)	○ 완성된 작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정성

[별표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측정산식(제10조 관련)

1. 음악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td><td>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td><td>◦ 지표정의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수준
◦ 측정산식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창법과 연주법의 전통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td><td>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td><td>◦ 지표정의 : 가락·장단의 정확도
◦ 측정산식 : 가락·장단의 정확도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r>
<tr><td></td><td>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td><td>◦ 지표정의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 측정산식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창법과 연주의 구사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td><td>공력의 깊이(10점)</td><td>◦ 지표정의 : 공력의 정도
◦ 측정산식 : 공력의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공력의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able>

2. 무용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td><td>춤 동작의 전통성(40점)</td><td>◦ 지표정의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수준
◦ 측정산식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복식의 전통성(10점)</td><td>◦ 지표정의 : 복식의 전통성 수준
◦ 측정산식 : 복식의 전통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복식의 전통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춤의 미적 완성도 (50점)</td><td>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td><td>◦ 지표정의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의 수준
◦ 측정산식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의 수준을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의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td><td>춤과 공간의 어울림(10점)</td><td>◦ 지표정의 : 춤과 공간의 외형적 어울림 및 공간 사용의 적합성 수준
◦ 측정산식 : 춤과 공간의 외형적 어울림 정도, 공간 사용의 적합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춤과 공간의 외형적 어울림 및 공간 사용의 적합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td><td>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td><td>◦ 지표정의 : 춤과 음악의 적합성·일치성 정도 및 장단의 구사능력 수준
◦ 측정산식 : 춤과 음악의 적합성, 일치성, 장단의 구사능력 등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춤과 음악의 적합도·일치성 정도 및 장단의 구사능력 수준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able>

3. 놀이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td><td>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능력(50점)</td><td>◦ 지표정의 : 전통 놀이의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종합적인 구현 능력 정도
◦ 측정산식 : 전통 놀이의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종합적인 구현 능력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전통 놀이의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종합적인 구현 능력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 rowspan="2">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td><td>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td><td>◦ 지표정의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 측정산식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15점)</td><td>◦ 지표정의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 수준
◦ 측정산식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td></tr>
</table>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

4. 연극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td><td>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50점)</td><td>◦ 지표정의 :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 측정산식 :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 rowspan="2">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td><td>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td><td>◦ 지표정의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 측정산식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r><td>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td><td>◦ 지표정의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 수준</td></tr>
</table>

	등의 제작능력(15점)	◦ 측정산식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능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

5. 음식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3">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40점)</td><td>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10점)</td><td>◦ 지표정의 : 전통적인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정도
◦ 측정산식 : 전통적인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식기구 사용의 적절성(10점)</td><td>◦ 지표정의 : 전통적인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정도
◦ 측정산식 : 전통적인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20점)</td><td>◦ 지표정의 :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정도
◦ 측정산식 :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 rowspan="2">기능적 숙련도 및 음식의 완성도 (60점)</td><td>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40점)</td><td>◦ 지표정의 :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 정도
◦ 측정산식 :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 조리기술서</td></tr>
<tr><td>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20점)</td><td>◦ 지표정의 :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 정도
◦ 측정산식 :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able>

6. 의식 분야(100점)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td><td>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50점)</td><td>◦ 지표정의 :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의례 소도구,제상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의례,소도구,제상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및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의례,소도구,제상배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 rowspan="2">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td><td>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30점)</td><td>◦ 지표정의 :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
◦ 측정산식 :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10점)</td><td>◦ 지표정의 :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수준
◦ 측정산식 :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td></tr>
</table>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10점)	◦ 지표정의 : 의례의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 ◦ 측정산식 : 의례의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의례의 소도구 제작 능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

7. 무예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40점)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40점)	◦ 지표정의 :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의 정도 ◦ 측정산식 :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의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의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table>
<tr><td></td><td></td><td>◦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40점)</td><td>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40점)</td><td>◦ 지표정의 :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수준
◦ 측정산식 :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특수성 (20점)</td><td>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20점)</td><td>◦ 지표정의 :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 수준
◦ 측정산식 :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td></tr>
</table>

8. 공예기술 분야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40점)</td><td>재료의 적합성(20점)</td><td>◦ 지표정의 :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
◦ 측정산식 :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전통과 최근 환경변화를 감안한 재료의 적합성 수준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점)</td><td>◦ 지표정의 :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 측정산식 :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예술적·</td><td>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20점)</td><td>◦ 지표정의 :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
◦ 측정산식 :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
(60점)</td><td></td><td>◦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20점)</td><td>◦ 지표정의 :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
◦ 측정산식 : 완성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후에 완성품에 대한 평가
◦ 조사주안점 : 완성품에 대한 기능성 테스트 및 활용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r><td>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20점)</td><td>◦ 지표정의 :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
◦ 측정산식 :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table>
<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
<tr><td>환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
</table>
◦ 조사방법 : 실기 능력 현장조사 후에 완성품에 대한 평가
◦ 조사주안점 :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이미지</td></tr>
</table>

[별지제1호 서식]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table>
<tr><td>종목 명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전승자(단체)
현황</td><td>성명(단체명)</td><td></td><td>생년월일</td><td>※단체(설립연원일)</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전화)
(휴대폰) (전자우편)</td></tr>
<tr><td>*개인 정보
취급</td><td colspan="3">□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td></tr>
<tr><td>종목의 전승
이력</td><td colspan="3">※ 개인종목(주요 전승자의 전승이력 약술)
※ 단체종목(단체의 구성 및 연혁 약술)
-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r><td>무형유산
소개
/
지정 신청
사유</td><td colspan="4">※ 신청 대상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무형유산 지정 신청사유를 약술함
-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able>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1. 전승가치 _ A4용지 4~5매 이내로 작성

(1) 역사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된 기간
- 해당 무형유산의 지속성
- 해당 무형유산의 역사적 근거

(2) 학술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이 한국문화 및 서울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무형유산이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능한가

(3) 예술성·기술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의 고유성
- 해당 무형유산의 형식미·내용미·표현미
-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성

(4) 대표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이 서울과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가지는가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지

2. 전승환경 _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1) 사회문화적 가치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현재의 무형유산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 무형유산 전승을 통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2) 지속가능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 전승자(단체)의 규모(인적기반)
- 해당 무형유산 전승자(단체)의 대내외 전승활동 내용

3. 첨부자료

※ 첨부자료 제출 사항 및 유의사항

- 사진(10컷 내외/최대 20컷 이내) : 사진인화 및 디지털이미지(CD동봉)
- 영상물(30분 내외/최대 50분 이내) : DVD 1매
- 이미지, 영상물에 대한 <자료 활용 동의서>(별지제3호 서식) 1부
- 관련도서 : 1책 이내

※ 위의 첨부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제출자료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단체현황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립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전승현황	설립목적			
	전승기간	년부터 년 / 현재까지 (년)		
	단체연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승교육 현황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대외적 전승활동 실적	〃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세부 제출자료
2.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 정관 또는 회칙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세부 제출자료

1. 단체현황 및 연혁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 관련 단체현황 및 연혁(전승활동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설립목적, 조직현황, 예산현황 등

2. 전승자 및 전승교육 현황

※ 해당 종목의 전승자 현황 및 전승체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최근 10년간 단체 내 전수교육, 주기적인 모임의 현황(시기, 참석인원,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

3. 대외적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단체의 전승활동(전시, 공연, 기타 종목의 전승을 위한 행사 등) 실적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단체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5. 전승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 해당 종목의 전승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기술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3.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		
	보유단체명		대표자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승교육사 : 년 월 ~ 년 월			
공개행사 참여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4.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별도 서식 제출)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은 평가위원회(3인 이상 참여)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한 뒤, 이를 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제출한다.
다만,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table>
<tr><td>종목내용</td><td>종목명칭</td><td colspan="2">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td></tr>
<tr><td rowspan="5">조사대상자 인적사항</td><td>성 명</td><td colspan="2">(예명) (한자)</td></tr>
<tr><td>생년월일 및 성별</td><td colspan="2">(만 세) 성별( )</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2">(자택) (휴대폰)</td></tr>
<tr><td>주소</td><td colspan="2">(※ 공방주소 포함)</td></tr>
<tr><td>*개인 정보 취급</td><td colspan="2">☐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td></tr>
<tr><td rowspan="2">입문현황</td><td>입문시점 및 전승기간</td><td colspan="2">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td></tr>
<tr><td>입문경위</td><td colspan="2">※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r><td>전수활동 경력</td><td colspan="3">○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승교육사 : 년 월 ~ 년 월</td></tr>
<tr><td>주요 전승활동실적</td><td colspan="3">※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r><td>공개행사 참여실적</td><td colspan="3">〃</td></tr>
<tr><td>관련분야 입상실적</td><td colspan="3">〃</td></tr>
</table>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6. 전수 시설 및 장비 현황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제3호 서식)

7. 해당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table>
<tr><td rowspan="2">종목현황</td><td>명 칭</td><td colspan="3">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td></tr>
<tr><td>보유단체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 rowspan="6">조사대상자
인적사항</td><td>성 명</td><td colspan="2">(예명) (한자)</td><td rowspan="6">사진</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만 세) 성별( )</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2">(자택) (휴대폰)</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r>
<tr><td>*개인 정보
취급</td><td colspan="2">□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입문현황</td><td>입문시점 및
전승기간</td><td colspan="3">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td></tr>
<tr><td>입문경위</td><td colspan="3">※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r><td>전수활동
경력</td><td colspan="4">ㅇ 이수자 : 년 월 ~ 년 월</td></tr>
<tr><td>공개행사
참여실적</td><td colspan="4">※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able>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4.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별도서식 제출)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한다.
다만,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6.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table>
<tr><td>종목내용</td><td>종목명칭</td><td colspan="2">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td></tr>
<tr><td rowspan="5">조사대상자 인적사항</td><td>성 명</td><td colspan="2">(예명) (한자)</td></tr>
<tr><td>생년월일 및 성별</td><td colspan="2">(만 세) 성별( )</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2">(자택) (휴대폰)</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r>
<tr><td>*개인 정보 취급</td><td colspan="2">□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td></tr>
<tr><td rowspan="5">사진</td></tr>
<tr><td rowspan="2">입문현황</td><td>입문시점 및 전승기간</td><td colspan="2">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td></tr>
<tr><td>입문경위</td><td colspan="2">※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r><td>전수활동 경력</td><td colspan="3">○ 이수자 : 년 월 ~ 년 월</td></tr>
<tr><td>주요 전승활동 실적</td><td colspan="3">※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td></tr>
<tr><td>공개행사 참여실적</td><td colspan="3">〃</td></tr>
<tr><td>관련분야 입상실적</td><td colspan="3">〃</td></tr>
</table>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2.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4.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5. 전수 시설 및 장비 현황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제3호 서식)

6. 보유자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별도서식 제출)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종목의 보유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별지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자 평가서

지정내용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평가대상자	성 명	평가대상격(보유자·조교)	평가점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조사를 위한 대상자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심사평가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1>

전승기여도 평가서

평가대상자 성 명	평가대상격 (보유자·조교)	총 점 (100점)	전승기량 (40점)	전승의지 (20점)	전수활동 기여도(40점)

※ 보유자(보유단체)가 평가대상자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총점(100점 만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3호 서식]

자료활용 동의서

자료제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본 단체)은 위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선택)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

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4호 서식]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① 성 명	(서명/인)		② 생년월일	19 . .
③ 조 사 종 목			④ 위촉동의 여부(O/X)	
⑤ 주소 (우편물 수령지 기준)	(우 -)			
	전화		휴대폰	
	e-mail			
	FAX			
⑥ 현 직 (직위포함)	00대학교 00학과 교수, 전 00 위원 등			
⑦ 전문분야	국악, 무용사, 무용실기 등 상세 기재 요망			
⑧ 학 력	졸업대학(학과) : 00대학교 00학과 석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박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⑨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조사종목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무형유산 이수 여부	* 무형유산 이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44호 삼현육각 이수자			
⑪ 선정제외 여부 (해당 항목에 체크)	∨	항 목		
		해당사항 없음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조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법인에 속하여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보유단체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의 전시회나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에 참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자와는 친인척 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6호 서식]

확 인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대상자, 조사자)로서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자, 조사자)와는 친인척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9조·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9조·제21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 전승교육사 ----------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조사"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이하 "보유자 등의 인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평가, 조사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 지정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이하 "보유자 등의 인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 수

과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심의”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말한다.	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평가, 조사결과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심의”란 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말한다. 3. “일반전승자”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2조 및 조례 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각 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다. 무형유산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장 조사운영	<삭 제>
<신 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신 설>	제3조(조사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 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조사종목 공고) ① 시장은 제3조의 조사계획에 따른 인정 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누리집을 통하여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인정: 법 제19조·제26조·제32조, 조례 제21조·제

	35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 2. 보유단체 인정: 조례 제19조에 제시된 인정 기준을 갖춘 단체 3. 전승교육사 인정: 조례 제21조 및 규칙 제4조에 제시된 요건을 갖춘 이수자
제3장 조사운영 <신 설> 제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 대상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삭 제> 제3장 조사운영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무형유산 ---------- ----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② ----- 등의 ---------- 별지 제2호서식---------- ③ 시무형유산 ----------

등의 인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조사단의 구성)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단의 구성) ① ----- 시무형유산 ---------- ----------조사단---------- ---------- ---------- 구성한다.
1. 위원회 중 무형문화재위원 및 무형문화재전문위원	1. -------- 무형유산전문위원
2. 대학에서 해당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 재직중이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해당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전문가	4. --- 무형유산 ----------
5. 해당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5. -------- 무형유산 보유자 등 실기전문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자 간 결탁 등 조사의 공정성을 저	③ ----------

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조사자 전원을 교체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 지체없---------- ------.
④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해당 조사자를 교체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 지체없---------- ----------.
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제5호 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 제6호서식)----------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단에게 조사내용 및 조사지표의 적용 여부, 기·예능 조사방법, 조사현장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 ① ----- 시무형유산 ---------- 기능 또는 예능 ---------- ----------.

②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 종목에 대하여는 조사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무형유산 지정, ----------.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등과 관련된 기·예능 등 보유 여부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예능 등을 충분히 실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실시) ① ---- 시무형유산 ---------- 기능 또는 예능 등 보유 ---------- ---- 기능 또는 예능 등을 ----------.
②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목의 특성 및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무형유산 ----------.

	--------.
1. 해당 기·예능 등에 대한 실연 전 과정 등	1. --- 기능 또는 예능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 및 실연 현장에 대한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무형유산 ---------- ---------- ---------- ---------- ---------- ---.
제7조(조사지표)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시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지표) ① ----- 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 ---------- ---------.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적용할 조사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 조사지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 ---------- 시무형유산 ---------- ---------- ---------- ----------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지표 중 실기능력 조사지표는 별표 3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	③ ----------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력 조사지표에 따른다.	----------.
제8조(지표별 평가) ①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별표 2에 따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측정산식 및 별표 4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측정산식에 의한다.	제10조(지표별 평가) ① 시무형유산 지정,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 ----- 등의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자는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등 조사대상자의 지표별 측정산식에 따른 평가 결과는 조사완료 즉시 현장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지표별 점수부여에 대한 근거를 서술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 ---------- ---------- ----------. ---------- 전승교육사 ---------- ---------- ---------- ---------- ---------- ---------- ----------.
② 시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사결과의 경우,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무형유산 ---------- ---------- ---------- ---------- -.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조사결과의 점수를 위원회의 심의 용도 ----------. 다만,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 해당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 시무형유산 ---------- ---------- ---------- 심의용도 ---------- ----------. ---------- ---------- 한정하여 ---------.
②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영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 ---- 밖의 ---------- ---------- ---------- ----------.
제4장 심 의	<삭 제>
<신 설>	제4장 심 의
제11조(심의안건 상정)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안건 상정) ① ---- 시무형유산 ---------- ---------- ---------- ---------- ----------.
② 시장은 조사결과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② ---------- ---------- 심의안건---------- -.
제12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 대한 전문적·효	제14조(위원회 심의) ① ------ 시무형유산 ---------- ----------

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 ---------- ---------- ----------.
② 위원회는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를 위해 조사자 및 조사대상자를 위원회 회의(소위원회 포함)에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	② ------ 시무형유산 ----- ---------- ---------- ---------- ---------- --.
③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단, 보유자 사망, 명예보유자 인정 등으로 종목의 보유자 부재가 발생하거나 조례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동 조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시무형유산 ------ ---------- ---------- ---------- ---------- ----------. 다만------ ---------- ---------- ---------- -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 해당 --- ---------- -------.

현 행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제7조 관련)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학술성 (15점)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8점)	○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7점)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예술성·기술성 (20점)	고유성의 수준(5점)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형식미·내용미표현미의 수준(10점)	○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기능성 정도(5점)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정성
대표성 (15점)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7점)	○ 서울의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8점)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사회문화적 가치 (20점)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	○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정성
	관련 공동체·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10점)	○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지속가능성 (10점)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5점)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정성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5점)	○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정성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제9조 관련)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학술성 (15점)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8점)	○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7점)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예술성·기술성 (20점)	고유성의 수준(5점)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형식미·내용미표현미의 수준(10점)	○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기능성 정도(5점)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정성
대표성 (15점)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7점)	○ 서울의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8점)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사회문화적 가치 (20점)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	○ 현재의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	정성
	관련 공동체·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10점)	○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	정성
지속가능성 (10점)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5점)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정성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5점)	○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정성

현 행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전승활동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	정량
	전승단체 내 전승 활동의 활성화 정도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여부	정성
	전승활동 실적	○ 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전승활동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전승단체의 시설 수준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수준	정성
	전승단체의 인적 기반	○ 단체의 필수 인원에 대한 충족도	정성
전승의지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	○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	정성

다. 전수활동 참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참여도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참여도	○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참여 정도	정성

개 정 안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전승활동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	정량
	전승단체 내 전승 활동의 활성화 정도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여부	정성
	전승활동 실적	○ 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전승활동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전승단체의 시설 수준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전승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수준	정성
	전승단체의 인적 기반	○ 단체의 필수 인원에 대한 충족도	정성
전승의지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	○ 전승주체의 전승 의지와 향후 전승계획	정성

다. 전수활동 참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참여도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참여도	○ 보유단체 구성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참여 정도	정성

현 행

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경력	○ 전수교육조교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개 정 안

3.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	○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현 행

4.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및 전승역량 (65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50점)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해당 종목의 이해도(10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리더십 및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0점)	전승활동 실적(5점)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2점)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2점)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3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3점)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5점)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5점)	○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개 정 안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및 전승역량 (65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50점)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해당 종목의 이해도(10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리더십 및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0점)	전승활동 실적(5점)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2점)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2점)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3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3점)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5점)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5점)	○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성

현 행

5.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정도	정성

개 정 안

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정도	정성

현 행

6.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해당 종목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발표,전시,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 정도	정성

개 정 안

6.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 해당 종목 실기능력 정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	정성
전승역량	해당 종목의 이해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이수자 경력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발표,전시,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전수활동 기여도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	○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 정도	정성

현 행

[별표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측정산식(제8조 관련)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7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 지표정의 : 전승된 연수(年數) ○ 측정산식 : 전승된 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100년 이상) / 90% (99~81년) / 80% (80~61년) / 70% (60~41년) / 60% (40~21년) / 50% (20~11년) / 40% (10년 미만)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문화재가 현재까지 전승된 기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함.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복원되었다면 복원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전승기간으로 산정함.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 지표정의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 측정산식 : 역사적 근거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개 정 안

[별표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측정산식(제10조 관련)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가치(7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역사성 (20점)	전승된 기간(10점)	○ 지표정의 : 전승된 연수(年數) ○ 측정산식 : 전승된 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100년 이상) / 90% (99~81년) / 80% (80~61년) / 70% (60~41년) / 60% (40~21년) / 50% (20~11년) / 40% (10년 미만)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유산이 현재까지 전승된 기간을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함.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복원되었다면 복원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전승기간으로 산정함.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10점)	○ 지표정의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 측정산식 : 역사적 근거에 대한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현 행

나. 전승환경(3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사회문화적 가치 (20점)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	○ 지표정의 :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 측정산식 : 무형문화재 형태의 변형 정도를 정성평가. 무형문화재의 변형정도가 심할수록 미흡에 가까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현재 무형문화재의 형태가 이전의 모습에서 변형된 정도를 판단함.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10점)	○ 지표정의 :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 측정산식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개 정 안

나. 전승환경(3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사회문화적 가치 (20점)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	○ 지표정의 : 현재의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 ○ 측정산식 : 무형유산 형태의 변형 정도를 정성평가. 무형유산의 변형정도가 심할수록 미흡에 가까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현재 무형유산의 형태가 이전의 모습에서 변형된 정도를 판단함.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10점)	○ 지표정의 :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 측정산식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현 행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 지표정의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 ○ 측정산식 : 해당 무형문화재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	---	---	---	---	---	---	---
관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문화재가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정도를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지속가능성 (10점)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5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	---	---	---	---	---	---	---
관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활발히 전승되던 시점의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 범위에 비하여 현재의 전승환경에서 이행되는 빈도와 범위를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개 정 안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5점)	○ 지표정의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 ○ 측정산식 : 해당 무형유산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	---	---	---	---	---	---	---
관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해당 무형유산이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정도를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지속가능성 (10점)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5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	---	---	---	---	---	---	---
관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이 활발히 전승되던 시점의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 범위에 비하여 현재의 전승환경에서 이행되는 빈도와 범위를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및 문헌자료

현 행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능력(7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5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률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전승활동 (25점)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7점)	○지표정의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 ○측정산식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률 / 100% (50년 이상) / 90% (50년 미만) / 80% (40년 미만) / 70% (30년 미만) / 60% (20년 미만) / 50% (10년 미만) / 40% (5년 미만)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 조사주안점 : 조사대상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을 조사. 다만, 전승단체의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제출 단체와 연속성을 갖는 단체가 이전에 존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그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정량 평가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개 정 안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가. 전승능력(7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5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률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전승활동 (25점)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7점)	○지표정의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 ○측정산식 :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률 / 100% (50년 이상) / 90% (50년 미만) / 80% (40년 미만) / 70% (30년 미만) / 60% (20년 미만) / 50% (10년 미만) / 40% (5년 미만)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 조사주안점 : 조사대상 전승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기간을 조사. 다만, 전승단체의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제출 단체와 연속성을 갖는 단체가 이전에 존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그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정량 평가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현 행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전승단체 내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8점)</td><td>○ 지표정의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정도
○ 측정산식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관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제출한 자료 및 면담을 통하여 활동 내용 및 수준을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r><td></td><td>전승활동 실적(10점)</td><td>○ 지표정의 : 공연·발표·전시·문화재수리복원 등의 전승활동 실적
○ 측정산식 : 매년 공연·발표·전시·문화재수리복원 등의 전승활동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 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관산율</td><td>100%
(7회 이상)</td><td>90%
(6회)</td><td>80%
(5회)</td><td>70%
(4회)</td><td>60%
(3회)</td><td>50%
(2회)</td><td>40%
(1회)</td></tr></table>○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전승활동으로서 전승활동의 공식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여 평가함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able>

개 정 안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td><td>전승단체 내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8점)</td><td>○ 지표정의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정도
○ 측정산식 :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 모임 주기, 단체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관산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d>40%</td></tr></table>○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제출한 자료 및 면담을 통하여 활동 내용 및 수준을 심층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r><td></td><td>전승활동 실적(10점)</td><td>○ 지표정의 : 공연·발표·전시·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의 전승활동 실적
○ 측정산식 : 매년 공연·발표·전시·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의 전승활동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 평가
<table><tr><th>등급</th><th>SS
(매우탁월)</th><th>S
(탁월)</th><th>A
(우수)</th><th>B
(보통)</th><th>C
(미흡)</th><th>D
(다소미흡)</th><th>F
(매우미흡)</th></tr><tr><td>관산율</td><td>100%
(7회 이상)</td><td>90%
(6회)</td><td>80%
(5회)</td><td>70%
(4회)</td><td>60%
(3회)</td><td>50%
(2회)</td><td>40%
(1회)</td></tr></table>○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전승활동으로서 전승활동의 공식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여 평가함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td></tr>
</table>

현 행

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55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최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최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최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최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개 정 안

3.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55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최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최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최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최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현 행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승활동
(20점)</td><td>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경력(5점)</td><td>○ 지표정의 :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기간 또는 이수자 등록 여부
○ 측정산식 :
·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조사시점부터 전수교육조교 인정기간을 구간화하여 3단계 척도(5~3점)로 가점 처리함
· 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로 등록된 자는 2점을 가점 처리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수교육조교 경력>
<table><tr><td>가점</td><td>5점</td><td>4점</td><td>3점</td></tr><tr><td>등급</td><td>11년 이상</td><td>10~6년</td><td>5년 미만</td></tr></table>
<이수자 등록 여부> : 2점 처리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 조사주안점 : 전수교육조교 인정된 기간 및 이수자로 등록 여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td></tr>
<tr><td>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td><td>○ 지표정의 : 최근 10년 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10년 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에 따른 정량적 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tr><td>판산율</td><td>100%
(10회 이상)</td><td>90%
(9회)</td><td>80%
(8회)</td><td>70%
(7회)</td><td>60%
(6회)</td><td>50%
(5회)</td><td>40%
(4회 ~)</td></tr></table>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횟수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개행사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td></tr>
</table>

개 정 안

<table>
<tr><th>구분</th><th>조사지표 및 배점</th><th>지표정의 및 측정산식</th></tr>
<tr><td rowspan="2">전승활동
(20점)</td><td>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td><td>○ 지표정의 :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기간 또는 이수자 등록 여부
○ 측정산식 :
· 전승교육사의 경우 조사시점부터 전승교육사 인정기간을 구간화하여 3단계 척도(5~3점)로 가점 처리함
· 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로 등록된 자는 2점을 가점 처리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교육사 경력>
<table><tr><td>가점</td><td>5점</td><td>4점</td><td>3점</td></tr><tr><td>등급</td><td>11년 이상</td><td>10~6년</td><td>5년 미만</td></tr></table>
<이수자 등록 여부> : 2점 처리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 조사주안점 : 전승교육사 인정된 기간 및 이수자로 등록 여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td></tr>
<tr><td>공개행사 참여 실적(8점)</td><td>○ 지표정의 : 최근 10년 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10년 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에 따른 정량적 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table><tr><td>등급</td><td>SS
(매우탁월)</td><td>S
(탁월)</td><td>A
(우수)</td><td>B
(보통)</td><td>C
(미흡)</td><td>D
(다소미흡)</td><td>F
(매우미흡)</td></tr><tr><td>판산율</td><td>100%
(10회 이상)</td><td>90%
(9회)</td><td>80%
(8회)</td><td>70%
(7회)</td><td>60%
(6회)</td><td>50%
(5회)</td><td>40%
(4회 ~)</td></tr></table>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횟수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개행사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td></tr>
</table>

현 행

4.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65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50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개 정 안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65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50점)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10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현 행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활동 (10점)	전승활동 실적(5점)	○ 지표정의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정량평가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그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을 적용함. 단, 공개행사 이외의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적용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활동 실적>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물 / 100% (10회 이상) / 90% (9회) / 80% (8회) / 70% (7회) / 60% (6회) / 50% (5회) / 40% (4회 ~)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전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 정 안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활동 (10점)	전승활동 실적(5점)	○ 지표정의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정량평가.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그 외에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을 적용함. 단, 공개행사 이외의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적용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활동 실적>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물 / 100% (10회 이상) / 90% (9회) / 80% (8회) / 70% (7회) / 60% (6회) / 50% (5회) / 40% (4회 ~)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전승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현 행

다. 전수활동 기여도(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수활동 기여도(5점)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5점)	○ 지표정의 :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정도 ○ 측정산식 : 보유자가 전승자에게 평가한 결과를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관산율 / 100% (100-96점) / 90% (95-91점) / 80% (90-86점) / 70% (85-81점) / 60% (80-76점) / 50% (75-71점) / 40% (70-) ○ 조사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전승자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함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평가 점수에 의거하여 정량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하여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보유자의 평가서 ※ 보유자가 없는 경우,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경력을 적용. ○ 지표정의 :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기간 또는 이수자 등록 여부 ○ 측정산식 : ·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조사 시점부터 전수교육조교 인정기간을 구간화하여 3단계 척도(5~3점)로 가점 처리함. · 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로 등록된 자는 2점을 가점 처리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수교육조교 경력> 가점 / 5점 / 4점 / 3점 등급 / 11년 이상 / 10~5년 / 5년 미만 <이수자 등록 여부> : 2점 처리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 조사주안점 : 전수교육조교 선정된 기간 및 이수자로 등록 여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개 정 안

다. 전수활동 기여도(5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수활동 기여도(5점)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5점)	○ 지표정의 :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정도 ○ 측정산식 : 보유자가 전승자에게 평가한 결과를 정량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매우탁월) / S(탁월) / A(우수) / B(보통) / C(미흡) / D(다소미흡) / F(매우미흡) 관산율 / 100% (100-96점) / 90% (95-91점) / 80% (90-86점) / 70% (85-81점) / 60% (80-76점) / 50% (75-71점) / 40% (70-) ○ 조사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전승자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함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평가 점수에 의거하여 정량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하여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보유자의 평가서 ※ 보유자가 없는 경우,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을 적용. ○ 지표정의 :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기간 또는 이수자 등록 여부 ○ 측정산식 : · 해당 종목의 전수활동에 대한 전승자의 기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승교육사의 경우 조사 시점부터 전승교육사 인정기간을 구간화하여 3단계 척도(5~3점)로 가점 처리함. · 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로 등록된 자는 2점을 가점 처리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전승교육사 경력> 가점 / 5점 / 4점 / 3점 등급 / 11년 이상 / 10~5년 / 5년 미만 <이수자 등록 여부> : 2점 처리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 조사주안점 : 전승교육사 선정된 기간 및 이수자로 등록 여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현 행

5.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5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5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개 정 안

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5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실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5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현 행

6.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50점)	해당 종목의 살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살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5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개 정 안

6.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기량 및 역량 (50점)	해당 종목의 살기 능력(40점)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살기능력 조사지표에 의거 평가함.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5점)	○ 지표정의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측정산식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조사 ○ 조사주안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심층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또는 면담자료
	리더십 및 교수능력(5점)	○ 지표정의 :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 ○ 측정산식 :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에 대한 정성 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면담 ○ 조사주안점 : 면담과정에서 전승활동의 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리더십 및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면담자료, 기타 자료

현 행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활동 (20점)	이수자 경력(5점)	○ 지표정의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 측정산식 :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이수자 경력>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20년 이상) / 90% (19~15년) / 80% (15~13년) / 70% (12~10년) / 60% (9~7년) / 50% (6~4년) / 40% (3년 ~)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 조사주안점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전승활동 실적(10점)	○ 지표정의 :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을 정량평가.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그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를 적용함. 단, 공개행사 이외의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적용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5회 이상) / 90% (4회) / 80% (3회) / 70% (2회) / 60% (1회) / 50% (0회) / 40% (0회 ~)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공개행사 및 전승활동 참여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 정 안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승활동 (20점)	이수자 경력(5점)	○ 지표정의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 측정산식 :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량평가 <이수자 경력>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20년 이상) / 90% (19~15년) / 80% (15~13년) / 70% (12~10년) / 60% (9~7년) / 50% (6~4년) / 40% (3년 ~)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 조사주안점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서울시 이수자 보고 · 서울시청 등록 자료 등
	전승활동 실적(10점)	○ 지표정의 :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 측정산식 :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실적과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을 정량평가.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와 그 외에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를 적용함. 단, 공개행사 이외의 해당 무형유산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 실적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에서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적용함 - 조사척도 : 정량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관산율 / 100% (5회 이상) / 90% (4회) / 80% (3회) / 70% (2회) / 60% (1회) / 50% (0회) / 40% (0회 ~) ○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검토 ○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공개행사 및 전승활동 참여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공연, 발표, 전시, 무형유산수리복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현 행

[별표 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제7조 관련)

1. 음악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정성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25점)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정성
	공력의 깊이(10점)	○ 공력의 정도	정성

2. 무용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복식의 전통성(10점)	○ 복식의 전통성 정도	정성
춤의 미적 완성도 (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정성
	춤과 공간의 어울림(10점)	○ 춤과 공간의 어울림 수준	정성
	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	○ 춤과 음악의 어울림 수준	정성

3. 놀이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50점)	○ 전통 놀이의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종합적인 구현 능력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정성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수준	정성

개 정 안

[별표 3]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제9조 관련)

1. 음악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 가락과 장단의 정확성 정도	정성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25점)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정성
	공력의 깊이(10점)	○ 공력의 정도	정성

2. 무용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정성
	복식의 전통성(10점)	○ 복식의 전통성 정도	정성
춤의 미적 완성도 (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정성
	춤과 공간의 어울림(10점)	○ 춤과 공간의 어울림 수준	정성
	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	○ 춤과 음악의 어울림 수준	정성

3. 놀이 분야

조사항목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50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50점)	○ 전통 놀이의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종합적인 구현 능력 정도	정성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 (5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 등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정성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수준	정성

현 행

[별표 4]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측정산식(제8조 관련)

1.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 지표정의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수준 ○ 측정산식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창법과 연주법의 전통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
예술적 완성도 및 가능적 숙련도 (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 지표정의 : 가락·장단의 정확도 ○ 측정산식 : 가락·장단의 정확도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

개 정 안

[별표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측정산식(제10조 관련)

1.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및 배점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 지표정의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수준 ○ 측정산식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창법과 연주법의 전통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
예술적 완성도 및 가능적 숙련도 (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 지표정의 : 가락·장단의 정확도 ○ 측정산식 : 가락·장단의 정확도 수준을 정성평가 - 조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조사방법 : 실기능력 현장조사 ○ 조사주안점 : 현장조사를 통해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를 심층적으로 평가 ○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 필요시, 정성평가의 근거 제시 ○ 증빙 자료 : 동영상 및 음향자료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A4용지 2마 이내로 작성>

종목 명칭				
전승자(단체) 현황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단체(설립연월일)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목의 전승 이력	※ 개인종목(주요 전승자의 전승이력 약술) ※ 단체종목(단체의 구성 및 연혁 약술) -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무형문화재 소개 / 지정 신청 사유	※ 신청 대상 무형문화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사유를 약술함 -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A4용지 2마 이내로 작성>

종목 명칭				
전승자(단체) 현황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단체(설립연월일)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목의 전승 이력	※ 개인종목(주요 전승자의 전승이력 약술) ※ 단체종목(단체의 구성 및 연혁 약술) -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무형유산 소개 / 지정 신청 사유	※ 신청 대상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무형유산 지정 신청사유를 약술함 -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1. 전승가치 _ A4용지 4~5매 이내로 작성	**1. 전승가치** _ A4용지 4~5매 이내로 작성
(1) 역사성	**(1) 역사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된 기간 - 해당 무형문화재의 지속성 - 해당 무형문화재의 역사적 근거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된 기간 - 해당 무형유산의 지속성 - 해당 무형유산의 역사적 근거
(2) 학술성	**(2) 학술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가 한국문화 및 서울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무형문화재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능한가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이 한국문화 및 서울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무형유산이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능한가
(3) 예술성·기술성	**(3) 예술성·기술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의 고유성 - 해당 무형문화재의 형식미·내용미·표현미 -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의 고유성 - 해당 무형유산의 형식미·내용미·표현미 -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성
(4) 대표성	**(4) 대표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가 서울과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가지는가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지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이 서울과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가지는가 - 서울 관련 공동체, 서울 관련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지

현 행	개 정 안
2. 전승환경 _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2. 전승환경** _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1) 사회문화적 가치	**(1) 사회문화적 가치**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 무형문화재 전승을 통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현재의 무형유산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 무형유산 전승을 통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2) 지속가능성	**(2) 지속가능성**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자(단체)의 규모(인적기반) -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자(단체)의 대내외 전승활동 내용	※ 신청서 작성에 포함해야 할 요소 - 해당 무형유산 전승자(단체)의 규모(인적기반) - 해당 무형유산 전승자(단체)의 대내외 전승활동 내용
3. 첨부자료	**3. 첨부자료**
※ 첨부자료 제출 사항 및 유의사항 - 사진(10컷 내외/최대 20컷 이내) : 사진인화 및 디지털이미지(CD동봉) - 영상물(30분 내외/최대 50분 이내) : DVD 1매 - 이미지, 영상물에 대한 <자료 활용 동의서>(별지제3호 서식) 1부 - 관련도서 : 1책 이내 ※ 위의 첨부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첨부자료 제출 사항 및 유의사항 - 사진(10컷 내외/최대 20컷 이내) : 사진인화 및 디지털이미지(CD동봉) - 영상물(30분 내외/최대 50분 이내) : DVD 1매 - 이미지, 영상물에 대한 <자료 활용 동의서>(별지제3호 서식) 1부 - 관련도서 : 1책 이내 ※ 위의 첨부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현 행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제출자료

<서식을지 그대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단체현황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립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전승현황	설립목적				
	전승기간	년부터 년 / 현재까지 (년)			
	단체연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승교육 현황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대외적 전승활동 실적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세부 제출자료
2.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 정관 또는 회칙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2.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제출자료

<서식을지 그대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단체현황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립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전승현황	설립목적				
	전승기간	년부터 년 / 현재까지 (년)			
	단체연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승교육 현황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대외적 전승활동 실적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세부 제출자료
2.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 정관 또는 회칙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세부 제출자료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 세부 제출자료**
1. 단체현황 및 연혁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 단체현황 및 연혁**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 관련 단체현황 및 연혁(전승활동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설립목적, 조직현황, 예산현황 등	※ 해당 종목 관련 단체현황 및 연혁(전승활동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설립목적, 조직현황, 예산현황 등
2. 전승자 및 전승교육 현황	**2. 전승자 및 전승교육 현황**
※ 해당 종목의 전승자 현황 및 전승체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최근 10년간 단체 내 전수교육, 주기적인 모임의 현황(시기, 참석인원,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해당 종목의 전승자 현황 및 전승체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최근 10년간 단체 내 전수교육, 주기적인 모임의 현황(시기, 참석인원,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
3. 대외적 전승활동 실적	**3. 대외적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단체의 전승활동(전시, 공연, 기타 종목의 전승을 위한 행사 등) 실적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 최근 10년간 단체의 전승활동(전시, 공연, 기타 종목의 전승을 위한 행사 등) 실적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4.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단체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단체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5. 전승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5. 전승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 해당 종목의 전승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기술함.	※ 해당 종목의 전승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기술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현 행

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서울지 2에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보유단체명		대표자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수교육조교 : 년 월 ~ 년 월			
공개행사 참여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3.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서울지 2에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		
	보유단체명		대표자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승교육사 : 년 월 ~ 년 월			
공개행사 참여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공개행사 참여실적	**2.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 최근 10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3.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4.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별도 서식 제출)	**4.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별도 서식 제출)**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은 평가위원회(3인 이상 참여)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한 뒤, 이를 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제출한다. 다만,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은 평가위원회(3인 이상 참여)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한 뒤, 이를 총회를 통해 의결하여 제출한다. 다만,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현 행

4.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 공방주소 포함)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수교육조교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관련분야 입상실적	〃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4.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 공방주소 포함)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승교육사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관련분야 입상실적	〃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실적	**3.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관련분야 입상실적	**4.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를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를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6. 공방 시설 및 장비 현황	**6. 전수 시설 및 장비 현황**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제3호 서식)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제3호 서식)
7. 해당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7. 해당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등의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현 행

5.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서식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보유단체명	대표자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공개행사 참여실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제출자료(단체종목)

<서식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현황	명 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	
	보유단체명	대표자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공개행사 참여실적	※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자료(단체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공개행사 참여실적	**2.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3.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4.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별도서식 제출)	**4.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별도서식 제출)**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한다. 다만,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한다. 다만, 보유단체의 장이 평가대상자일 경우는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현 행

6.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 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관련분야 입상실적	〃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6.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 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		
관련분야 입상실적	〃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2. 공개행사 참여실적	**2.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3. 관련분야 입상실적	**3.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를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를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4.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4. 전승의지 및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 평가대상자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전승계획을 기술함.
5. 공방 시설 및 장비 현황	**5. 전수 시설 및 장비 현황**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제3호 서식)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제3호 서식)
6. 보유자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별도서식 제출)	**6. 보유자에 대한 전승기여도 평가서 (별도서식 제출)**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종목의 보유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함.	※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종목의 보유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하여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대상자 평가서

지정내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평가대상자	성 명	평가대상격(보유자·조교)	평가점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를 위한 대상자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심사평가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자 평가서

지정내용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평가대상자	성 명	평가대상격(보유자·조교)	평가점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조사를 위한 대상자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심사평가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자료활용 동의서

자료제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본 단체)은 위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서울시청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선택)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

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자료활용 동의서

자료제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본 단체)은 위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선택)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

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① 성 명	(서명/인)	② 생년월일	19 . .	
③ 조사종목		④ 위촉동의 여부(O/X)		
⑤ 주소 (우편물 수령지 기준)	(우 -)			
	전화		휴대폰	
	e-mail			
	FAX			
⑥ 현 직 (직위포함)	00대학교 00학과 교수, 전 00 위원 등			
⑦ 전문분야	국악, 무용사, 무용실기 등 상세 기재 요망			
⑧ 학 력	졸업대학(학과) : 00대학교 00학과 석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박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⑨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조사종목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무형문화재 이수 여부	* 무형문화재 이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이수자			
⑪ 선정제외 여부 (해당 항목에 체크)	V	항 목		
		해당사항 없음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조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법인에 속하여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보유단체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의 전시회나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① 성 명	(서명/인)	② 생년월일	19 . .	
③ 조사종목		④ 위촉동의 여부(O/X)		
⑤ 주소 (우편물 수령지 기준)	(우 -)			
	전화		휴대폰	
	e-mail			
	FAX			
⑥ 현 직 (직위포함)	00대학교 00학과 교수, 전 00 위원 등			
⑦ 전문분야	국악, 무용사, 무용실기 등 상세 기재 요망			
⑧ 학 력	졸업대학(학과) : 00대학교 00학과 석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박사학위(전공) : 00대학교 대학원(000전공)			
⑨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조사종목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무형유산 이수 여부	* 무형유산 이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44호 삼현육각 이수자			
⑩ 선정제외 여부 (해당 항목에 체크)	V	항 목		
		해당사항 없음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조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법인에 속하여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보유단체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의 전시회나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에 참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자와는 친인척 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에 참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자와는 친인척 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대상자, 조사자)로서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자, 조사자)와는 친인척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확 인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대상자, 조사자)로서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자, 조사자)와는 친인척관계,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학술연구 및 용역관계, 학연,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사당동 산44-19 석축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44-19	동작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해제)대상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석축 철거 후 옹벽 설치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91-339호(1991.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34호(2020.4.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3호(2023.6.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호(2024.01.18.)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기간연장)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기간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 명칭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67-108번지 일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 면적 : 5,225㎡
   - ○ 규모 : 연결도로 1개소 설치 (L = 4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 착 수 일 : 2020년 4월 9일(변경없음)
   - ○ 준공예정일 : (당초) 2024년 07월 31일까지
     (변경) 2024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주소, 용지도(변경없음)

7) 위치도 : 생략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08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02-6438-216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7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2호(2020.0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26호(2023.08.0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화랑대 철도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전시장 설치를 통해 문화공원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갖추어 방문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축물 등의 공원계획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61 일대
3. 면 적 : 40,293㎡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붙임참고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68)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02-2116-3969)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40,293.00	16,878.20	7	2,224.20	2,679.41	4	40,293.00	16,878.20	7	2,393.95	2,537.57	4	
기반시설	소 계	10,927.00	10,927.00				4	10,927.00	10,927.00				4	
	도 로	1,844.00	1,844.00					1,844.00	1,844.00					
	광 장	9,083.00	9,083.00				4	9,083.00	9,083.00				4	
조경시설		721.00	721.00					721.00	721.00					
휴양시설		-	-					-	-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	-					-	-					
교양시설		4,453.75	4,453.75	4	1,811.75	2,172.75		4,453.75	4,453.75	4	1,981.50	2,030.91		
편익시설		726.45	726.45	2	362.45	456.66		726.45	726.45	2	362.45	456.66		
관리시설		50.00	50.00	1	50.00	50.00		50.00	50.00	1	50.00	50.00		
녹지 및 기타		23,414.80						23,414.80						
시설율		(16,878.20㎡ / 40,293.0㎡) x 100% = 41.88%						(16,878.20㎡ / 40,293.0㎡) x 100% = 41.88%						
건폐율 (법정 20%)		(2,224.20㎡ / 40,293.0㎡) x 100% = 5.52%						(2,393.95㎡ / 40,293.0㎡) x 100% = 5.94%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878.20	16,878.20		7	2,224.20	2,679.41	4			40,293.00	16,878.20		7	2,393.95	2,537.57	4	부지면적 오류정정 (당초) 16,878.20 (정정) 40,293.00
기반시설	소계			10,927.00	10,927.00					4			10,927.00	10,927.00					4	
	도로		공원내	1,844.00	1,844.00							공원내	1,844.00	1,844.00						
	광장	가	〃	9,083.00	9,083.00					4	가	〃	9,083.00	9,083.00					4	
	진입광장-1	가-1	〃	(711.00)	(711.00)						가-1	〃	(711.00)	(711.00)						
	협궤열차	1	〃							1	①	〃							1	
	플랫폼광장	가-2	〃	(4,957.00)	(4,957.00)						가-2	〃	(4,957.00)	(4,957.00)						
	일본노면전차	2	〃							1	②	〃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문화광장	가-3	〃	(1,573.00)	(1,573.00)						가-3	〃	(1,573.00)	(1,573.00)						
	체코열차	3	〃							1	③	〃							1	
	진입광장-2	가-4	〃	(935.00)	(935.00)						가-4	〃	(935.00)	(935.00)						
	진입광장-3	가-5	〃	(81.00)	(81.00)						가-5	〃	(81.00)	(81.00)						
	진입광장-4	가-6	〃	(826.00)	(826.00)						가-6	〃	(826.00)	(826.00)						
	황실열차	4	〃							1	④	〃							1	
조경시설	소계			721.00	721.00								721.00	721.00						
	자연형계류	바	공원내	721.00	721.00						바	공원내	721.00	721.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4,453.75	4,453.75		4	1,811.75	2,172.75				4,453.75	4,453.75		4	1,981.50	2,030.91		
	철도미니어처전시장	나	공원내	2,350.00	2,350.00		1	660.00	1,021.00		나	공원내	2,350.00	2,350.00		1	829.75	879.16		현황반영 및 증축
	목공체험장	다	공원내	1,523.00	1,523.00		1	571.00	571.00		다	공원내	1,523.00	1,523.00		1	571.00	571.00		
	화랑대역사관	라	공원내	157.75	157.75		1	157.75	157.75		라	공원내	157.75	157.75		1	157.75	157.75		
	철도와시간박물관	마	공원내	423.00	423.00		1	423.00	423.00		마	공원내	423.00	423.00		1	423.00	423.00		
편익시설	소계			726.45	726.45		2	362.45	456.66				726.45	726.45		2	362.45	456.66		
	휴게음식점	사	공원내	294.45	294.45		1	294.45	388.66		사	공원내	294.45	294.45		1	294.45	388.66		
	푸드트럭	아	공원내	10.00	10.00						아		10.00	10.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화장실	자	공원내	68.00	68.00		1	68.00	68.00		자	공원내	68.00	68.00		1	68.00	68.00		
	주차장	차	공원내	354.00	354.00						차	공원내	354.00	354.00						
	소계			50.00	50.00		1	50.00	50.00				50.00	50.00		1	50.00	50.00		서설구분 오류정정 (당초) 조경시설 (정정) 관리시설
	창고	차	공원내	50.00	50.00		1	50.00	50.00		타	공원내	50.00	50.00		1	50.00	50.00		
녹지 및 기타	소계			23,414.80	-								23,414.80	-						
	녹지			23,414.80	-								23,414.80	-						

3. 도로조서

- 공원계획도로

구분	연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 계					837	1,844				
변경	합 계					837	1,844				
기정	1	소로	소계			84	382				
변경			소계			84	382				
기정	2		3	1	5	46	230	진입로	부지경계	철도미니어처전시장	
변경			3	1	5	46	230	진입로	부지경계	철도미니어처전시장	
기정	3		3	2	4	38	152	연결로	광장가-2	광장가-3	
변경			3	2	4	38	152	연결로	광장가-2	광장가-3	
기정		산책로	계			753	1,462				
변경			계			753	1,462				
기정	4			1	1.5	302	453	산책로	광장가-1	철도미니어처전시장	
변경				1	1.5	302	453	산책로	광장가-1	철도미니어처전시장	
기정	5			2	1.5	18	27	〃	부지경계	산책로1	
변경				2	1.5	18	27	〃	부지경계	산책로1	
기정	6			3	1.5	22	33	〃	부지경계	산책로1	
변경				3	1.5	22	33	〃	부지경계	산책로1	
기정	7			4	1.5	22	33	〃	부지경계	산책로1	
변경				4	1.5	22	33	〃	부지경계	산책로1	
기정	8			5	2.5	170	425	〃	광장가-5	광장가-3	
변경				5	2.5	170	425	〃	광장가-5	광장가-3	
기정	9			6	1.5	6	9	〃	광장가-1	산책로5	
변경				6	1.5	6	9	〃	광장가-1	산책로5	
기정	10			7	1.5	6	9	〃	광장가-1	산책로5	
변경				7	1.5	6	9	〃	광장가-1	산책로5	

구분	연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11			8	2.5	8	20	"	광장가-1	산책로5	
변경				8	2.5	8	20	"	광장가-1	산책로5	
기정	12			9	1.5	8	12	"	광장가-1	산책로5	
변경				9	1.5	8	12	"	광장가-1	산책로5	
기정	13			10	1.5	8	12	"	광장가-1	산책로5	
변경				10	1.5	8	12	"	광장가-1	산책로5	
기정	14			11	1.5	6	9	"	광장가-1	산책로5	
변경				11	1.5	6	9	"	광장가-1	산책로5	
기정	15			12	1.5	30	45	"	산책로5	광장가-3	
변경				12	1.5	30	45	"	산책로5	광장가-3	
기정	16			13	1.5	16	24	"	광장가-4	광장가-3	
변경				13	1.5	16	24	"	광장가-4	광장가-3	
기정	17			14	1.5	34	51	"	소로3-2	산책로13	
변경				14	1.5	34	51	"	소로3-2	산책로13	
기정	18			15	1.0	4	4	"	주차장	산책로14	
변경				15	1.0	4	4	"	주차장	산책로14	
기정	19			16	1.0	10	10	"	주차장	부지경계	
변경				16	1.0	10	10	"	주차장	부지경계	
기정	20			17	2	10	20	"	광장가-2	산책로1	
변경				17	2	10	20	"	광장가-2	산책로1	
기정	21			18	2	13	26	"	광장가-2	산책로1	
변경				18	2	13	26	"	광장가-2	산책로1	
기정	22			19	1.5	192	288	"	광장가-2	산책로21	
변경				19	1.5	192	288	"	광장가-2	산책로21	
기정	23			20	3	100	300	"	부지경계	산책로21	

구분	연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20	3	100	300	"	부지경계	산책로21	
기정	24			21	1.5	70	105	"	부지경계	플랫폼광장	
변경				21	1.5	70	105	"	부지경계	플랫폼광장	

조 성 계 획 도 (변경전)

화랑대 철도공원

■범 례

구분	기호	시설명	단위	수 량	비 고
		부 지 면 적	M2	40,293.0	
기반시설		소 계	M2	10,927.0	
		도로	M2	1,844.0	
	가	광장	M2	9,083.0	
	가-1	진입광장-1	M2	(711.0)	
	1	협궤열차	개소	1	
	가-2	플랫폼광장	M2	(4,957.0)	
	2	일본노면전차	개소	1	
	가-3	문화광장	M2	(1,573.0)	
	3	체코열차	개소	1	
	가-4	진입광장-2	M2	(935.0)	
	가-5	진입광장-3	M2	(81.0)	
	가-6	진입광장-4	M2	(826.0)	
	4	황실열차	개소	1	

구분	기호	시설명	단위	수 량	비 고
조경시설		소 계	M2	721.0	
	바	자연형계류	M2	721.0	
교양시설		소 계	M2	4,453.75	
	나	철도미니어처전시장	M2	2,350.0	
	다	목공체험장	M2	1,523.0	
	라	화랑대역사관	M2	157.75	
	마	철도와시간박물관	M2	423.0	
편익시설		소 계	M2	726.45	
	사	휴게음식점	M2	294.45	
	아	푸드트럭	M2	10.0	
	자	화장실	M2	68.0	
	차	주차장	M2	354.0	
관리시설		소 계	M2	50.0	
	차	창고	M2	50.0	
녹지기타		소 계	M2	23,414.80	
		녹지 및 기타	M2	23,414.80	



서울특별시
2024. 6. 27.(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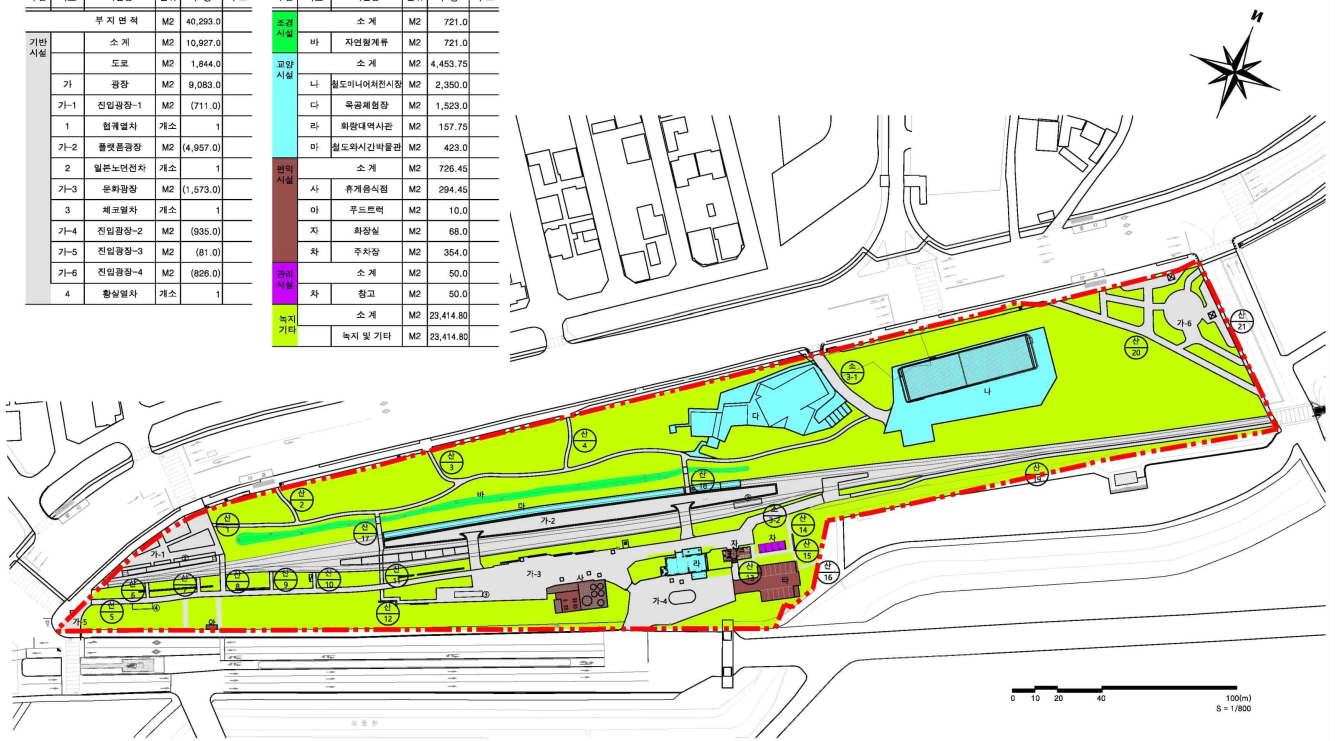
조 성 계 획 도 (변경후)

화랑대 철도공원

■범 례

구분	기호	시설명	단위	수 량	비 고
		부 지 면 적	M2	40,293.0	
기반시설		소 계	M2	10,927.0	
		도로	M2	1,844.0	
	가	광장	M2	9,083.0	
	가-1	진입광장-1	M2	(711.0)	
	1	협계열차	개소	1	
	가-2	플랫폼광장	M2	(4,957.0)	
	2	일본노면전차	개소	1	
	가-3	문화광장	M2	(1,573.0)	
	3	체코열차	개소	1	
	가-4	진입광장-2	M2	(935.0)	
	가-5	진입광장-3	M2	(81.0)	
	가-6	진입광장-4	M2	(826.0)	
	4	황실열차	개소	1	

구분	기호	시설명	단위	수 량	비 고
조경시설		소 계	M2	721.0	
	바	자연형계류	M2	721.0	
교양시설		소 계	M2	4,453.75	
	나	철도미니어처전시장	M2	2,350.0	
	다	목공체험장	M2	1,523.0	
	라	화랑대역사관	M2	157.75	
	마	철도와시간박물관	M2	423.0	
편익시설		소 계	M2	726.45	
	사	휴게음식점	M2	294.45	
	아	푸드트럭	M2	10.0	
	자	화장실	M2	68.0	
	차	주차장	M2	354.0	
관리시설		소 계	M2	50.0	
	차	창고	M2	50.0	
녹지기타		소 계	M2	23,414.80	
		녹지 및 기타	M2	23,414.8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8호

노해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547호(1989. 10. 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8호(2021. 09. 16.)로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해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원시설 종류, 규모, 건축물 등의 공원계획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18 일원
3. 면 적 : 34,646.8㎡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붙임참고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68)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02-2116-3963)

노해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노원구 중계동 360-18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4,569.3	13,771	2	1,596.36	5,915.7	87	34,646.80	17,253.76	2	2,685.13	9,036.18	333	(증)3,482.76㎡
기반시설	소 계	3,802	3,802	-	-	-	-	3,199.07	3,199.07	-	-	-	-	(감)602.93㎡
	도 로	1,219	1,219	-	-	-	-	2,468.91	2,468.91	-	-	-	-	
	광 장	2,583	2,583	-	-	-	-	730.16	730.16	-	-	-	-	
조경시설		-	-	-	-	-	6	-	-	-	-	-	-	
휴양시설		-	-	-	-	-	49	393.94	393.94	-	-	-	9	(증)393.94㎡
유희시설		255	255	-	-	-	4	898.20	898.20	-	-	-	1	(증)643.20㎡
운동시설		10,377.5	9,660	1	1,560.06	5,879.4	5	11,437.98	11,437.98	1	2,566.33	8,917.38	43	〈부지면적〉 (증)1,060.48㎡ 〈시설면적〉 (증)1,777.98㎡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교양시설	-	-	-	-	-	-	232.22	232.22	-	-	-	1	(증)232.22㎡
편익시설	54	54	1	36.3	36.3	2	1,092.35	1,092.35	1	118.80	118.80	7	(증)1,038.35㎡
관리시설	-	-	-	-	-	21	-	-	-	-	-	272	
녹지 및 기타	20,798.3	-	-	-	-	-	17,393.04	-	-	-	-	-	(감)3,405.26㎡
시설율	13,771÷34,569.3×100=39.84%(법정:40%이하,근린공원)						17,253.76÷34,646.80×100=49.80%(법정:50%이하,체육공원)						
건폐율	1,596.36÷34,569.3×100=4.62%(법정:20%이하)						2,685.13÷34,646.80x100=7.75%(법정:15%이하)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서울중계택개지구	34,569.3	13,771			1,596.36	5,915.70	87		중계동 360-18	34,646.80	17,253.76	-	-	-	-	333	(증)3,482.76㎡
기반시설	소계			3,802	3,802							〃	3,199.07	3,199.07	-	-	-	-	-	(감)602.93㎡
	도로			1,219	1,219						-	〃	2,468.91	2,468.91	-	-	-	-	-	
	광장	가		2,583	2,583						가	2개소	730.16	730.16	-	-	-	-	-	
		가-1		(882)	(882)						가-1	〃	(622.37)	(622.37)	-	-	-	-	-	
		가-2		(981)	(981)						가-2	〃	(107.79)	(107.79)	-	-	-	-	-	
		가-3		(230)	(230)															폐지
		가-4		(380)	(380)															폐지
		가-5		(110)	(110)															폐지
조경시설	소계			(180)	(120)					6			-	-	-	-	-	-	-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늘시렁	①		(180)	(120)					6			-	-	-	-	-	-	-	폐지
휴양시설	소계			(98)	(58.8)					49		〃	393.94	393.94	-	-	-	-	9	(증)393.94㎡
	장의자	②		(98)	(58.8)					49										폐지
	휴게공간										나	3개소	393.94	393.94	-	-	-	-	-	
	휴게공간-1										나-1	〃	(144.00)	(144.00)	-	-	-	-	-	신설
	휴게공간-2										나-2	〃	(44.33)	(44.33)	-	-	-	-	-	신설
	휴게공간-3										나-3	〃	(205.61)	(205.61)	-	-	-	-	-	신설
	파고라										①	〃	-	-	-	-	-	-	3	신설
	벤치										②	〃	-	-	-	-	-	-	3	신설
	야외테이블세트										③	〃	-	-	-	-	-	-	3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휴시설	소계	나		255	255			1,560	5,879	6		중계동 360-18	898.20	898.20	-	-	-	-	1	(증)643.20㎡
	놀이시설										다	2개소	898.20	898.20	-	-	-	-	-	
	어린이놀이터	나-1		(155)	(155)						다-1	중계동 360-18	(155.00)	(155.00)	-	-	-	-	-	
		나-2		(100)	(100)															폐지
	미끄럼대	③								1										폐지
	회전무대	④								1										폐지
	시소	⑥								1										폐지
	레더	⑤								1										폐지
	통합놀이터										다-2	〃	(743.20)	(743.20)	-	-	-	-	-	신설
	놀이시설물										④	〃	-	-	-	-	-	-	1	신설
운영시설	소계			10,377.5	9,660			1,560	5,879	6		〃	11,437.98	11,437.98	-	-	2,566.33	8,917.38	43	〈부지면적〉 (증)1,060.4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면적〉 (증)1,777.98㎡
	운동장	다		5,600	5,600																	폐지
	사회체육시설	1		4,777.5	4,060	철골	4층	1,560.06	5,879.4	1	1		4,060.00	4,060.00	철근	지하1층 지상3층	2,566.33	8,917.38	1	기존부지에 신설		
	골프스트(축구)	⑦								1												폐지
	농구대	⑧								1												폐지
	소프트볼배스톱	⑨								1												폐지
	폄행봉	⑩								1												폐지
	철봉	⑪								1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X-게임시설										라	3개소	1,467.80	1,467.80	-	-	-	-	-	
	파크섹션										라-1	중계동 360-18	(658.74)	(658.74)	-	-	-	-	-	신설
	스트릭섹션										라-2	〃	(532.84)	(532.84)	-	-	-	-	-	신설
	보울섹션										라-3	〃	(276.22)	(276.22)	-	-	-	-	-	신설
	조깅트랙										마	〃	628.00	628.00	-	-	-	-	-	-
	구기종목체육시설										바	3개소	4,712.00	4,712.00	-	-	-	-	-	
	족구장										바-1	중계동 360-18	(840.00)	(840.00)	-	-	-	-	-	신설
	풋살장										바-2	〃	(2,016.00)	(2,016.00)	-	-	-	-	-	신설
	농구장										바-3	〃	(1,856.00)	(1,856.00)	-	-	-	-	-	신설
	생활체육공간										사	3개소	570.18	570.18	-	-	-	-	-	
	생활체육공간-1										사-1	중계동 360-18	(122.05)	(122.05)	-	-	-	-	-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생활체육공간-2										사-2	〃	(269.64)	(269.64)	-	-	-	-	-	신설
	생활체육공간-3										사-3	〃	(178.49)	(178.49)	-	-	-	-	-	신설
	운동기구										⑤	〃	-	-	-	-	-	-	42	신설
교양시설	소계			-	-	-	-	-	-	-		〃	232.22	232.22	-	-	-	-	1	(증)232.22㎡
	야외무대										아	〃	232.22	232.22	-	-	-	-	-	
	야외무대										⑥	〃	-	-	-	-	-	-	1	신설
편익시설	소계			54	54	-	-	36.3	36.3	2		〃	1,092.35	1,092.35	-	-	118.80	118.80	7	(증)1,038.35㎡
	변소	2		54	54	조적	1층	36.3	36.3	1										폐지
	음수장	⑫								1										폐지
	화장실										2	〃	181.30	181.30	철근	지상1층	118.80	118.80	1	기존화장실 반영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음수시설											자	2개소	58.36	58.36	-	-	-	-	-		
	음수대-1											자-1	중계동 360-18	(35.84)	(35.84)	-	-	-	-	-		신설
	음수대-2											자-2	〃	(22.52)	(22.52)	-	-	-	-	-		신설
	주차장											차	〃	852.69	852.69	-	-	-	-	-		신설
	음수대											①	〃	-	-	-	-	-	-	6		신설
관리시설	소계			-	-	-	-	-	-	21				-	-	-	-	-	-	272		-
	휴지통	⑬								1												폐지
	조명시설	⑭								3												폐지
	안내판	⑮								5												폐지
	쓰레기 소각장	⑯								1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차장	⑰								1										폐지
	자전거 보관소	⑱								10										신설
	종합 구기장 휀스										⑧	〃	–	–	–	–	–	–	110	신설
	조명시설										⑨	〃	–	–	–	–	–	–	125	신설
	방범 CCTV										⑩	〃	–	–	–	–	–	–	12	신설
	안내판										⑪	〃	–	–	–	–	–	–	22	신설
	분리수거대										⑫	〃	–	–	–	–	–	–	1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20,798.30									17,393.04	–						(감)3,405.26㎡
	녹지 및 기타			20,798.30									17,393.04	–						

3. 도로조서

- 공원계획도로

구분	연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 계						1,219.00				
변경	합 계					1,324.4	2,468.91				
신설	1	산책로	-	1	3.0	74.2	224.90	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1	
신설	2	산책로	-	2	2.0-4.0	98.4	248.76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	
신설	3	산책로	-	3	2.0	17.6	35.30	진입로	공원경계	조깅트랙	
신설	4	산책로	-	4	2.0	54.5	109.38	연결로	광장 가-2	산책로 3-2	
신설	5	산책로	-	5	2.0	1.0	18.8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6	
신설	6	산책로	-	6	2.0	50.8	103.10	연결로	산책로3-2	산책로 3-3	
신설	7	산책로	-	7	1.5	246.3	367.61	연결로	광장 가-2	산책로 3-19	
신설	8	산책로	-	8	1.5	20.9	31.7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7	
신설	9	산책로	-	9	1.5	13.2	20.2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10	
신설	10	산책로	-	10	1.5	316.9	475.52	진입로	산책로3-3	산책로 3-19	
신설	11	산책로	-	11	1.5	77.8	118.42	연결로	산책로3-7	광장 가-1	
신설	12	산책로	-	12	1.5	9.5	14.99	연결로	산책로3-1	야외무대	

구분	연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13	산책로	-	13	1.5	6.4	10.41	연결로	산책로3-11	야외무대	
신설	14	산책로	-	14	1.5	14.5	24.37	연결로	산책로3-11	산책로 3-7	
신설	15	산책로	-	15	2.0	1.9	4.46	연결로	광장 가-1	야외무대	
신설	16	산책로	-	16	2.8	1.3	3.54	연결로	체육센터	산책로 3-17	
신설	17	산책로	-	17	1.5	35.9	56.16	진입로	공원경계	체육센터	
신설	18	산책로	-	18	1.5	10.9	16.98	연결로	주차장	산책로3-7	
신설	19	산책로	-	19	3.0	102.3	307.14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신설	20	산책로	-	20	1.5	48.8	74.20	연결로	산책로3-19	산책로3-10	
신설	21	산책로	-	21	1.5	6.9	10.7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3-10	
신설	22	산책로	-	22	2.0	18.0	36.2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10	
신설	23	산책로	-	23	2.0	4.5	9.08	연결로	산책로3-2	놀이터	
신설	24	산책로	-	24	1.5-1.8	24.9	37.60	연결로	산책로3-17	산책로3-25	
신설	25	산책로	-	25	1.8	13.2	23.72	연결로	산책로3-17	산책로3-7	
신설	26	산책로	-	26	1.8	15.9	27.44	연결로	산책로3-25	산책로3-7	
신설	27	산책로	-	27	1.5	9.6	15.36	연결로	산책로3-7	산책로3-19	
신설	28	산책로	-	28	1.5	28.3	42.67	연결로	산책로3-10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도 [변경전]

노해근린공원



■ 범 례

구 분	부 호	시 설 명	단 위	수 량	비 고
공원면적			M2	34,569.3	
시설면적			M2	13,771	39.84%
녹지면적			M2	20,798.3	60.16%
기반시설		도 로	M2	1,219	
	가.	광 장	M2	2,583	
조경시설	①	그늘시렁	개소	6	
휴양시설	②	장의자	개소	49	
유희시설	나.	어린이놀이터	M2	255	
	③	미끄럼틀	개소	1	
	④	회전그네	개소	1	
	⑤	래 더	개소	1	
	⑥	시 소	개소	1	
운동시설	다.	운동장	M2	5,600	(축구장)
	1.	사회체육시설(부지)	M2	4,777.5	운동세부시설내역 과로불임 시설면적:4,060M2 부시면적:717.5M2
	⑦	골포스트(축구)	조	1	2개소 1조
	⑧	놀 구 대	개소	1	
	⑨	소프트볼박스홈	개소	1	
	⑩	평 형 봉	개소	1	
	⑪	철 봉	개소	1	
편익시설	2.	변 소	개소	1	부시면적:54M2
	⑫	음수장	개소	1	
관리시설	⑬	휴지통	개소	5	
	⑭	조명시설	개소	3	
	⑮	공원안내판	개소	1	
	⑯	쓰레기소각장	개소	1	
	⑰	주차장	개소	1	21대 주차
	⑱	자전거보관소	개소	10	

조성계획도 [변경후]

노해체육공원



■ 범 례

시설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비 고
총 계				34,646.80	17,253.76	333	49.80%
시 설 합 계				17,253.76	17,253.76	333	
세부내용	도로 및 광장		소 계	3,199.07	3,199.07		
		가	광장	730.16	730.16		
		가-1	중심광장	622.37	622.37		
		가-2	진입광장	107.79	107.79		
		-	도로	2,468.91	2,468.91		
	휴양시설		소 계	393.94	393.94	9	
		나	휴게공간	393.94	393.94		
		나-1	휴게공간-1	144.00	144.00		
		나-2	휴게공간-2	44.33	44.33		
		나-3	휴게공간-3	205.61	205.61		
		①	파고라			3	
		②	벤치			3	
		③	야외테이블세트			3	
	유희시설		소 계	898.20	898.20	1	
		다	놀이시설	898.20	898.20		
		다-1	아트이 놀이터	155.00	155.00		
		다-2	통합놀이터	743.20	743.20		
		④	놀이시설물			1	
	운동시설		소 계	11,437.98	11,437.98	43	유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이용, 신축, 시설보수명의
		1	사회체육시설	4,060.00	4,060.00	1	
		라	X-게임시설	1,467.80	1,467.80		
		라-1	파크릭션	658.74	658.74		
		라-2	스트릿릭션	532.84	532.84		
		라-3	보울릭션	276.22	276.22		
		마	조깅트랙	628.00	628.00		
		바	구기종목체육시설	4,712.00	4,712.00		
		바-1	축구장	840.00	840.00		
		바-2	풋살장	2,016.00	2,016.00		
		바-3	농구장	1,856.00	1,856.00		
		사	생활체육공간	570.18	570.18		
		사-1	생활체육공간-1	122.05	122.05		
		사-2	생활체육공간-2	269.64	269.64		
		사-3	생활체육공간-3	178.49	178.49		
		⑤	운동기구			42	
	교양시설		소 계	232.22	232.22	1	
		아	야외 무대	232.22	232.22		
		⑥	야외 무대			1	
	편익시설		소 계	1,092.35	1,092.35	7	
		2	화장실	181.3	181.3	1	
		자	음수시설	58.36	58.36		
		자-1	음수대-1	35.84	35.84		
		자-2	음수대-2	22.52	22.52		
		차	주차장	852.69	852.69		
		⑦	음수대			6	
	부대시설		소 계			272	
		⑨	종합구기장 휀스			110	
		⑨	조명시설			125	
		⑩	방범 CCTV			12	
		⑪	안내판			22	
		⑫	분리수거대			1	
	녹지		소 계	17,393.04			50.20%
		녹지		17,393.0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9호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1.0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에 대해 계획적 관리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산업과 주거의 공생을 통한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	증) 316,027	316,02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316,027	•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에 대해 계획적 관리 및 재생방안을 마련하여 산업과 주거의 공생을 통한 준공업지역 활성화 실현 • 신안산선 지하철역 신설 및 두산로 지하차도 설치,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 주변지역 변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6,027	-	316,027	100.0	-
준공업지역	316,027	-	316,027	100.0	-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없음)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	-	-	-	-	-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교통시설 현황

도로	• 중로 3개소, 소로 18개소

2) 도로계획

• 도로는 중로 1류 2개 노선, 중로 2류 1개 노선, 소로 1류 10개 노선, 소로 2류 7개 노선, 소로 3류 1개 노선으로 계획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1	5,413	65,364	12	3,703	47,280	8	1,596	17,400	1	114	684
소로	18	3,939	35,884	10	2,615	25,520	7	1,210	9,680	1	114	684
중로	3	1,474	29,480	2	1,088	21,760	1	386	7,720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6	8~10m	국지도로	165 (30)	가산동 219-5 (가산동 236-20)	가산동 152-27 (가산동 236-19)	일반	서고 제752호 (1987.11.02.)	-
기정	소로	1	2	11m (3m)	국지도로	94	독산동 289-14 (독산동 295-30)	독산동 289-1 (독산동 295-30)	일반	서고 제183호 (2008.05.29.)	-
기정	중로	1	109	20m	집산도로	900 (728)	독산동 광1-15 (독산동 295-22)	가산동 319-27	일반	건고 제198호 (1971.04.07.)	두산로
기정	중로	2	114	15~20m (20m)	집산도로	5,250 (386)	구로동 대3-49 (가산동 239-17)	시흥동 대3-82 (독산동 336-26)	일반	건고 제183호 (1971.04.07.)	벚꽃로
기정	중로	1	108	20m	집산도로	1,250 (360)	가리봉동 광2-19 (가산동 153-16)	독산동 중1-107 (독산동 152-12)	일반	건고 제198호 (1971.04.07.)	가산로
기정	소로	1	(1)	10m	국지도로	426	가산동 237-1	독산동 297-1	일반	-	가산로5길
기정	소로	1	(2)	10m	국지도로	330	가산동 235-61	독산동 중1-109	일반	-	두산로5길
기정	소로	1	(3)	10m	국지도로	345	가산동 234-41	독산동 중1-109	일반	-	두산로11길
기정	소로	1	(4)	10m	국지도로	300	독산동 중2-114	독산동 335-1	일반	-	가산로3길
기정	소로	1	(5)	10m	국지도로	285	독산동 303-10	독산동 301-25	일반	-	가산로3길
기정	소로	1	(6)	10m	국지도로	148	독산동 299-45	독산동 296-1	일반	-	가산로3길
기정	소로	1	(7)	10m	국지도로	197	독산동 303-1	독산동 중1-109	일반	-	두산로7길
기정	소로	1	(8)	10m	국지도로	464	독산동 중2-114	가산동 236-21	일반	-	-
기정	소로	2	(1)	8m	국지도로	136	가산동 238-1	가산동 238-35	일반	-	두산로3길
기정	소로	2	(2)	8m	국지도로	140	독산동 336-1	독산동 중1-109	일반	-	두산로3길
기정	소로	2	(3)	8m	국지도로	148	가산동 235-3	가산동 235-34	일반	-	두산로9길
기정	소로	2	(4)	8m	국지도로	197	독산동 302-18	독산동 중1-109	일반	-	두산로9길
기정	소로	2	(5)	8m	국지도로	233	독산동 299-1	독산동 중1-109	일반	-	두산로13길
기정	소로	2	(6)	8m	국지도로	140	독산동 297-19	독산동 297-12	일반	-	시흥대로123길
기정	소로	2	(7)	8m	국지도로	216	독산동 296-2	독산동 296-19	일반	-	시흥대로123길
기정	소로	3	(1)	6m	국지도로	114	독산동 334-7	독산동 334-1	일반	-	-

■ 도로 결정 사유서

결정 전 도로명	결정 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1-(1)	• 폭원 : 10m • 연장 : 426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1-(2)	• 폭원 : 10m • 연장 : 330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1-(3)	• 폭원 : 10m • 연장 : 345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1-(4)	• 폭원 : 10m • 연장 : 300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1-(5)	• 폭원 : 10m • 연장 : 285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1-(6)	• 폭원 : 10m • 연장 : 148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1-(7)	• 폭원 : 10m • 연장 : 197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1-(8)	• 폭원 : 10m • 연장 : 464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2-(1)	• 폭원 : 8m • 연장 : 136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2-(2)	• 폭원 : 8m • 연장 : 140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2-(3)	• 폭원 : 8m • 연장 : 148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2-(4)	• 폭원 : 8m • 연장 : 197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2-(5)	• 폭원 : 8m • 연장 : 233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2-(6)	• 폭원 : 8m • 연장 : 140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2-(7)	• 폭원 : 8m • 연장 : 216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	소로3-(1)	• 폭원 : 6m • 연장 : 114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67.12.2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11호)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무아래	어린이공원	가산동 234-29	1,162.6	-	1,162.6	-	-
기정	②	두산	어린이공원	독산동 298-1	974.9	-	974.9	-	-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모아래 마을마당	가산동 237-68	621.5	-	621.5	-	-

(4)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가. 친환경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자연 지반 보존	전구역	•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하고, 당해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에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2조
옥상 녹화	전구역	• 「서울시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내용 준수하고,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3조
벽면 녹화	전구역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등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4조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녹색 주차장	전구역	•조성시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필로티, 처마 등의 하부공간에 조성된 녹색주차장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5조
중수도	전구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6조
빗물 이용시설	전구역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7조
신·재생 에너지	전구역	•신축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8조
에너지 절약	전구역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고 중복계상 불허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9조
생태 면적률	전구역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적용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0조

나. 방재안전계획

1) 저감대책

- 좁은 도로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화재시 연소 확대가 용이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비상 소화장치 확충
-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위험물, 특수가연물질의 노상 및 옥외방치 등을 단속 등의 예방활동 검토
- 또한, 화재의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주민들의 소화기 비치 및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등으로 주민 생활을 독려하여 화재예방 강화

(5)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1) 공공기여계획

- 소규모 필지위주의 주거우세지역의 경우 건축물 공공기여의 실현성이 낮음에 따라 비교적 중·대규모 필지가 위치한 산업우세지역과 중심기능밀집지역에서의 건축물 공공기여를 계획
-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10,000㎡이상의 단일필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상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유도하여 주민 및 산업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

2) 공공기여 비율 기준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산업재생형 기준을 준용하여 순부담률 10%이상 충족하여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함
-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 제공 및 친환경 항목 적용, 공개공지 설치시 아래 기준에 따라 상한용적률 적용

<table>
<tr><th>구 분</th><th>완화조건</th><th>세부계획기준</th></tr>
<tr><td>상한용적률</td><td>공공시설 제공시</td><td>• 허용용적률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단,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공공기여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의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제18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td></tr>
<tr><td>상한용적률</td><td>친환경 항목 적용시</td><td>•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x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table><tr><th>구분</th><th>ZEB1</th><th>ZEB2</th><th>ZEB3</th><th>ZEB4</th><th>ZEB5</th><th>에너지효율 1++</th><th>에너지효율 1+</th></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d>6%</td><td>3%</td></tr></table>② 녹색건축 인증
<table><tr><th>완화조건</th><th>최대완화비율</th></tr><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table>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tr><th>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h><th>15%이상</th><th>20%이상</th><th>25%이상</th></tr><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table>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tr><th>장수명주택 인증등급</th><th>최우수</th><th>우수</th></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후 시행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3.11)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개정된 기준 반영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 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에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td></tr>
</table>

구 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 법정 공개공지 조성면적 이상 설치 시 계획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조건 충족' 시 (산업기능육성, 보행환경개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가능 (공개공지를 통한 상한용적률은 높이완화와 중복 적용 불가) • 허용용적률 X [1 + {(공개공지 설치면적 - 의무 설치면적) / 대지면적}] 이내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함)
	공개공지 설치시	■ 조건사항 1.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 의무사항)전면공지를 보도확장형 전면공지로 설치시 (보도포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단차없이 조성하는 것에 한함) 2. 계획적 관리 위치 및 범위 ① 산업우세지역 내, ② 간선도로(벚꽃로, 두산로, 가산로) 적용 대상(시설)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산업시설(제조업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 등)및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도입시 적용 규모 등 ① 공개공지 의무면적 이상 또는 대지면적의 10%이상 중 큰 면적으로 공개공지 조성 시 ② 보행환경개선 : 전면공지를 보도확장형 전면공지로 설치 시 ③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시 - 건축심의(허가) 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UD컨설팅 · 자문 이행 - 건축심의(자문)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여부 확인

※ 친환경 항목 및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범위는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함
※ 공개공지 설치 및 이행조건 충족 시 상한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설치를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지역 녹화 유도
- 산업우세지역 및 중심기능밀집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업무시설 등 유도 / 보행환경 개선 유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0개소)
- 계획유도를 위해 이행조건 충족 시 공개공지 설치를 통한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적용 가능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 가구 결정 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가구	1	가산동 239-4 일원	8,145.8	주거우세지역
	2	가산동 238-104 일원	4,445.4	주거우세지역
	3	가산동 238-50 일원	5,086.0	주거우세지역
	4	가산동 238-109 일원	3,283.0	주거우세지역
	5	가산동 238-13 일원	6,885.1	주거우세지역
	6	가산동 238-38 일원	1,446.7	주거우세지역
	7	가산동 237-8 일원	6,614.7	주거우세지역
	8	가산동 237-66 일원	10,349.8	주거우세지역
	9	가산동 237-91 일원	1,804.7	주거우세지역
	10	가산동 237-40 일원	4,572.8	주거우세지역
	11	가산동 236-10 일원	7,160.4	주거우세지역
	12	가산동 235-13 일원	11,252.8	주거우세지역
	13	가산동 235-49 일원	11,164.5	주거우세지역
	14	가산동 234-46 일원	14,827.5	주거우세지역
	15	독산동 298-24 일원	4,370.9	산업우세지역
	16	독산동 297-3 일원	7,559.6	산업우세지역
	17	독산동 1157 일원	19,818.8	산업우세지역
	18	독산동 335-6 일원	15,615.0	산업우세지역
	19	독산동 303-3 일원	13,757.0	산업우세지역
	20	독산동 334-10 일원	7,237.4	산업우세지역
	21	독산동 302-24 일원	15,983.6	산업우세지역
	22	독산동 301-14 일원	16,321.2	산업우세지역
	23	독산동 1139 일원	20,238.8	산업우세지역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24	독산동 295-19 일원	19,188.5	중심기능밀집지역
	25	독산동 296-9 일원	7,350.6	중심기능밀집지역
	26	독산동 296-16 일원	4,639.7	중심기능밀집지역

※ 가구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

나. 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설정을 통해 산업우세지역, 주거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의 자율적 공동개발시 적정개발 유도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최대 개발 규모	산업우세지역	• 3,000㎡ 미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5,000㎡ 미만으로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중심기능밀집지역	• 3,000㎡ 미만	-
	주거우세지역	• 2,000㎡ 미만	-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기 공동개발 된 일단의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개발(권장·지정)에 의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 공동개발

1)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 기 공동개발되어 활용중인 경우 • 인접하여 동일소유자 대지가 있는 경우	55개소
공동개발 (권장)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공동개발이 권장된 필지	• 필지형태가 부정형 필지 혹은 맹지인 경우 • 도로 연접부와 장변의 세장비 3.0이상인 경우	5개소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자율적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최대개발규모 내 자율적 공동개발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자율적 공동개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 공동개발 지정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	가산동 239-19	170.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9-24	170.9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9-22	347.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9-23	211.9		기 공동개발
2	가산동 238-66	133.2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69	127.3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73	132.6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81	100.1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74	89.9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75	510.4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67	16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산동 238-68	143.8		동일소유자
3	가산동 238-53	85.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54	89.6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55	121.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58	145.1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56	128.6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57	120.0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59	103.1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60	119.3		기 공동개발
4	가산동 238-110	150.6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95	150.6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88	12.2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89	246.2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108	20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산동 238-109	317.4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5	가산동 238-118	613.6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4	461.6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6	52.6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30	80.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31	8.9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32	89.9		기 공동개발
6	가산동 238-39	139.2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40	122.3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41	126.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8-42	128.9		기 공동개발
8	가산동 237-83	167.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7-124	155.0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7-53	10.6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7-71	295.5		기 공동개발
10	가산동 237-42	379.8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7-43	23.1		기 공동개발
11	가산동 236-15	165.1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6-16	1,424.6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6-20	114.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산동 236-21	116.0		동일소유자
	가산동 236-22	116.7		동일소유자
12	가산동 235-19	189.8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20	17.2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25	154.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26	4.0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5	116.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6	118.3		기 공동개발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가산동 235-80	47.0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57	916.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58	122.0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7	71.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8	118.7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9	121.0		기 공동개발
13	가산동 235-81	165.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5-83	219.3		기 공동개발
14	가산동 234-11	42.5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12	1,513.0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49	55.0		기 공동개발
14	가산동 234-19	311.5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20	7.6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23	6.9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2	75.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3	1,194.4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41	249.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42	562.9		기 공동개발
	가산동 234-24	195.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산동 234-25	8.3		동일소유자
16	독산동 297-4	390.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7-5	398.3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7-7	406.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7-8	401.3		기 공동개발
17	독산동 336-6	909.8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독산동 336-7	923.2		기 공동개발
	독산동 336-11	68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336-36	521.8		동일소유자
	독산동 336-33	191.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336-34	396.7		동일소유자
	독산동 336-35	946.3		동일소유자
	독산동 336-12	1,07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336-39	353.9		동일소유자
19	독산동 303-3	2,013.9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303-14	1,839.9		기 공동개발
21	독산동 302-10	44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302-17	663.5		동일소유자
22	독산동 301-13	1,471.1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301-27	752.4		기 공동개발
	독산동 301-15	463.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301-23	649.8		동일소유자
23	독산동 299-43	17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45	322.0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30	205.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50	205.5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51	206.0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52	226.5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53	226.5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54	175.0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33	1,431.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34	370.6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35	1,534.5		동일소유자
	독산동 299-10	107.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독산동 299-11	109.1		동일소유자
24	독산동 295-6	330.9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5-7	530.9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5-8	523.0		기 공동개발
25	독산동 296-2	940.8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53	5.6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30	164.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31	145.8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40	121.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42	121.7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10	19.2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11	481.0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9	516.7		기 공동개발
26	독산동 296-16	2,189.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17	41.7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18	24.8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20	124.6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24	490.9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25	56.9		기 공동개발
26	독산동 296-27	327.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독산동 296-29	21.5		기 공동개발

■ 공동개발 권장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8	독산동 335-10	669.0	공동개발 권장	-
	독산동 335-20	610.3		-
	독산동 335-5	1,843.3	공동개발 권장	-
	독산동 335-6	949.4		-
19	독산동 303-4	806.6	공동개발 권장	-
	독산동 303-5	821.2		-
20	독산동 334-2	885.3	공동개발 권장	-
	독산동 334-4	772.3		-
	독산동 334-5	373.9		-
	독산동 334-12	373.6		-
22	독산동 301-11	665.5	공동개발 권장	-
	독산동 301-19	993.4		-
	독산동 301-20	1,016.2		-
	독산동 301-21	662.1		-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세지역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 불허용도 지정

• 주거우세지역 내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해용도 설치 불허

■ 불허용도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분	불 허 용 도	비고
공통	전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불허1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주거우세지역

도면표시	구분	불 허 용 도	비고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불허2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유독물 보관 · 저장 · 판매시설, 화약류 저장소	산업우세지역
불허3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심기능 밀집지역

※ 공장이적지 내 공동주택 건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35조에 따름(도시계획위원회심의)

2) 권장용도

-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산업우세지역 간선부 가로활성화 및 지식산업센터 권장으로 준공업지역 내 산업활성화 유도
- 각 우세지역별 관련 기능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주거우세 · 산업우세 · 중심기능 밀집지역별 권장용도 계획

■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권장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포함)	주거우세지역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권장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	산업우세지역
권장3	저층부 (1층)	[두산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벚꽃로변(독산동 336-12, 20, 22, 23, 28, 29, 39번지 7필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산업우세지역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창업보육센터	
권장4	저층부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중심기능 밀집지역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포함)	
권장5	저층부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벚꽃로변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3)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건폐율

1)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준공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나. 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공동주택(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 준	허 용	상한	
준공업지역	400% 이하	4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4항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에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 준공업지역 내 산업재생형 및 주거재생형 적용시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2에 따른다.

※ 관계 법령 · 지침 및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제 · 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제 ·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 상한용적률 적용기준

<table>
<tr><th>구 분</th><th>완화조건</th><th>세부계획기준</th></tr>
<tr><td rowspan="3">상한용적률</td><td>공공시설 제공시</td><td>•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단,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공공기여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의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제18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td></tr>
<tr><td>친환경 항목 적용시</td><td>•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x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table>
<tr><th colspan="8">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r>
<tr><td>구분</td><td>ZEB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d>에너지효율 1++</td><td>에너지효율 1+</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d>6%</td><td>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와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4">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r>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이상</td><td>20%이상</td><td>25%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후 시행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3.11)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개정된 기준 반영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 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에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td></tr>
<tr><td>공개공지 설치시</td><td>• 법정 공개공지 조성면적 이상 설치 시 계획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조건 충족' 시 (산업기능육성, 보행환경개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가능 (공개공지를 통한 상한용적률은 높이완화와 중복 적용 불가)
• 허용용적률 × [1 + {(공개공지 설치면적 - 의무 설치면적) / 대지면적}] 이내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함)

■ 조건사항
1.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 의무사항)전면공지를 보도확장형 전면공지로 설치시 (보도포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단차없이 조성하는 것에 한함)
2. 계획적 관리
위치 및 범위
① 산업우세지역 내, ② 간선도로(벚꽃로, 두산로, 가산로)
적용 대상(시설)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산업시설(제조업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 등)및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도입시 적용 규모 등
① 공개공지 의무면적 이상 또는 대지면적의 10%이상 중 큰 면적으로 공개공지 조성 시
② 보행환경개선 : 전면공지를 보도확장형 전면공지로 설치 시
③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시
- 건축심의(허가) 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UD컨설팅 · 자문 이행
- 건축심의(자문)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여부 확인</td></tr>
</table>

※ 친환경 항목 및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범위는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함
※ 공개공지 설치 및 이행조건 충족 시 상한 용적률 적용
- 공개공지 설치를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지역 녹화 유도
- 산업우세지역 및 중심기능밀집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업무시설 등 유도 / 보행환경 개선 유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0개소)
- 계획유도를 위해 이행조건 충족 시 공개공지 설치를 통한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적용 가능

다. 건축물의 높이

1)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조서

적용대상			기준높이(m)	최고높이(m)	비 고
준공업지역	주거우세지역	간선부 / 이면부	40	50	-
	산업우세지역	간선부	50	65 (*70)	*두산로변에 한하여 지식산업센터 신축시 최고높이 70m 이하 적용
		이면부	40	55 (*60)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우세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다 판단될 경우 최고높이 60m 이하 적용
	중심기능밀집지역	간선부	50	65	-
		이면부	40	55	-

※ 現 공동주택의 경우
- 기준높이 : 현황 건축물 높이
- 최고높이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높이

■ 최고높이 완화항목 및 내용

적용지역	완화내용	완화조건	비고
산업우세지역 두산로변 일대	최고높이 5m완화	• 두산로 산업특화가로변 지식산업센터 신축시	-
산업우세지역 이면부	최고높이 5m완화	• 해당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우세지역으로의 일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 건축물 높이 완화 항목

적용 대상	항 목		내 용	완 화 높 이	비 고
산업 우세 지역	공동개발		• 공동개발(권장) 및 자율적 공동개발 이행 시	기준높이×α	• α : 필지수에 따라 차등적용 - 2필지 : 0.1 - 3~4필지 : 0.2 - 5필지 이상 : 0.3 - 가산로변 공동개발로이면부 차량진출입구 계획시 + 0.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설치 시(주차장 제외)	기준높이×(권장용도 바닥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α	α=0.6
		저층부 권장용도	• 저층부 면적의 50%이상 설치 시	기준높이×(권장용도 바닥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α	α=1.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α=0.12
		측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변으로 측면공지 조성 시 - 공공보행통로에 면하여 폭1.5m 이상의 휴식공간, 화단 등 녹지공간 설치 시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α=0.2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상 법정조경 면적 이상 확보시 - 지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 한변의 길이가 전면도로의 1/5이상 접할 시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α=0.2
		쌈지형 공지	• 설치기준 및 규모 준수 시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α=1.2 침상형구조α=0.8 필로티구조α=0.5
		공공보행통로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기준높이×α	개방형구조α=0.12 필로티구조α=0.06
		공개공지	• 설치기준 및 규모 준수 시 - 전면가로, 주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α=1.6 필로티구조α=0.8
주거 우세지역	공동개발		• 공동개발(권장) 및 자율적 공동개발 이행 시	기준높이×α	• α : 필지수에 따라 차등적용 - 2필지 : 0.1 - 3~4필지 : 0.2 - 5필지 이상 : 0.3 - 가산로변 공동개발로이면부 차량진출입구계획시 + 0.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설치 시(주차장 제외)	기준높이×(권장용도 바닥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α	α=0.8
		저층부 권장용도	• 저층부 면적의 50%이상 설치 시	기준높이×(권장용도 바닥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α	α=1.6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α=0.1
		측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변으로 측면공지 조성 시 - 공공보행통로에 면하여 폭1.5m 이상의 휴식공간, 화단 등 녹지공간 조성 시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α=0.1

적용 대상	항 목		내 용	완 화 높 이	비 고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상 법정조경 면적 이상 확보시 - 지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 한변의 길이가 전면도로의 1/5이상 접할 시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α=0.1
		쌈지형 공지	• 설치기준 및 규모 준수 시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α=1.0 침상형구조α=0.7 필로티구조α=0.5
		공공보행통로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기준높이×α	개방형구조α=0.1 필로티구조α=0.05
		공개공지	• 설치기준 및 규모 준수 시 - 전면가로, 주요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α=1.0 필로티구조α=0.5
중심기능밀집지역	공동개발		• 공동개발(권장) 및 자율적 공동개발 이행 시	기준높이×α	• α : 필지수에 따라 차등적용 - 2필지 : 0.1 - 3~4필지 : 0.2 - 5필지 이상 : 0.3 - 가산로변 공동개발로 이면부 차량진출입구 계획시 + 0.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설치 시(주차장 제외)	기준높이×(권장용도 바닥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α	α=0.8
		저층부 권장용도	• 저층부 면적의 50%이상 설치 시	기준높이×(권장용도 바닥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α	α=1.6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α=0.15
		측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변으로 측면공지 조성 시 - 공공보행통로에 면하여 폭1.5m 이상의 휴식공간, 화단 등 녹지공간 조성 시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α=0.1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상 법정조경 면적 이상 확보시 - 지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 한변의 길이가 전면도로의 1/5이상 접할 시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α=0.1
		쌈지형 공지	• 설치기준 및 규모 준수 시	기준높이×(설치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α=1.0 침상형구조α=0.7 필로티구조α=0.5
		공공보행통로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기준높이×α	개방형구조α=0.1 필로티구조α=0.05
		공개공지	• 설치기준 및 규모 준수 시 - 전면가로, 주요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α=1.2 필로티구조α=0.6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공통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규제	권장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배 치	건축한계선	간선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		○		벚꽃로, 두산로, 가산로
		이면부	폭 6~10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후퇴	○		지침도 참조
			폭 4m이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후퇴	○		
형 태	1층 바닥높이	전구역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0조
	개구부	전구역	•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 출입구 설치 금지		○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다만, 벽면에 장식처리하여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 연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롭게 조성 권장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전구역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셔터 설치 시 투시형셔터로 설치, 다만,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외 관	재 료	전구역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금속,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지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1조
			• 건축물의 전면도로와 면하는 벽면에 페인트마감 사용 금지		○		
			• 외벽은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 재료를 사용하고, 견고하고 표면오염이 잘 되지 않는 재료 사용을 권장			○	
			• 건축물 저층부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재료 사용 권장			○	
	부착시설물	전구역	• 문패, 주소판, 우편함 등 정면에 노출되는 부착 시설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 사용을 권장			○	
			• 건축물 전면부 건축설비를 도로변에 노출 지양, (노출이 불가피 할 시 가림막 설치)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공간 확보 권장			○	
	측면이격 공지의 처리	전구역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권장, 그 외 3m 이상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권장			○	
	야간 경관조명	전구역	•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 설치 권장			○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은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시하는 야간조명 등 설치 권장			○	

구 분		계 획 내 용		규제	권장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건축설비 노출	전구역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		
			• 도로에 면한 건축물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	
	탑상형 건축물	전구역	• 도로에 면한 건축물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 권장		○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장변에 대한 단변의 비율이 4분의1 이상, 건폐율 40%이하로 건축 권장		○	
			• 10층 이상 건축물 건축 시, 6층 이상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1 이상,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	
외 관	색채	전구역	•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이질적 소재 사용 지양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2조
옥외광고물		전구역	•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수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4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에 해당 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준수		○	
			•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준수		○	
기타 사항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시설	전구역	• 당해 건물 이용만을 위한 단순 연결통로인 경우 인센티브 대상 제외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5조
			• 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등은 일반인들이 상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연결통로, 분전반 등 지중화 관련 시설을 건물내부 또는 대지 내에 설치 권장		○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담장설치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6조
			• 옹벽 설치시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적으로 보이게 할 것을 권장		○	
	자연지반 보존		• 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하고, 당해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구조물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에서 제외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2조
	옥상녹화		• 「서울시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내용 준수하고,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3조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등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4조

구 분		계 획 내 용		규제	권장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녹색주차장		• 조성시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필로티, 처마 등의 하부공간에 조성된 녹색주차장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5조
	중수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6조
	빗물이용시설		•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7조
	신재생 에너지		• 신축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8조
	에너지 절약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고 중복계상 불허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9조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적용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0조

■ 두산로 산업특화가로변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규제	권장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형 태	일반사항	두산로변	• 건축물 형태 및 입면을 분절하는 디자인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 승강기탑 및 계단탑 등은 전면도로에서 이격하여 배치 권장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두산로변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75%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 신축시	○		
			• 개구부 없는 벽면의 가로변 노출 금지	○		
			• 외벽면 투시형 셔터 설치 시 1/2이상 개방된 투시형 셔터 사용	○		
	1층부	두산로변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연도형 건축물 권장		○	
			• 개별점포의 폭원을 20m 이내 권장		○	
			• 수직분절요소를 5~10m 간격으로 설치 권장		○	

구 분		계 획 내 용		규제	권장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지붕층 및 옥상부	두산로변	• 단순 박스형 슬라브 지붕 지양		○	
			• 건축물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된 미관시설 (캐노피, 차양막 등) 사용 권장		○	
외 관	측면이격 공지처리	두산로변	• 3m 미만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 3m 이상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	○		
	재료 및 색채	두산로변	• 건축물의 외벽 골조(조립식, 무피복 골조, 컨테이너 등) 노출 금지	○		
			• 재료 및 색채에 있어 외벽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권장		○	
			• 차분하고 자연적인 색채 사용 권장		○	
옥외 광고물	대형광고물	두산로변	• 건축물의 옥상부에 설치하는 대형광고물(옥외전광판, 옥상간판) 설치 금지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형태 및 재료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권장		○	
			• 저층부 입체형 간판 설치		○	
기 타	담장 및 옹벽	두산로변	• 담장 및 옹벽의 설치 금지 –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의 경우 높이 1.2m 이하로 설치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야간 경관조명	두산로변	• 10층 이상 건축물 건축 시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 건축물의 입체감과 깊이감을 강조 할 수 있도록 연출 권장		○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권장		○	

■ 벚꽃로 보행연결가로변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형 태	일반사항	벚꽃로변	• 건축물 형태 및 입면을 분절하는 디자인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 승강기탑 및 계단탑 등은 전면도로에서 이격하여 배치 권장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벚꽃로변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75%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		○	
			• 개구부 없는 벽면의 가로변 노출 지양		○	
			• 외벽면 투시형 셔터 설치 시 1/2이상 개방된 투시형 셔터 사용		○	
	1층부	벚꽃로변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연도형 건축물 권장		○	
			• 개별점포의 폭원을 20m 이내 권장		○	
			• 수직분절요소를 5~10m 간격으로 설치 권장		○	
외 관	재료 및 색채	벚꽃로변	• 건축물의 외벽 골조(조립식, 무피복 골조, 컨테이너 등) 노출 금지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 재료 및 색채에 있어 외벽 3면 이상 통일성 유지 권장		○	
옥외광고물		벚꽃로변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대형광고물(옥외전광판, 옥상간판) 설치금지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기 타	담장 및 옹벽	벚꽃로변	• 담장 및 축대, 옹벽의 설치 금지 -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의 경우 높이 1.2m 이하로 설치 가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야간 경관조명	벚꽃로변	•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①	금천구 독산동 295-10	-	증)13,245.6	13,245.6	단일필지 ㈜롯데쇼핑 소유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특별계획구역①	13,245.6	• 신안산선 신설역 반경 250m내에 위치한 대규모 필지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상업 · 문화 · 업무 등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독산 지구 중심의 중심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기반 마련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①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400%이하 • 허용용적률 : 400%이하 • 상한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
높이		• 기준높이 60m / 최고높이 80m이하	-
용도	불허	• 불허용도3	-
	권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표구점, 출판사(학술, 예술), 체력단련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공연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시설	-
건축선		• 두산로변 : 건축한계선 5m • 두산로13길변, 시흥대로123길변 : 건축한계선 2m	-
건축물형태		• 기단부와 상단부의 형태, 재료, 색상이 분리된 '고층부 탑상형' 으로 조성 • 상단부는 2개동 이상의 타워형으로 분리배치하여 시각 통경축 확보 • 통경축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는 투시성을 고려 • 두산로변은 개방적 시설배치 및 입면의 분절을 통해 리듬감있는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정된 가로를 향하도록 배치	-
공개공지		• 공개공지 위치권장(1개소) - 담장설치 금지, 보행동선 연계	-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두산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동선계획	• 기존도시조직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최소 폭 4m이상, 24시간 개방구조로 설치 - 건축물 내부 통과시(피로티적용시) 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부득이한 경우 지침도상 시종점 위치의 10m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인근 보행통로 및 주변블록과 연계되어야함 • 공공시설은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전용 진출입 동선 확보	-
공공시설 제공비율	• 순부담률 10%이상 -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의 기부채납 권장 -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사회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
비고	• 주민제안에 의해 동일가구 내 연접필지 공동개발 가능	독산동 295-1외 14필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금지 •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지침도 참조
		이면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가산로3길 특화가로 보도형 전면공지 2m - 이면도로 보도형, 차도형 전면공지 1~2m •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지침도 참조
쌈지형공지		주요 보행통로 및 가각부	• 주요 보행통로 및 가각부 쌈지형 공지 설치 권장 • 최소폭 4m, 최소면적 25㎡ 이상 • 인접대지의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와 일체형 조성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9조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공개공지	주요 보행통로 및 가각부	•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를 적용하여 설치 ※ 도입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8조
공공보행통로	도면 표시	• 보행동선 단절 부분 및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계획 • 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지정) 등으로 보행동선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계획 • 최소폭원 3.5m 이상으로 포장패턴 등을 차별화하여 보행공간으로서 인식성 강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1조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르며 공개공지의 설치규정 및 조성방식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규정을 준용

(2) 차량동선 및 주차장

■ 차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부	•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보행단절 최소화, 보행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진출입 불가 필지의 경우 제한적 차량 출입 허용 - 공동개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차 출입구 지정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1조

※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산로변 대지 신축시 이면부 차량진출입구계획을 하는 경우 높이 완화

(3)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가설건축물	• 가산동 237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 필요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부합에서 예외 -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 본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전 허가 및 신고된 기존 가설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

(4) 환경친화적인 요소

■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 어 기 준	
자연 지반 보존	전구역	• 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하고, 당해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에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2조
옥상 녹화	전구역	• 「서울시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내용 준수하고,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3조
벽면 녹화	전구역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등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4조
녹색 주차장	전구역	• 조성시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필로티, 처마 등의 하부공간에 조성된 녹색주차장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5조
중수도	전구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6조
빗물 이용시설	전구역	•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7조
신·재생 에너지	전구역	• 신축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8조
에너지 절약	전구역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하고 중복계상 불허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9조
생태 면적률	전구역	•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적용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0조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의 변경
8. 공동개발 권장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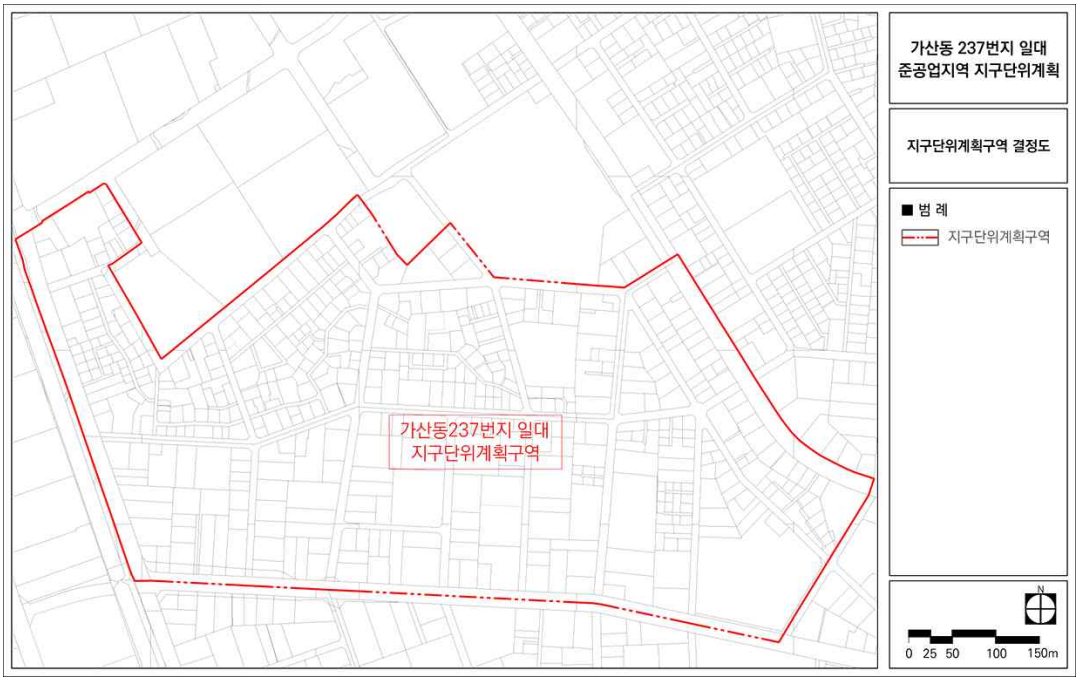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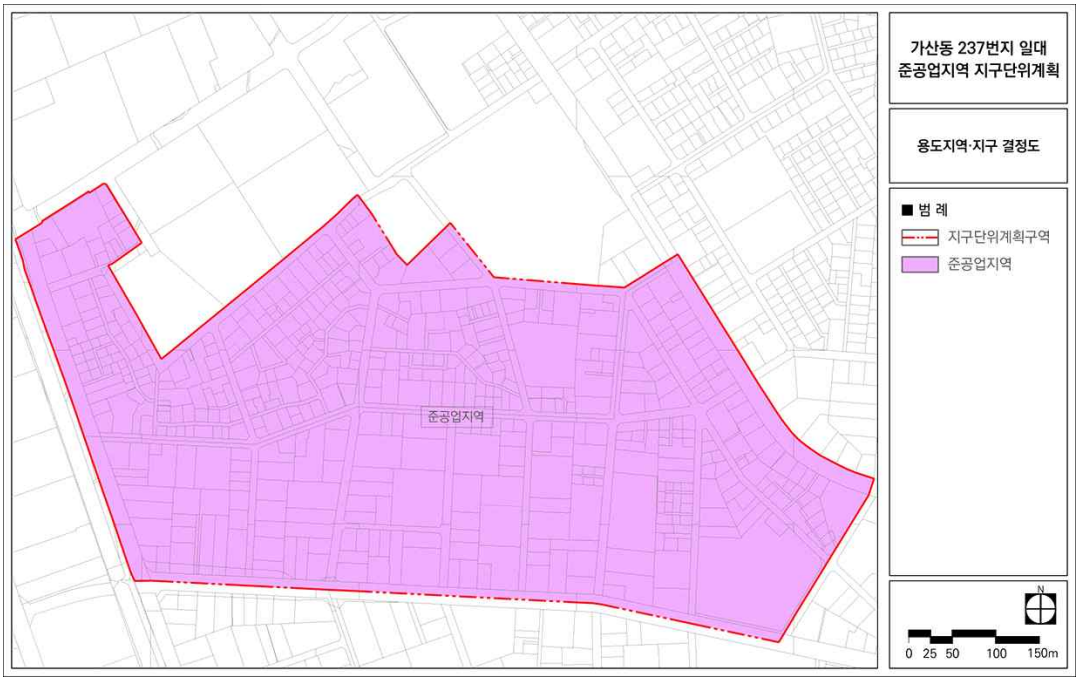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4) 및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206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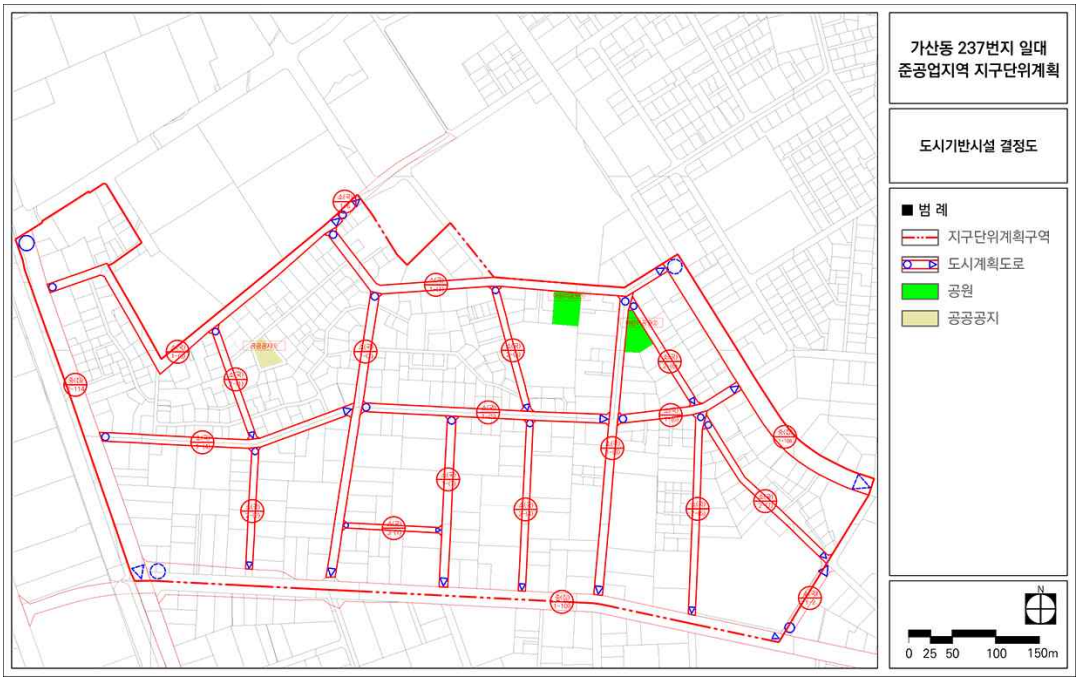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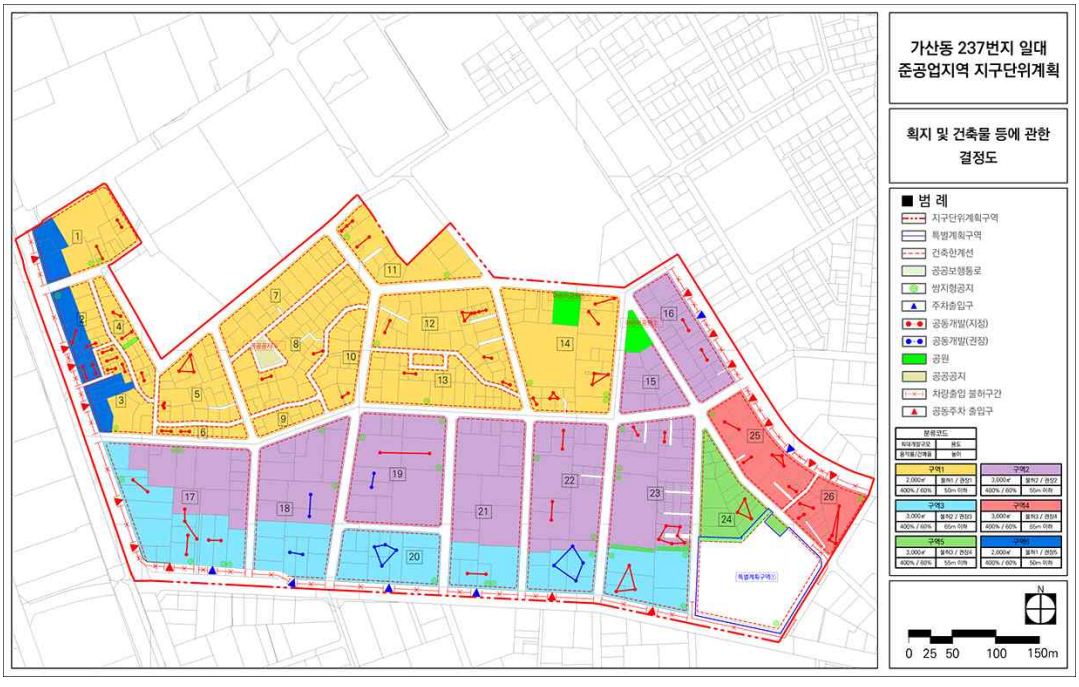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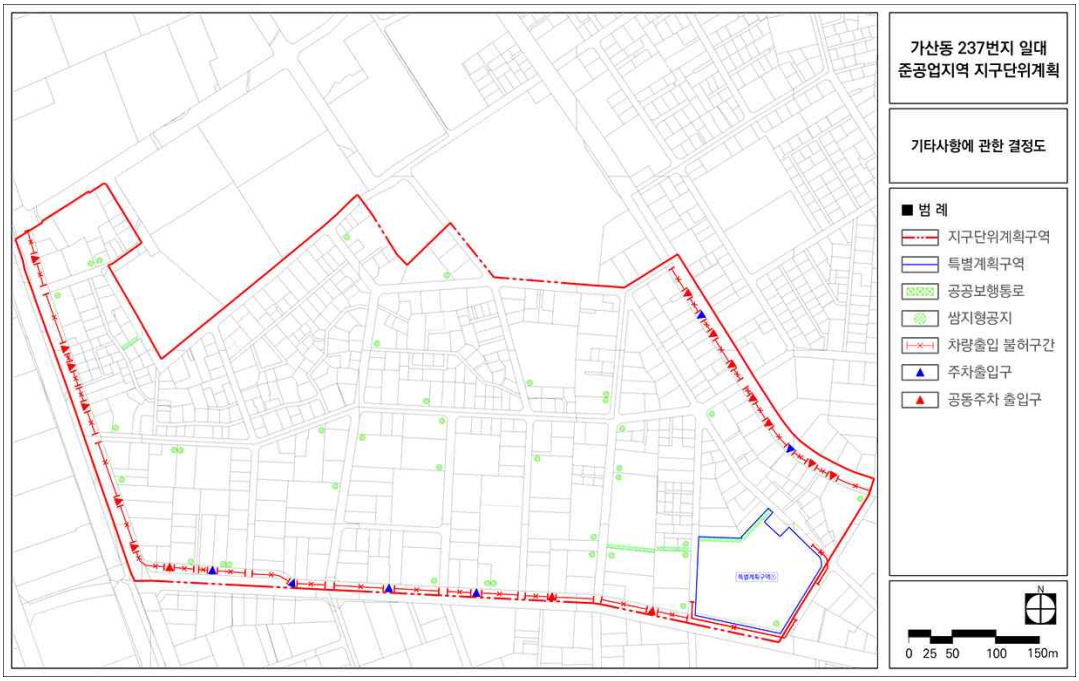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
쌈지형공지
차량출입 불허구간
주차출입구
공동주차 출입구
N
0 25 50 100 15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0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적
이 운영기준은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1)과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또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당초 자치구 심의대상에서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3. 심의시기
건축 인허가 후, 착공 전 실시

4. 개최주기
매월 1회(세 번째 목요일) 개최 원칙이나, 일정에 따라 요일을 변경하거나 상정 안건 수를 감안하여 개최 횟수를 변경할 수 있음

5. 심의 준비절차

① 심의자료 사전제출 (신청자→건축기획과)	〉	② 심의자료 배포 (건축기획과→위원)	〉	③ 심의요청 (허가권자→건축기획과)	〉	④ 사전검토의견서 배포 (건축기획과→신청자)	〉	⑤ 조치계획서 제출 (신청자→건축기획과)	〉	심의
3주 전		2주 전		8~9일 전		1주 전		2일 전		

① 심의자료 사전제출 (신청자 → 건축기획과)
1) 제출기한: 심의 3주 전까지(사전검토)
2) 제출방법: 서울시 건축기획과(이하 "건축기획과"라 한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파일 제출
3) 제출자료 ※심의 당일에 A3 인쇄본 1부 제출

가. 필수제출
○ 구조안전 (변경)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한글, PDF 파일)
○ 구조안전 심의 체크리스트(별표 1) (※ 한글, PDF 파일)
○ 구조안전 심의 발표자료 (※ PPT, PDF 파일)
○ 도면[구조, 건축, 토목(흙막이 포함)] (※ PDF 파일)
○ 계산서(건축구조, 흙막이, 토목) (※ PDF 파일)
○ 구조안전확인서(각 동별) (※ PDF 파일)
○ 지반조사보고서 (※ PDF 파일)
나. 해당 시 제출
○ 역타도면 및 역타계산서 (※ PDF 파일)
○ 성능기반설계보고서 (※ PDF 파일)
○ 지하철 영향검토서 (※ PDF 파일)
○ 풍동(풍력, 풍압)실험보고서 (※ PDF 파일) 및 기타자료 등

② 심의자료 배포 (건축기획과 → 심의위원)
1) 배포일정: 심의 2주 전까지
2) 배포자료: 사전검토 의견서 및 사전제출한 심의자료 일체

③ 심의요청 (신청자 → 허가권자(자치구 등) → 건축기획과)
1) 요청기한: 심의 8~9일 전까지
2) 제출자료: 사전제출한 심의자료 일체

④ 위원별 사전검토 의견서 배포 (건축기획과 → 신청자)
1) 배포일정: 심의 1주 전
2) 배포방법: 이메일 송부

⑤ 조치계획서 제출 (신청자 → 건축기획과)
1) 제출기한: 심의 2일 전까지
2) 제출방법: 건축기획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PPT 및 PDF 등)
3)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6. 심의위원 구성
위원장 및 외부전문위원을 합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1) 위원장(1명): 건축기획과장 (부재 시 참석위원 중 호선)
2) 외부전문위원(4명 이상): 건축구조분야 3명, 건축시공/건축계획/토질 및 기초분야 1명 이상

7. 심의
가. 발 표 자: 건축구조설계자
나. 배 석 자: 건축설계자, 토목설계자, 구조기술사, (해당 시)감리 · 시공관계자 등(심의를 위한

회의실 입장은 가급적 5명으로 제한)

※ 필요시 건축주나 시행사(대리인) 배석 가능

다. 진행방법: 건축구조설계자 발표 후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응답

라. 발표 시 유의 사항

1) 발표자의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힐 것

2)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부분반영/미반영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할 것

3) 5분 이내로 하며 한국어를 사용할 것

8. 사후 검증

가. 허가권자(자치구 등) 및 사업 주관부서는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기획과에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위원회는 사후 검증 요청이 있을 시,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함(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 당초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검증할 것

다. 건축기획과는 자치구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함

9. 변경심의 기준

가. 변경심의 대상

1) 구조형식의 변경(단, 변경구간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10% 이상 또는 200㎡ 초과 시)

가) 주요 구조부의 재료 변경(철근콘크리트구조, 강구조,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합성조 등)

나) 주요 구조부의 공법 변경[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중공슬래브, 딥데크(Deep deck)슬래브, 합성보(신기술·신공법 등)]

다) 특수구조건축물 해당 구간의 구조형식 변경

2) 기초형식의 변경(파일 기초, 지내력 기초, 특허공법 등의 변경)

3) 횡력저항시스템의 변경

4) R값 변경(성능설계, 특수전단벽 적용 등)

나. 심의시기: 상위의 1)~4)의 각 해당사항 변경 전

다. 위원구성: 위원장 및 외부전문위원은 제6호에 따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을 당초 심의한 위원 중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라. 기타 심의 절차, 심의 운영 등은 당초 심의와 동일

10. 경미한 사항 변경심의기준

제9호가목의 대상 외의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

2) 자문(서면심의)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

11. 기타 주의사항

가. 부정청탁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의 금지

1) 심의위원 개별 접촉, 심의의견 수정 시도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일절 금지

2) 심의위원의 부당한 요구(금품 및 향응 요구, 개별방문 조치계획 설명 요구 등) 시 즉시 건축기획과로 신고

나. 심의도서 관련 사항

1) 설계는 기본설계 수준이 아닌 실시설계 수준을 준수

2) 성능기반설계 심의대상인 경우 성능기반설계 완료 후 심의 신청(제3자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

※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심의대상 신축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성능기반설계 완료

3)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계약서 제출(설계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계약 및 건축주 확인)

4) 풍동실험 대상인 경우 풍동실험(국토부 풍동실험가이드라인 준수) 결과보고서 제출

다. 심의결과 공개 관련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요청공문을 보낸 허가권자(자치구 등)에 통보되며, 내부결재 공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12. 자치구 관련사항

가. 자치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 보완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나. 변경심의 대상은 서울시로 심의요청하고, 경미한 변경 대상은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문, 서면심의 또는 감리단 검토를 통해 처리함

붙임 1. [별표 1] 구조안전 심의 체크리스트
2. [별표 2] 구조안전 심의 PPT 작성 안내
3. [별표 3] 구조안전 심의 안내문
4.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재)심의 신청서
5.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변경심의 신청서
6. [별지 제3호서식] 안건상정 개요 샘플
7. [별지 제4호서식] 조치계획서 작성 안내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조안전 심의 체크리스트

연번	구 분	내 용	반영여부 (반영/미반영/해당없음)
1	제출 도서	- (필수)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토목계획서, 지질조사서, 구조안전확인서, 건축도면·구조도면·흙막이도면, 구조계산서, 흙막이계산서 - (해당 시) 풍동실험보고서, 성능설계보고서(제3자 검증보고서 포함), 역타공법도면 및 계산서	
2	제출도면 수준	-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일치 여부 확인	
3	건축물 위치	- (인접하천) 설계지하 수위상승 고려, 홍수위 검토 - (경사지) 편측토압 검토	
4	지질조사 보고서	- 지반조사공수 및 위치 적정 여부 -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적정한지 판단 시추주상도에 기초레벨 표기 확인 - 설계지하수위 확인, 영구배수, 부상(부력) 검토 여부 확인 - 지진하중 산정 시 지반분류 확인	
5	적용 설계기준 및 최신기준 반영	- 적용 설계기준 적정성 확인	
6	재료강도	- 콘크리트, 철근, 철골 등 재료의 기준강도	
7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	- 고정하중 및 활하중, 설하중, 풍하중(특별풍하중(형상비) 적용여부 검토), 지진하중(지진력저항시스템, 내진설계범주 등), 지진토압	
8	동적해석	- 고유치 해석결과 (각 방향 질량참여율 90% 이상 확인), 구조형식과 높이에 따른 고유주기 적정 여부, 보정계수 확인	
9	사용성 및 안정성	- 층간변위, 횡변위, 수직처짐	
10	하중조합	- 구조설계 시 고려한 하중조합 검토	
11	내진상세 적정성	-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적정한 내진상세 적용 여부	
12	전이부재 설계	- 전이부재 내진상세 적용 여부 - 특별지진하중 조합 적용 여부 - 전이부재 단면 및 설계 적정 여부 - 설비에 의한 단면결손 및 시공성 검토 확인 - 전이부재의 시공성 및 안전성 고려한 접합부 검토	
13	기타	- 공동주택 : T형, L형 조합에서 다이아그램 연속 확보가능한지 평면 검토 - 플랫슬래브 : 주열대, 주간대 배근상세도 및 전단보강근 확인 - 장스팬 및 캔틸레버 : 단면 및 수직처짐 검토 - 연결브리지 : 구조계획 및 상세 - E.J 설치 : E.J 상세 및 조인트 간격(상대변위) 확인 - 역타공법, PC공법, PS공법 : 적용 여부	

[별표 2]

구조안전 심의 PPT 작성 안내

아래의 목차 및 항목으로 순서에 맞게 PPT를 작성하고, 목차와 해당 쪽 번호는 모두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상정개요
- 안건 상정개요(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 건축개요(층별면적, 시설면적 등 세부 사항)
- 추진경위(도시계획, 각종 인허가 사항 등 주요 추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

○ 위치도 및 주변 현황
- 세부 위치현황 및 실제 조사한 주변 현황자료 등 작성

○ 배치계획
- 조감도, 투시도, 축척 및 방위, 배치도(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대지의 종·횡단면도 등 작성)

○ 평면계획
- 층별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및 계단 위치 등 작성

○ 단면계획
- 종·횡단면도, 건축물 전체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작성

○ 구조개요
- 구조설계 개요, 적용기준, 구조재료 및 강도, 적용 프로그램 등으로 간략한 개요를 구성하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첨부

○ 구조계획
- 설계근거기준, 하중조건 분석, 구조재료의 성질·특성, 구조형식 선정계획, 구조안전 검토, 구조상 주요부 단면, 내진설계 내용, 주요 부분의 상세도면 등 세부항목 작성

○ 구조평면도

○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 근거, 지하수위, 기초에 대한 의견 등 세부항목 작성

○ 토목계획
- 흙막이·지보공법 등 선정내용과 흙막이 단면별 해석개요, 주요 흙막이도면 등 작성

○ 기타 자료
- 시방서, 기타 관련 도면, 기타 협의사항 등을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

※ 글꼴 및 크기 등은 자율이나 심의장소 프로젝터의 해상도를 고려하여 시인성이 좋은 글꼴 및 크기로 작성 필요

[별표 3]

구조안전 심의 안내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발표자(건축구조설계자)의 발표 후 사전검토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심의를 하는 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수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발표자가 주가 되어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 참석자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자는 위원과 발표자의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순서

발표자 및 배석자 소개 〉 안건1: 신청자 입장 및 조치계획 발표 (부분반영 및 미반영 내용, 5분 이내) 〉 위원별 질의응답 〉 퇴장

〉 안건2: 신청자 입장 및 조치계획 발표 (부분반영 및 미반영 내용, 5분 이내) 〉 위원별 질의응답 〉 퇴장

※ 본 안내문은 위원회 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이며, 실제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와 심의 시 가져온 자료의 쪽 번호가 다른 경우, 발표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변경 심의 신청서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감 리 자 (해당 시)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시 공 사 (해당 시)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안건 상정개요(샘플)

□ 사업개요

본 사업을 「건축법」 제00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제0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대지위치			
지역지구			
구역면적	(제척면적:)		
대지면적			
건축용도			
세 대 수			
건축구조			
건축규모	지하0층/지상00층	최고높이	00.00m(법정00.00 m)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소계			
건 폐 율			
용 적 률			
주차대수			
굴착깊이			

□ 위치도

※ 위 샘플을 참고하여 PPT 발표자료에 상정개요를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조치계획서 작성 안내

○ 총괄표

위원명	의견수	반영여부			비고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홍일동	10	10	-	-	
홍이동	9	5	4	-	
홍삼동	8	4	3	1	

○ 위원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명	연번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홍일동	1	~ 하기 바람.	~ 보강토록 명기	반영	
	2	~ 하기 바람.	~ 계획 수립	반영	
	3	~ 하기 바람.	~ 수정 후 반영	반영	
홍이동	1	~ 하기 바람.	~ 도면에 명기	반영	
	2	~ 하기 바람.	~ 상세도 작성	반영	
홍삼동	1	~ 하기 바람.	~ 추가로 반영	미반영	~에 따른 미반영

○ 위원별 세부 조치계획

위원명	연번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홍일동	1	~ 하기 바람.	~ 보강토록 명기	반영	구조계산서 P.000 반영

반영 전	반영 후

※ 안내사항

- 위와 같이 총괄표, 위원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위원별 세부 조치계획 3가지로 구분하여 PPT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PPT/PDF로 제출
- 글꼴, 글자 크기, 표 속성, 표 크기 등은 자율
  (단, 회의실 프로젝터의 해상도로 인하여 글자 크기 15 이상에 검정색 사용 권장)
- 구분내용이 있는 부분의 셀 배경색은 시인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자율 설정
- 내용이 있는 부분의 셀 배경색은 색 채우기 없음을 권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1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9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04.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호(2014.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호(2015.0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2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2017.06.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6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0호(2018.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6호(2018.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4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3호(2018.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5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호(2020.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1호(2020.03.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3호(2020.03.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3호(2020.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9호(2021.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2022.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7호(2023.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4호(2023.06.1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 · 고시합니다.
2.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901,990.8	-	901,990.8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파.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하.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총계	공공				분양				부분 임대
		소계	40㎡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흑석1	-	-	-	-	-	-	-	-	-	-
흑석2	694	101	-	80	21	593	46	414	133	196
흑석3	1,772	338	156	136	46	1,434	542	856	36	320
흑석4	863	147	62	62	23	716	28	518	170	-
흑석5	655	114	46	51	17	541	24	391	126	-

구 분		총계	공공				분양				부분임대
			소계	40㎡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흑석6		963	165	70	68	27	798	48	559	191	34
흑석7		1,073	162	65	75	22	911	151	716	44	322
흑석8		545	94	40	44	10	451	184	237	30	77
흑석9	기정	1,540	267	109	110	48	1,273	537	647	89	283
	변경	1,540	262	90	107	65	1,278	542	647	89	283
흑석10		227	-	-	-	-	227	92	88	47	-
흑석11		1,522	260	114	108	38	1,262	524	676	62	70
총계	기정	9,854	1,648	662	734	252	8,206	2,176	5,102	928	1,302
	변경	9,854	1,643	643	731	269	8,211	2,181	5,102	928	1,302

※ 존치지역은 2,364세대, 흑석2구역 오피스텔 85세대 포함
※ 흑석1구역 건축계획은 향후 조합 등 추진주체 구성 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거.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너.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변경없음)
더. 특성화계획(변경없음)
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머.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버.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8) 흑석8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9) 흑석9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94,614.2	-	94,614.2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합 계		94,614.2	-	94,614.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191.2	-	32,191.2	34.0	
	도 로	5,604.8		5,604.8	5.9	
	공 원	10,513.0		10,513.0	11.1	
	사회복지시설	990.4	-	990.4	1.0	노인 복지시설
	공공공지	-	-	-	-	
	신설학교	13,087.0	-	13,087.0	13.8	
	중대부중	1,964.0	-	1,964.0	2.1	
	은로초교	32.0	-	32.0	0.1	
택 지 (획지)	소 계	62,423.0	-	62,423.0	66.0	
	택지9-1	58,491.0	-	58,491.0	61.8	공동주택
	택지9-2	1,864.0	-	1,864.0	2.0	근생시설
	택지9-3	472.0	-	472.0	0.5	근생시설
	택지9-4	860.0	-	860.0	0.9	종교시설
	택지9-5	736.0	-	736.0	0.8	종교시설

(2)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경 후	
총 계			94,614.2	-	94,614.2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94,614.2	-	94,614.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4,342.5	-	34,342.5	36.3
		제2종일반주거지역	60,271.7	-	60,271.7	63.7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	20~23 (5)	집산도로	996 (219)	흑석동 25-21	흑석동 산63-100	일반도로	-	서고 제2008-439호 (03.12.30)	
기정	중로	1	30	20	집산도로	488 (91)	흑석동 100-8	흑석동 79-162	일반도로	-	서고 제2008-307호 (08.09.11)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52 (74)	흑석동 86-1	흑석동 93-203	일반도로	-	서고 제2008-307호 (08.09.11)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55 (26)	흑석동 332-1	흑석동 225-3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36 (30)	흑석동 332-3	흑석동 97-22	일반도로	-		

※ ( ) 는 흑석9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	근린공원	흑석동 58-11 번지일대	12,634.9 (10,513.0)	-	12,634.9 (10,513.0)	서고 제2008-307호 (08.09.11)	

※ ( ) 는 흑석9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다)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흑석동245-1번지일대	21,378 (32)	-	21,378 (32)	서고178 (78.4.26)	은로초교
기정	②	학교	중학교	흑석동86 번지일대	16,336 (1,964)	-	16,336 (1,964)	서고193 (73.12.20)	중대부중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정	⑤	학교	-	흑석동60 번지일대	14,047.5 (13,087.0)	-	14,047.5 (13,087.0)	서고 제2008-307호 (08.9.11)	

※ ( ) 는 흑석9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④	사회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흑석동 95-167 번지일대	990.4	-	990.4	서고 제156호 (16.6.2)	노인복지관 치매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 내	2,097.3	증) 84.2	2,181.5	
	관리사무소		95.1	증) 62.2	157.3	
	주민공동시설		4,350.1	증) 7,891.9	12,242.0	
	경로당		506.2	증) 246.5	752.7	
	경비실		81.4	감) 25.7	55.7	
	보육시설		802.1	-	802.1	어린이집
	문고		2,258.9	감) 1,456.0	802.9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1,116.6	감) 326.6	790.0	
	어린이놀이터		1,575.8	증) 4.2	1,580.0	

※ 향후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	94,614.2	-	-	흑석동90 번지일대	665	-	-	665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	94,614.2	택지9-1	58,491.0	흑석동9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	254.8%	25층 이하
			택지9-2	1,864.0	흑석동86-50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3	472.0	흑석동86-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4	860.0	흑석동95-37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5	736.0	흑석동228-2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비율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1,540 세대 (공공 267세대) - 공공주택 건립 시 전용면적 38㎡이상 ( ):부분임대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	공공	비 율
40㎡이하	110	1	109	7.1%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평균층수/최고
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8"><table>
<tr><th>구분(전용면적)</th><th>총세대수</th><th>분양</th><th>공공</th><th>비 율</th></tr>
<tr><td>40~50㎡이하</td><td>110</td><td>-</td><td>110</td><td>7.1%</td></tr>
<tr><td>50~60㎡이하</td><td>584</td><td>536</td><td>48</td><td>38.0%</td></tr>
<tr><td>60~85㎡이하</td><td>647(241)</td><td>647(241)</td><td>-</td><td>42.0%</td></tr>
<tr><td>85㎡초과</td><td>89(42)</td><td>89(42)</td><td>-</td><td>5.8%</td></tr>
<tr><td>합 계</td><td>1,540(283)</td><td>1,273(283)</td><td>267</td><td>100.0%</td></tr>
</table></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td></tr>
<tr><td rowspan="6">변경</td><td rowspan="5">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td><td rowspan="5">94,614.2</td><td>택지9-1</td><td>58,491.0</td><td>흑석동90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20.0%</td><td>254.8%</td><td>25층 이하</td></tr>
<tr><td>택지9-2</td><td>1,864.0</td><td>흑석동86-50번지 일대</td><td>근린생활시설</td><td>6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td>택지9-3</td><td>472.0</td><td>흑석동86-81번지 일대</td><td>근린생활시설</td><td>6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td>택지9-4</td><td>860.0</td><td>흑석동95-37번지 일대</td><td>종교시설</td><td>6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td>택지9-5</td><td>736.0</td><td>흑석동228-2번지 일대</td><td>종교시설</td><td>60%
이하</td><td>20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건설비율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1,540 세대 (공공 262세대)
- 공공주택 건립 시 전용면적 38㎡이상
( ):부분임대</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평균층수/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5"><table>
<tr><th>구분(전용면적)</th><th>총세대수</th><th>분양</th><th>공공</th><th>비 율</th></tr>
<tr><td>40㎡이하</td><td>110</td><td>20</td><td>90</td><td>7.1%</td></tr>
<tr><td>40~50㎡이하</td><td>110</td><td>3</td><td>107</td><td>7.1%</td></tr>
<tr><td>50~60㎡이하</td><td>584</td><td>519</td><td>65</td><td>37.9%</td></tr>
<tr><td>60~85㎡이하</td><td>647(241)</td><td>647(241)</td><td>-</td><td>42.0%</td></tr>
<tr><td>85㎡초과</td><td>89(42)</td><td>89(42)</td><td>-</td><td>5.8%</td></tr>
<tr><td>합 계</td><td>1,540(283)</td><td>1,278(283)</td><td>262</td><td>100.0%</td></tr>
</table></td></tr>
<tr><td></td><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5">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td></tr>
</table>

(다) 용적률 계획(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7">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택지
(공동주택)</td><td>기반시설 면적</td><td>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td><td>국·공유지 면적</td><td>신설학교
타구역
부담면적</td><td>중대부중
대토면적</td></tr>
<tr><td>94,614.2㎡</td><td>63,371.0㎡</td><td>32,191.2㎡</td><td>690.6㎡</td><td>5,028.0㎡</td><td>9,774.8㎡</td><td>1,964.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순부담면적 = 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국·공유지 면적 - 신설학교 타구역 부담면적 - 중대부중 대토면적
= 32,191.2㎡ + 690.6㎡ - 5,028.0㎡ - 9,774.8㎡ - 1,964.0㎡
= 16,115.0㎡</td></tr>
</table>

구 분	산 정 내 용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환산부지 면적 = 건축물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6,952,804원 ÷ 10,068,282원/㎡ = 690.6㎡ ※ 건축물 설치비용 = 공사비 × 연면적 = 2,548,000원/㎡ × 2,728.73㎡ = 6,952,804원 ※ 부지가액 = 공시지가 2배 적용 = 5,034,141원 × 2 = 10,068,282원 ※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변경) 2,800㎡ → 2,728.73㎡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5%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205% × (1 + 1.3 × 0.19649 + 0.7 × 0.00880) = 258.6 〉 254.8% 이하 적용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05% · α토지 = (32,191.2㎡ - 5,028.0㎡ - 9,774.8㎡ - 1,964.0㎡) ÷ 78,499.2㎡ = 0.19649 · α현금·건축물 = 690.6㎡ ÷ 78,499.2㎡ = 0.00880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구역면적 - 순부담면적 = 94,614.2㎡ - 16,115.0㎡ = 78,499.2㎡ ※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면적 690.6㎡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사회복지시설 협의완료 연면적(2,728.73㎡) 기준임(당초 2,800㎡)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6)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처분)

계획기준	• 공공주택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40㎡이하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1,540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262세대 : 1,540세대 × 17% = 261.80세대 ∴ 262세대 〉 261.80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67세대	262세대	17.4%	17.0%	100.0	100.0%
40㎡이하	109세대	90세대	7.1%	5.8%	40.8%	34.4%
40~50㎡이하	110세대	107세대	7.2%	7.0%	41.2%	40.8%
50~60㎡이하	48세대	65세대	3.1%	4.2%	18.0%	24.8%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 공공주택 세대수 및 연면적(기정)

구분	주택형	공공(세대)	전용면적(㎡)	공급면적(㎡)	연면적(㎡)	비고
공공주택	39형	109	39.7875	59.9557	6,535.1713	
	49형	110	49.2331	73.6658	8,103.2380	
	59A형	48	59.9679	81.0389	3,889.8672	
합계		267	-	-	18,528.2765	총세대수의17.66%
연면적(㎡) : 공급면적합계					147,925.5248	총세대수: 1,540세대
공공주택 연면적 비율(공공주택 연면적 / 총연면적)					12.53%	법정 : 10% 이상

– 공공주택 세대수 및 연면적(변경)

구분	주택형	공공(세대)	전용면적(㎡)	공급면적(㎡)	연면적(㎡)	비고
공공주택	39형	90	39.7875	60.7755	5,469.7950	
	49형	107	49.2331	74.6437	7,986.8759	
	59A형	65	59.9679	80.2417	5,215.7105	
합계		262	-	-	18,672.3814 (증 144.1049)	총세대수의17.01%
연면적(㎡) : 공급면적합계					146,987.7803	총세대수: 1,540세대
공공주택 연면적 비율(공공주택 연면적 / 총연면적)					12.70%	법정 : 10% 이상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9)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2) 생태 면적률(변경없음)
(13)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비 고
		기정	변경후	
구역면적(㎡)		94,614.2	94,614.2	
대지면적(㎡)		58,491.0	58,491.0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48,943.8	149,033.7	
건축면적(㎡)		10,992.9	11,665.3	
용적률(%)		254.6	254.8	정비계획용적률 254.8% 이하
건폐율(%)		18.8	20.0	
주차대수	지상	0대	2대 (근린생활시설 2대)	근생 법정: 12대 공동 법정:1,480대
	지하	2,725대	2,644대 (근린생활시설 18대 포함)	
	계	2,725대 (근생 18대 포함)	2,646대 (근생 20대 포함)	

다) 도시 · 건축 혁신계획(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경관계획(변경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공공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국민주택 규모주택
합 계	1,540	100.00	262	262	-	17.01	100.00	-
40㎡이하	110	7.14	90	90	-	5.84	34.35	-
40~50㎡이하	110	7.14	107	107	-	6.95	40.84	-
50~60㎡이하	584	37.92	65	65	-	4.22	24.81	-
60~85㎡이하	647	42.01	-	-	-	-	-	-
85㎡초과	89	5.78	-	-	-	-	-	-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다)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3)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0) 흑석10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1) 흑석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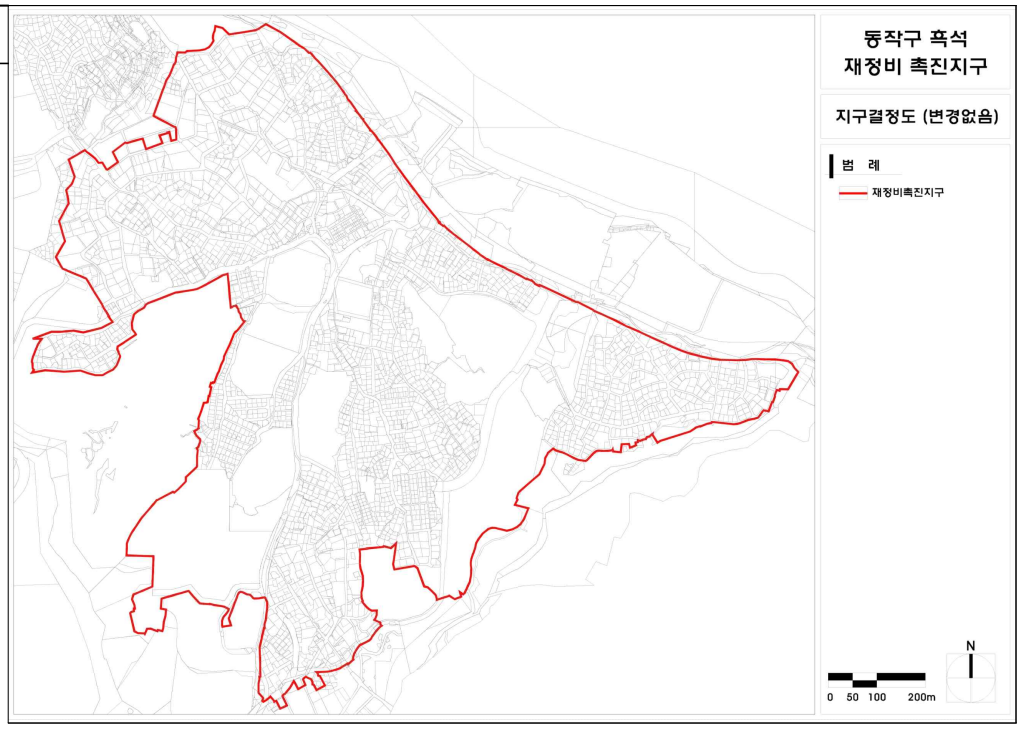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3)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02-820-9264)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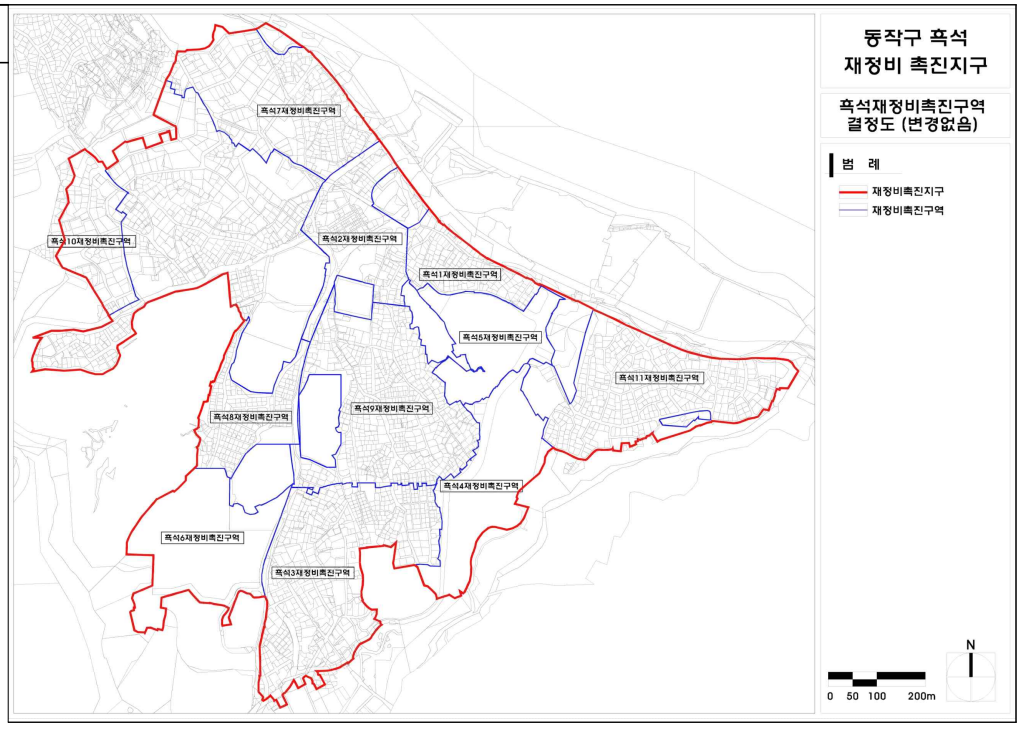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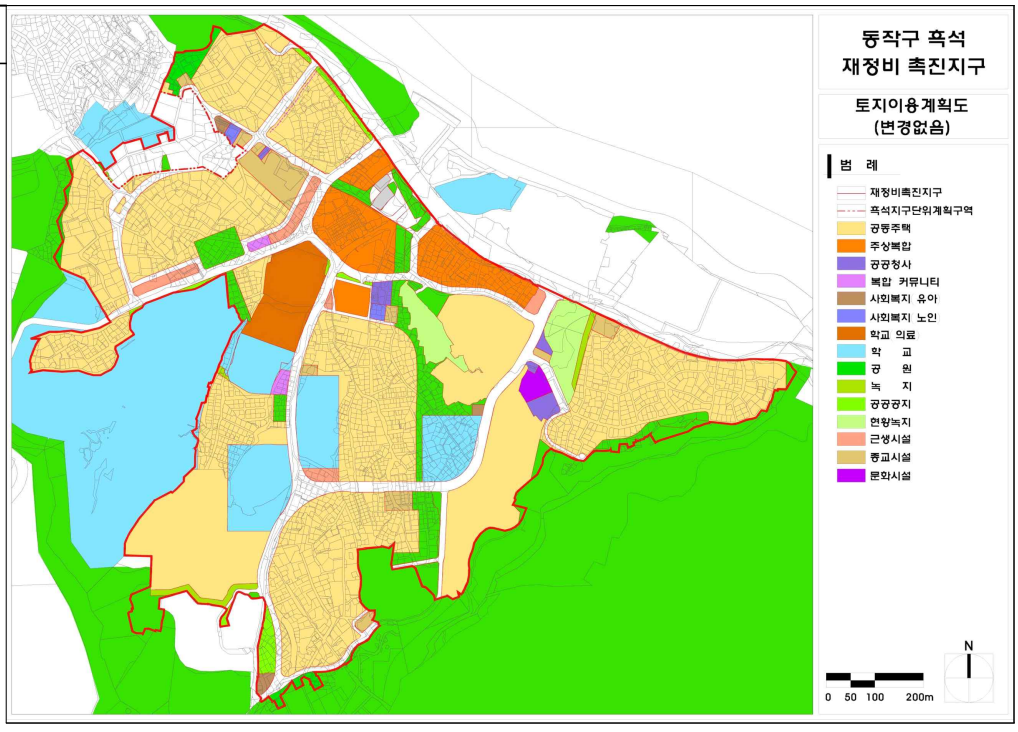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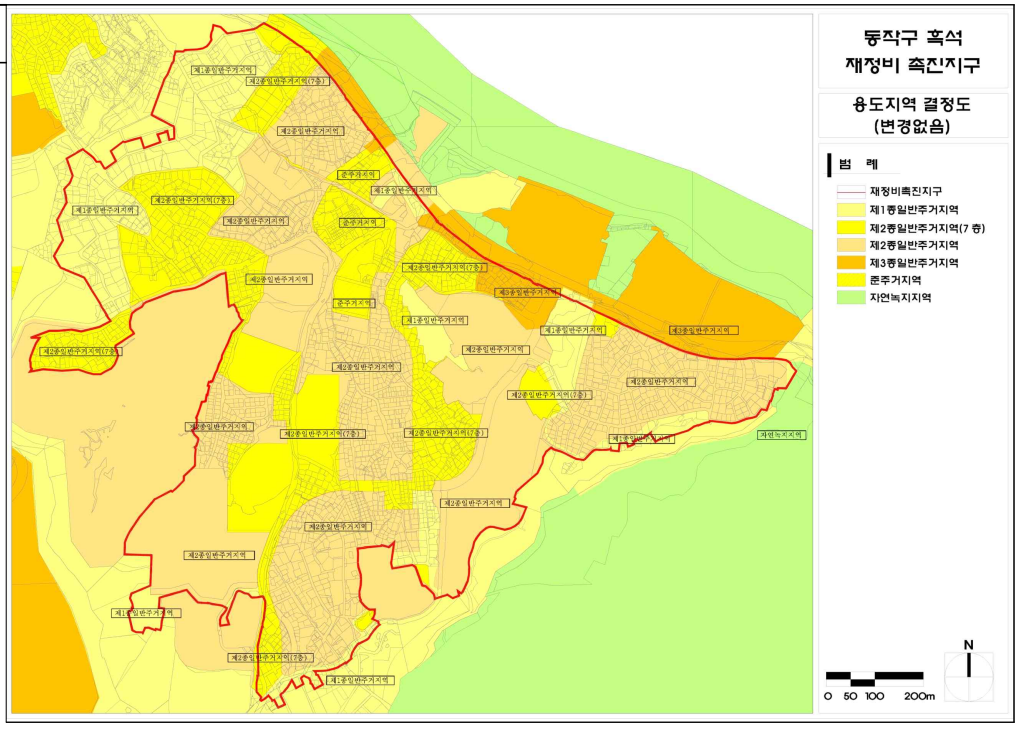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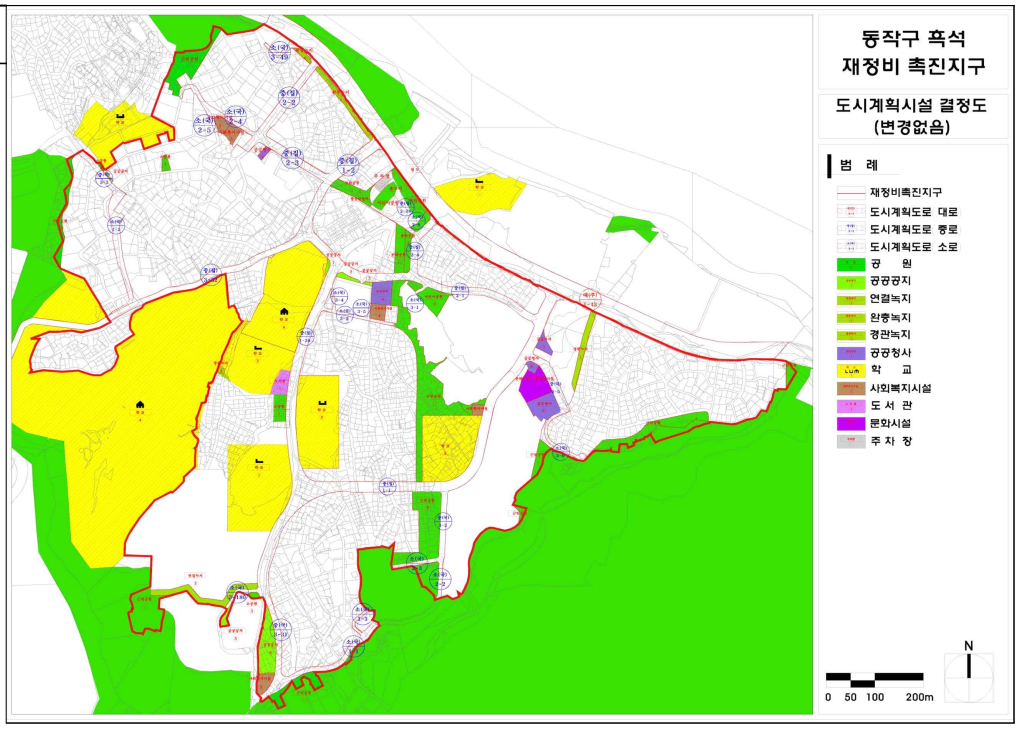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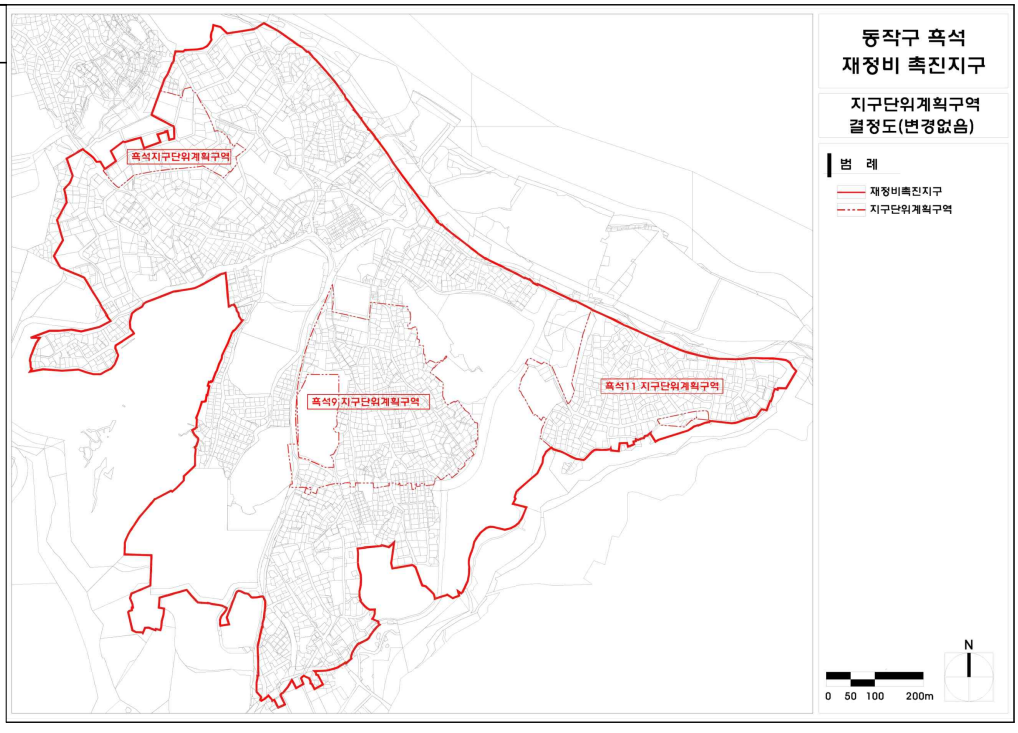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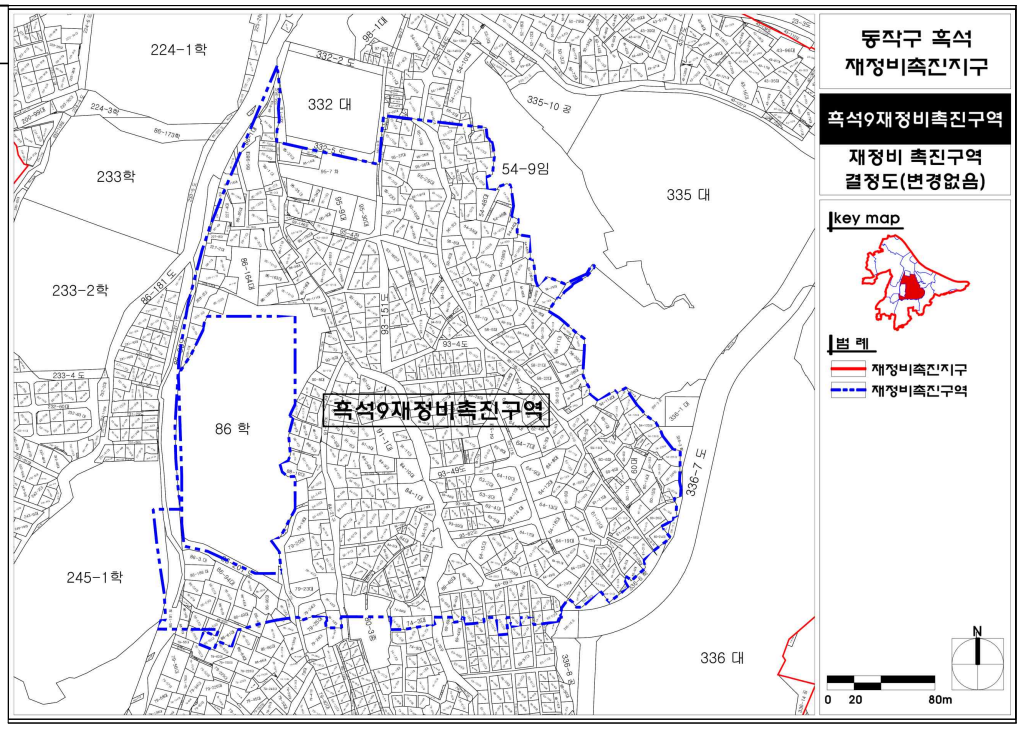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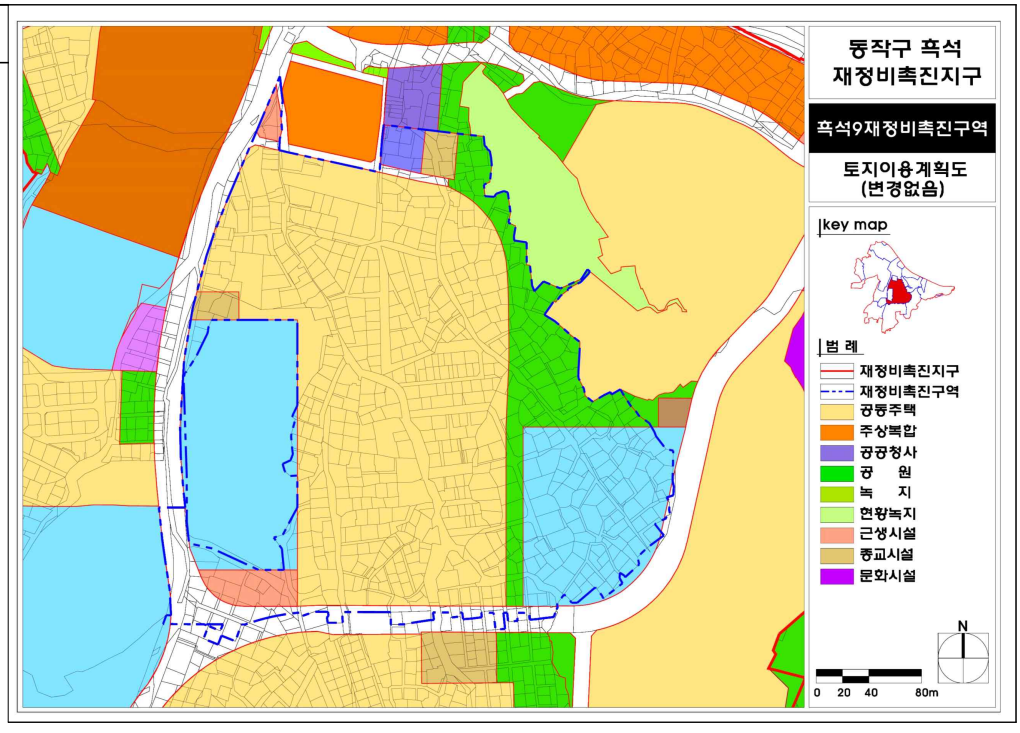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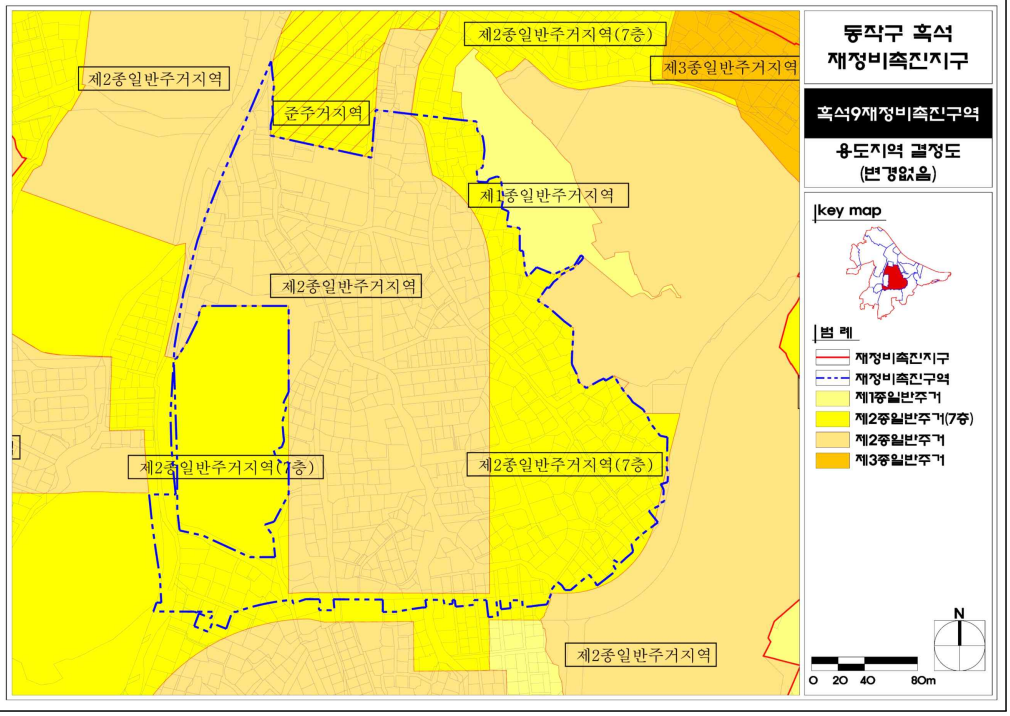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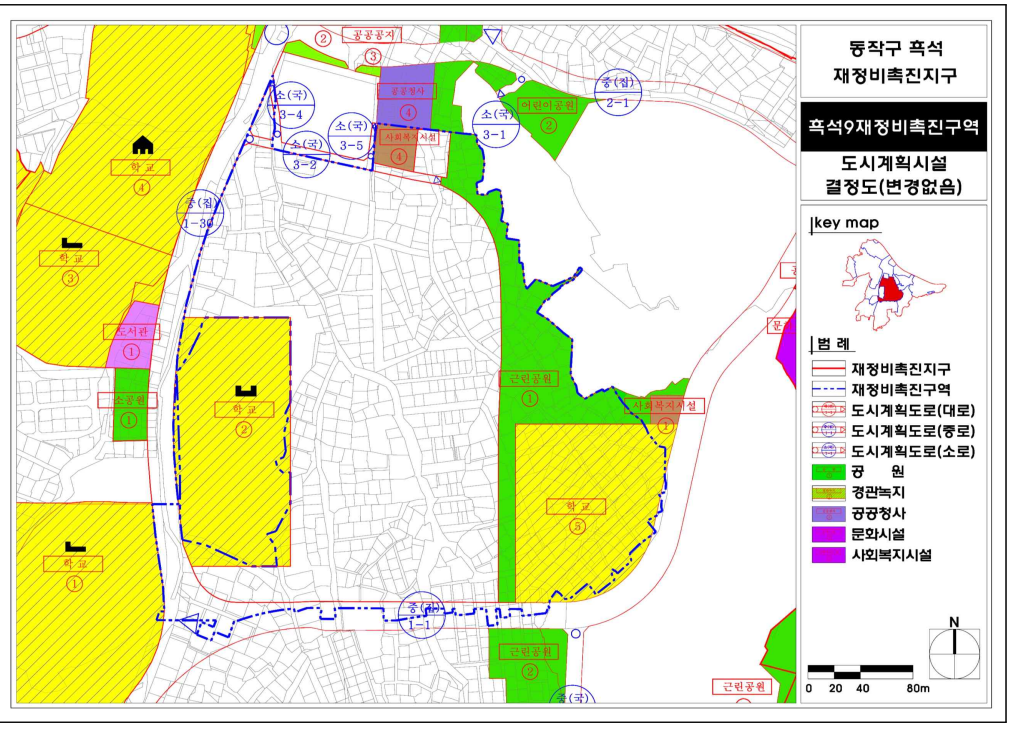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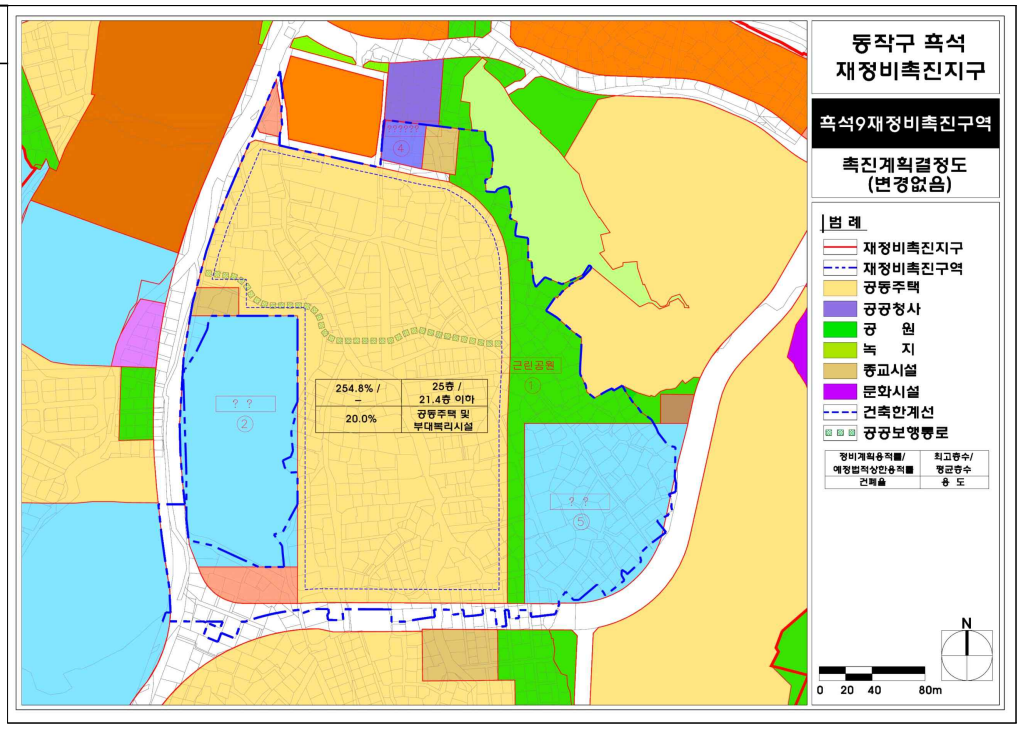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시고시 제1993-77호(1993.03.24.)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572호) 시행한 「7호선 청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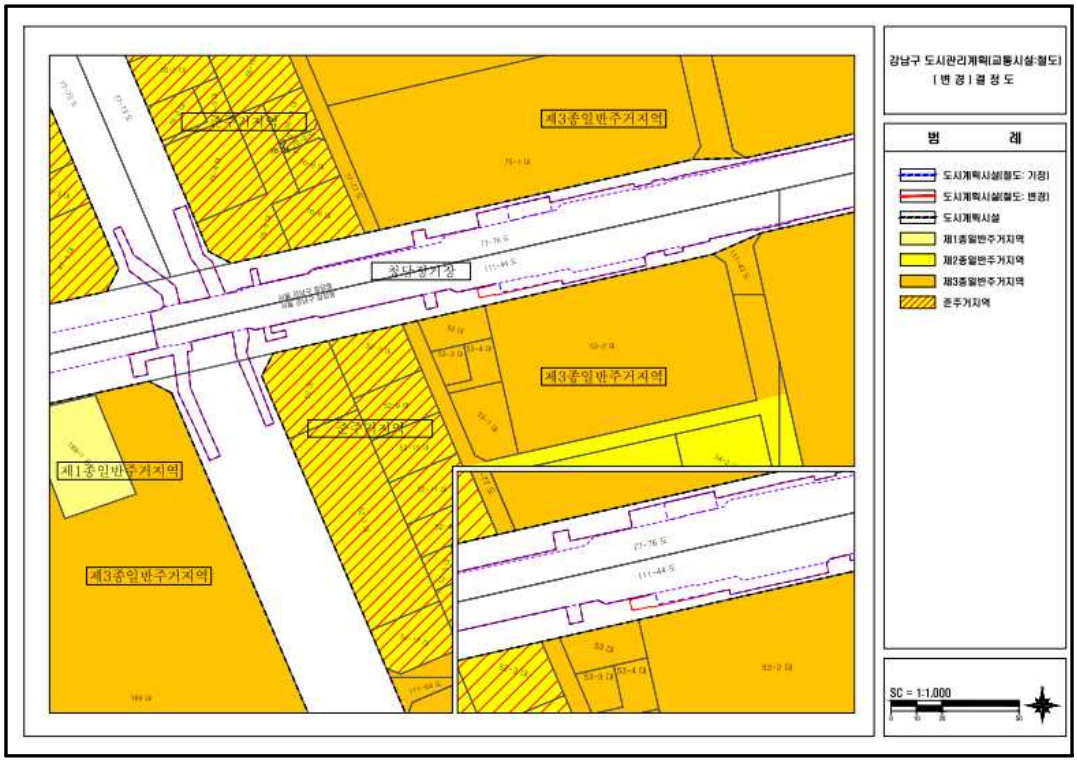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1-44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설치사업
 2) 명 칭 : 7호선 청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108.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2024년 6년 27일)
 2) 준공예정일 : 2029년 07월 0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바랍니다.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해제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구분	정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구역	2-1~35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38,962.6	35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5구역	5-2, 5-4~11구역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	30,956.1	9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1구역	6-1-1~32구역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대	44,390.2	32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2구역	6-2-1~7, 6-2-9~23, 6-2-25~45, 6-2-47~50구역	중구 충무로4가 125-3번지 일대	57,299.8	47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3구역	6-3-5~9구역	중구 예관동 17-3번지 일대	2,293.2	5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4구역	6-4-1~16, 6-4-18~20구역	중구 인현동2가 136-2번지 일대	21,913.9	19개 구역
변경	해제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을 해제함.

Ⅱ. 위치도 및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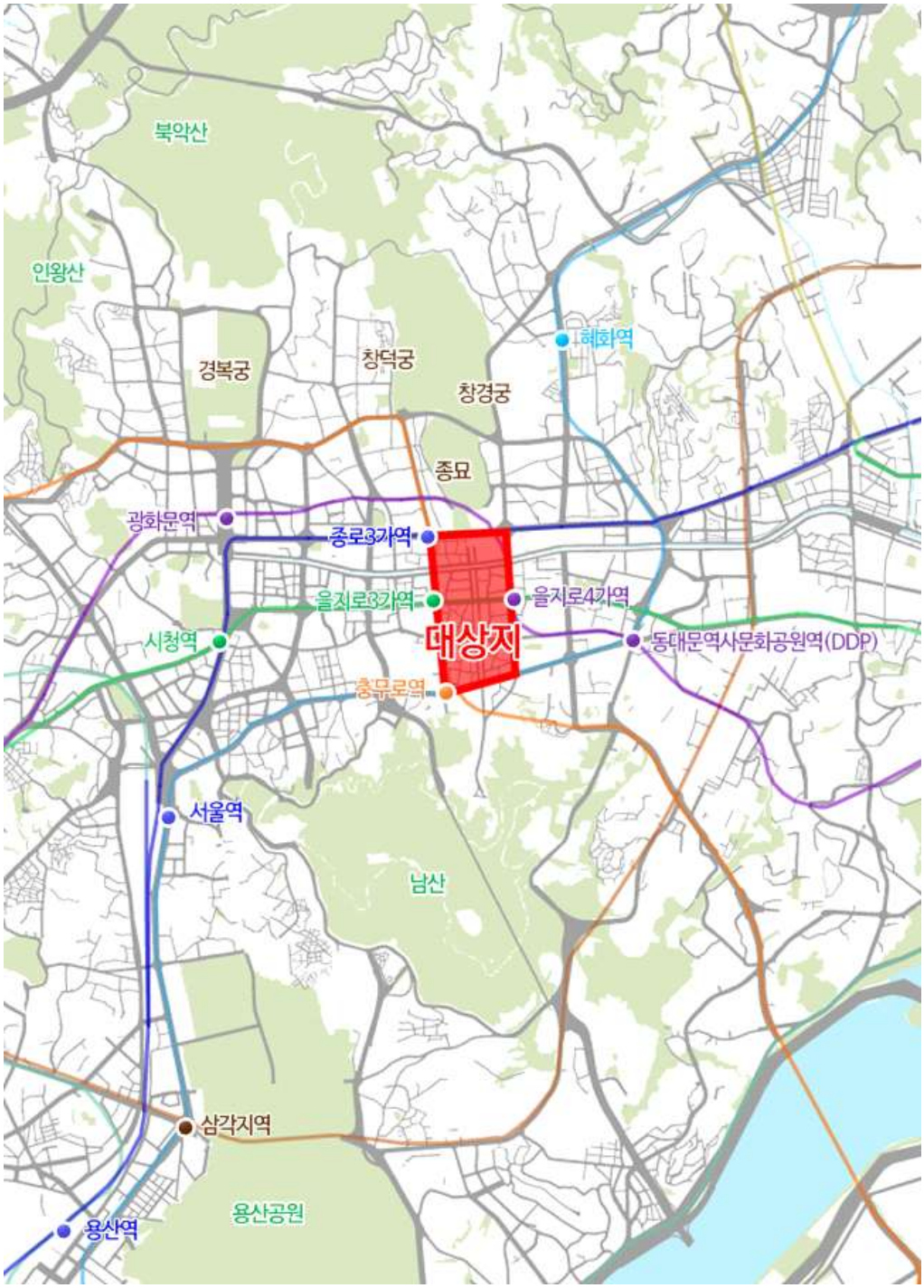
Ⅲ.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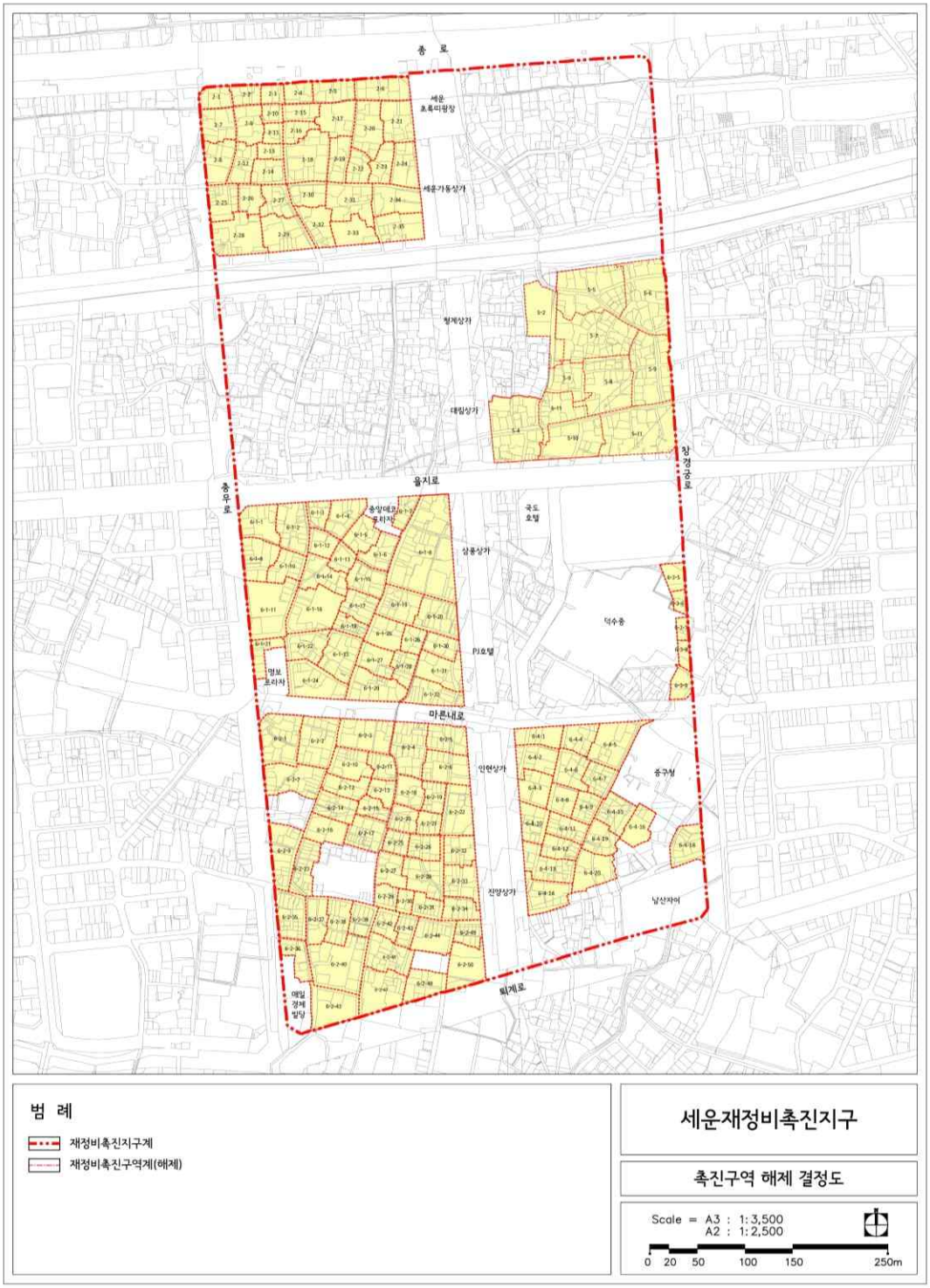
○ 실효일 : 고시 게재일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북악산
인왕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혜화역
종묘
광화문역
종로3가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시청역
대상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DDP)
충무로역
서울역
남산
삼각지역
용산공원
용산역

■ 촉진구역 해제도


종 로
세운 초록띠광장
세운가동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삼풍상가
국도 호텔
덕수종
PJ호텔
멀보 프라자
마른내로
인현상가
중구청
진양상가
남산타이
퇴계로
매일 경제 빌딩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해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해제 결정도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4호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2024. 6. 25.)에서 승인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산 개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결과는
예산현액 51,490,048,049,723원(전년도 이월금 1,114,066,320,723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58,554,122,542원이고,
지출액은 47,460,455,674,003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98,098,448,53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3,298,098,448,539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674,101,256,490원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155,874,500,000원)
사고이월 860,581,087,512원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0원)
국고보조금실제반납금 117,424,567,05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5,991,537,486원이다.

나. 기금 결산

2023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7개(26개 계정)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7,208,081,019,365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3,238,956,989,812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 2,784,758,228,392원으로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7,662,279,780,785원이다.

다. 재무회계 결산

2023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52,514,807,854,661원이고
부채총액은 18,089,181,572,228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4,425,626,282,433원이다.

2023년도 중 발생한
비용은 37,231,834,422,705원이고
수익은 37,330,106,482,478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8,272,059,773원)이다.

라. 성과보고서
2023회계연도 227개 정책사업목표에 대하여
43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33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74건, 달성 262건, 미달성 97건이다.

2.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원)

과목 장-관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④-㉲	비율(%)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④/㉰	④/㉱
합 계	50,375,981,729,000	1,114,066,320,723	51,490,048,049,723	52,245,294,749,494	52,450,593,075,887		1,692,038,953,345	50,758,554,122,542	293,169,430,810	1,193,571,196,142	98.6 %	97.2 %
지방세수입	24,112,184,000,000		24,112,184,000,000	25,000,501,572,980	25,497,572,437,531		1,634,773,058,140	23,862,799,379,391	285,589,356,210	852,112,837,379	99.0 %	95.4 %
보통세	21,877,932,000,000		21,877,932,000,000	22,119,839,759,721	23,331,308,600,156		1,599,594,705,040	21,731,713,895,116	31,656,559,880	356,469,304,725	99.3 %	98.2 %
목적세	2,020,552,000,000		2,020,552,000,000	1,950,457,029,810	1,936,280,088,060		30,819,894,490	1,905,460,193,570	6,665,833,000	38,331,003,240	94.3 %	97.7 %
지난년도수입	213,700,000,000		213,700,000,000	930,204,783,449	229,983,749,315		4,358,458,610	225,625,290,705	247,266,963,330	457,312,529,414	105.6 %	24.3 %
세외수입	4,278,369,524,000		4,278,369,524,000	4,817,106,689,347	4,520,227,791,329		52,006,802,875	4,468,220,988,454	7,580,074,600	341,305,626,293	104.4 %	92.8 %
경상적세외수입	2,965,886,904,000		2,965,886,904,000	3,054,032,074,420	2,928,527,078,998		20,264,784,595	2,908,262,294,403		145,769,780,017	98.1 %	95.2 %
임시적세외수입	725,579,694,000		725,579,694,000	1,153,949,052,018	1,015,232,341,761		23,271,047,330	991,961,294,431	7,556,934,580	154,430,823,007	136.7 %	86.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6,902,926,000		586,902,926,000	609,125,562,909	576,468,370,570		8,470,970,950	567,997,399,620	23,140,020	41,105,023,269	96.8 %	93.2 %
지방교부세	200,016,618,000		200,016,618,000	202,010,618,000	202,010,618,000			202,010,618,000			101.0 %	100.0 %
지방교부세	200,016,618,000		200,016,618,000	202,010,618,000	202,010,618,000			202,010,618,000			101.0 %	100.0 %
보조금	8,734,677,593,000		8,734,677,593,000	8,357,766,266,580	8,363,024,763,680		5,258,497,100	8,357,766,266,580			95.7 %	100.0 %
국고보조금등	8,734,677,593,000		8,734,677,593,000	8,357,766,266,580	8,363,024,763,680		5,258,497,100	8,357,766,266,580			95.7 %	100.0 %
지방채	1,692,948,240,000		1,692,948,24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00.8 %	100.0 %
국내차입금	1,692,948,240,000		1,692,948,24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00.8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57,785,754,000	1,114,066,320,723	12,471,852,074,723	12,160,688,802,587	12,160,536,665,347		595,230	12,160,536,070,117		152,732,470	97.5 %	100.0 %
보전수입등	4,239,616,880,000	1,114,066,320,723	5,353,683,200,723	5,328,049,350,907	5,327,897,213,667		595,230	5,327,896,618,437		152,732,470	99.5 %	100.0 %

(단위:원)

과목 장-관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④-㉲	비율(%)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④/㉰	④/㉱
내부거래	7,118,168,874,000		7,118,168,874,000	6,832,639,451,680	6,832,639,451,680			6,832,639,451,680			96.0 %	100.0 %
일 반 회 계	36,232,230,924,000	275,161,564,837	36,507,392,488,837	37,461,876,508,595	37,873,466,752,728		1,658,197,963,760	36,215,268,788,968	288,978,067,900	957,629,651,727	99.2 %	96.7 %
지방세수입	24,112,184,000,000		24,112,184,000,000	25,000,501,572,980	25,497,572,437,531		1,634,773,058,140	23,862,799,379,391	285,589,356,210	852,112,837,379	99.0 %	95.4 %
지난년도수입	213,700,000,000		213,700,000,000	930,204,783,449	229,983,749,315		4,358,458,610	225,625,290,705	247,266,963,330	457,312,529,414	105.6 %	24.3 %
목적세	2,020,552,000,000		2,020,552,000,000	1,950,457,029,810	1,936,280,088,060		30,819,894,490	1,905,460,193,570	6,665,833,000	38,331,003,240	94.3 %	97.7 %
보통세	21,877,932,000,000		21,877,932,000,000	22,119,839,759,721	23,331,308,600,156		1,599,594,705,040	21,731,713,895,116	31,656,559,880	356,469,304,725	99.3 %	98.2 %
세외수입	1,335,051,421,000		1,335,051,421,000	1,497,256,694,647	1,406,669,714,369		18,165,813,290	1,388,503,901,079	3,388,711,690	105,364,081,878	104.0 %	92.7 %
경상적세외수입	784,933,093,000		784,933,093,000	734,204,781,316	740,033,222,556		14,682,079,950	725,351,142,606		8,853,638,710	92.4 %	98.8 %
임시적세외수입	542,469,976,000		542,469,976,000	749,175,590,191	658,465,054,723		3,078,754,270	655,386,300,453	3,388,377,490	90,400,912,248	120.8 %	87.5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48,352,000		7,648,352,000	13,876,323,140	8,171,437,090		404,979,070	7,766,458,020	334,200	6,109,530,920	101.5 %	56.0 %
지방교부세	199,226,618,000		199,226,618,000	201,220,618,000	201,220,618,000			201,220,618,000			101.0 %	100.0 %
지방교부세	199,226,618,000		199,226,618,000	201,220,618,000	201,220,618,000			201,220,618,000			101.0 %	100.0 %
보조금	6,565,258,978,000		6,565,258,978,000	6,478,146,062,610	6,483,404,559,710		5,258,497,100	6,478,146,062,610			98.7 %	100.0 %
국고보조금등	6,565,258,978,000		6,565,258,978,000	6,478,146,062,610	6,483,404,559,710		5,258,497,100	6,478,146,062,610			98.7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20,509,907,000	275,161,564,837	4,295,671,471,837	4,284,751,560,358	4,284,599,423,118		595,230	4,284,598,827,888		152,732,470	99.7 %	100.0 %
보전수입등	3,328,053,028,000	275,161,564,837	3,603,214,592,837	3,606,873,625,358	3,606,721,488,118		595,230	3,606,720,892,888		152,732,470	100.1 %	100.0 %
내부거래	692,456,879,000		692,456,879,000	677,877,935,000	677,877,935,000			677,877,935,000			97.9 %	100.0 %
공기업특별회계	1,843,784,669,000	158,926,649,760	2,002,711,318,760	2,159,111,195,277	2,050,674,291,875		5,788,745,180	2,044,885,546,695	867,817,280	113,357,831,302	102.1 %	94.7 %

(단위:원)

과목 장-관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④-㉲	비율(%)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④/㉰	④/㉱
세외수입	1,692,251,172,000		1,692,251,172,000	1,824,008,459,419	1,715,571,556,017		5,788,745,180	1,709,782,810,837	867,817,280	113,357,831,302	101.0 %	93.7 %
경상적세외수입	1,550,190,046,000		1,550,190,046,000	1,628,300,420,227	1,525,062,883,957		2,473,973,720	1,522,588,910,267		105,711,509,960	98.2 %	93.5 %
임시적세외수입	50,483,511,000		50,483,511,000	119,789,771,802	114,650,450,660		2,016,541,970	112,633,908,690	867,817,280	6,288,045,832	223.1 %	94.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1,577,615,000		91,577,615,000	75,918,267,390	75,858,221,370		1,298,229,490	74,559,991,880		1,358,275,510	81.4 %	98.2 %
보조금	1,180,156,000		1,180,156,000	1,180,156,000	1,180,156,000			1,180,156,000			100.0 %	100.0 %
국고보조금등	1,180,156,000		1,180,156,000	1,180,156,000	1,180,156,000			1,180,156,000			100.0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353,341,000	158,926,649,760	309,279,990,760	333,922,579,858	333,922,579,858			333,922,579,858			108.0 %	100.0 %
보전수입등	49,879,237,000	158,926,649,760	208,805,886,760	236,291,416,248	236,291,416,248			236,291,416,248			113.2 %	100.0 %
내부거래	100,474,104,000		100,474,104,000	97,631,163,610	97,631,163,610			97,631,163,610			97.2 %	100.0 %
기타특별회계	12,299,966,136,000	679,978,106,126	12,979,944,242,126	12,624,307,045,622	12,526,452,031,284		28,052,244,405	12,498,399,786,879	3,323,545,630	122,583,713,113	96.3 %	99.0 %
세외수입	1,251,066,931,000		1,251,066,931,000	1,495,841,535,281	1,397,986,520,943		28,052,244,405	1,369,934,276,538	3,323,545,630	122,583,713,113	109.5 %	91.6 %
경상적세외수입	630,763,765,000		630,763,765,000	691,526,872,877	663,430,972,455		3,108,730,925	660,322,241,530		31,204,631,347	104.7 %	95.5 %
임시적세외수입	132,626,207,000		132,626,207,000	284,983,690,025	242,116,836,378		18,175,751,090	223,941,085,288	3,300,739,810	57,741,864,927	168.9 %	78.6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7,676,959,000		487,676,959,000	519,330,972,379	492,438,712,110		6,767,762,390	485,670,949,720	22,805,820	33,637,216,839	99.6 %	93.5 %
지방교부세	790,000,000		790,000,000	790,000,000	790,000,000			790,000,000			100.0 %	100.0 %
지방교부세	790,000,000		790,000,000	790,000,000	790,000,000			790,000,000			100.0 %	100.0 %
보조금	2,168,238,459,000		2,168,238,459,000	1,878,440,047,970	1,878,440,047,970			1,878,440,047,970			86.6 %	100.0 %
국고보조금등	2,168,238,459,000		2,168,238,459,000	1,878,440,047,970	1,878,440,047,970			1,878,440,047,970			86.6 %	100.0 %

(단위:원)

과목 장-관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④-㉲	비율(%)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④/㉰	④/㉱
지방채	1,692,948,240,000		1,692,948,24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00.8 %	100.0 %
국내차입금	1,692,948,240,000		1,692,948,24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707,220,800,000			100.8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86,922,506,000	679,978,106,126	7,866,900,612,126	7,542,014,662,371	7,542,014,662,371			7,542,014,662,371			95.9 %	100.0 %
보전수입등	861,684,615,000	679,978,106,126	1,541,662,721,126	1,484,884,309,301	1,484,884,309,301			1,484,884,309,301			96.3 %	100.0 %
내부거래	6,325,237,891,000		6,325,237,891,000	6,057,130,353,070	6,057,130,353,070			6,057,130,353,070			95.8 %	100.0 %

나. 세출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 ①+②+③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④+⑤ +⑥+⑦+⑧+⑨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액 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 발생 ⑥
											낙찰차액 ⑦	지출잔액 ⑧	예비비 ⑨
합 계	50,375,981,729,000	1,114,066,320,723	51,490,048,049,723	47,460,455,674,003	1,690,556,844,002	829,975,756,490	860,581,087,512		100,185,310,051	2,238,850,221,667	382,014,433,401	6,144,560,557	547,759,626,914
					(155,874,500,000)	(155,874,500,000)					81,831,728,924	1,131,386,306,871	89,713,565,000
일반공공행정	9,547,268,049,000	20,534,622,340	9,567,802,671,340	9,201,241,267,071	7,943,225,140		7,943,225,140		109,478,407	358,508,700,722	1,036,171,615	1,288,253,560	126,830,375,603
											5,744,944,797	223,608,955,147	
공공질서및안전	1,446,288,511,000	7,150,701,590	1,453,439,212,590	1,439,339,704,777	1,638,789,740		1,638,789,740		410,059,742	12,050,658,331	514,355,857		370,559,600
											3,858,695,930	4,856,310,944	2,450,736,000
교육	4,664,770,000,000	10,574,031,350	4,675,344,031,350	4,429,701,529,051	11,028,402,894	475,000,000	10,553,402,894			234,614,099,405			1,987,525,000
											1,210,614,130	231,415,960,275	
문화및관광	955,313,967,000	70,116,630,227	1,025,430,597,227	930,115,959,566	78,756,377,187	25,820,625,270	52,935,751,917		470,171,555	16,088,088,919	468,267,085	634,902,557	2,380,095,200
											5,054,809,395	7,550,014,682	
환경	2,552,793,519,000	272,659,907,716	2,825,453,426,716	2,229,884,092,649	314,146,107,275	51,491,704,130	262,654,403,145		62,772,089,228	218,651,137,564	35,328,621,278	3,303,445,733	22,249,078,630
											34,075,697,950	117,742,394,973	5,951,899,000
사회복지	17,434,108,042,000	82,970,340,329	17,517,078,382,329	16,070,586,449,929	609,009,938,997	594,365,937,320	14,644,001,677		25,573,995,108	811,907,998,295	329,313,274,876	249,844,077	219,923,186,200
					(130,675,500,000)	(130,675,500,000)					564,765,313	260,975,438,829	881,489,000
보건	639,864,817,000	24,168,562,300	664,033,379,300	623,602,044,524	18,085,010,440	6,552,830,000	11,532,180,440		764,755,688	21,581,568,648	6,577,527,278	84,938,700	6,312,202,260
											1,324,280,810	7,282,619,600	
농림해양수산	108,746,155,000	4,989,802,200	113,735,957,200	107,656,523,182	4,044,831,980		4,044,831,980		44,552,912	1,990,049,126	205,678,318	53,369,110	245,864,000
											133,642,054	1,351,495,64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53,422,281,000	66,423,689,849	719,845,970,849	659,382,005,277	43,433,502,002	1,050,000,000	42,383,502,002		8,272,700	17,022,190,870	451,960,850	147,372,260	2,109,502,321
											903,483,688	13,409,871,751	
교통및물류	7,457,675,812,000	275,969,659,992	7,733,645,471,992	7,104,479,967,687	349,023,460,186	87,601,549,550	261,421,910,636		6,687,538,550	273,454,505,569	7,106,156,294	295,997,940	86,044,644,002
					(25,199,000,000)	(25,199,000,000)					22,689,294,899	154,707,837,434	2,610,575,000
국토및지역개발	2,627,523,947,000	330,468,395,830	2,957,992,342,830	2,575,553,712,267	253,436,698,161	62,618,110,220	190,818,587,941		2,570,196,270	126,431,736,132	1,001,806,890	86,436,620	79,109,030,170
											6,195,157,228	39,348,910,224	690,395,000
과학기술	2,811,104,000		2,811,104,000	2,675,346,110						135,757,890			
												135,757,890	
예비비	130,244,912,000	△53,116,441,000	77,128,471,000							77,128,471,000			
													77,128,471,000
기타	2,155,150,613,000	1,156,418,000	2,156,307,031,000	2,086,237,071,913	10,500,000		10,500,000		774,199,891	69,285,259,196	10,613,060		197,563,928
											76,342,730	69,000,739,478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 ①+②+③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④+⑤ +⑥+⑦+⑧+⑨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액 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 발생 ⑥
											낙찰차액 ⑦	지출잔액 ⑧	예비비 ⑨
일반회계	36,232,230,924,000	275,161,564,837	36,507,392,488,837	34,928,472,788,427	256,205,192,142	42,345,812,960	213,859,379,162		80,815,094,597	1,241,899,413,671	71,302,303,789	3,584,803,824	347,999,450,102
											26,024,949,997	719,779,438,959	73,208,467,000
일반공공행정	9,496,826,287,000	17,856,398,640	9,514,682,685,640	9,158,783,473,351	7,943,225,140		7,943,225,140		109,478,407	347,846,508,742	1,036,171,615	1,259,185,560	126,809,695,603
											5,236,079,827	213,505,376,137	
공공질서및안전	1,229,194,245,000	1,284,640,000	1,230,478,885,000	1,227,107,839,252	912,880,330		912,880,330		283,332,285	2,174,833,133	200,215,364		16,400,000
											639,240,570	1,318,977,199	
교육	4,662,782,475,000	10,574,031,350	4,673,356,506,350	4,429,701,529,051	11,028,402,894	475,000,000	10,553,402,894			232,626,574,405			
											1,210,614,130	231,415,960,275	
문화및관광	747,489,415,000	38,240,950,020	785,730,365,020	737,519,411,870	34,862,776,680	6,830,551,960	28,032,224,700		455,634,181	12,892,542,289	461,735,639	634,902,557	871,639,000
											4,654,561,302	6,269,703,791	
환경	847,496,938,000	105,432,361,040	952,929,299,040	710,715,953,821	121,469,505,533	18,589,386,000	102,880,119,533		62,118,786,299	58,625,053,387	25,050,448,425	835,829,000	4,926,889,990
											6,161,244,557	21,650,641,415	
사회복지	12,704,421,270,000	36,335,548,106	12,740,756,818,106	12,408,888,726,846	9,965,765,387	1,701,752,000	8,264,013,387		14,625,969,859	307,276,336,014	36,931,031,075	249,844,077	94,606,393,200
											504,067,723	174,984,999,939	
보건	639,864,817,000	24,168,562,300	664,033,379,300	623,602,044,524	18,085,010,440	6,552,830,000	11,532,180,440		764,755,688	21,581,568,648	6,577,527,278	84,938,700	6,312,202,260
											1,324,280,810	7,282,619,600	
농림해양수산	29,960,054,000	3,958,596,200	33,918,650,200	31,394,169,722	657,528,560		657,528,560		44,552,912	1,822,399,006	39,678,318	53,369,110	245,864,000
											133,642,054	1,349,845,5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73,811,177,000	16,376,081,831	590,187,258,831	567,765,334,699	10,734,194,150	1,050,000,000	9,684,194,150		8,272,700	11,679,457,282	451,960,850	147,372,260	2,109,502,321
											747,224,158	8,223,397,693	
교통및물류	2,158,198,970,000	28,598,560,370	2,186,797,530,370	2,114,336,419,823	3,008,090,930	1,130,869,000	1,877,221,930		8,957,795	69,444,061,822	8,957,795	232,925,940	67,071,903,190
											574,262,175	1,556,012,722	
국토및지역개발	1,942,237,451,000	43,807,751,980	1,986,045,202,980	1,871,619,151,958	37,537,812,098	6,015,424,000	31,522,388,098		2,343,113,460	74,545,125,464	534,114,370	86,436,620	44,831,396,610
											4,811,791,221	24,281,386,643	
과학기술	2,811,104,000		2,811,104,000	2,675,346,110						135,757,890			
												135,757,890	
예비비	125,001,043,000	△51,792,576,000	73,208,467,000							73,208,467,000			
													73,208,467,000
기타	1,072,135,678,000	320,659,000	1,072,456,337,000	1,044,363,387,400					52,221,011	28,040,728,589	10,463,060		197,563,928
											27,941,470	27,804,760,131	
공기업특별회계	1,843,784,669,000	158,926,649,760	2,002,711,318,760	1,646,412,684,301	183,113,996,352	32,902,318,130	150,211,678,222		202,683,797	172,981,954,310	10,278,172,853	2,467,616,733	13,883,790,610
											27,935,550,633	112,831,044,481	5,585,779,000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 ①+②+③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④+⑤ +⑥+⑦+⑧+⑨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액 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 발생 ⑥
											낙찰차액 ⑦	지출잔액 ⑧	예비비 ⑨
환경	1,610,991,153,000	158,090,890,760	1,769,082,043,760	1,429,767,065,770	183,103,496,352	32,902,318,130	150,201,178,222		202,683,797	156,008,797,841	10,278,172,853	2,467,616,733	13,883,790,610
											27,888,363,393	95,905,075,252	5,585,779,000
기타	232,793,516,000	835,759,000	233,629,275,000	216,645,618,531	10,500,000		10,500,000			16,973,156,469			
											47,187,240	16,925,969,229	
기타특별회계	12,299,966,136,000	679,978,106,126	12,979,944,242,126	10,885,570,201,275	1,251,237,655,508 (155,874,500,000)	754,727,625,380 (155,874,500,000)	496,510,030,128		19,167,531,657	823,968,853,686	300,433,956,759	92,140,000	185,876,386,202
											27,871,228,294	298,775,823,431	10,919,319,000
일반공공행정	50,441,762,000	2,678,223,700	53,119,985,700	42,457,793,720						10,662,191,980		29,068,000	20,680,000
											508,864,970	10,103,579,010	
공공질서및안전	217,094,266,000	5,866,061,590	222,960,327,590	212,231,865,525	725,909,410		725,909,410		126,727,457	9,875,825,198	314,140,493		354,159,600
											3,219,455,360	3,537,333,745	2,450,736,000
교육	1,987,525,000		1,987,525,000							1,987,525,000			1,987,525,000
문화및관광	207,824,552,000	31,875,680,207	239,700,232,207	192,596,547,696	43,893,600,507	18,990,073,290	24,903,527,217		14,537,374	3,195,546,630	6,531,446		1,508,456,200
											400,248,093	1,280,310,891	
환경	94,305,428,000	9,136,655,916	103,442,083,916	89,401,073,058	9,573,105,390		9,573,105,390		450,619,132	4,017,286,336			3,438,398,030
											26,090,000	186,678,306	366,120,000
사회복지	4,729,686,772,000	46,634,792,223	4,776,321,564,223	3,661,697,723,083	599,044,173,610 (130,675,500,000)	592,664,185,320 (130,675,500,000)	6,379,988,290		10,948,005,249	504,631,662,281	292,382,243,801		125,316,793,000
											60,697,590	85,990,438,890	881,489,000
농림해양수산	78,786,101,000	1,031,206,000	79,817,307,000	76,262,353,460	3,387,303,420		3,387,303,420			167,650,120	166,000,000		
												1,650,1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9,611,104,000	50,047,608,018	129,658,712,018	91,616,670,578	32,699,307,852		32,699,307,852			5,342,733,588			
											156,259,530	5,186,474,058	
교통및물류	5,299,476,842,000	247,371,099,622	5,546,847,941,622	4,990,143,547,864	346,015,369,256 (25,199,000,000)	86,470,680,550 (25,199,000,000)	259,544,688,706		6,678,580,755	204,010,443,747	7,097,198,499	63,072,000	18,972,740,812
											22,115,032,724	153,151,824,712	2,610,575,000
국토및지역개발	685,286,496,000	286,660,643,850	971,947,139,850	703,934,560,309	215,898,886,063	56,602,686,220	159,296,199,843		227,082,810	51,886,610,668	467,692,520		34,277,633,560
											1,383,366,007	15,067,523,581	690,395,000
예비비	5,243,869,000	△1,323,865,000	3,920,004,000							3,920,004,000			
													3,920,004,000
기타	850,221,419,000		850,221,419,000	825,228,065,982					721,978,880	24,271,374,138	150,000		
											1,214,020	24,270,010,118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결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 년 도 채무상환 ㉳	순세계 잉여금 ㉴=㉱-㉯-㉲-㉳
								계 ㉯=①+②+③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51,490,048,049,723	50,758,554,122,542	99 %	47,460,455,674,003	92 %	3,298,098,448,539	6 %	1,534,682,344,002 (155,874,500,000)	674,101,256,490 (155,874,500,000)	860,581,087,512		100,185,310,051	17,239,257,000		1,645,991,537,486
일 반 회 계	36,507,392,488,837	36,215,268,788,968	99 %	34,928,472,788,427	96 %	1,286,796,000,541	4 %	256,205,192,142	42,345,812,980	213,859,379,162		80,815,094,597	17,098,757,000		932,676,956,802
특 별 회 계	14,982,655,560,886	14,543,285,333,574	97 %	12,531,982,885,576	84 %	2,011,302,447,998	13 %	1,278,477,151,860 (155,874,500,000)	631,755,443,510 (155,874,500,000)	646,721,708,350		19,370,215,454	140,500,000		713,314,580,684
공기업특별회계	2,002,711,318,760	2,044,885,546,695	102 %	1,646,412,684,301	82 %	398,472,862,394	20 %	183,113,996,352	32,902,318,130	150,211,678,222		202,683,797			215,156,182,245
수도사업특별회계	995,268,882,830	1,012,372,235,305	102 %	838,603,632,116	84 %	173,768,603,189	17 %	50,431,869,210	9,053,709,680	41,378,159,530		202,683,797			123,134,050,18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7,442,435,930	1,032,513,311,390	102 %	807,809,052,185	80 %	224,704,259,205	22 %	132,682,127,142	23,848,608,450	108,833,518,692					92,022,132,063
기타특별회계	12,979,944,242,126	12,498,399,786,879	96 %	10,885,570,201,275	84 %	1,612,829,585,604	12 %	1,095,363,155,508 (155,874,500,000)	598,853,125,380 (155,874,500,000)	496,510,030,128		19,167,531,657	140,500,000		498,158,398,43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57,950,034,660	2,056,139,282,359	100 %	1,979,316,845,902	96 %	76,822,436,457	4 %	40,124,102,352 (25,199,000,000)	12,170,028,560 (25,199,000,000)	27,954,073,792					36,698,334,105
교통사업특별회계	2,230,608,073,484	2,155,086,615,893	97 %	1,997,092,633,282	90 %	157,993,982,611	7 %	87,029,450,721	19,462,083,000	67,567,367,721		303,833,136			70,660,698,75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2,691,388,783	323,700,560,935	97 %	256,326,736,566	77 %	67,373,824,369	20 %	61,610,276,650	3,480,000,000	58,130,276,650		5,976,321,360			△212,773,641
주택사업특별회계	3,041,073,070,720	2,855,718,888,136	94 %	2,264,999,918,402	74 %	590,718,969,734	19 %	464,281,921,910 (130,675,500,000)	460,002,725,000 (130,675,500,000)	4,279,196,910		10,756,678,249			115,680,369,575
도시개발특별회계	2,119,576,909,001	2,071,873,505,374	98 %	1,649,301,779,858	78 %	422,571,725,516	20 %	390,566,711,064	83,759,695,040	306,807,016,024		638,346,443			31,366,668,009
균형발전특별회계	211,850,436,888	203,209,592,933	96 %	145,914,494,108	69 %	57,295,098,825	27 %	50,867,501,141	19,978,593,780	30,888,907,361		193,027,000	140,500,000		6,094,070,68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6,771,907,000	11,335,140,660	31 %	10,398,589,050	28 %	936,551,610	3 %								936,551,6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28,934,963,000	1,800,825,773,552	93 %	1,594,951,930,030	83 %	205,873,843,522	11 %								205,873,843,52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339,353,000	34,341,211,820	92 %	32,727,051,378	88 %	1,614,160,442	4 %	157,282,260		157,282,260		1,172,448,012			284,430,170
소방특별회계	983,148,105,590	986,169,215,217	100 %	954,540,222,699	97 %	31,628,992,518	3 %	725,909,410		725,909,410		126,877,457			30,776,205,651

3. 기금결산

(단위:원)

구분 /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7,208,081,019,365	454,198,761,420	3,238,956,989,812	2,784,758,228,392	7,662,279,780,7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423,856,099,076	750,669,423,967	1,097,640,913,967	346,971,490,000	4,174,525,523,0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255,163,782,882	△490,771,466,133	1,021,238,446,801	1,512,009,912,934	1,764,392,316,749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25,106,729,540	1,601,850,883	275,907,893,123	274,306,042,240	126,708,580,42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57,105,395,713	31,664,478,567	75,238,549,567	43,574,071,000	88,769,874,280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39,275,491,167	11,417,731,986	13,445,497,116	2,027,765,130	50,693,223,153
식품진흥기금	49,660,454,887	1,411,072,963	5,422,654,373	4,011,581,410	51,071,527,850
기후대응기금	98,446,908,659	△19,331,222,175	13,248,629,811	32,579,851,986	79,115,686,484
도로굴착복구기금	27,593,602,202	5,160,820,011	45,429,640,631	40,268,820,620	32,754,422,213
성평등기금	23,958,026,907	135,519,900	1,158,854,520	1,023,334,620	24,093,546,80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809,226,436	1,785,062,709	30,222,843,220	28,437,780,511	10,594,289,14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2,474,127,779	△428,640,260	637,989,140	1,066,629,400	12,045,487,519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3,982,458,776	△1,410,052,454	3,483,487,546	4,893,540,000	22,572,406,32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8,306,718,726	1,546,781,195	2,458,008,205	911,227,010	9,853,499,921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838,683,818	22,892,557,223	35,219,592,223	12,327,035,000	24,731,241,041
체육진흥기금	56,466,261,335	1,957,699,496	12,277,376,186	10,319,676,690	58,423,960,831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15,943,343,308	72,757,974,041	315,709,804,051	242,951,830,010	788,701,317,349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29,025,349,728	12,082,353,367	211,246,535,027	199,164,181,660	141,107,703,095

(단위:원)

구분 /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1,992,248,910	1,002,786,498	1,494,999,498	492,213,000	32,995,035,408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3,714,353,314	△1,886,260,436	1,151,996,034	3,038,256,470	1,828,092,878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737,998,241	△1,521,088,301	1,738,332,920	3,259,421,221	3,216,909,940
도시재생기금	49,210,936,125	30,475,904,801	31,774,661,761	1,298,756,960	79,686,840,926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922,984,277	333,179,034	2,156,173,034	1,822,994,000	1,256,163,311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208,815,779	232,230,467	232,230,467		5,441,046,246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988,161,810	△816,070,947	17,185,745,573	18,001,816,520	4,172,090,863
하수도사업회전기금	50,292,859,970	22,938,567,780	22,938,567,780		73,231,427,750
고향사랑기금		297,567,238	297,567,238		297,567,238

4. 재무제표

재 정 상 태 표

당해연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자 산			
	Ⅰ.유동자산	8,084,693,256,034	2,671,382,869,040
	현금및현금성자산	4,366,484,017,744	1,148,988,198,041
	단기금융상품	1,713,621,328,787	200,000,000,000
	미수세금	852,112,837,379	852,112,837,379
	미수세금대손충당금	(134,620,156,642)	(134,620,156,642)
	미수세외수입금	333,520,324,023	92,097,898,298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6,669,950,779)	(3,134,621,611)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87,687,924,128	178,666,289,263
	단기대여금	314,984,628,862	7,215,537,12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248,456,689)	(72,155,371)
	재고자산	37,829,405,358	8,788,731,695
	기타유동자산	421,991,353,863	321,340,310,868
	Ⅱ.투자자산	18,566,194,018,042	3,989,436,068,016
	장기대여금	1,036,059,273,532	86,136,154,80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6,756,809,388)	(111,978,600)
	장기투자증권	17,518,423,474,678	3,271,193,967,011
	기타투자자산	18,468,079,220	632,217,924,799
	Ⅲ.일반유형자산	8,804,694,602,004	7,104,605,595,850
	토지	7,357,856,718,525	6,122,711,664,118
	입목	3,011,676,180	3,011,676,180
자 산	건물	1,380,024,362,484	1,234,697,249,526
	건물감가상각누계액	(468,314,640,404)	(448,922,572,151)
	구축물	174,169,593,096	159,278,598,424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59,632,163,222)	(149,649,333,979)
	기계장치	16,668,079,510	12,137,374,25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1,930,975,789)	(8,723,484,007)
	차량운반구	267,040,847,917	86,976,762,958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60,431,262,746)	(69,823,869,343)
	집기비품	729,294,008,128	523,771,598,550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499,892,032,610)	(382,104,819,121)
	임차개량자산	1,630,819,770	1,630,819,770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1,331,836,145)	(1,331,836,14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76,531,407,310	20,945,766,820
	Ⅳ.주민편의시설	31,394,377,313,572	18,886,546,949,263
	도서관	175,885,261,682	131,845,871,019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77,274,414,325)	(76,607,580,895)
	주차장	1,758,428,972,933	220,131,962,173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247,395,784,765)	(10,009,895,387)
	주차장사용수익권	(330,216,667)	
	공원	12,388,125,553,072	9,700,844,554,158
	공원감가상각누계액	(349,004,093,704)	(316,584,595,109)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1,890,721,980,203	3,020,370,448,787	549,787,958,004	(47,570,000,000)
1,612,829,585,604	1,401,193,371,705	203,472,862,394	
	1,318,621,328,787	195,000,000,000	
122,581,856,993	58,318,530	118,782,250,202	
(1,679,822,743)	(583,185)	(1,854,923,240)	
8,991,456,044	30,178,821		
59,136,702,984	296,202,388,758		(47,570,000,000)
(374,867,030)	(1,801,434,288)		
	823,048,000	28,217,625,663	
89,237,068,351	5,243,831,659	6,170,142,985	
15,421,943,265,948	6,922,420,497,460	3,217,097,300	(7,770,822,910,682)
2,346,726,752,451	5,753,666,139,568		(7,150,469,773,293)
(1,128,020,595)	(5,516,810,193)		
13,072,958,339,582	1,174,271,168,085		
3,386,194,510		3,217,097,300	(620,353,137,389)
1,662,245,764,448	8,697,552,061	29,145,689,645	
1,206,294,695,592		28,850,358,815	
145,150,091,249		177,021,709	
(19,253,217,099)		(138,851,154)	
8,960,668,140	590,006,100	5,340,320,432	
(4,391,197,277)	(508,471,809)	(5,083,160,157)	
2,541,731,390	1,551,633,070	437,340,800	
(1,399,053,544)	(1,371,097,438)	(437,340,800)	
176,379,177,679	3,684,907,280		
(88,689,783,598)	(1,917,609,805)		
194,638,670,327	10,883,739,251		
(113,571,658,901)	(4,215,554,588)		
155,585,640,490			
12,501,214,150,920	6,616,213,389		
44,039,390,663			
(666,833,430)			
1,538,243,862,760	53,148,000		
(237,332,742,378)	(53,147,000)		
(330,216,667)			
2,687,111,662,414	169,336,500		
(32,302,540,924)	(116,957,671)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자 산	박물관및미술관	550,350,821,745	374,097,319,895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105,171,365,449)	(93,776,811,410)
	동물원	621,363,870	621,363,870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619,307,346)	(619,307,346)
	수목원및휴양림	360,686,762,956	350,907,285,286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5,271,281,389)	(2,729,764,776)
	문화및관광시설	4,382,584,432,095	3,767,987,674,770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234,734,239,118)	(221,058,191,712)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27,576,348,019)	(27,576,348,019)
	체육시설	2,140,881,007,408	2,093,007,608,308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256,589,391,301)	(253,660,166,196)
	사회복지시설	1,684,600,555,182	1,649,937,784,391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301,945,829,296)	(298,970,202,524)
	의료시설	968,253,483,126	569,661,092,896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300,307,750,404)	(193,376,153,796)
	교육시설	1,145,137,947,638	1,026,581,820,338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39,796,673,649)	(139,704,640,861)
	기타주민편의시설	7,559,971,003,196	617,118,024,732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623,886,177,032)	(96,197,738,431)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948,753,021,133	114,675,983,889
	Ⅴ.사회기반시설	84,518,839,127,205	60,139,521,127,773
	도로	62,558,399,152,876	55,859,852,015,872
	도로사용수익권	(1,819,117,517,942)	
	도시철도	5,407,425,723,856	112,004,089,135
	도시철도사용수익권	(1,076,311,792,181)	
	상수도시설	9,059,952,490,652	5,240,158,750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4,152,539,544,966)	(1,615,096,101)
	수질정화시설	22,479,039,067,174	37,880,391,106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935,638,426,006)	(2,732,320,622)
	하천부속시설	3,627,414,782,014	3,624,394,694,414
	폐기물처리시설	104,041,642,180	104,041,642,180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2,474,322,222)	(2,474,322,222)
	재활용시설	250,516,873,320	250,516,873,320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110,512,543,218)	(110,512,543,218)
	농수산기반시설	312,015,587,180	158,225,107,180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885,623,373)	(10,885,623,373)
	기타사회기반시설	61,020,481,200	59,735,687,680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35,512,256,360)	(35,265,812,868)
	기타사회기반시설사용수익권	(2,241,060,790)	(2,241,060,790)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3,804,246,413,811	93,357,247,330
	Ⅵ.기타비유동자산	1,146,009,537,804	308,485,295,000
	보증금	353,364,573,140	125,898,139,440
	무형자산	172,043,104,449	87,048,056,615
	기타비유동자산	620,601,860,215	95,539,098,945
(자산총계)		152,514,807,854,661	93,099,977,904,942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176,245,635,850	7,866,000		
(11,392,414,837)	(2,139,202)		
9,779,477,670			
(2,541,516,613)			
614,596,757,325			
(13,676,047,406)			
46,326,411,620	1,546,987,480		
(1,889,805,782)	(1,039,419,323)		
34,662,770,791			
(2,975,626,772)			
396,265,281,060	2,327,109,170		
(106,031,690,947)	(899,905,661)		
118,248,536,300	307,591,000		
(22,184,000)	(69,848,788)		
6,939,446,875,164	3,406,103,300		
(1,527,671,928,185)	(16,510,416)		
1,833,081,037,244	996,000,000		
12,697,533,983,079	6,663,839,596	11,675,120,176,757	
6,693,472,278,214	5,074,858,790		
(1,819,117,517,942)			
5,295,421,634,721			
(1,076,311,792,181)			
55,605,930		9,054,656,725,972	
(34,426,523)		(4,150,890,022,342)	
23,373,112,780	87,210,192	22,417,698,353,096	
(3,700,742,856)	(75,737,946)	(15,929,129,624,582)	
1,779,154,090	1,240,933,510		
153,790,480,000			
819,554,830	465,238,690		
(117,779,852)	(128,663,640)		
3,428,104,421,868		282,784,744,613	
751,212,793,049	7,276,364,951	79,035,084,804	
225,712,641,530	1,753,792,170		
70,083,395,249	5,522,572,781	9,389,079,804	
455,416,756,270		69,646,005,000	
44,924,871,937,647	9,972,044,916,244	12,336,306,006,510	(7,818,392,910,682)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부 채			
부 채	Ⅰ.유동부채	3,423,926,460,649	702,650,851,926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720,794,877,850	0
	기타유동부채	1,703,131,582,799	702,650,851,926
	Ⅱ.장기차입부채	9,721,702,855,900	1,102,600,000,000
	장기차입금	773,046,210,900	1,068,400,000,000
	지방채증권	8,948,656,645,000	34,200,000,000
	Ⅲ.기타비유동부채	4,943,552,255,679	306,420,017,227
	퇴직급여충당부채	76,425,211,547	59,983,656,967
	기타비유동부채	4,867,127,044,132	246,436,360,260
(부채총계)		18,089,181,572,228	2,111,670,869,153
순자산			
순자산	Ⅰ.고정순자산	113,439,626,413,480	86,183,521,729,501
	Ⅱ.특정순자산	6,446,473,956,272	
	Ⅲ.일반순자산	14,539,525,912,681	4,804,785,306,288
(순자산총계)		134,425,626,282,433	90,988,307,035,789
(부채와순자산총계)		152,514,807,854,661	93,099,977,904,942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525,392,705,754	202,866,769,493	40,586,133,476	(47,570,000,000)
1,570,794,877,850	197,570,000,000		(47,570,000,000)
954,597,827,904	5,296,769,493	40,586,133,476	
11,736,618,989,900	3,945,196,639,293	87,757,000,000	(7,150,469,773,293)
3,322,162,344,900	3,445,196,639,293	87,757,000,000	(7,150,469,773,293)
8,414,456,645,000	500,000,000,000		
4,611,330,428,422	7,373,359	25,794,436,671	
9,602,766,549	7,373,359	6,831,414,672	
4,601,727,661,873		18,963,021,999	
18,873,342,124,076	4,148,070,782,145	154,137,570,147	(7,198,039,773,293)
16,164,949,559,946	(622,499,822,173)	11,713,654,946,206	
	6,446,473,956,272		
9,886,580,253,625		468,513,490,157	(620,353,137,389)
26,051,529,813,571	5,823,974,134,099	12,182,168,436,363	(620,353,137,389)
44,924,871,937,647	9,972,044,916,244	12,336,306,006,510	(7,818,392,910,682)

재정운영표(기능별)

당해연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원)

과 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33,506,920,600,453	10,871,144,599,253	22,635,776,001,200		22,635,776,001,200
일반공공행정	7,338,642,393,096	44,094,576,373	7,294,547,816,723		7,294,547,816,723
공공질서및안전	481,521,429,413	25,943,375,135	455,578,054,278		455,578,054,278
교육	4,071,988,175,627	4,313,204,400	4,067,674,971,227		4,067,674,971,227
문화및관광	848,177,454,411	241,606,110,382	606,571,344,029		606,571,344,029
환경	2,260,188,464,321	2,162,475,747,471	97,712,716,850		97,712,716,850
사회복지	13,664,342,287,315	7,504,285,645,312	6,160,056,642,003		6,160,056,642,003
보건	612,509,339,305	188,485,960,832	424,023,378,473		424,023,378,473
농림해양수산	73,677,264,468	31,474,495,378	42,202,769,090		42,202,769,09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95,950,853,237	52,329,207,320	543,621,645,917		543,621,645,917
교통 및 물류	2,967,501,925,974	501,592,089,134	2,465,909,836,840		2,465,909,836,840
국토및지역개발	589,730,463,448	114,310,935,116	475,419,528,332		475,419,528,332
과학기술	2,690,549,838	233,252,400	2,457,297,438		2,457,297,438
Ⅱ. 관리운영비			10,617,628,360,329	(8,414,640,978,409)	2,202,987,381,920
1. 인건비			2,085,129,029,917		2,085,129,029,917
급여			1,484,322,988,414		1,484,322,988,414
복리후생비			446,377,748,612		446,377,748,612
기타인건비			135,877,534,177		135,877,534,177
퇴직급여			18,550,758,714		18,550,758,714
2. 경비			168,850,384,883		168,850,384,883
도서구입및인쇄비			2,427,291,718		2,427,291,718
소모품비			7,948,336,886		7,948,336,886
홍보및광고비			364,893,685		364,893,685
지급수수료			2,047,033,045		2,047,033,04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16,173,019		516,173,019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509,805,327		509,805,32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719,234,466		5,719,234,466
기타자산수선유지비			41,223,000		41,223,000
교육훈련비			145,712,390		145,712,390
제세공과금			16,779,891,776		16,779,891,776
보험료및공제료			2,429,552,337		2,429,552,337
임차료			940,543,950		940,543,950
출장비			7,738,029,583		7,738,029,583
연구개발비			361,727,590		361,727,590
업무추진비			5,456,964,405		5,456,964,405
위탁대행사업비			42,586,381,322		42,586,381,322
징수교부금			335,977,260		335,977,260
연료비			5,553,269,359		5,553,269,359
원·정수구입비			1,146,864,270		1,146,864,270
기타운영비			65,801,479,495		65,801,479,495

당해연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원)

과 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3.민간등이전비용			8,363,648,945,529	(8,414,640,978,409)	(50,992,032,880)
전출금비용			8,363,648,945,529	(8,414,640,978,409)	(50,992,032,880)
III.비배분비용			1,599,907,600,912	(77,981,160,580)	1,521,926,440,332
1.운영비			265,039,030,497	(77,981,160,580)	187,057,869,917
이자비용			265,039,030,497	(77,981,160,580)	187,057,869,917
2.기타비용			1,334,868,570,415		1,334,868,570,415
자산처분손실			8,187,545,777		8,187,545,777
자산손상차손			702,639,110,916		702,639,110,916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15,187,286,863		115,187,286,863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186,526,413,593		186,526,413,593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8,343,445,679		8,343,445,679
무형자산상각비			9,582,175,969		9,582,175,969
대손상각비			294,996,623,852		294,996,623,852
기타비용			9,405,967,766		9,405,967,766
IV.비배분수익			1,333,514,826,554	(77,981,160,580)	1,255,533,665,974
1.자체조달수익			880,920,052,816	(77,981,160,580)	802,938,892,236
경상세외수익			343,788,153,576	(77,981,160,580)	265,806,992,996
임시세외수익			537,131,899,240		537,131,899,240
2.기타수익			452,594,773,738		452,594,773,738
전입금수익			272,799,038,330		272,799,038,330
대손충당금환입			3,131,006,724		3,131,006,724
기타수익			88,035,646,795		88,035,646,795
기타비배분수익			88,629,081,889		88,629,081,889
V.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33,519,797,135,887	(8,414,640,978,409)	25,105,156,157,478
VI.수익			33,618,069,195,660	(8,414,640,978,409)	25,203,428,217,251
1.자체조달수익			24,755,941,454,901		24,755,941,454,901
지방세수익			24,186,209,489,336		24,186,209,489,336
경상세외수익			8,700,674,650		8,700,674,650
임시세외수익			561,031,290,915		561,031,290,915
2.정부간이전수익			465,325,564,566		465,325,564,566
지방교부세수익			202,010,618,000		202,010,618,000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227,859,071,841		227,859,071,841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35,455,874,725		35,455,874,725
3.기타수익			8,396,802,176,193	(8,414,640,978,409)	(17,838,802,216)
전입금수익			8,414,640,978,409	(8,414,640,978,409)	
기부금수익			5,746,037,300		5,746,037,300
기타일반수익			(23,584,839,516)		(23,584,839,516)
VII.재정운영결과(V-VI)			(98,272,059,773)		(98,272,059,773)

순 자 산 변 동 표

당해연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Ⅰ. 기초순자산	132,810,666,684,324	92,056,600,556,812
Ⅱ.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98,272,059,773)	2,107,623,665,574
Ⅲ. 순자산의 증가	1,808,475,030,072	1,058,368,864,632
1. 전기오류수정이익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11,707,131,190	390,091,190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1,339,660,557,068	1,043,923,892,857
5. 기타순자산의증가	457,107,341,814	14,054,880,585
Ⅳ. 순자산의 감소	291,787,491,736	19,038,720,081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11,707,131,190	51,214,550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3,273,869,155	2,413,042,405
5. 기타순자산의감소	276,806,491,391	16,574,463,12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34,425,626,282,433	90,988,307,035,789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3,280,525,807,224	5,965,712,447,188	12,128,181,010,489	(620,353,137,389)
(2,333,704,599,016)	113,363,660,548	14,445,213,121	
613,200,130,971	68,473,395,474	68,432,638,995	
11,317,040,000			
295,736,664,211			
306,146,426,760	68,473,395,474	68,432,638,995	
175,900,723,640	96,848,048,015	-	-
11,655,916,640			
860,820,750	6,000		
163,383,986,250	96,848,042,015		
26,051,529,813,571	5,823,974,134,099	12,182,168,436,363	(620,353,137,389)

5. 성과보고서

(단위 : 개)

연번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수	달성수	미달성수
계		227	433	74	262	97
1	효과적 언론 홍보를 통한 시민의 정책 수혜 극대화 (대변인)	1	2	0	2	0
2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및 참여시정 구현 (홍보기획관)	6	13	2	10	1
3	약자동행특별시 서울 구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	3	1	2	0
4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7	13	2	9	2
5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 조성 (노동공정상생정책관)	9	12	1	9	2
6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전·평시 수도서울의 안보태세 확립 (비상기획관)	1	2	0	1	1
7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표준 도시, 서울 (디지털정책관)	8	15	6	9	0
8	범죄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단)	1	3	0	3	0
9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미래청년기획단)	1	2	0	2	0
10	신뢰가는 행정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조정 및 지원 (기획조정실)	10	18	2	14	2
11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구현 (소방재난본부)	9	23	2	13	8
12	글로벌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 보호 (경제정책실)	11	22	4	16	2
13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 (복지정책실)	7	13	1	8	4
14	사람 중심 미래교통 기반 조성 (도시교통실)	10	19	2	13	4
15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도시 조성, 미세먼지 저감으로 더 맑은 청정도시 서울 (기후환경본부)	9	14	0	10	4
16	모두가 누리는 문화매력도시 서울 (문화본부)	10	13	1	7	5
17	위기극복으로 재도약하는 관광과 스포츠 도시, 서울 (관광체육국)	5	9	2	3	4
18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사다리 구현 (평생교육국)	6	9	4	4	1
19	100세까지 건강하게「100년 건강도시 서울」 (시민건강국)	13	31	3	16	12

연번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수	달성수	미달성수
20	소통·협력·상생의 행정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 (행정국)	9	14	3	9	2
21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 (재무국)	6	12	3	6	3
22	새로운 미래공간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회복 지원 (미래공간기획관)	3	6	1	3	2
23	디자인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디자인정책관)	3	5	3	2	0
24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술심사담당관)	2	4	0	3	1
25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 (재난안전관리실)	11	15	4	10	1
26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12	24	5	11	8
27	미래에 대응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version-up 서울 도시계획 (도시계획국)	6	6	2	3	1
28	균형발전 추진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서울 구현 (균형발전본부)	10	17	0	13	4
29	품격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실현 (푸른도시여가국)	13	18	2	14	2
3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선도 도시 서울 (물순환안전국)	3	5	0	4	1
31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갈 전문 인재 양성 (인재개발원)	1	3	0	1	2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완벽한 건설 (도시기반시설본부)	5	10	0	3	7
33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조성 (미래한강본부)	2	6	0	4	2
34	수도서울의 도시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1	3	1	2	0
35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 (시립미술관)	1	6	2	2	2
36	의회운영 내실화를 통한 의회위상 제고 및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3	24	7	12	5
37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 (감사위원회)	6	11	3	7	1
38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2	2	0	0
39	서울 자치경찰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3	6	3	2	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4호(2017.1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3.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1호(2019.7.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0호(2020.5.1.)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9호(2020.10.15.)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0호(2021.3.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4호(2021.10.1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6호(2022.2.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세운6-3-4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1호(2023.10.26.) 재정비촉진계획(세운 5-1·3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0호(2023.12.7.) 재정비촉진계획(세운 3-2·3구역, 세운 3-8·9·10구역, 세운 6-3-3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호(2024.1.25.) 재정비촉진계획(세운 6-4-22·23구역)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

지구명 (지구유형)	위 치	면 적 (㎡)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2006.10 ~2023.12	2006.10 ~2035.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증감(㎡)	
합 계		439,356.4	100.0	439,356.4	100.0	-	
택지 (획지)	소 계	283,647.5	64.6	281,928.8	64.2	증) 1,718.7	
	복합개발용지	256,944.0	58.5	265,367.7	60.4	증) 8,423.7	
	남산자이	5,216.5	1.2	5,216.5	1.2	-	
	국도호텔	1,620.5	0.4	1,620.5	0.4	-	
	중앙대코플라자	1,060.6	0.2	-	-	감) 1,060.6	존치정비구역 전환
	명보아트홀	1,256.5	0.3	-	-	감) 1,256.5	존치정비구역 전환
	매일경제신문	1,778.4	0.4	-	-	감) 1,778.4	존치정비구역 전환
	세운상가군	15,771.0	3.6	9,724.1	2.2	감) 6,046.9	삼풍상가, PJ호텔:공원 결정 인현상가:공공용지 결정 세운가동, 청계, 대림, 진양상가:존치정비구역 전환
기반 시설 등	소계	155,708.9	36.0	157,427.6	35.8	감) 1,718.7	-
	공공청사	7,600.0	1.7	7,600.0	1.7	-	중구청
	학교시설	13,055.1	3.0	13,055.1	3.0	-	덕수중학교
	하 천	8,423.4	1.9	8,423.4	1.9	-	청계천
	공 원	10,115.2	2.3	32,248.4	7.3	증) 22,133.2	상가군 공원화 완료시 47,705.4㎡(10.8%)
	녹 지	3,829.7	1.7	2,498.5	0.6	감) 1,331.2	3 개소
	주차장	1,198.7	0.3	1,198.7	0.3	-	1 개소
	공공공지	1,168.3	-	1,328.4	0.3	증) 160.1	3 개소
	공공용지	657.4	-	4,100.3	0.9	증) 3,432.9	4 개소
	도 로	109,651.1	25.2	86,974.8	19.8	감) 22,676.3	-

※ 복합개발용지 면적은 사업완료구역 포함하여 산정

※ 공공용지 : 공공임대산업시설로 활용 후 필요시 유연한 용도 전환

※ 도로면적 : 청계천로, 을지로, 마른내로 포함

② 인구·주택수용계획

- 기정 9,900명, 4,950세대 → 변경 19,117명, 11,550세대

※ 목표인구 기준 : 완료구역 제외

※ 상기 인구 및 주택계획은 추후 구역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 공원계획

- 소공원 1개소 유지 및 1개소 변경, 1개소 폐지

▶ 6-3-4구역 내 소공원 1개소 유지, 3구역 공원 세분 변경(소공원→문화공원), 5구역 내 1개소 폐지

- 문화공원 1개소 유지 및 1개소 변경, 6개소 신설

▶ 시민에게 공연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원 결정(삼풍상가, PJ호텔)

▶ 북악~종묘~남산을 잇는 남북녹지축 실현의 일환으로 기존의 세운광장(문화공원) 유지 및 상가 이전부지 확보 방안에 따른 공원 4개소 신설(장기적으로 상가군 단계별 공원화 완료 목표)

구 분	기 정		변 경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합 계	4	10,117.5	9	32,248.4
소공원	3	6,369.2	1	1,316.4
문화공원	1	3,748.3	8	30,932.0

• 녹지계획

- 경관녹지 3개소 유지 : 조성 완료(6-3-4) 및 기추진 중인 구역(4구역) 내 경관녹지 유지
- 경관녹지 2개소 폐지 : 세운상가변 보행녹도 형태의 녹지 계획하였으나, 개방형녹지 대체에 따른 폐지

구 분	기 정		변 경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경관녹지	5	3,773.0	3	2,498.5

• 공공공지

- 2개소 유지, 1개소 신설 : 덕수중 후문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6-3-6)

구 분	기 정		변 경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공공공지	2	1,168.3	3	1,328.4

⑤ 교통계획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⑥ 경관계획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⑧ 기타계획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⑨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촉진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계			318,030.5	-	171개 구역
변경	계			81,030.5	-	8개 구역 (147개 구역 해제)
기정	2구역	2-1~35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38,962.6	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 구역
변경	2구역	-	-	-	-	(35개 구역 해제)
기정	3구역	3-1~10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41,326.0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 구역
변경	3구역	3-2 · 3,3-6,3-7,3-8 · 9 · 10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29,609.1	재개발사업	4개 구역
기정	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2,223.7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변경	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2,223.7	재개발사업	1개 구역
기정	5구역	5-1~11구역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	38,628.5	도시환경정비사업	11개 구역

변경	5구역	5-1 · 3구역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7,672.4	재개발사업	1개 구역 (9개 구역 해제)
기정	6-1 구역	6-1-1~32구역	중구 초동 17-1 일대	44,390.2	도시환경정비사업	32개 구역
변경	6-1 구역	-	-	-	-	(32개 구역 해제)
기정	6-2 구역	6-2-1~50구역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대	63,197.6	도시환경정비사업	50개 구역
변경	6-2 구역	-	-	-	-	(47개 구역 해제)
기정	6-3 구역	6-3-1~9구역	중구 인현동2가 125-19번지 일대	29,301.6	도시환경정비사업	9개 구역
변경	6-3 구역	6-3-3구역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대	5,801.1	재개발사업	1개 구역 (5개 구역 해제)
기정	6-4 구역	6-4-1~23구역	중구 예관동 126번지 일대	30,459.7	도시환경정비사업	23개 구역
변경	6-4 구역	6-4-22 · 23구역	중구 예관동 122-3번지 일대	5,724.2	재개발사업	1개 구역 (19개 구역 해제)

⑩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m)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기정	세운2-1~8, 25,28,29,32, 33,35구역	간선부	600 이하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60	70이하	소규모 구역
	세운2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	50이하	
	세운3-1,4,5	간선부		800 이하			80	9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3-2 · 3구역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3-6,7구역	이면부		8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 이하)	60	7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3-8 · 9 · 10구역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통합 구역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m)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따른 완화 적용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세운4구역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	70이하	통합 구역
	세운5-2,4~6 9~11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	9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5-7,8, 구역	이면부					60	70이하	
	세운5-1 · 3구역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50이하 (공공용지 60이하)	90	170이하	통합 구역
	세운6-1-1~4, 7~9,11,21,24, 29,32구역	간선부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60	70이하	소규모 구역
	세운6-1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	50이하	
	세운6-2-1~5, 7~9,35,36,41, 47,48,50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	70이하	소규모 구역
	세운6-2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	50이하	
	세운6-3-1,2,4 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	9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6-3-3구역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6-3-5~9 구역	간선부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40	50이하	소규모 구역
	세운6-4-1,4,5, 18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	70이하	
	세운6-4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	50이하	
	세운 6-4-22 · 23구역			8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통합 구역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m)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변경	세운 3-2·3구역	600이하	1,000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 3-6구역	600이하	800이하	기반시설 제공완화	60이하 (저층부 80 이하)	60	7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 3-7구역	600이하	800이하	기반시설 제공완화	60이하 (저층부 80이하)	60	7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 3-8·9·10 구역	600이하	1,000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4구역	600이하	700이하	기반시설 제공완화	60이하 (저층부 80이하)	-	70이하 (문화재 심의 높이기준 적용)	통합 구역
	세운 5-1·3 구역	600이하	1,000이하	기반시설제공,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50이하 (공공용지 60이하)	90	170이하	통합 구역
	세운 6-3-3구역	600이하	1,000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
	세운 6-4-22·23 구역	600이하	800이하	기반시설제공,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완화	통합 구역
	존치정비구역	600이하	800이하 (중심상업 지역 상향시 1,000이하)	기반시설 제공·공개공지 초과조성 완화	50이하 (심의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 가능)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공원 용지 제외

⑪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⑫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⑬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⑭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⑮ 존치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 존치정비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구역	1-1	종로구 장사동 116-4	-	증) 5,801.2	5,801.2	
	1-2	중구 산림동 207-1	-	증) 3,452.7	3,452.7	
	1-3	중구 산림동 207-2	-	증) 6,139.6	6,139.6	
	1-4	중구 인현동1가 310-68 일대	-	증) 5,662.5	5,662.5	
	1-5	중구 인현동1가 2-35	-	증) 5,759.9	5,759.9	
	1-6	중구 충무로4가 120-3	-	증) 13,752.8	13,752.8	
2구역		종로구 장사동 67일대	-	증) 38,892.2	38,892.2	
5구역	5-4	중구 주교동 123-1 일대	-	증) 15,807.2	15,807.2	
	5-5	중구 을지로4가 61 일대	-	증) 13,684.2	13,684.2	
6-1구역	6-1-1	중구 을지로3가 291-45 일대	-	증) 5,139.5	5,139.5	
	6-1-2	중구 을지로3가 272-4 일대	-	증) 9,208.1	9,208.1	
	6-1-3	중구 인현동1가 31 일대	-	증) 9,263.7	9,263.7	
	6-1-4	중구 초동 18-5 일대	-	증) 4,502.7	4,502.7	
	6-1-5	중구 인현동1가 101-3 일대	-	증) 18,592.8	18,592.8	
6-2구역	6-2-1	중구 인현동1가 111-6 일대	-	증) 6,271.7	6,271.7	
	6-2-2	중구 인현동2가 190-1 일대	-	증) 24,319.9	24,319.9	
	6-2-3	중구 충무로3가 33-1 일대	-	증) 2,939.8	2,939.8	
	6-2-4	중구 필동1가 51-5 일대	-	증) 14,828.7	14,828.7	
	6-2-5	중구 충무로4가 125-3 일대	-	증) 11,388.9	11,388.9	

6-3구역	6-3-5	중구 예관동 17-3 일대	-	증) 984.5	984.5	
	6-3-6	중구 예관동 43-1 일대	-	증) 1,308.7	1,308.7	
6-4구역	6-4-1	중구 인현동2가 181-22 일대	-	증) 23,598.3	23,598.3	
	6-4-2	중구 충무로4가 48-1 일대	-	증) 2,795.8	2,795.8	

- 이하여백 -

㈏ 존치관리구역 지정

■ 기정

- 기준1) 사업의 필요성이 적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지역(하천, 도로,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
- 기준2) 세운녹지축 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물이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어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 기준3) 건립연한이 짧고, 건립용도가 주변지역 용도와 상이하여 정비 한계로 존치가 필요한 건축물

구 분	제 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관리 및 정비계획
세운상가군	- 위치 : 종로구 장사동, 중구 산림동, 을지로4가, 인현동1,2가, 충무로4가동 일원 - 면적 : 15,771.0㎡ - 존치대상 : 세운가동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	기준2	존치관리구역	공공의 지원 및 민간의 자발적 리모델링을 통한 입체적 복합문화산업공간으로 재생 추진
중앙데코 플라자	- 위치 : 중구 을지로3가 259-1외 4필지 - 면적 : 1,060.6㎡ - 건립연도 : 1995년 - 용도 : 판매, 영업, 오피스텔	기준3	존치관리구역	건립연한이 18년에 불과하고 판매, 영업, 오피스텔 기능 활성화로 주변구역과 정비 불필요
명보아트홀	- 위치 : 중구 초동 18-5번지 외 3필지 - 면적 : 1,256.5㎡ - 건립연도 : 1994년 -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기준3	존치관리구역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주변구역과 정비 불필요
매일경제 신문사	- 위치 : 중구 필동1가 51-9번지 외 2필지 - 면적 : 1,778.4㎡ - 건립연도 : 1995년 - 용도 : 매일경제신문사	기준3	존치관리구역	언론사 사옥으로 주변 구역과 정비 불필요
덕수중학교	- 위치 :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 면적 : 13,055.1㎡	기준1	존치관리구역	초등학교 복합계획 폐지로존치(구역경계 일부 조정)
중구청	- 위치 : 중구 예관동 83-10외 99필지 - 면적 : 7,600.0㎡	기준1	존치관리구역	중구청은 서울메이커스 사업 추진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 분	제 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관리 및 정비계획
27-1구역 (국도호텔)	- 위치 : 중구 을지로4가 310번지 일원 - 면적 : 1,800.0㎡	기준3	존치관리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로 존치
32구역 (남산센트럴 자이)	- 위치 : 중구 충무로 4가 79번지 일원 - 면적 : 5,216.5㎡	기준3	존치관리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로 존치
청계천로, 을지로, 청계천	- 청계천로(청계천포함), 을지로, 마른내길	기준1	존치관리구역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 변경

- 기준1) 공공청사,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
- 기준2) 비교적 최근에 준공되어 존치가 필요한 건축물

※ 통합개발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존치관리구역에서 제외 가능

- 기준3) 지구지정 이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승인되어, 공사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구 분	제 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비고
덕수중학교	- 위치 :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 면적 : 13,055.1㎡	기준1	존치관리구역	도시계획시설
중구청	- 위치 : 중구 예관동 83-10외 99필지 - 면적 : 7,600.0㎡			중구청은 복합청사개발 추진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6-3-1·2구역 (을지트윈타워)	- 위치 : 중구 을지로4가 323번지 일원 - 면적 : 9,933.6㎡ - 건립연도 : 2019년	기준2	존치관리구역	정비사업 완료
6-2-8구역 (남산센트럴뷰 스위트)	- 위치 : 중구 인현동1가 158번지 일원 - 면적 : 1,308.4㎡ - 건립연도 : 2020년			
6-2-24구역 (더솔라고세운)	- 위치 :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원 - 면적 : 3,599.8㎡ - 건립연도 : 2023년			
6-4-21구역 (충무로 하늘N)	- 위치 :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 면적 : 1,383.9㎡ - 건립연도 : 2021년			

구 분	제 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비고
3-1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 위치 : 중구 입정동 277번지 일원 - 면적 : 4,729.7㎡ - 건립연도 : 2023년			
3-4·5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 위치 : 중구 입정동 280번지 일원 - 면적 : 6,987.2㎡ - 건립연도 : 2023년			
6-3-4구역 (세운푸르지오 헤리티지)	- 위치 : 6,500.0㎡ - 면적 : 중구 인현동2가 240번지 일원 - 건립연도 : 2023년			
5-2구역 (상생지식산업센터)	- 위치 : 1,449.0㎡ - 면적 : 중구 산림동 82-3 일원 - 건립연도 : 2023년			
27-1구역 (국도호텔)	- 위치 : 중구 을지로4가 310번지 일원 - 면적 : 1,615.2㎡ - 건립연도 : 2007년	기준3	존치관리구역	지구지정 이전에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사 중이었던 구역
32구역 (남산센트럴자이)	- 위치 : 중구 충무로 4가 79번지 일원 - 면적 : 5,216.5㎡ - 건립연도 : 2009년			

㉰ 존치지역 관리계획(신설)

구 분	내 용
존치정비구역 (세운상가군)	· 세운상가군은 공원화 추진 정책에 따라 단계별 공원화 실현 - 1994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및 1997년 2011서울도시기본계획 등 북악산~종묘~남산~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광역녹지축 연결 필요성 대두되어옴. - 최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남북녹지축 확보, 도심활성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도시개발 추진 중임. - 지속적으로 남북녹지축 조성계획이 논의된 지역으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통합재개발, 매입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의 촉진계획을 통해 실현시키도록 함. [건축제한] · 세운상가군 단계별 공원화 추진을 위해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 제한함.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치관리구역 (완료구역)	· 완료구역은 기 결정된 촉진계획 등에 따라 관리

⑯ 지구단위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구역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1단지)	중구 입정동 277번지 일원	-	증) 3,711.9	3,711.9	
기정	3-2·3구역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10,575.1	-	10,575.1	
신설	3-4·5구역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2단지)	중구 입정동 280번지 일원	-	증) 5,452.2	5,452.2	
신설	3-6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	증) 3,851.0	3,851.0	
신설	3-7구역	중구 산림동 275-3번지 일대	-	증) 2,723.1	2,723.1	
기정	3-8·9·10구역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12,496.9	-	12,496.9	
기정	5-1·3구역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7,672.4	-	7,672.4	
신설	5-2구역	중구 산림동 82-3번지 일대	-	증) 1,449.0	1,449.0	
신설	6-2-8구역 (남산센트럴뷰스위트)	중구 인현동1가 158번지 일원	-	증) 1,392.7	1,392.7	
신설	6-2-24구역 (더솔라고세운)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원	-	증) 2,866.4	2,866.4	
신설	6-3-1·2구역 (을지트윈타워)	중구 을지로4가 323번지 일원	-	증) 9,933.6	9,933.6	
기정	6-3-3구역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대	5,801.1	-	5,801.1	
신설	6-3-4구역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중구 인현동2가 240번지 일원	-	증) 3,377.2	3,377.2	
신설	6-4-21구역 (충무로하늘N)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	증) 1,383.9	1,383.9	
기정	6-4-22·23구역	중구 을지로4가 108-21번지 일대	5,724.2	-	5,724.2	
신설	중구청부지 (특별계획구역)	중구 예관동 83-10번지 일대	-	증) 7,600.0	7,600.0	

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9,356.4	-	439,356.4	100.0	
중심상업지역	29,629.8	-	29,629.8	6.7	
일반상업지역	409,726.6	-	409,726.6	93.3	

※ 을지로변 일대 등 용도지역 상향조건 충족시 중심상업지역 상향 가능

㉡ 용도지구

ⓐ 방화지구

■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서대문~종로~동대문간	65,977 (4,373.2)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종로
기정	방화지구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42,609 (9,185.7)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청계천
기정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9,241.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을지로지구
기정	방화지구	서울역앞~광희동간	55,464 (5,209.8)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퇴계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돈화문간	36,944 (10,912.1)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돈화문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원남동로터리간	27,345 (7,890.5)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창경궁로

ⓑ 개발진흥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57,600 (90,400)	서울시고시 제2010-21호 (10.1.28)	권장업종 (별도기재)
기정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중구 충무로 3·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장동 일대	303,240.59 (238,000)	서울시고시 제2017-245호 (17.7.13)	

※( )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

■ 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지구명	권장업종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업종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산업
	보조업종 : 귀금속 및 관련제품 판매·수리·도금업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업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디자인업
	보조업종 : 서적출판업,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광고대행업, 기타광고업, 종이·인쇄물 등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7	40~47 (3.5 ~6.5m)	주간선도로	4,000 (432)	서대문광장 (종로3가 45-4)	동대문광장 (종로4가 50-10)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4구역변 3.5m 완화차로 및 공원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	30~33	주간선도로	1,800 (464)	시청앞 광장	을지로6가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을지로 대림상가~삼풍상가 (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6.0m~10.6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1,600 (-)	연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177호 (62.12.8)	-
변경	대로	3	2	25~28	주간선도로	1,600 (200)	연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177호 (62.12.8)	5구역변 3m, 도로확폭 6-3구역 내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1	22~25 (-)	집산도로	1,870 (-)	와룡동 5-14	필동1가 40	일반도로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
변경	중로	1	1	22~25 (3m)	집산도로	1,870 (982)	와룡동 5-14	필동1가 40	일반도로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2, 6-1, 6-2구역변 3m 도로확폭
기정	중로	1	29	20	집산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 광장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마른내길 호텔PJ~신성상가 (마른내길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5m~44.2m)
기정	중로	2	126	4~23	집산도로	850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삼풍상가~진양상가 서측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0m~15.0m)
변경	중로	2	126	15	집산도로	345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4-17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세운상가~대림상가 서측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15.0m)
신설	중로	2	G	15	집산도로	268	인현동2가 192-53	충무로4가 305-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인현상가~진양상가 서측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폭15.0m)
기정	중로	2	127	19	집산도로	780	종로3가 32-8	충무로4가 116-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삼풍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4.0m~15.0m)
변경	중로	2	127	19	집산도로	346	종로3가 32-8	을지로4가 4-2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세운가동~대림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15.0m)
신설	중로	2	H	15	집산도로	250	인현동2가 192-30	충무로4가 120-2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인현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15.0m)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3-130호 (03.05.26)	청계천변 도로 세운상가~대림상가3층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15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87	을지로3가 164-4	입정동 139-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3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2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도로선형 및 연장 조정)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A=55㎡)
변경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3구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50	충무로4가 66-3	충무로4가 38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소로	1	2	12	국지 도로	116	산림동 250-1	입정동 12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3구역
폐지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16	주교동 170-1	산림동 83-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폐지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32	주교동 184-2	산림동 5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기정	소로	1	6	10.5	집산 도로	56	종로	배오개길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6-103호 (16.04.07)	4구역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68	장사동 182-2	종로3가 171	일반도로	-	-	2구역
신설	소로	1	B	10	국지 도로	113	산림동 12	산림동 56-8	일반도로	-	-	5구역
신설	소로	1	C	4~8	국지 도로	186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로	-	-	3구역
신설	소로	1	D	10	국지 도로	222	인현동2가 110-5	을지로4가 311-8	일반도로	-	-	6-1구역
기정	소로	1	E	10	국지 도로	54	충무로4가 86-3	충무로4가 47-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신설	소로	1	F	10	국지 도로	270	충무로4가 125-3	인현동2가 135-55	일반도로	-	-	6-2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21	장사동 182-3	장사동 233-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221	장사동 130-1	장사동 18-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선형 정형화 및 도로 확폭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08	인현동1가 99-1	을지로3가 282-9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변경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08	인현동1가 101-1	을지로3가 28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선형 정형화 및 도로 확폭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230	인현동1가 94-3	을지로4가 314-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2	4	8	국지 도로	34	인현동2가198-2	인현동2가 99-1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36	초동 39-8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87	충무로3가 34-8	인현동1가 110-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소로	3	28	4	국지 도로	36	인현동1가 110-10	인현동1가 110-1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충무로4가 125-44	충무로3가 34-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중로	3	C	12~14.5	국지 도로	208	충무로4가 127-7	충무로3가 34-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선형 정형화 및 도로 확폭
폐지	소로	2	8	8	국지 도로	140	필동2가 5-3	충무로4가 5-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2	9	8	국지 도로	115	필동2가 13-20	충무로4가 125-4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2	10	8	국지 도로	70	충무로4가 125-54	충무로4가 129-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17	을지로4가 293-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3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7	인현동2가 181-47	인현동2가 15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폐지	소로	2	13	8	국지도로	73	충무로4가 38	인현동2가 181-1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폐지	소로	3	1	4	국지도로	219	장사동 106-2	장사동 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19	종로3가 162-1	종로3가 45-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78	장사동 41-2	장사동 26-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79	장사동 47-5	장사동 57-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86	장사동 74	장사동 83-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70	장사동 221-3	장사동 212-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55	장사동 204-1	장사동 19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67	을지로3가 291-18	을지로3가 291-4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0	4	국지도로	122	을지로3가 285-3	을지로3가 271-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1	6	국지도로	92	인현동1가 55-3	초동 2-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65	인현동1가 5-15	인현동1가 31-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3	6	국지도로	35	초동 2-22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4	6	국지도로	73	인현동1가 58-20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5	4	국지도로	61	인현동1가 59-20	인현동1가 99-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6	6	국지도로	85	인현동1가 5-10	인현동2가 95-1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7	6	국지도로	77	인현동2가 99-28	인현동1가 70-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8	8	국지도로	211	충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소로	3	18	3	국지도로	55	충무로4가 149-41	충무로4가 149-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19	6	국지도로	73	인현동2가 192-20	인현동2가 20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20	6	국지도로	88	인현동2가 182-11	인현동2가 22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73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소로	3	21	3~6	국지도로	58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1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22	6	국지도로	82	충무로4가 6-24	인현동2가 189-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23	6	국지도로	40	필동2가 6-13	필동2가 6-1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45	인현동2가 63	인현동2가 15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3구역
폐지	소로	3	25	6	국지도로	85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36-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폐지	소로	3	26	4	국지도로	76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79	충무로4가 55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변경	소로	3	27	6	국지도로	55	인현동4가 56-3	충무로4가 33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획지 전환에 따른 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A	4	국지도로	52	을지로4가 310-14	을지로4가 310-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540호 (23.12.07)	-

※( )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2	대로 3-2	• 변경 :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 5구역 내 도로 3m 확폭을 통한 보도 확보 • 6-3구역 내 덕수중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조정
중로 1-1	중로 1-1	• 변경 : 구역 내 도로 확폭	• 2구역, 6-1구역, 6-2구역 내 도로 3m 확폭을 통한 보도 확보
중로 2-126	중로 2-126	• 변경 - 연장 변경 850m → 345m - 폭원 변경 4~23m → 15m -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구간 변경	• 공원 결정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 기존 확폭계획에서 존치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변경 •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	중로 2-G	• 신설 -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 구간 축소	• 중로 2-126 도로 분절에 따라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인현상가~진양상가)3층 보행데크 반영
중로 2-127	중로 2-127	• 변경 - 연장 변경 780m → 346m -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구간 변경	• 공원 결정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	중로 2-H	• 신설 -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 구간 축소	• 중로 2-127 도로 분절에 따라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인현상가~진양상가)3층 보행데크 반영
중로 3-2	중로 3-2	• 변경 - 도로 선형 조정 - 연장 변경 : 197m → 192m	• 도로 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중로 3-3	중로 3-3	•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폐지	• 인접구역의 연결통로계획 변경으로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4	-	• 도로폐지	• 5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5	-	• 도로폐지	
-	소로 1-A	• 도로신설	• 세운지구 남북측 기존 교통망을 고려하여 2구역 동측 도로 신설
-	소로 1-B	• 도로신설	• 5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분할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C	• 도로신설	• 3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분할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D	• 도로신설	• 세운지구 남북측 기존 교통망을 고려하여 6-1구역 동측 신설
-	소로 1-F	• 도로신설	• 세운지구 남북측 기존 교통망을 고려하여 6-2구역 동측 신설
소로 2-1	중로 3-A	• 변경 : 폭원 변경 8m → 12m	• 2구역 내 통과도로의 도로 정형화 및 확폭
소로 2-2	중로 3-B	• 변경 : 폭원 변경 8m → 12m	• 6-1구역 내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 2-3	-	• 도로폐지	• 6-1구역의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4	-	• 도로폐지	• 6-2구역의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5	-	• 도로폐지	
소로 2-6	소로 3-28	• 변경 : 폭원 변경 8m → 4m 연장 변경 187m → 36m	• 6-2구역 내 일부 존치정비구역 전환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및 연장 변경
소로 2-7	중로 3-C	• 변경 : 폭원 변경 8m → 12~14.5m 연장 변경 217m → 208m	• 6-2구역 내 통과도로의 도로 정형화 및 확폭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8	-	• 도로폐지	• 6-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9	-	• 도로폐지	
소로 2-10	-	• 도로폐지	
소로 2-12	-	• 도로폐지	• 6-4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13	-	• 도로폐지	
소로 3-1	-	• 도로폐지	• 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	-	• 도로폐지	
소로 3-3	-	• 도로폐지	
소로 3-4	-	• 도로폐지	
소로 3-5	-	• 도로폐지	
소로 3-6	-	• 도로폐지	
소로 3-7	-	• 도로폐지	
소로 3-9	-	• 도로폐지	• 6-1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10	-	• 도로폐지	
소로 3-11	-	• 도로폐지	
소로 3-12	-	• 도로폐지	
소로 3-13	-	• 도로폐지	
소로 3-14	-	• 도로폐지	
소로 3-15	-	• 도로폐지	
소로 3-16	-	• 도로폐지	
소로 3-17	-	• 도로폐지	
소로 3-18	-	• 도로폐지	• 6-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19	-	• 도로폐지	
소로 3-20	-	• 도로폐지	
소로 3-21	소로 3-21	• 변경 : 폭원 변경 6m → 3~6m 연장 변경 73m → 58m	• 6-2구역 내 일부 존치정비구역 전환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및 연장 변경
소로 3-22	-	• 도로폐지	• 6-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3	-	• 도로폐지	
소로 3-25	-	• 도로폐지	• 6-4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6	-	• 도로폐지	
소로 3-27	소로 3-27	• 변경 : 연장 변경 179m → 55m	• 6-4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 보행자전용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8	6	특수도로	8	산림동 233-1	산림동 233-1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중로2-126 중복결정(L=4m) 및 입체적결정 (L=4m)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17	인현동2가 239-6	인현동2가 159-4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경관녹지(4) 중복결정(L=1) 중로3-3 중복결정(L=12m) 및 입체적결정 (L=4m)
폐지	소로	3	36	4.6	특수도로	12	을지로4가 323-1	을지로4가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7-394호 (17.11.9)	중로3-3 중복결정 (L=12m)
기정	소로	3	37	4.3~10.5	특수도로	50	을지로4가 310-5	을지로4가 310-13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372호 (18.11.22)	6-3-3구역 공공공지(2) 내 지하도로 (지하연결통로)
기정	소로	3	38	2.5~5.5	특수도로	47	인현동2가 239-6	인현동2가 239-6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372호 (18.11.22)	6-3-1,2구역 경관녹지(4) 내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	3~15	특수도로	-	삼풍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삼풍상가~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변경	소로	3	B	3~15	특수도로	880	세운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세운상가~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하부 도로 및 공원(①-4,6)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	3~15	특수도로	-	삼풍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삼풍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변경	소로	3	C	3~15	특수도로	880	세운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세운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하부 도로 및 공원(①-4,6) 중복결정

※ 보행자전용도로의 길이, 폭, 높이,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36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인접 구역의 연결통로계획 변경으로 보행자전용도로 불필요에 따른 폐지
소로 3-	소로 3-B	상가군 서측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 변경 : 삼풍상가~진양상가 → 세운상가~진양상가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소로 3-	소로 3-C	상가군 동측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 변경 : 삼풍상가~진양상가 → 세운상가~진양상가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 도로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162.99	감) 162.99	-	서울시고시 제2017-394호 (17.11.9)	6-3-1, 2구역 세운데크
				길이(m)		33.90	감) 33.90	-		
				폭(m)		3.00~6.15	감) 3.00~6.15	-		
				높이(m)		25.50~38.35	감) 25.50~38.35	-		
세부 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삼풍상가 데크(계획)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 지상부(1F) A=110.61㎡ / H = 25.50 ~ 30.40m - 지상부(2F) A= 45.97㎡ / H=30.40 ~ 33.55m - 지상부(3F) A=6.41㎡ / H=33.55 ~ 38.35m									
기정	-	소로 3-28	산림동 233-1	길이(m)		4	-	4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폭(m)		6	-	6		
				높이(m)	도시계획시설	지상5~10	-	지상5~10		
					비도시계획시설	지상5미만 ~지상10초과	-	지상5미만 ~지상10초과		
기정	-	소로 3-29	인현동2가	길이(m)		4	-	4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폭(m)		6	-	6		
				높이(m)	도시계획시설	지상4~9	-	지상4~9		
					비도시계획시설	지상4미만 ~지상9초과	-	지상4미만 ~지상9초과		

※ 산림동 233-1 소로 3-28은 지상 5m(평균해수면 기준 28.4m) ~ 지상 10m(평균해수면 기준 33.4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높이는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현동2가 159-4 평균해수면 기준 29.5m 기준 지상 4m(평균해수면 기준 33.5m) ~ 지상 9m(평균해수면 기준 38.5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평균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도로의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126	집산도로	종로3가 32-3일대 (세운상가 서측)	면적(㎡)	5,193.4	-	5,193.4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7호	
				길이(m)	295.1	-	295.1		
				폭(m)	12.9 ~ 14.5	-	12.9 ~ 14.5		
				높이(m)	23.0 ~ 31.5	-	23.0 ~ 31.5		
기정	2-127	집산도로	을지로4가 250 일대 (세운상가 동측)	면적	5,257.3	-	5,257.3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7호	
				길이(m)	296.5	-	296.5		
				폭(m)	12.9 ~ 14.5	-	12.9 ~ 14.5		
				높이(m)	22.7 ~ 31.5	-	22.7 ~ 31.5		
세부 사항	• 공간적 범위 결정 - 대로 2-3, 종로 1-29, 1-126, 1-127 상부 - 세운상가군 상부데크 메이커스 큐브 설치								

■ 지하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	4~22 (4~17)	특수 도로	2,780 (464)	시청역 (을지로 3가역)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을지로4가역)	지하공공 보도시설	-	83.9.16	시청광장~을지로 지하상가 (을지스타몰 3구역)
변경	대로	3	A	4~26 (4~26)	특수 도로	2,780 (464)	시청역 (을지로 3가역)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을지로4가역)	지하공공 보도시설	-	83.9.16	시청광장~을지로 지하상가 (을지스타몰 3구역) 대로2-3 중복결정 (A=8,034.3㎡) 종로3-1 중복결정 (A=83.7㎡) 입체적 결정(A=286.6㎡)

※ ( )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당사항임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4호, '05.10.7.)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 완료일을 최초결정일로 봄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대로 3-A	면적(㎡)	-	증) 286.6	286.6	평균 해수면 기준
		길이(m)	-	증) 44.1	44.1	
		폭(m)	-	증) 14.4	14.4	
		높이(m)	-	증) 11.7~28.8	11.7~28.8	
세부 사항	기정			변경		
	-			• 을지3가 1번 출입구 입체적 결정 범위 - 지상부: A=70.3㎡, H=24.1m~28.8m - 지하부: A=218.1㎡, H=13.3m~24.1m • 을지3가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입체적 결정 범위 - 지상부: A=49.0㎡, H=24.1m~28.8m - 지하부: A=49.0㎡, H=11.7m~24.1m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	대로 3-A	• 노선번호 부여 및 시설범위 확대 • 입체적 결정 신설 (A : 286.6㎡, L : 44.1m, B : 14.4m, H : 11.7m~28.8m)	• 기 설치된 시청광장~을지로 지하상가를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선번호 부여 • 을지로 지하상가 중 을지스타몰3구역 지하상가 확장을 위해 촉진지구 내 시설범위 확대 • 을지스타몰3구역 을지3가 1,2번 출입구 이설계획에 따라 3-8·9·10구역 획지 내 입체적 결정 신설

ⓑ 철도(변경)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대	(80)	(1,397)	건교부고시 제695호 (90.10.19)	철도(지하부분) 일부구간 도로 및 녹지로 중복결정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벽제~양재동간	40.7㎞ (310)	(3,479)	건교부고시 제53호 (80.2.22)	3호선
기정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 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59.4 (343.2)	건교부고시 제151호 (91.3.25)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기정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 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998.5	건교부고시 제232호 (77.12.1)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	-	4,728.7 (400.7)	서울시고시 제46호 (82.2.3)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변경	5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	206	5,893.4 (595.8)	서울시고시 제46호 (82.2.3)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는 지구내 면적임

■ 철도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철도	을지로4가 206-1 일대	면적(㎡)	69.7	-	69.7	서울시고시 제2014-389호 (14.11.13)	
				길이(m)	8.6	-	8.6		
				폭(m)	10.0	-	10.0		
				높이(m, 지하)	14.6 ~ 30.4	-	14.6 ~ 30.4		
세부 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창경궁로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A=19.3㎡ / H=24.5 ~ 31.0m - 지하부 A=69.7㎡ (지상중복 19.3㎡) / H=14.6 ~ 24.5m								
기정	4	철도	을지로4가 250 일대	면적(㎡)	728.5	-	728.5	서울시고시 제2014-389호 (14.11.13)	
				길이(m)	53.9	-	53.9		
				폭(m)	33.1	-	33.1		
				높이(m, 지하)	13.5 ~ 31.6	-	13.5 ~ 31.6		
세부 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을지로4가 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 지상부 A=292.6㎡ / H=24.5 ~ 31.6m - 지하부 A=637.6㎡ (지상중복 204.4㎡) / H=13.5 ~ 24.5m •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2.7㎡ / H=15.4 ~ 22.8m								
변 경	5	철도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342.7	감) 13.1	329.6	서울시고시 제2023-540호 (23.12.7)	
				길이(m)	40.2	증) 3.1	43.3		
				폭(m)	19.4	감) 0.5	18.9		
				높이(m, 지하)	11.1 ~ 29.2	감)0.8~증)0.2	10.3~29.4		
세부 사항	기정				변경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 A=141.8㎡, H=24.7m~29.2m - 지하부 A=299.9㎡, H=11.1m~24.7m				• 입체적 결정 범위(평균해수면 기준) - 지상부: A=152.0㎡, H=24.7m~29.4m - 지하부: A=219.4㎡, H=10.3m~24.7m				

ⓒ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예관동 52-11번지 일원	1,198.7	-	1,198.7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08)	

■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공간적 범위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주차장	예관동 52-11번지 일원	면적(㎡)	• 주차장 - 지상1층 40㎡ 이상 - 지하층 200㎡ 이상 • 비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지상1층 일부, 지하층 일부)을 제외한 모든 구간	-	• 주차장 - 지상1층 40㎡ 이상 - 지하층 200㎡ 이상 • 비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지상1층 일부, 지하층 일부)을 제외한 모든 구간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08)	지하:주차장 지상:비도시계획시설 (산업앵커시설)
				층수		-			

㉡ 공간시설 : 변경

ⓐ 공공공지 :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산림동 90-4	240.9	-	240.9	서울시고시 제2023-471호	5구역
기정	2	공공공지	을지로4가 310-16	927.4	-	927.4	서울시고시 제2023-540호	6-3-3구역 국도호텔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결정
신설	3	공공공지	인현동2가 1-1	-	증) 160.1	160.1	-	6-3-6구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60.1㎡ - 중구 인현동2가 1-1	• 덕수중 후문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6-3-6)

ⓑ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장사동 142	1,173.4	-	1,173.4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57-3	891.3	-	891.3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폐지	5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135-48	517.2	감) 517.2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폐지	6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181-31	757.3	감) 757.3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종로4가 32-8	433.8	-	433.8	서울시고시 제2016-103호 (16.04.07)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세운상가군변 보행녹도 형태의 경관녹지를 개방형녹지로 대체
6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세운상가군변 보행녹도 형태의 경관녹지를 개방형녹지로 대체

ⓒ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공원	문화공원	종로3가 175-4	3,748.3	-	3,748.3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폐지	2	공원	소공원	산림동 56-5	2,409.6	감) 2,409.6	-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신설	1-2	공원	문화공원	장사동 182-13	-	증) 2,365.3	2,365.3	-	2구역
변경	2	공원	문화공원	입정동 97-4	2,643.2	-	2,643.2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3구역
기정	3	공원	소공원	예관동 53-4	1,316.4	-	1,316.4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신설	1-3	공원	문화공원	을지로4가 26	-	증) 4,160.4	4,160.4	-	5구역
신설	1-4	공원	문화공원	인현동1가 2-13	-	증) 5,662.5	5,662.5	-	(삼풍상가) 대림~인현상가 3층 연결부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폭3.0~13.0m)
신설	1-5	공원	문화공원	인현동2가 95-9	-	증) 2,824.1	2,824.1	-	6-1구역
신설	1-6	공원	문화공원	인현동1가 2-35	-	증) 5,759.9	5,759.9	-	(PJ호텔) 대림~인현상가 3층 연결부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폭3.0~13.0m)
신설	1-7	공원	문화공원	충무로4가 21-1	-	증) 3,768.3	3,768.3	-	6-2구역

※ 상기 면적은 캐드 구적상 면적으로 작성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문화공원	• 공원 번호 변경 - 1 → 1-1	• 공원도면번호 변경
2	소공원	• 공원 폐지	• 구역 분할에 따른 공원 폐지
1-2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2	문화공원	• 공원 세분 및 번호 변경 - 3 → 2 - 소공원 → 문화공원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세분 변경
1-3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4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5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6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7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중학교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13,055.1	-	13,055.1	서울시고시 제10호 (79.1.10)	덕수 중학교

ⓑ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공공청사	중구 예관동 83-10번지 일원	7,600.0	-	7,600.0	서울시고시 106호 (77.3.15)	중구청

㉣ 방재시설 : 변경없음

ⓐ 하천 : 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1,2급 (지방2급)	종로구 서린동 148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	-	5.76km -지방1급 : 1.31km -지방2급 : 4.45km	19~113 (20~22)	-	서울시 고시 제2003-423호 (2003.12.26)	청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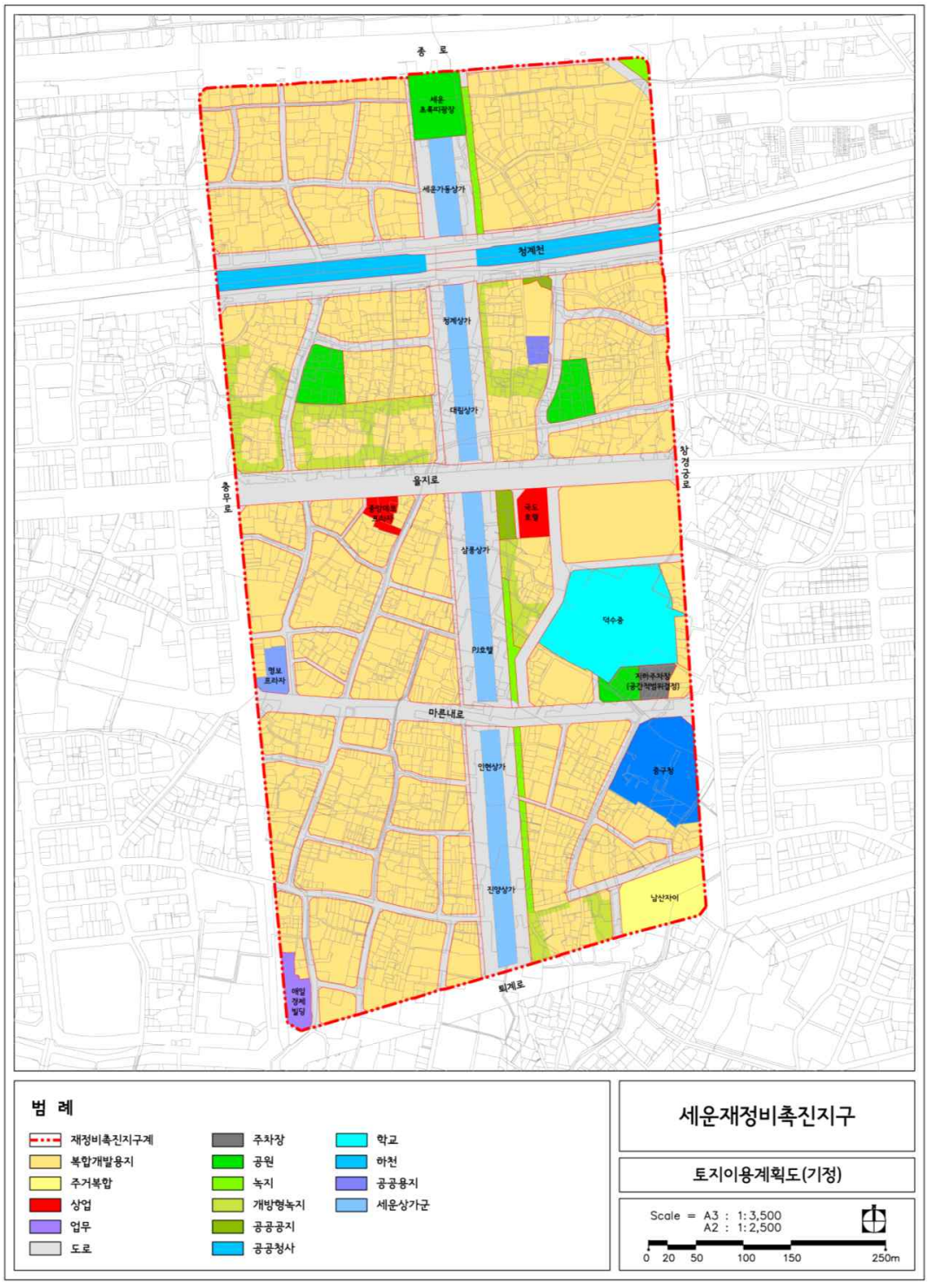
※( )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하천 폭원임

※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생략(결정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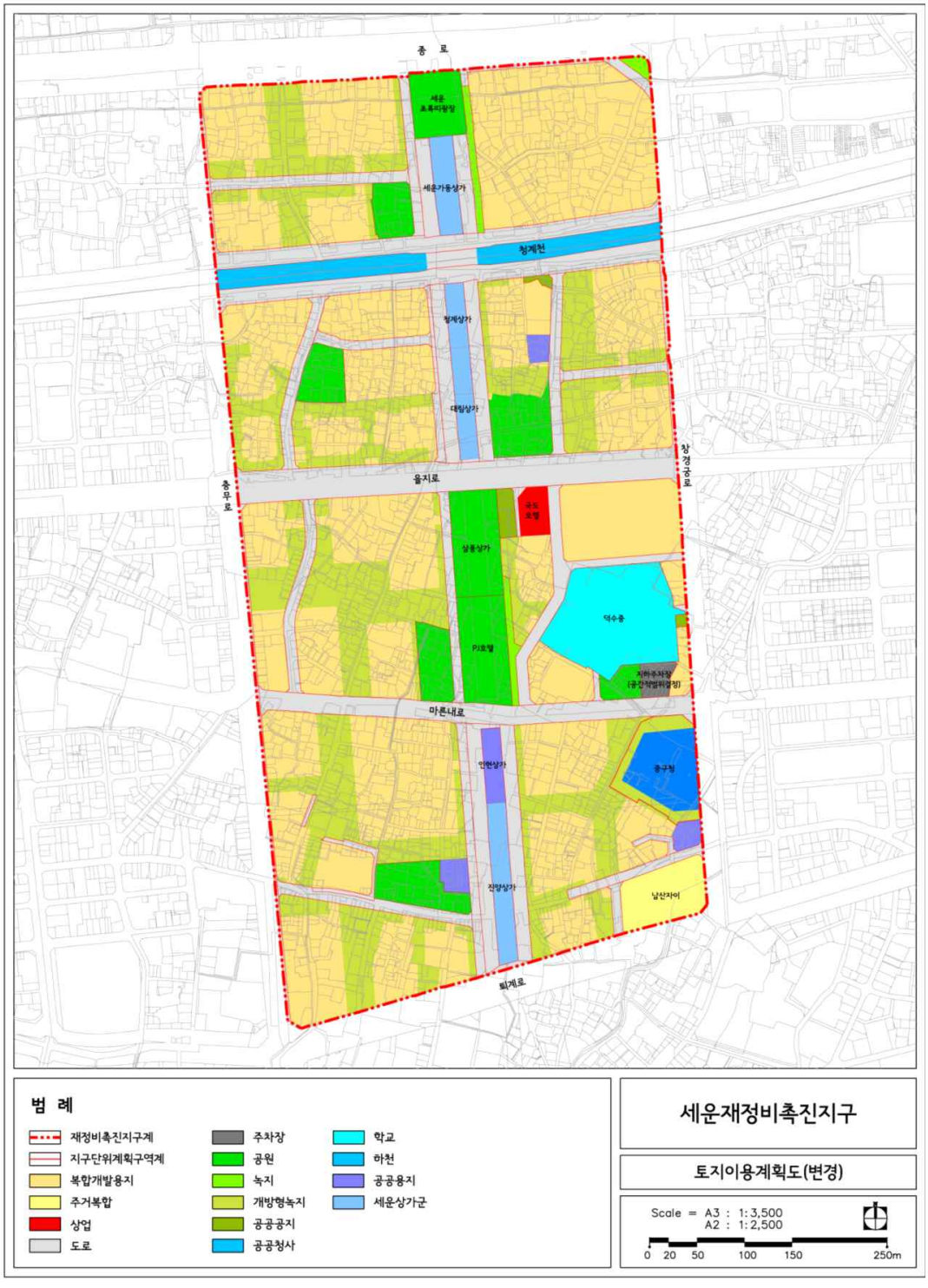
라. 관계도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마.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645) 및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개발과(☎02-2148-2694),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02-3396-575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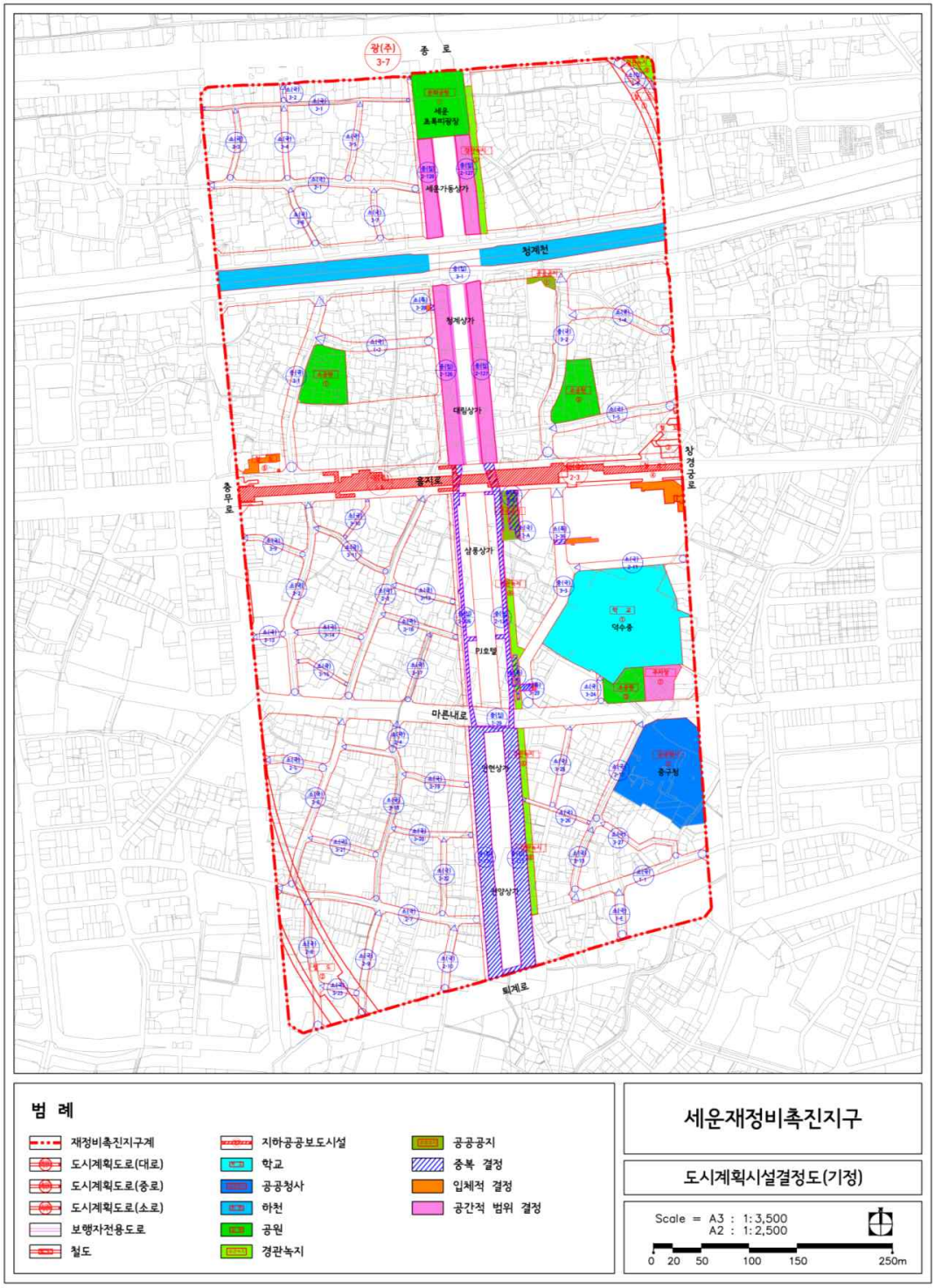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종 로
세운
초록띠광장
세운가동상가
청계천
청계상가
대림상가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중앙대로
주차장
국도
호텔
삼풍상가
덕수궁
3호선
정보
프라자
지하주차장
(공간적법위결정)
마른내로
인현상가
종구청
진양상가
남산자이
퇴계로
매일
경제
빌딩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복합개발용지
주거복합
상업
업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개방형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하천
공공용지
세운상가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기정)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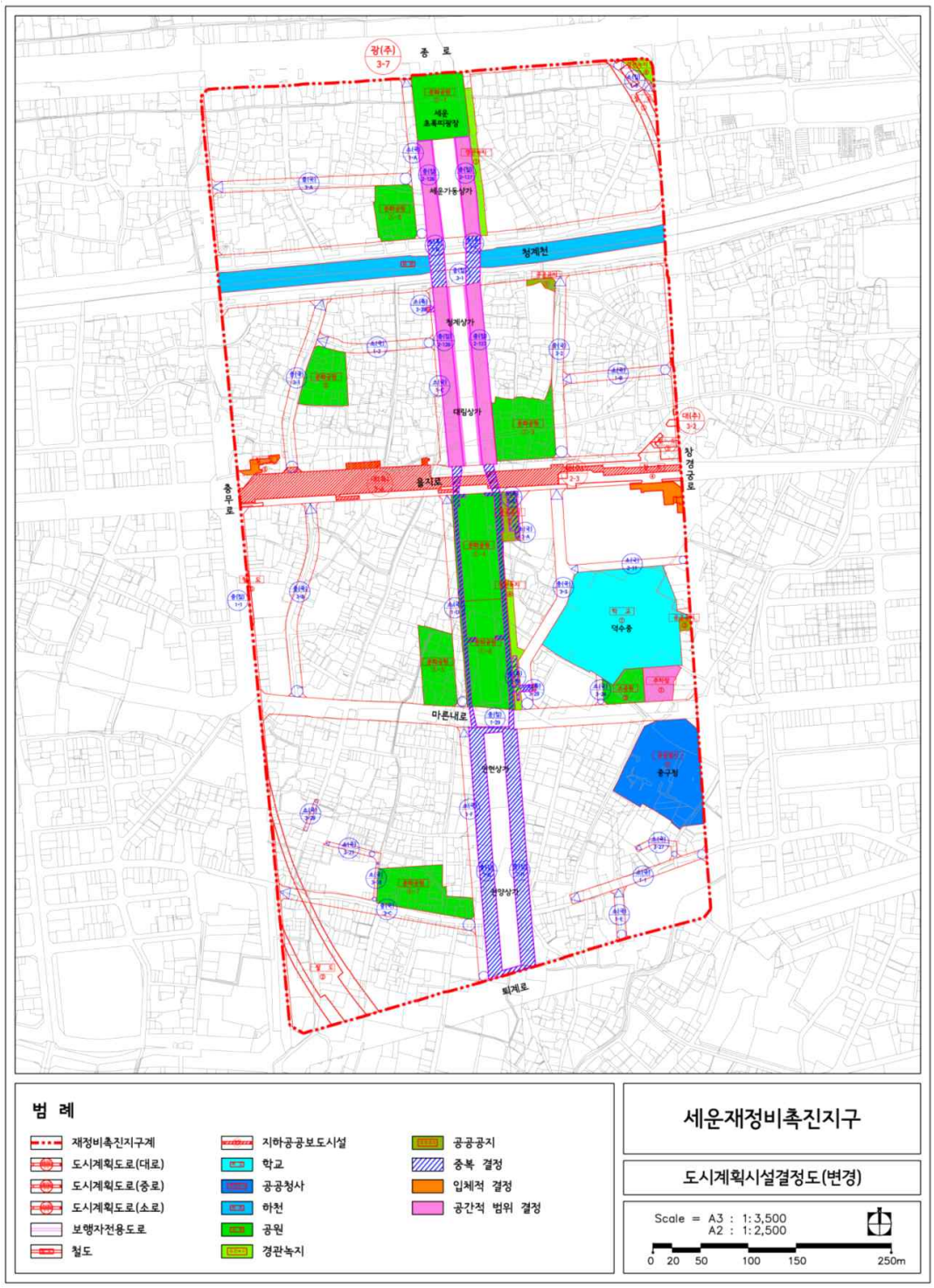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종 로
세운 초록띠광장
세운가동상가
청계천
청계상가
대림상가
을지로
창경궁로
충무로
국도 호텔
삼풍상가
P1호텔
덕수홍
지하주차장 (공간정법위결정)
마른내로
인현상가
중구청
진양상가
남산자이
퇴계로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복합개발용지
주거복합
상업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개방형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하천
공공용지
세운상가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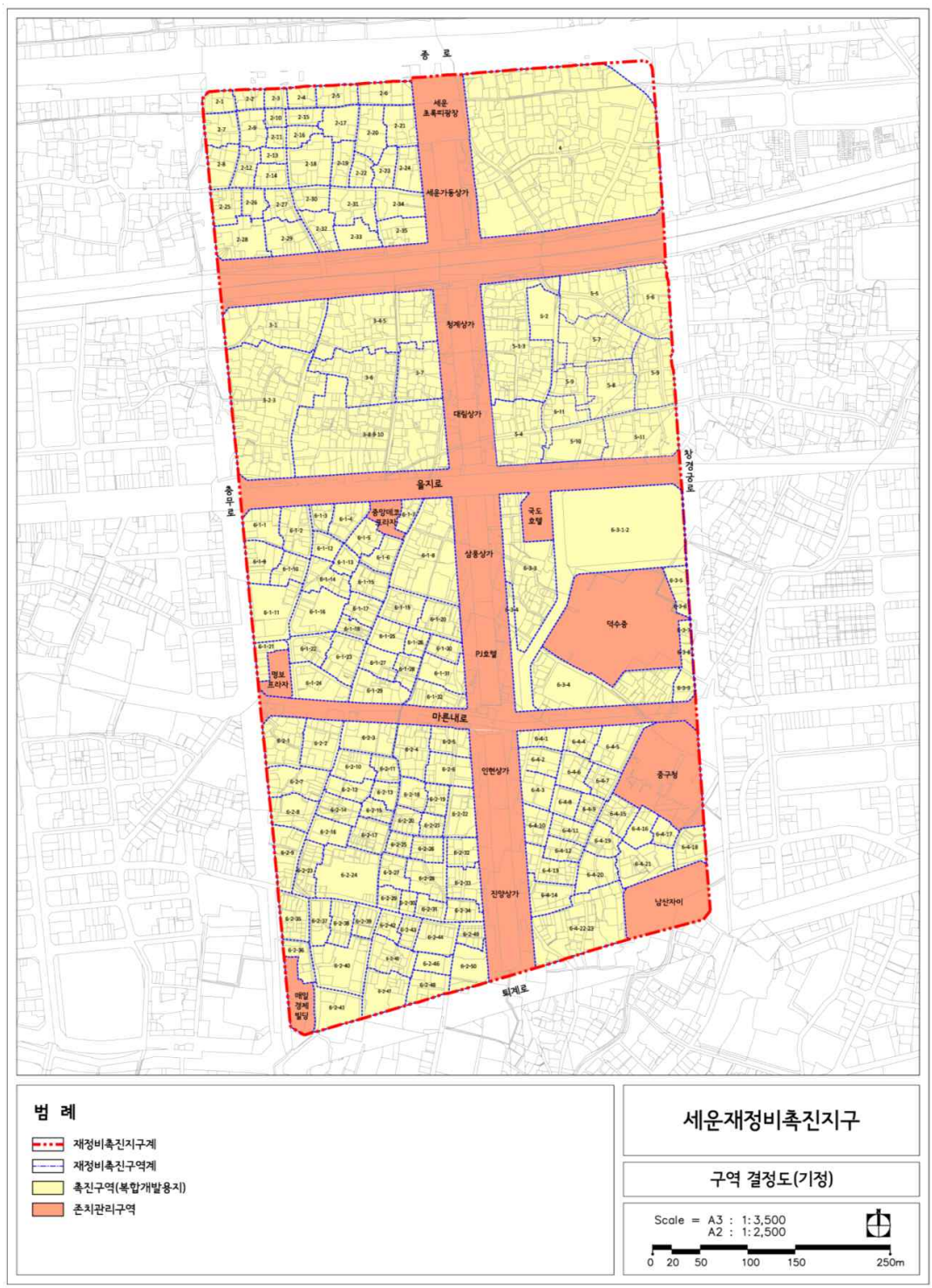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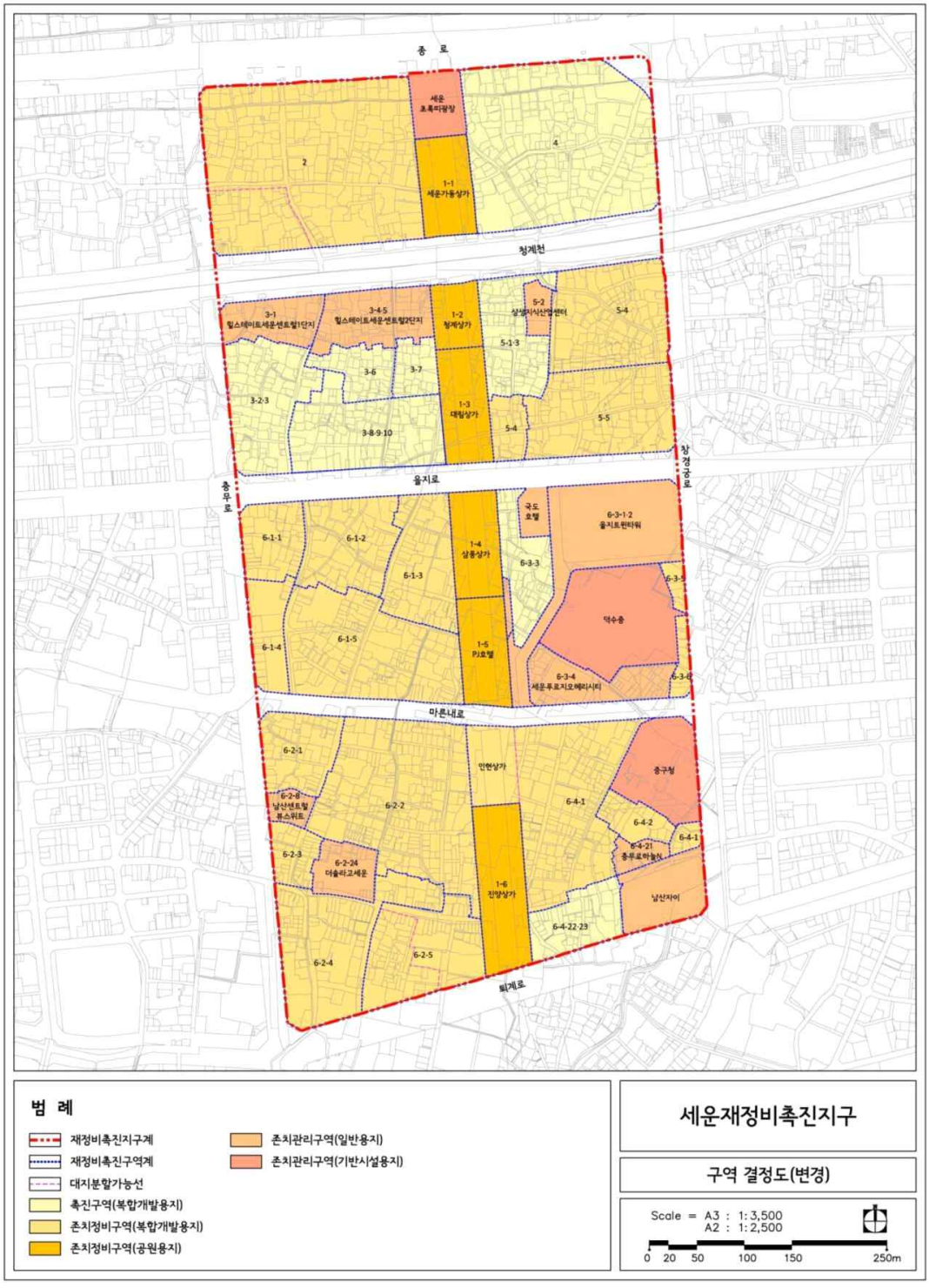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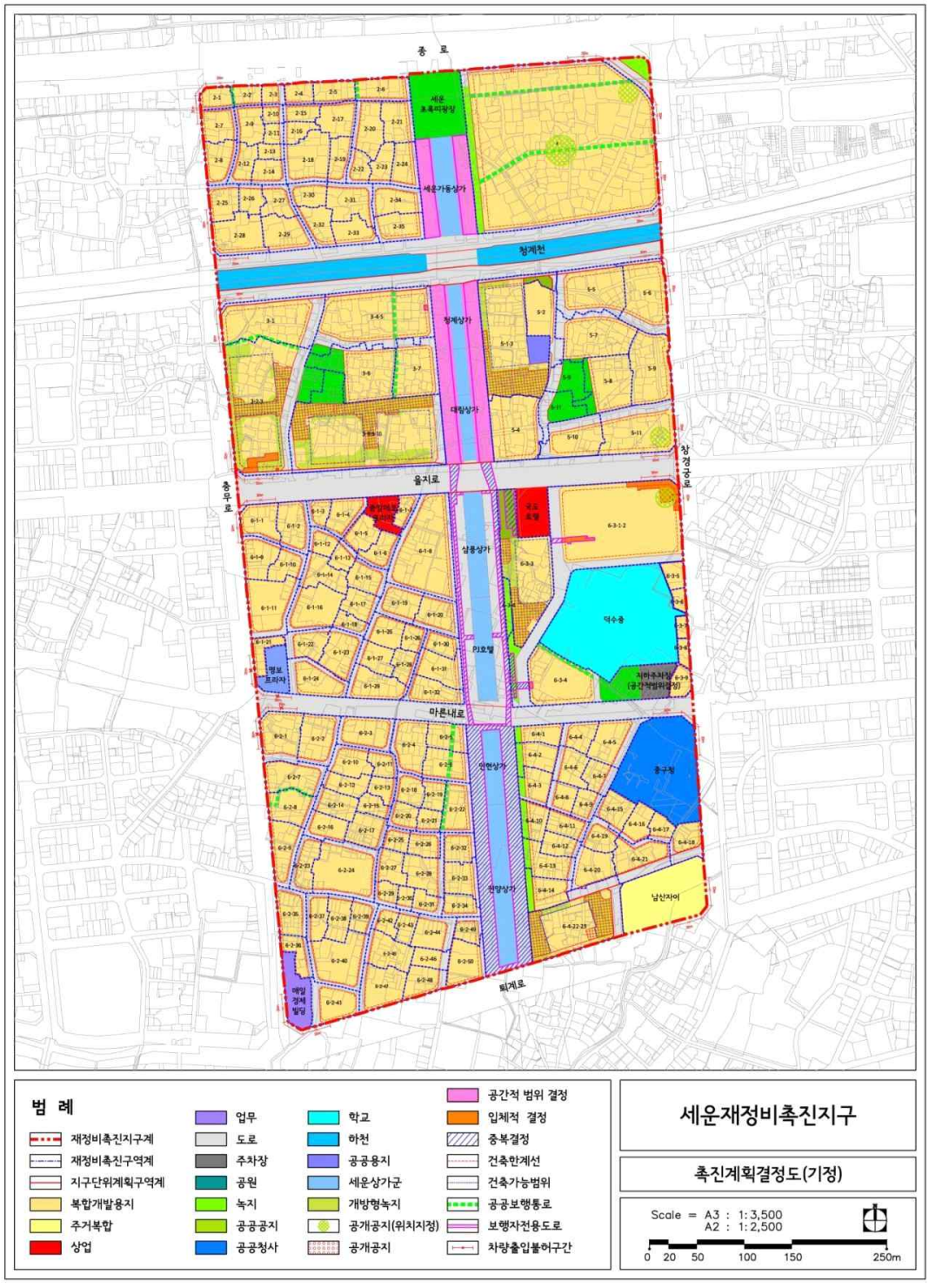
< 구역결정도(기정) >


종 로
세운
초록띠광장
세운가동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을지로
창경궁로
충무로
중앙데코
플리자
국도
호텔
삼풍상가
덕수종
PJ호텔
명보
프라자
마른내로
인현상가
종구청
진양상가
남산자이
퇴계로
매입
경복
빌딩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촉진구역(복합개발용지)
존치관리구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 결정도(기정)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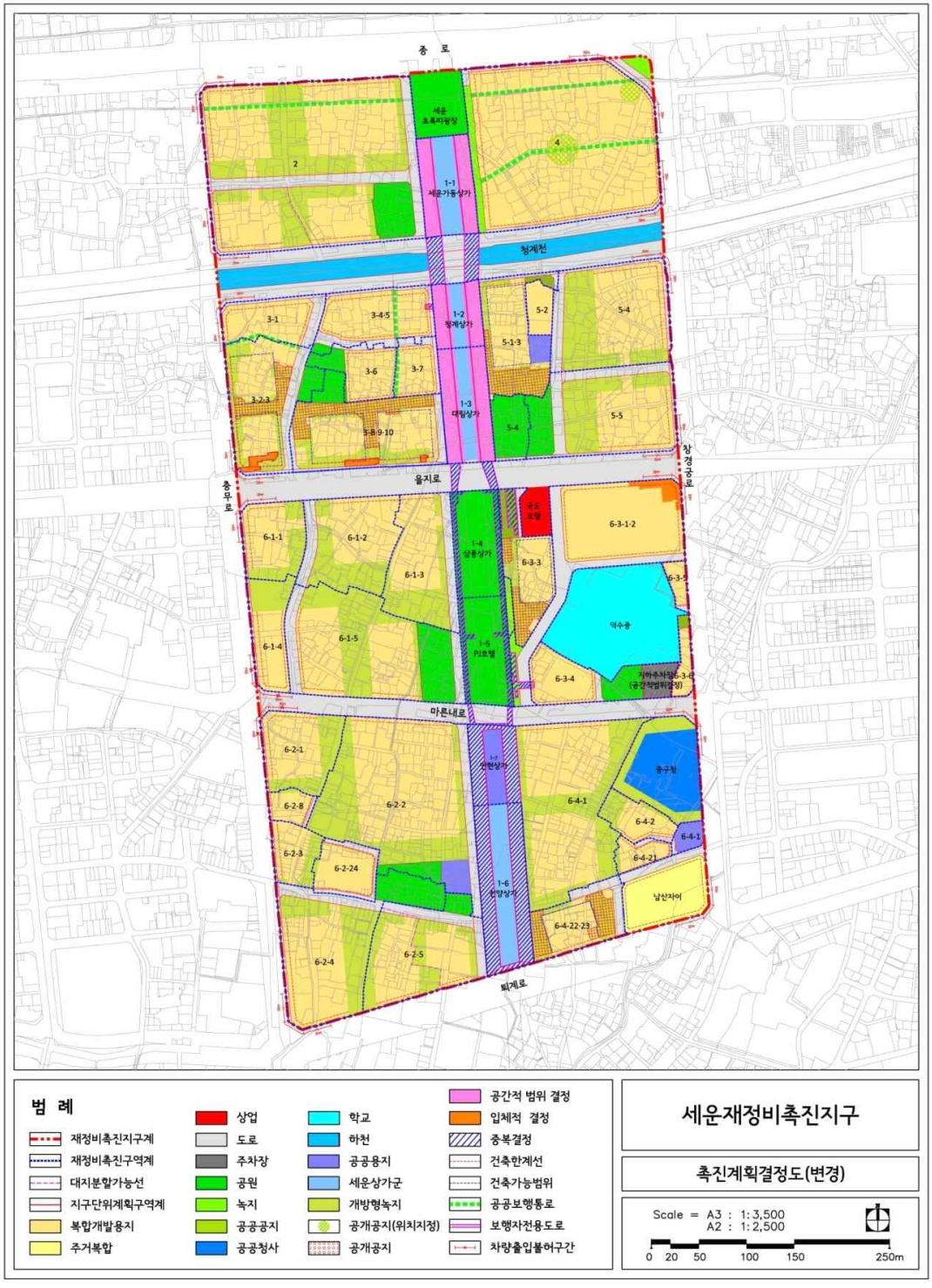
< 구역결정도(변경) >


종 로
청계천
을지로
마른내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
세운 초록띠광장
1-1 세운가동상가
1-2 청계상가
1-3 대림상가
1-4 삼풍상가
1-5 PJ호텔
1-6 진양상가
3-1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1단지
3-4-5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2단지
5-2 삼보지식산업센터
국도 호텔
6-3-1-2 을지로힌타워
덕수종
6-3-4 세운루로지오메리시티
인현상가
중구청
6-2-8 남산센트럴 푸르지오
6-2-24 더솔라고세운
6-4-21 종루로하늘채
남산자이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대지분할가능선
촉진구역(복합개발용지)
존치정비구역(복합개발용지)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
존치관리구역(일반용지)
존치관리구역(기반시설용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 결정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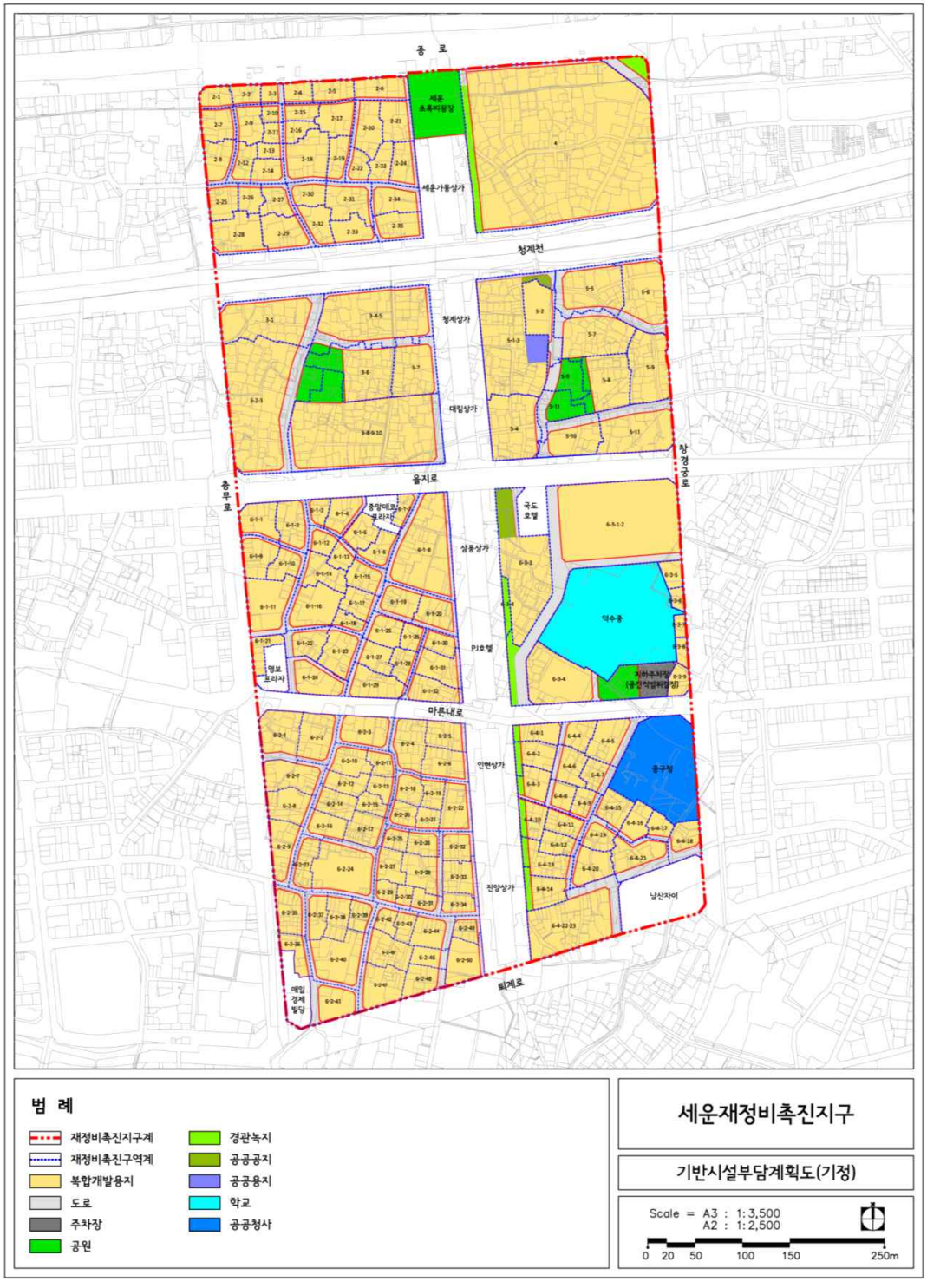
< 촉진계획결정도(기정) >


종 로
청계천
을지로
마른내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신한빌딩
현대상가
한양상가
덕수궁
중구청
남산지이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복합개발용지
주거복합
상업
업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하천
공공용지
세운상가군
개방형녹지
공개공지(위치지정)
공개공지
공간적 범위 결정
입체적 결정
중복결정
건축한계선
건축가능범위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결정도(기정)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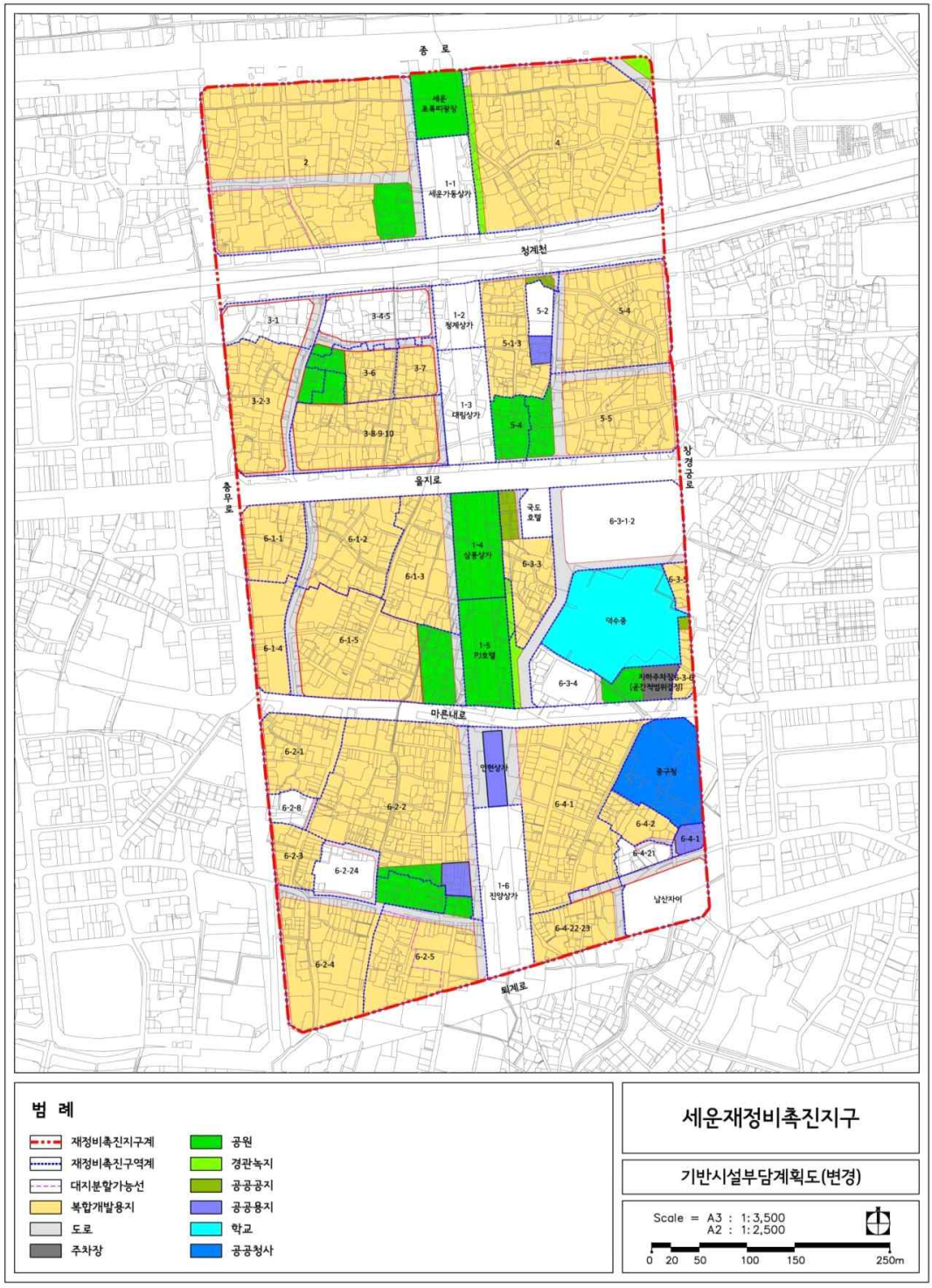
< 촉진계획결정도(변경) >


종 로
세운 초록띠광장
1-1 세운가동상가
청계천
1-2 청계상가
1-3 대림상가
1-4 삼풍상가
1-5 PJ호텔
1-6 신현상가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마른내로
퇴계로
남산자이
범 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대지분할가능선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복합개발용지
주거복합
상업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하천
공공용지
세운상가군
개방형녹지
공개공지(위치지정)
공개공지
공간적 범위 결정
입체적 결정
중복결정
건축한계선
건축가능범위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결정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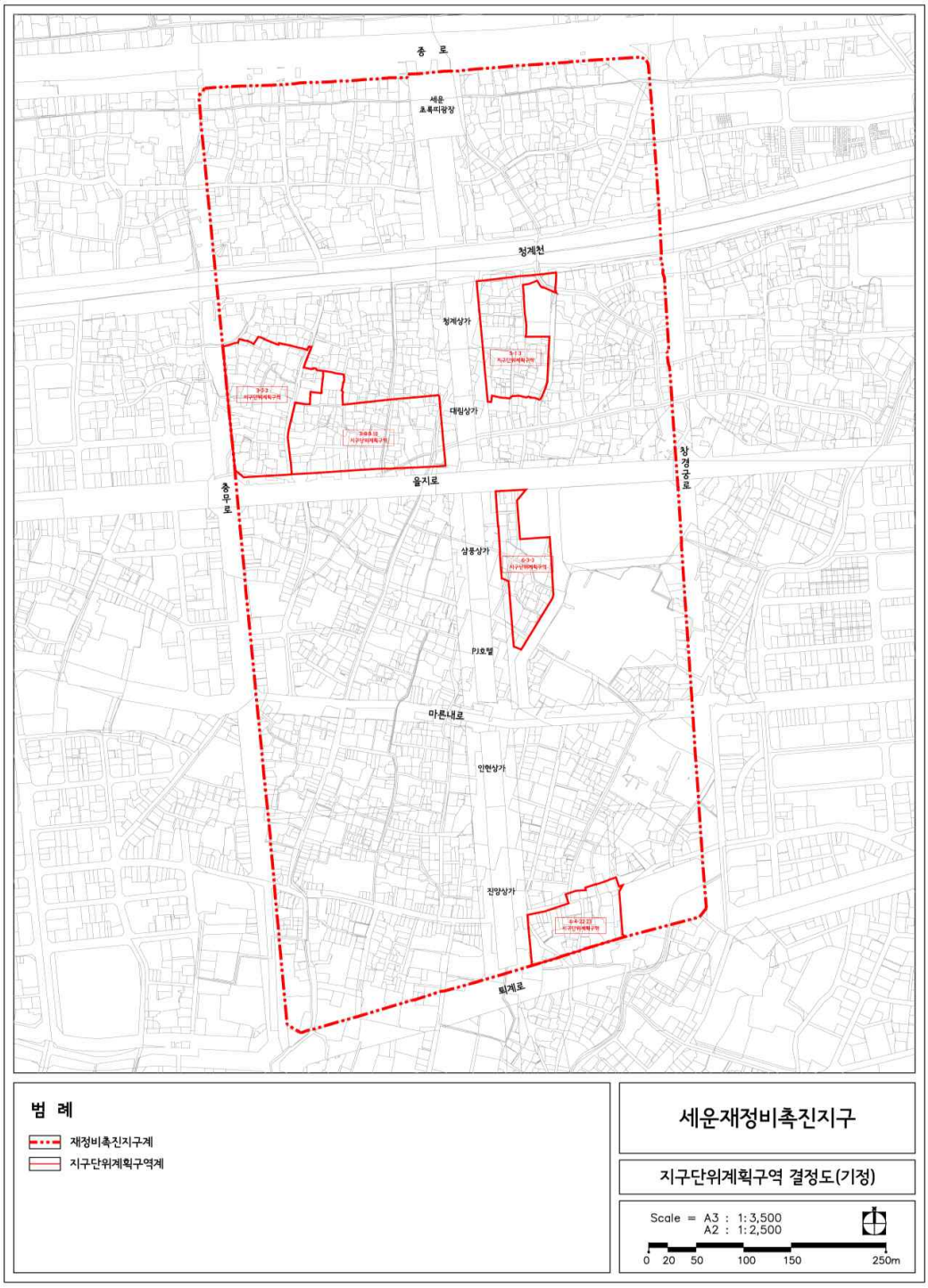
< 기반시설부담계획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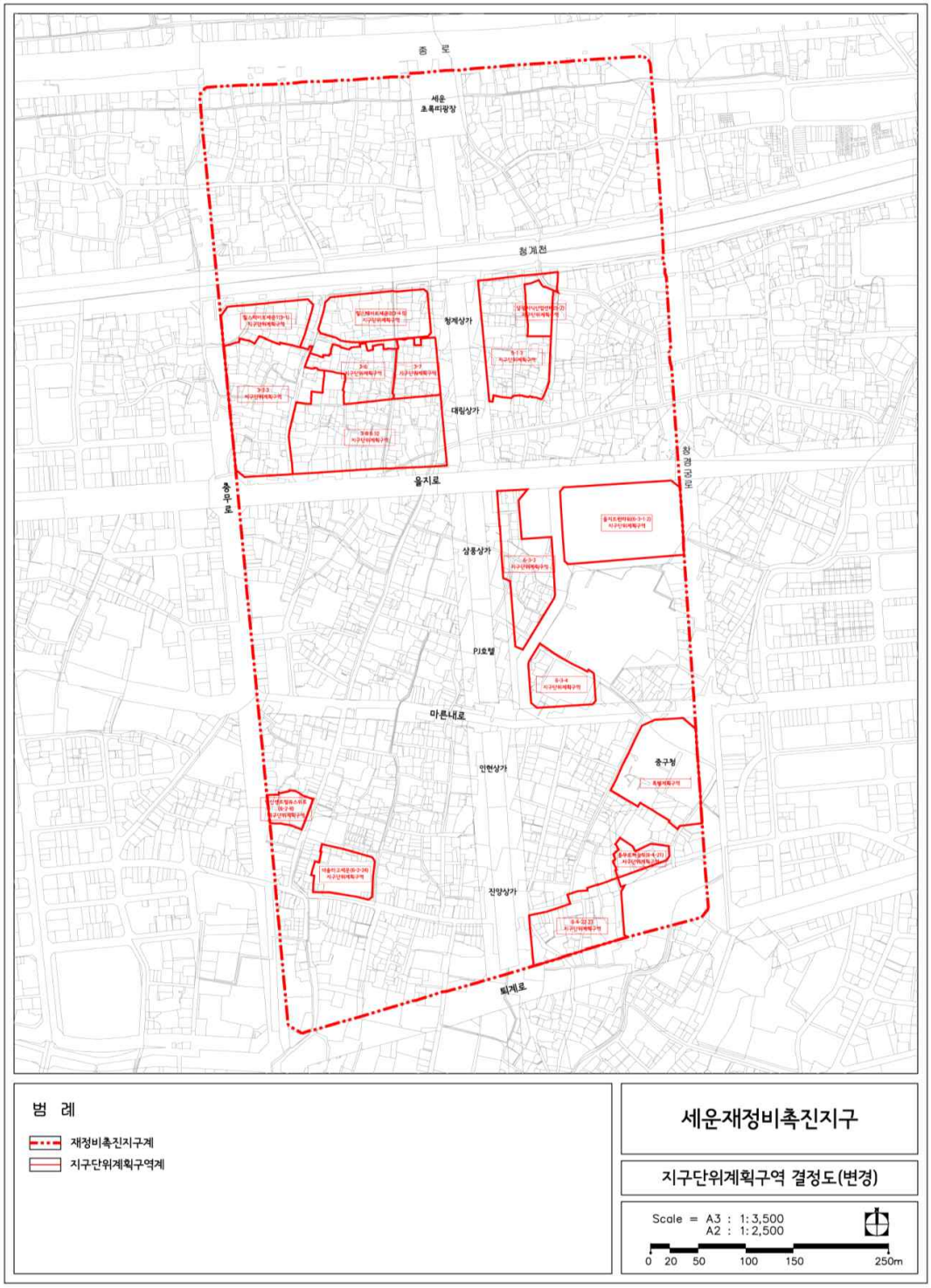
< 기반시설부담계획도(변경)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내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한강변)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본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여건 및 제도변화 등으로 고도지구 및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남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1.5m이하	135,000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
변경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이하	135,0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	-
변경	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	-
변경	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1,020,972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용산동2가31, 5-1488 일대	12m이하 (완화시 20m이하)	188,886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0			중구 회현동1가 146-1,신당동 432-24, 용산구 이태원동 193-6, 한남동 741-20 일대	16m이하 (완화시 20m이하)	340,666	〃	〃
	15			중구 남산동2가 49-49, 예장동 1-1, 용산구 후암동 402-3 일대	20m이하	343,461	〃	〃
기정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1,434,427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후암동 443-1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53,311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1			중구 회현동1가 164, 신당동 432-1979, 432-163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04-3, 한남동 일대	24m이하 (완화시 28m이하)	282,589	〃	〃
	16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28m이하	1,021,831	〃	〃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17			중구 신당동 355-7 일대	32m이하	19,109	〃	〃
	18			중구 신당동 369-7 일대	40m이하	14,673	〃	〃
	19			중구 회현동1가 86-3 일대	36m이하	23,724	〃	〃
기정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882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변경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630	〃	〃
기정	7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0m이하	29,224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기정	8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6m이하	15,074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기정	9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18m이하	36,02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0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30m이하	27,08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136-6, 한남동 736-42, 685-2일대	20m이하	120,8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23-15, 127-7, 141-11 일대	28m이하	19,496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72-16, 132-8, 한남동 737-57 일대	15m이하	51,113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37-23 일대	23m이하	1,241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	3,557,000	'90.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404호)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1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 이하 (완화시 28m이하)	248,450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8m 이하	2,104,048	〃	〃
■ 구기·평창 고도지구								
기정	-	구기·평창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0m 이하	480,290	'93.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122호)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변경	-	구기·평창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4m 이하 (완화시 28m이하)	431,559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기정	1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효자, 창성, 통의, 적선동 일대	15m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10,080	'77.5.9. (서울특별시 고시 제139호)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기정	2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재동 83 일대, 소격동 165 일대	16m이하	743,040	〃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2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16m이하	430,655	〃	〃
기정	3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18m이하	20,88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3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18m이하	141,667	〃	〃
기정	4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 누하, 필운, 효자, 체부, 옥인, 창성, 궁정, 통인동 일대	20m이하	415,8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4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누상, 누하, 필운, 옥인, 궁정, 통인, 신교, 사직동 일대	20m이하	332,972	〃	〃
변경	5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통의, 누하, 필운, 체부, 옥인, 창성, 통인동 일대	24m이하	80,747	〃	〃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조망선 높이 이하 (해발 44.0~62.6m)	50,150	’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호)	①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②조망선:조망점과 봉우리의 7부능선(산정상 해발 높이의 70%) 지점을 연결하는 선 (높이계획 결정도 참조)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조망선 높이 이하 (해발 44.0~62.6m)	50,150	' 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호)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조망선:조망점과 봉우리의 7부능선(산정상 해발 높이의 70%) 지점을 연결하는 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3호 참조))
■ 오류 고도지구								
폐지	-	오류	고도지구	구로구 온수동 100-64 일대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94,130	' 90.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0호)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폐지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28m이하	113,700	'8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437호)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참조]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변경) : 전체 고도지구 일괄 변경 적용

〈기정〉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변경〉

•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을 따르되, 건물 옥상돌출부, 옥상돌출물 및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높이 3m 이내의 승강기탑·계단탑 및 난간벽(투시형 또는 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고 높이 1.5m 미만인 것에 한정)은 제외]

■ 고도지구 완화기준(변경)

〈기정〉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고도지구
- 완화범위 : 12m지역→16m이하까지 완화, 20m지역→28m이하까지 완화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 : 가상높이 12m 또는 20m)

〈변경〉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변경)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완화
  (12m, 16m지역 → 최대20m이하까지 완화 / 20m, 24m지역 → 최대28m이하까지 완화)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높이완화기준(신설)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등 내에서 완화 가능
※ 완화적용 방법, 세부운영기준 등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함

•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신설)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2호 가,다목에 따른 호텔업에 한함)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가능(신설)
- 적용대상 : 남산 주변 고도지구

– 이하여백 –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산 주변	• 면적 변경 - 2,977,229㎡ → 2,809,828㎡ 감)167,401㎡ • 높이기준 변경 - 소월로일대 : 도로면-1.5m이하 → 도로면이하 - 12m(완화시16m)이하 → 12m(완화시20m)/16m(완화시20m)/20m이하 - 20m(완화시28m)이하 → 20m(완화시28m)/24m(완화시28m)/28m/32m/36m/40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고도지구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1. 소월로·소파로 인근 지역 : 도로면 이하 부감 범위 내 완화 가능 2. 성곽길 인근 지역 : 도로면 +4m 이하 부감범위 내 완화 가능 3.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완화 가능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추진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 가,다목에 따른 호텔업에 한함)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가능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및 지형차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변경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완화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층수완화 기준 신설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기준 신설
북한산 주변	• 면적 변경 - 3,557,000㎡ → 2,352,498㎡ 감)1,204,502㎡ •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완화시 28m)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m 이하(완화시 28m)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상: 28m 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고도지구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완화 가능 1.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2.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완화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 신설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립된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구기 · 평창	• 면적 변경 - 480,290㎡ → 431,559㎡ 감) 48,731㎡ •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 → 24m이하(완화시 28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고도지구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립된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및 지형차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신설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완화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 신설
경복궁 주변	• 면적 변경 - 1,189,800㎡ → 996,121㎡ 감)193,679㎡ • 높이기준 변경 - 15m, 16m, 18m, 20m이하 → 15m, 16m, 18m, 20m, 24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자연경관지구 등 경관 보호 목적으로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세분화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배봉산 주변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오류	• 폐지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고도지구 지정목적(도시 연담화 방지) 및 실효성 상실로 고도지구 폐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 폐지	• 유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일관성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폐지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광진구 자양동 21 ~ 자양동109 (강변도로)	22,500	도로 양측 15	'19.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강변북로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마포구 상암동 1537 ~ 상암동 1566	82,800	도로 양측 12	〃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변북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559,200	도로 양측 12	〃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남도로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782,400	도로 양측 12	〃	올림픽대로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종로구 사간,소격,안국, 가회, 원서, 삼청, 계동, 제동 일대	780,735	집단	〃	삼청동길, 율곡로, 사직로 (집단)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중구 회현동 ~ 장충동 일대	700,000		〃	남산공원길 (집단)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구	지구의 세분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1,446,900	•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폐지(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 범위 등 고려 실효성 상실로 폐지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및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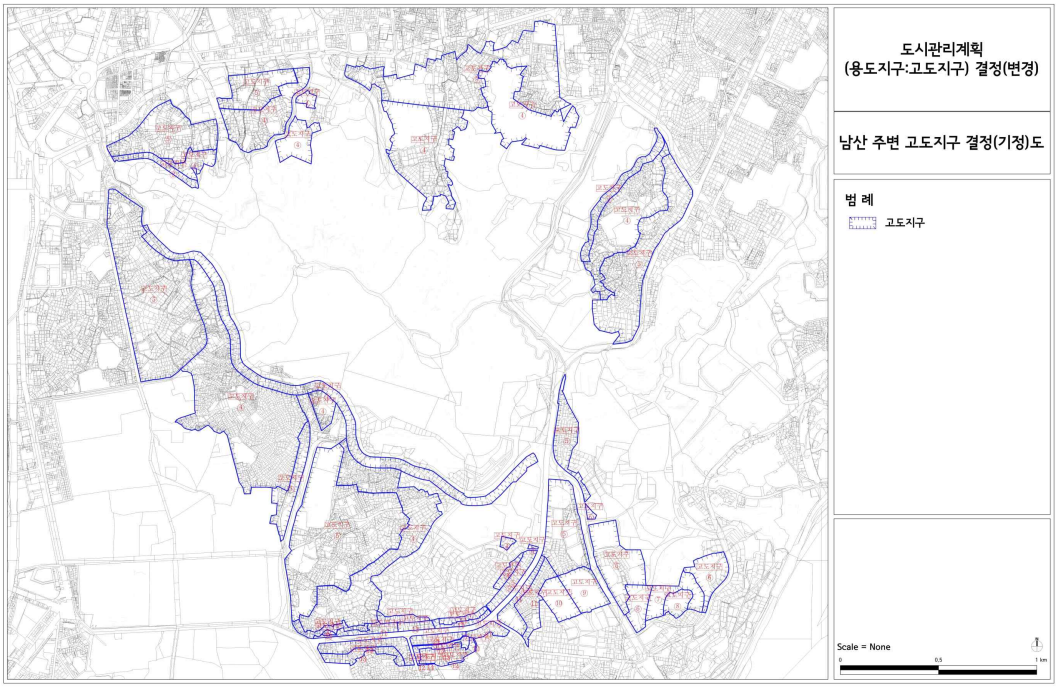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시민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3) 및 서울특별시 17개 자치구 부서 [종로구 종로미래도시추진단(☎2148-2423), 중구 도심정비과재정비전략추진단(☎3396-5733),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4),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2),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93),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597),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38),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875), 성동구 도시계획과(☎2286-5554), 광진구 도시계획과(☎450-7673), 마포

구 도시계획과(☏3153-9357),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92),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596),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03), 송파구 도시계획과(☏2147-2995),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2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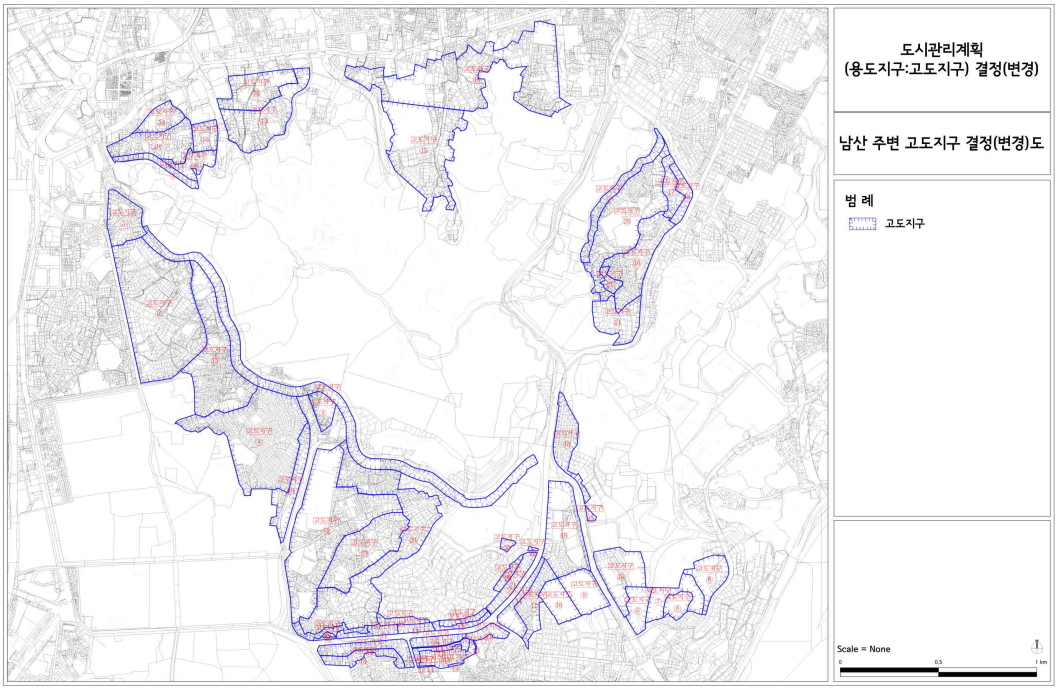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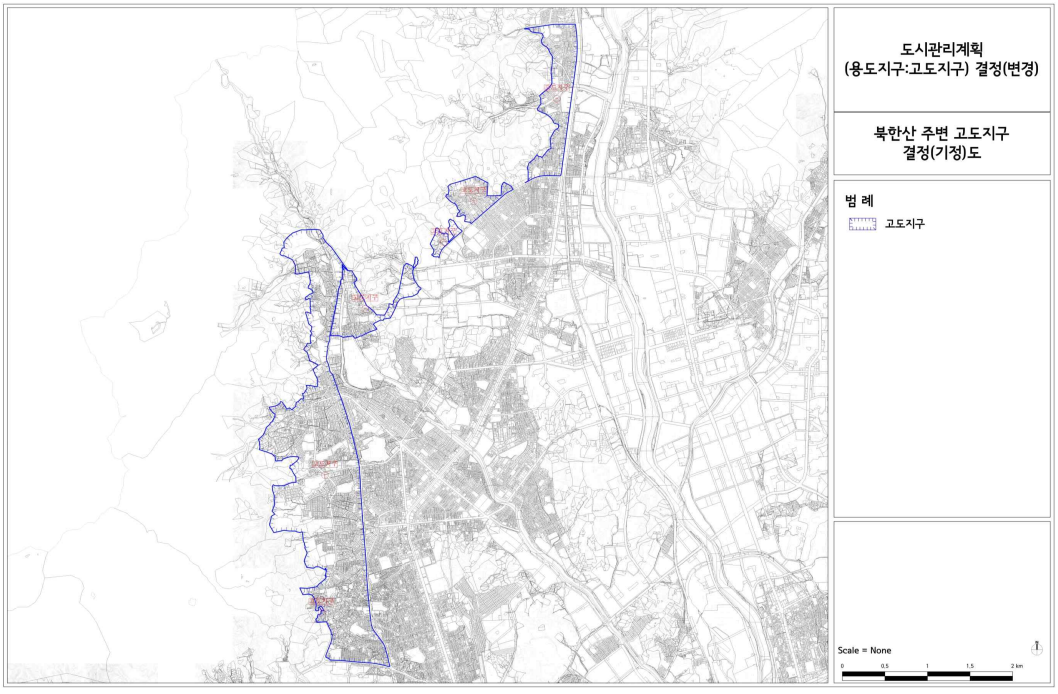
○ 남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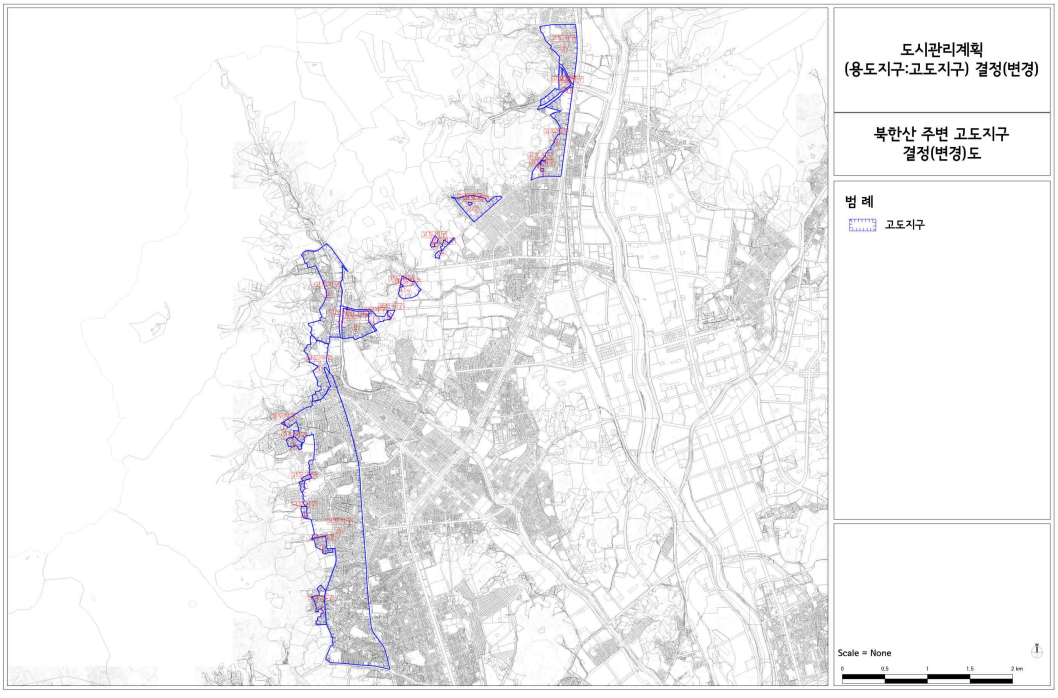
○ 남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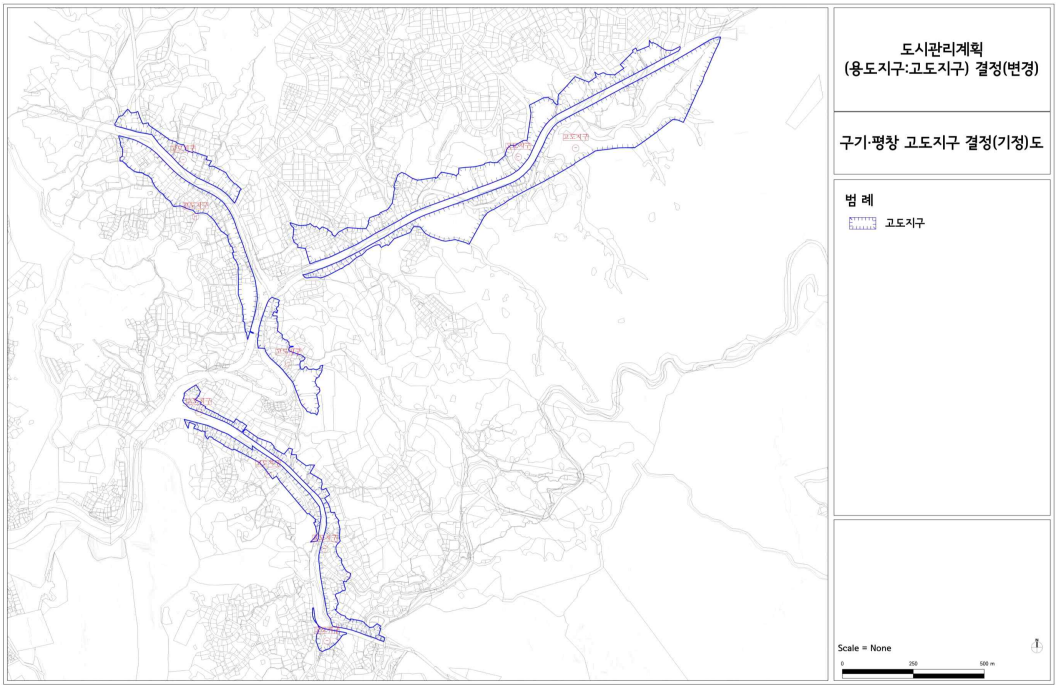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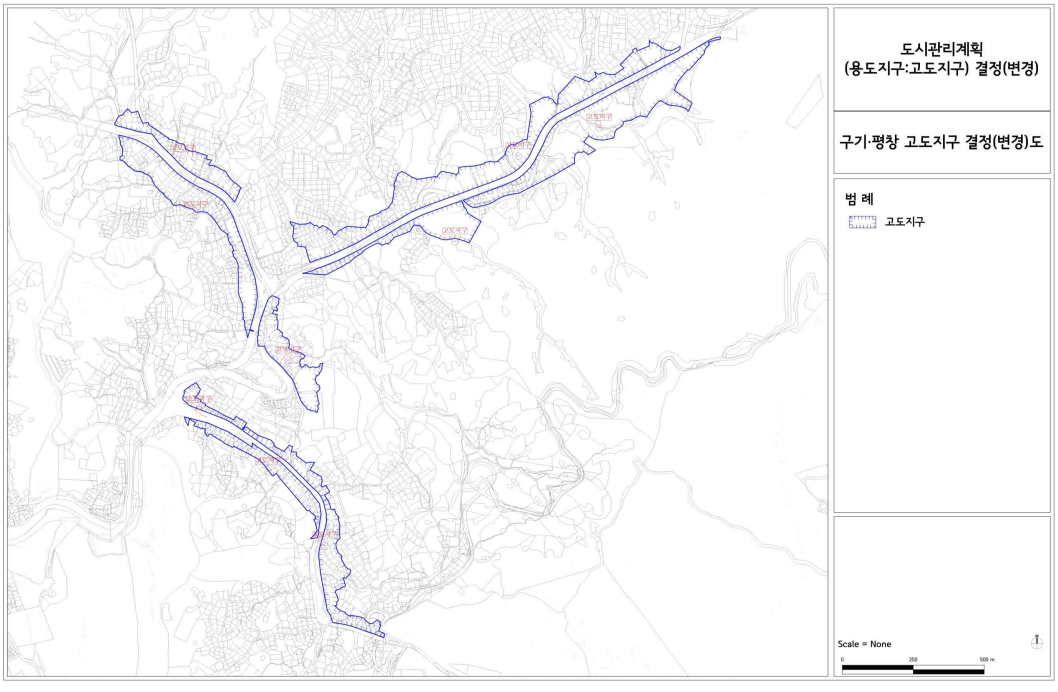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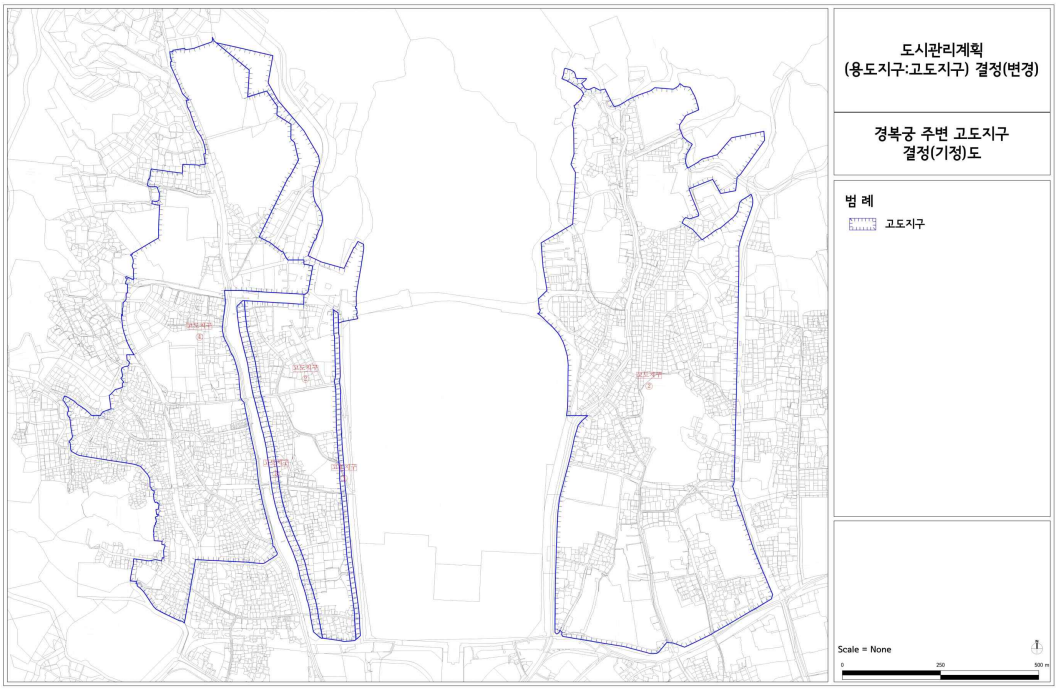
○ 구기 · 평창 고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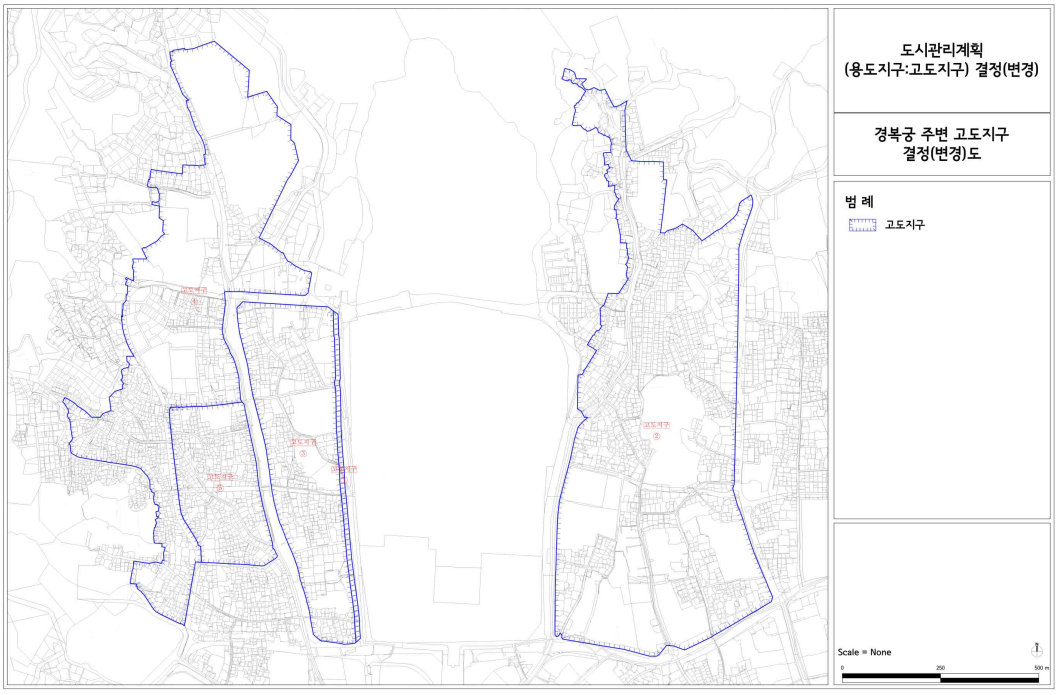
○ 구기 · 평창 고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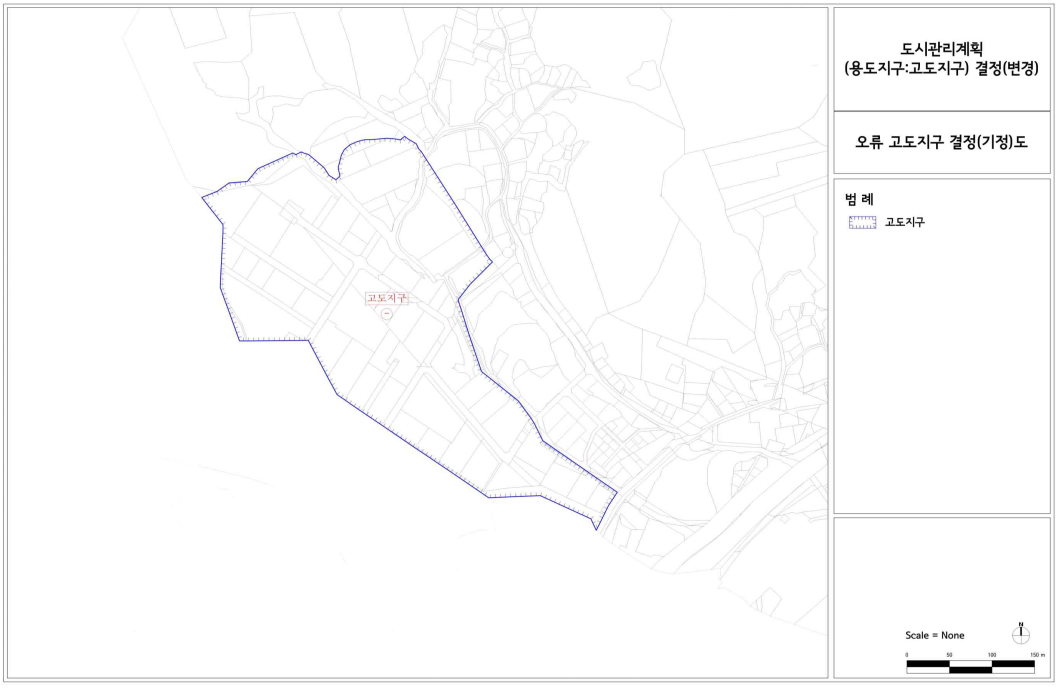
○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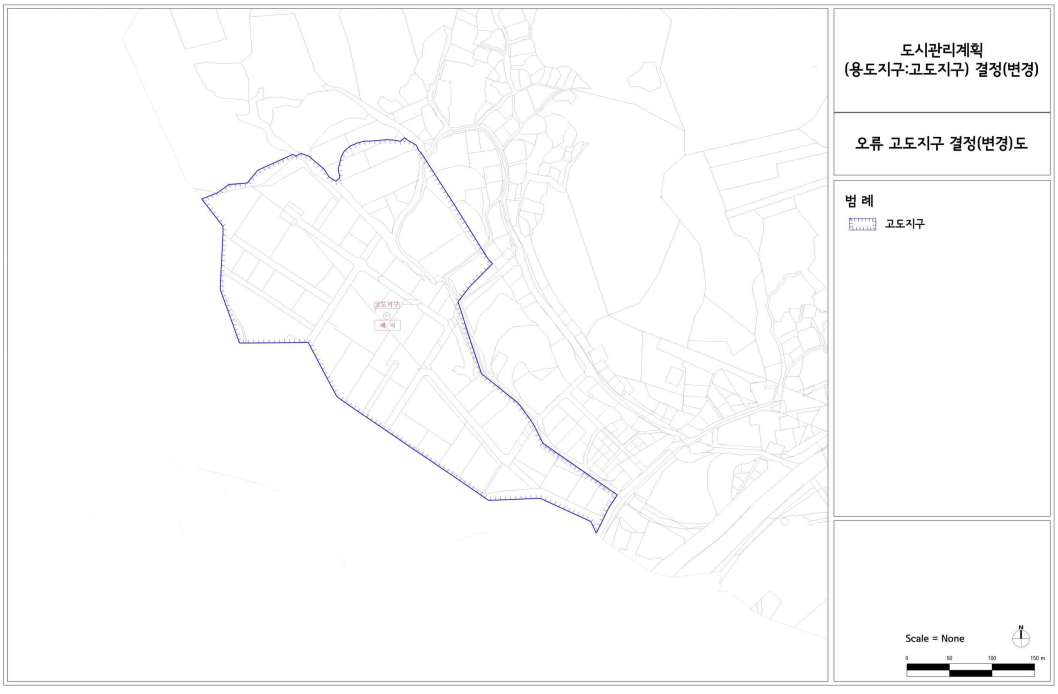
○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도



○ 오류 고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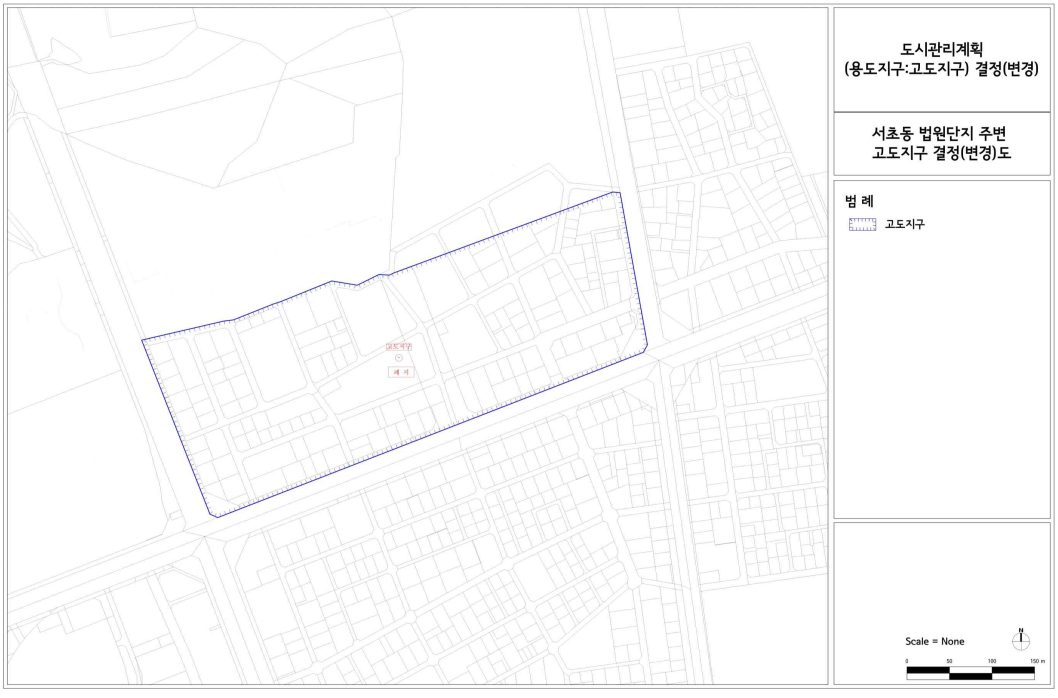
○ 오류 고도지구 결정(변경)도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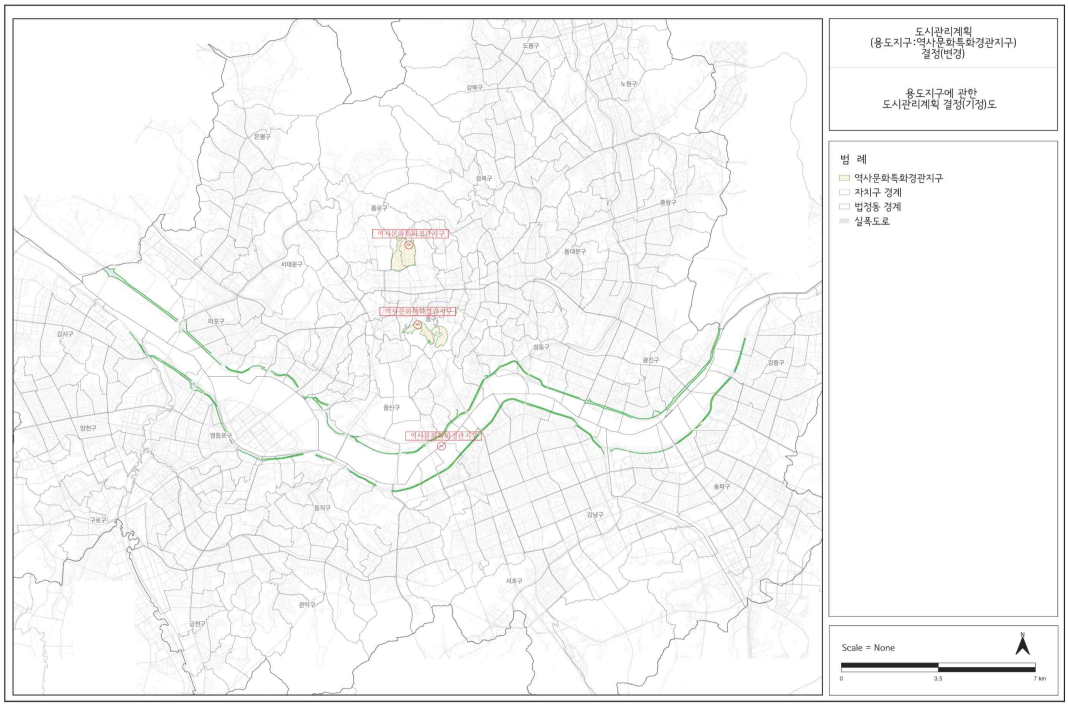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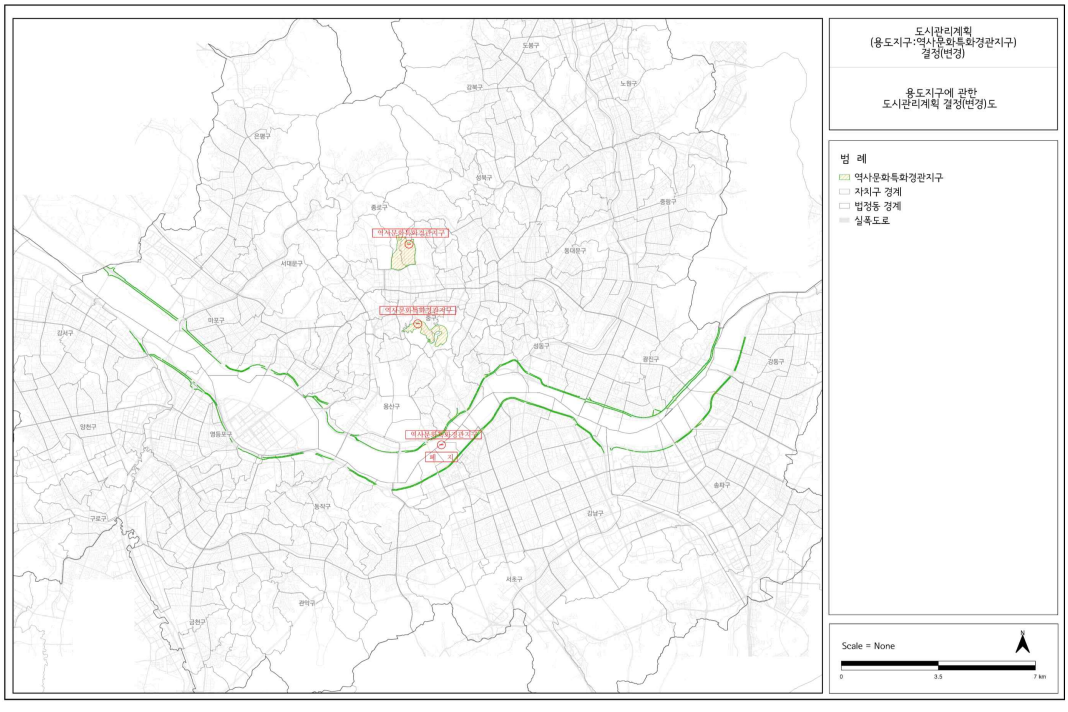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한강변) 결정(기정)도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한강변)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8호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업무 위탁 고시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2조에 규정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에 위탁하여 체납된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본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된 차량의 수색·강제견인·공매 등(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무의 위·수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간에 위탁사무를 위탁 및 수탁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 방법)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및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된 차량을 찾아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강제견인하여 공매대행회사에 보관시킨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견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부담)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사무를 수탁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며, 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수탁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발생일) 본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위탁 및 수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협약의 체결에 따른 경과조치) 이 협약의 시행 전에 행한 위탁 업무는 이 협약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9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06.0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2008.05.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12.0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오류동 11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	549,928	증) 435.0	550,363	서울시고시 제2005-165호 (2005.6.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	550,363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로 단절된 남북지역의 보행연결을 위하여 구역계를 변경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49,928.0	증) 435.0	550,363.0	100.0	
주거지역	소 계	370,119.0	감) 28,713.8	341,405.2	6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89,381.0	감) 56,983.0	232,398.0	42.2	
	제2종일반주거지역	80,738.0	-	80,738.0	14.7	
	준주거지역	-	증) 28,269.2	28,269.2	5.1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29,148.8	29,148.8	5.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79,809.0	-	179,809.0	32.7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구로구 오류동 111-1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28,269.2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근린상업지역	29,148.8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1	2,491	2	937	3	334	6	1,220
광로	-	-	-	-	-	-	-	-
대로	2	786	1	430	-	-	1	356
중로	6	1,394	1	507	1	172	4	715
소로	3	311	-	-	2	162	1	149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4	35~45	간선도로	430 (2,700)	오류동	항동시계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526호 (79.12.24)	-
기정	중로	1	18	20~30	보조 간선도로	507 (5,475)	광명시계	원종리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92호 (89.8.14)	-
기정	중로	2	12	8~15	국지도로	172	온수동 41-4	온수동 45-2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93-77호 (93.3.18)	-
기정	중로	3	19	12	국지도로	86	온수동 59-18	온수동 118-10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8-181호 (08.5.29)	-
기정	중로	3	104	12~15	국지도로	293	오류동 115-9	오류동 110-10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8-181호 (08.5.29)	-
기정	중로	3	105	12	국지도로	311	온수동 44-6 (중로2-12)	온수동 109-1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8-181호 (08.5.29)	-
기정	중로	3	106	12~15	국지도로	25	온수동 산2-10	온수동 산 2-8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869호 (86.12.1)	-
기정	소로	3	219	6	국지도로	149	온수동 109-16	온수동 51-1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47호 (85.5.24)	-
신설	대로	3	1	15~29	보조 간선도로	356	온수동 35-19	온수동 51-25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철도 : 5,849.7㎡)
신설	소로	2	220	9	특수도로	72	오류동 106	궁동 230	보행자 전용 도로	-	-	중복결정 (철도 : 224.3㎡/ 공원 : 235.5㎡)
신설	소로	2	221	5~8	특수도로	90	온수역	온수동 28-2	보행자 전용 도로	-	-	중복결정 (철도 : 195.8㎡/ 광장 : 520.9㎡)

주1) 연장의 ( )는 도로 총 연장임
주2)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0)조성시 상부 및 하부공간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과 공원 등을 연계한 활용계획을 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성 기부채납 할 것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 3-1	•도로 신설 •폭원: 15~29m •연장 : 356m •중복결정 : 철도 5,849.7㎡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도로 신설 •기결정된 철도시설에 대한 중복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220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폭원 : 9m •연장 : 72m •중복결정 : 철도 224.3㎡, 공원 235.5㎡	•철도로 단절된 남북 지역의 보행연결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보행자전용도로의 철도 및 공원에 대한 중복결정
-	소로 2-22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폭원 : 5~8m •연장 : 90m •중복결정 :철도 195.8㎡, 광장 520.9㎡	•온수역과 공공임대업무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보행자전용도로의 철도 및 광장에 대한 중복결정

2)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3)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철도	일반 철도	구로역	온수동 시계	-	5,900 (619)	365,301 (21,033)	-	365,301 (21,033)	서울시고시 제404호 (97.12.13)	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 420.1㎡)
변경	③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구로구 천왕동 52일대 (시경계)	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	3,000 (587)	- (14,070)	-	- (14,070)	서울시고시 제14호 (98.2.14)	중복결정 (도로 : 5,849.7㎡)
기정	④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	-	-	-	355	-	355	구로구고시 제14호 (98.2.10)	
기정	⑤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	-	-	-	2,649	-	2,649	구로구고시 제14호 (98.2.10)	중복결정 (214.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⑥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	-	-	-	181	-	181	구로구고시 제14호 (98.2.10)	
기정	⑦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	-	-	-	20	-	20	구로구고시 제14호 (98.2.10)	

주1) 연장·면적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중복결정 : 420.1㎡ - 남북간 연결 : 224.3㎡ - 동서간 연결 : 195.8㎡	•철도로 단절된 남북 지역의 보행연결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소로2-220)와 중복결정 •온수역과 공공임대업무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1)와 중복결정
③	철도	•중복결정 : 5,849.7㎡	•신설 도로(대로 3-1)와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⑧	광장	교통광장	온수동 51-8일원	5,370	-	5,370	서울시고시 제2008-181호 (08.5.29)	중복결정 (철도 : 214.4㎡) (보행자전용도로 : 520.9㎡)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⑧	광장	•중복결정 : 520.9㎡	•온수역과 공공임대업무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소로2-221)와 중복결정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⑨	공원1	어린이 공원	온수동 45-31	2,113	-	2,113	서울시고시 제2014-211호 (14.6.5)	-
기정	⑩	공원2	소공원	온수동 44-1	1,393	-	1,393	서울시고시 제2014-211호 (14.6.5)	-
신설	⑪	공원3	가로공원	오류동 107-2 일원	-	증) 5,463.1	5,463.1	-	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 235.5㎡)

주1) 공원계획 수립시 교육연구시설,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0) 등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성 기부채납 할 것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⑪	공원3	• 공원 신설 • 면적 : 5,463.1㎡ • 중복결정 : 235.5㎡	•주변 대규모 공원 및 단절된 남북지역을 연계하고 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 신설 및 보행자전용도로 (소로2-220)와 중복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이행

3)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⑮	체육 시설	럭비구장	오류동 106 일원	58,171	감) 58,171	-	건설부고시 제284호 (72.7.11)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⑮	체육 시설	•체육시설 폐지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럭비구장)을 신구로유수지로 대체

마. 방재시설

1) 하천(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지		비 고
			기정	변경	
차폐조경		•가로경관 향상, 보행안전성 확보 및 교통소음 저감 •인접보도와는 단차없이 조성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에 폭 5m 이상 조성	대흥·성원·동진빌라 및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대흥·성원·동진빌라 및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경인선변에 한함
전면공지	보도 확보형	•인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보행자통행 가능한 구조, 보도기능 담당토록 조성	건축한계선 2m 이상	좌동	-
	차도 확보형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전면공지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조성	6m미만 소로	좌동	-
	조성 지침	•인접보도 및 도로와 단차 없이 조성 •차량 및 보행통행 지장물(담장, 화단 등) 설치 금지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 우선 적용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	-	-
공개공지		•전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및 가로변으로 설치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조성, 녹지율 20%이상 •1개소 최소면적 45㎡ 이상 조성 •최소폭 5m 이상 •필로티 구조시 유효높이 6m 이상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전지역 권장	좌동	-
쌈지형 공지		•대지면적 1,000㎡ 이상의 규모에 설치 권장 •15m 이상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 설치 •인접대지 전면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접한보도와 단차없이 연속하여 조성 •피로티 구조시 유효높이 6m 이상	전지역 권장	좌동	-
보차혼용 통로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6개소	좌동	-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지		비 고
		기정	변경	
공공보행통로	•온수도시자연공원 이용자의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우회방지 도모	2개소	좌동	-
	•온수역 이용자의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우회방지 도모	1개소	좌동	-
	•광장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및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과의 보행동선 강화를 위해 동-서방향공공보행통로 조성	1개소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1개소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공공통로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0, 소로2-221)와 건축물이 연결되는 입체보행통로 폭 3m 이상조성	-	1개소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A(서측부지)	신설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온수동 100-27 일원	104,872	-	104,872	-
기 정	②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온수동 45-31일원	57,063	-	57,063	-
변 경	③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11-1일원	66,591	증) 113.7	66,704.7	-
기 정	④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97-4 일원	26,800	-	26,800	-
기 정	⑤	화창기공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94-11 일원	10,535	-	10,535	-
기 정	⑥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23 일원	97,184	-	97,184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계 및 면적 조정 •면적 : 66,704.7㎡(증 113.7㎡)	•연접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에 맞추어 특별계획구역계 조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2)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3)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변경)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11-1일원	66,591.0	66,704.7	•온수역세권 위상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경인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과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 자투리 토지의 개별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럭비구장 일대의 난개발 방지 도모

○ 기정

■특별계획구역 지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내용</th><th></th></tr>
<tr><td colspan="2">계획방향</td><td colspan="2">•서남권 관문거점으로서 온수역세권 개발 및 지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 지향을 위하여 주거 · 상업 · 업무 · 문화 등 역세권 복합개발 도모</td></tr>
<tr><td colspan="2">부지면적</td><td colspan="2">•66,591㎡</td></tr>
<tr><td colspan="2">체육시설
대체부지</td><td colspan="2">•대체부지의 위치(서울시로 한정), 설치시설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확정</td></tr>
<tr><td colspan="2">구 분</td><td>A (서측부지)</td><td>B (동측부지)</td></tr>
<tr><td colspan="2">용도지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td></tr>
<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권장[1]</td><td>•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2]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td><td>•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노유자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점, 제과점(1층)
•판매시설 중 상점 제1호</td></tr>
<tr><td>불허</td><td>•단독주택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종교시설
•게임관련시설(청소년게임업소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td><td>•단독주택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60% 이하</td><td>•5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200% / 330% / 400% 이하</td><td>•200% / 230% / 250% 이하</td></tr>
<tr><td colspan="2">최고높이</td><td>•120m 이하(경계부 100m 이하)</td><td>•100m 이하(경계부 80m 이하)</td></tr>
<tr><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 colspan="2">•경인선변 : 3m •광장변 : 3m •경인로3길 및 경인로변 5m</td></tr>
<tr><td rowspan="2">공공기여[3]</td><td>기준</td><td colspan="2">•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25% 이상) / 제3종일반주거지역(15% 이상)
•도시계획시설 폐지 : 10%[4]</td></tr>
<tr><td>항목</td><td colspan="2">•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6m(중복결정)
•온수역 광장 조성
•도로 : 중로 3-104 신설(폭원 15m), 대로3류 변경(폭원 11m → 25m)
•체육시설(럭비구장 등)
※ 항목 이외의 지역 필요· 부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잔여 공공기여 활용</td></tr>
</table>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역세권활성화사업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기반시설(도로, 광장, 체육시설) 관련 사항 제외 •광장 조성시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동측은 보행연계 강화 공간, 서측은 교통기능 강화 공간으로 조성 •광장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및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과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 조성

1) 권장용도 중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상점은 경인로3길, 경인로변 배치 권장하며, 지상층 연면적의 15% 이상 설치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한함
3) 공공기여 항목은 세부개발계획시에 관련부서 및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4)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음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제3종일반지역	지정목적	비고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X (권장용도면적/연면적)X0.5	기준용적률X (권장용도면적/연면적)X1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 설치시 인정 (주차장제외)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α	기준용적률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α	•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α	기준용적률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α	•필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X1.5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X2.5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 "대지내공지" 의무면적은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을 말함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3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
※ 공동주택 건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따름
※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함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X0.12이내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X0.08이내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X0.04이내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X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적용 •서울시 녹색선축물 설계기준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X0.08이내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X0.06이내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X0.04이내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X0.12이내 신재생 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X0.10이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X0.08이내 신재생 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X0.06이내 신재생 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X0.04이내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X0.04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X0.04	•빗물저류· 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X(녹화면적/대지면적)X0.1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X(보존면적/대지면적)X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X(보존면적/대지면적)X0.2	•기준용적률X0.05이내

○ 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침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2">계획내용</td></tr>
<tr><td colspan="2">계획방향</td><td colspan="2">•서남권 관문거점으로서 온수역세권 개발 및 지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 지향을 위하여 주거 · 상업 · 업무 · 문화 등 역세권 복합개발 도모</td></tr>
<tr><td colspan="2">부지면적</td><td colspan="2">•66,704.7㎡</td></tr>
<tr><td colspan="2">체육시설
대체부지</td><td colspan="2">•대체부지의 위치(서울시로 한정), 설치시설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확정</td></tr>
<tr><td colspan="2">구 분</td><td>A (서측부지)</td><td>B (동측부지)</td></tr>
<tr><td colspan="2">용도지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근린상업지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td></tr>
<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불허
용도
A</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골프연습장(옥외철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철탑)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2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골프연습장(옥외철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철탑)
- 제17호의 공장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2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td></tr>
<tr><td>지정
용도[1)]
(1층부)
a</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td></tr>
</table>

구 분		계획내용	
구 분		A (서측부지)	B (동측부지)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 200% 이하 / 상한 : 600% 이하	•기준(허용) : 200% 이하 / 상한 : 400%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	•135m 이하
건축한계선		•경인선변 : 10m •경인로3길 및 경인로변 5m •광장 및 중로3-104, 가든아파트변 : 3m	
공공기여	기준	•용도지역 변경 : 근린상업지역(33% 이상) / 준주거지역(25% 이상) •도시계획시설 폐지 : 10%[3]	
	항목[2]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2개소, 폭원 5~8m, 9m(중복결정) •온수역 광장 •도로 : 중로 3-104 신설(폭원 15m), 대로3류 신설(폭원 11m → 29m) •체육시설(럭비구장 등) •공공기여시설 조성(공공주택, 공공임대업무시설, 지역필요시설) ※ 항목 이외의 지역 필요부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잔여 공공기여 활용	
비 고		• '역세권활성화사업'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기반시설(도로, 광장, 체육시설) 관련 사항 제외) •광장 조성시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동측은 보행연계 강화 공간, 서측은 교통기능 강화 공간으로 조성 •광장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및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과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 조성	

주1) 1층부 지정용도는 지상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면적 제외)
주2) 공공기여 항목은 세부개발계획시에 관련부서 및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주3)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음

– 용적률 적용기준[1] (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구 분		A (서측부지)	B (동측부지)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부지면적[2]의 33% 이상	•부지면적[2]의 25% 이상	
		※ 특별계획구역면적의 29.06% 이상[3]		
건축물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용적률의 10% 이상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용적률의 10% 이상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건축물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다음 각 항목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주2) 부지면적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업부지 면적임
주3) 공공기여율은 용도지역 변경 면적에 대한 A(서측부지), B(동측부지)의 공공기여율을 가중평균하여 적용
주4) 공공기여는 가중평균한 총량 내에서 배분 가능
주5) 주민공동시설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준용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부지면적	•연접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에 맞추어 특별계획구역계 조정 및 구적면적 적용
용도지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	•온수역세권의 역세권활성화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 수립
건폐율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적용
용적률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 적용
최고높이	•인근 학교 등 일조영향을 고려하여 높이계획 수립
건축한계선	•철도변 소음 대응 및 보행, 자전거 이용을 위해 건축한계선 확대 계획
공공기여	•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온수역과의 접근성 향상 및 단절된 남북지역의 연결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추가 신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의한 교통량을 감안하여 전면 현황도로 확폭을 위한 일반도로 신설

4)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5) 화창기공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6)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③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11-1 일원	66,591.0	증) 113.7	66,704.7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계 및 면적 조정 •면적 : 66,704.7㎡(증 113.7㎡)	•연접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에 맞추어 특별계획구역계 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6,704.7	-	66,704.7	100.0	
주거지역	소 계	66,704.7	감) 29,148.8	37,555.9	56.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6,704.7	감) 57,418.0	9,286.7	13.9	공원, 도로
	준주거지역	-	증) 28,269.2	28,269.2	42.4	B(동측부지)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29,148.8	29,148.8	43.7	A(서측부지)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구로구 오류동 111-1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28,269.2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근린상업지역	29,148.8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 로	3	1	15~29	보조간선도로	356	온수동 35-19	온수동 51-25	일반도로	-	-	중복결정 (철도:5,849.7㎡)
기정	중 로	3	104	12~15	국지도로	293	오류동 115-9	오류동 110-1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8-181호 (08.5.29.)	-
신설	소 로	2	220	9	특수도로	72	오류동 106	궁동 230	보행자 전용도로	-	-	중복결정 (철도:224.3㎡/ 공원:235.5㎡)
신설	소 로	2	221	5~8	특수도로	90	온수역	온수동 28-2	보행자 전용도로	-	-	중복결정 (철도:195.8㎡/ 광장:520.9㎡)

주1)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0)조성시 상부 및 하부공간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과 공원 등을 연계한 활용계획을 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성 기부채납 할 것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 3-1	•도로 신설 •폭원 : 15~29m •연장 : 356m •중복결정 : 철도 5,849.7㎡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도로 신설 •기결정된 철도시설에 대한 중복결정
중로 3-104	중로 3-104	-	•기결정된 시설이나 기부채납시설로서 조서에 표기
-	소로 2-220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폭원: 9m •연장 : 72m •중복결정 : 철도 224.3㎡, 공원 235.5㎡	•철도로 단절된 남북 지역의 보행연결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보행자전용도로의 철도 및 공원에 대한 중복결정
-	소로 2-22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폭원 : 5~8m •연장 : 90m •중복결정 :철도 195.8㎡, 광장 520.9㎡	•온수역과 공공임대업무시설의 접근성향상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보행자전용도로의 철도 및 광장에 대한 중복결정

2)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철도	일반 철도	구로역	온수동 시계	-	5,900 (619)	365,301 (21,033)	-	365,301 (21,033)	서울시고시 제404호 (97.12.13)	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 420.1㎡)
변경	③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	구로구 천왕동 52 일대 (시경계)	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	3,000 (587)	- (14,070)	-	- (14,070)	서울시고시 제14호 (98.2.14)	중복결정 (도로 : 5,849.7㎡)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중복결정 : 420.1㎡ - 남북간 연결 : 224.3㎡ - 동서간 연결 : 195.8㎡	•철도로 단절된 남북 지역의 보행 연결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0)와 중복결정 •온수역과 공공임대업무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1)와 중복결정
③	철도	•중복결정 : 5,849.7㎡	•신설 도로(대로 3-1)와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⑧	광장	교통광장	온수동 51-8일원	5,370	-	5,370	서울시고시 제2008-181호 (08.5.29)	중복결정 (철도 : 214.4㎡) (보행자전용도로 : 520.9㎡)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⑧	광장	•중복결정 : 520.9㎡	•온수역과 공공임대업무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소로2-221)와 중복결정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⑪	공원3	가로 공원	오류동 107-2 일원	-	증) 5,463.1	5,463.1	-	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 235.5㎡)

주1) 공원계획 수립시 교육연구시설,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0)등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시설 관리부서와 조성 기부채납 할 것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⑪	공원3	• 공원 신설 • 면적 : 5,463.1㎡ • 중복결정 : 235.5㎡	• 주변 대규모 공원 및 단절된 남북지역을 연계하고 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 신설 및 보행자전용도로 (소로2-220)와 중복결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이행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⑮	체육 시설	럭비구장	오류동 106 일원	58,171	감) 58,171	-	건설부고시 제284호 (72.7.11)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⑮	체육 시설	•체육시설 폐지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럭비구장)을 신구로유수지로 대체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럭비구장부지 일대	C2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 개발계획
구 분		A (서측부지)	B (동측부지)	
건축물 용도	불허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골프연습장(옥외철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철탑)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2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골프연습장(옥외철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철탑) - 제17호의 공장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2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좌 동
	지정[1] (1층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좌 동

1) 1층부 지정용도는 지상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확보(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면적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A (서측부지)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좌 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B (동측부지) 준주거지역	60% 이하	좌 동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A (서측부지) 근린상업지역	•기준(허용) : 200% 이하 •상한 : 600% 이하	좌 동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B (동측부지) 준주거지역	•기준(허용) : 200% 이하 •상한 : 400% 이하	좌 동	

– 용적률 적용기준[1] (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세부개발계획		비 고
구 분		A (서측부지)	B (동측부지)	A (서측부지)	B (동측부지)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여	공공 기여율	•부지면적[2]의 33% 이상	•부지면적[2]의 25% 이상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29.06% 이상[3]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용적률의 10% 이상	•용적률의 10% 이상	•주거 : 비주거 = 77.72% : 22.28%	•주거 : 비주거 = 89.99% : 10.01%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6.78% : 23.22%	–	
주택건설 기준	주택 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 82세대 – 72㎡	•공공주택 : 49세대 – 59㎡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	•다음 각 항목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이행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이행		

구 분	적용기준	세부개발계획		비 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주민공동시설 - 3,140㎡ - 도서관,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 3,150㎡ - 도서관, 어린이집 등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주2) 부지면적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업부지 면적임
주3) 공공기여율은 용도지역 변경 면적에 대한 A(서측부지), B(동측부지)의 공공기여율을 가중평균하여 적용
주4) 공공기여는 가중평균한 총량 내에서 배분 가능
주5) 주민공동시설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준용

3) 높이에 관한 계획

■ 높이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A (서측부지) 근린상업지역	150m 이하	좌 동	-
B (동측부지) 준주거지역	135m 이하	좌 동	

다.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A (서측부지) 근린상업지역	•경인선변 : 건축한계선 10m •경인로3길 및 경인로변 : 건축한계선 5m •광장변 : 건축한계선 3m	좌 동	-
B (동측부지) 준주거지역	•경인선변 : 건축한계선 10m •경인로3길 및 경인로변 : 건축한계선 5m •중로3-104번, 가든아파트변 : 건축한계선 3m	좌 동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규제 사항
	1층 높이	• 신축 건축물의 1층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1층 바닥높이	•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권장 사항
	야간조명	• 폭 20m이상 도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건축설비	• 폭 20m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 노출 설치 않도록 권장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 통합간판 설치 유도	규제 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권장 사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사항

주)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제18조 공공보행통로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지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폐조경		•가로경관 향상, 보행안전성 확보 및 교통소음 저감 •인접보도와는 단차없이 조성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에 폭 5m 이상 조성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좌 동	경인선변에 한함
전면공지	보도 확보형	•인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보행자통행 가능한 구조, 보도기능 담당토록 조성	건축한계선 2m 이상	좌 동	-
	조성지침	•인접보도 및 도로와 단차 없이 조성 •차량 및 보행통행 지장물(담장, 화단 등) 설치 금지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 우선 적용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	좌 동	-
공개공지		•전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및 가로변으로 설치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녹지율 20% 이상 •1개소 최소면적 45㎡ 이상 조성 •최소폭 5m 이상 •필로티 구조시 유효높이 6m 이상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전지역권장	• 광장,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A(서측부지): 2개소 - B(동측부지): 1개소 ※ 전면공지와 중복가능	-
공공보행통로		•광장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및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과의 보행동선 강화를 위해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 조성	1개소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6m)지정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공공통로		•보행자전용도로(소로2-220, 소로2-221)와 건축물의 연결되는 입체보행통로 폭 3m 이상 조성	1개소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A(서측부지)	좌 동	신설

나.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기준	적용대상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가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간선가로변 차량 및 보행흐름의 연속성, 안전성, 쾌적성 확보를 위한 차량출입구 제한 •주차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위계가 낮은 도로(6m이상, 건축한계선 포함)에서 진입 원칙 •주차출입구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대지와의 공동주차출입구 설치를 권장	경인로변

다.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

■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귀속주체)
체육시설 대체부지	•대체부지의 위치(서울시로 한정), 설치시설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확정	•신구로 유수지로 대체부지 위치 지정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9-7 일원) •사업비 : 587.5억원[1)] •설치시설[2)] - 생태공원 - 체육시설 : 다목적 구장 2개소(럭비구장 포함) - 복합문화시설 - 보행육교 : 신설 1개, 재조성 1개	구로구
공공기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10%	•도시계획시설 폐지 10%3) ※ 추가적인 사업비용 발생시 사업자 부담으로 유수지 도시관리계획 중 재원조달계획에 반영하여 결정	

1) 사업비는 건축인 · 허가 시점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10%에 대한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체육시설 대체부지 설치시설 세부계획에 대하여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성후 기부채납하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조성비용을 예치하여 별도 설치 가능
3) 도시계획시설 폐지 10%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건축인 · 허가 시점에 관할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하되, 토지가치 산정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시점으로 함

(2)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율[2)]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준(허용)	상한	기준		계획	
서측부지 (A)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근린상업 지역	200%	600%	부지면적[1)]의 33%이상	가중평균[2)] 29.06% 이상	29.18%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율[2]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준(허용)	상한	기준		계획	
동측부지 (B)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 지역	200%	400%	부지면적[1]의 25%이상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1) 부지면적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업부지 면적임
2) 공공기여율은 용도지역 변경 면적에 대한 A(서측부지), B(동측부지)의 공공기여율을 가중평균하여 적용

– 공공기여계획 세부내역

구 분		공공기여[1] 내역				건축물 연면적	위치 및 규모	비고 (귀속주체)
		계	부속토지	환산면적	구성비			
총 계		16,751.9㎡	11,672.6㎡	5,079.3㎡	29.18%	–	–	–
기반 시설[3]	소 계	8,201.3㎡	7,361.2㎡	840.1㎡	14.28%	–	–	–
	광장조성	3,537.6㎡	3,537.6㎡	–	6.16%	–	온수역광장	구로구
	도로	3,823.6㎡	3,823.6㎡	–	6.66%	–	대로 3-1, 중로 3-104	대로:서울시 중로:구로구
	보행자전용도로 (소로2-220,소로2-221)	840.1㎡	–	840.1㎡	1.46%	–	온수역연결폭 5~8m 북측연결 폭 9m	구로구
공공 기여 시설[2]	소 계	8,550.6㎡	4,311.4㎡	4,239.2㎡	14.90%	32,970.61㎡	–	–
	공공주택	2,497.7㎡	2,497.7㎡	–	4.35%	19,034.87㎡	131세대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	2,978.4㎡	933.1㎡	2,045.3㎡	5.19%	8,274.29㎡	A(서측부지) 지상1,2층	서울시
	지역필요시설 (교육연구시설)	509.8㎡	151.2㎡	358.6㎡	0.89%	1,340.83㎡	A(서측부지) 지상2층	구로구
	지역필요시설 (문화시설,,노유자시설)	2,564.7㎡	729.4㎡	1,835.3㎡	4.47%	4,320.62㎡	B(동측부지) 지상1,2층	구로구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호, 2023.2.1.)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로 매입되며, 그 외 공공기여 시설은 토지, 건축물 모두 기부채납함(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주3)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시설은 조성 후 기부채납
주4) 상기 사항은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위치, 면적(규모)은 조정될 수 있음
주5) 공공임대업무시설 및 지역필요시설은 세부 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개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처리는 자치구청장이 구 도시 ·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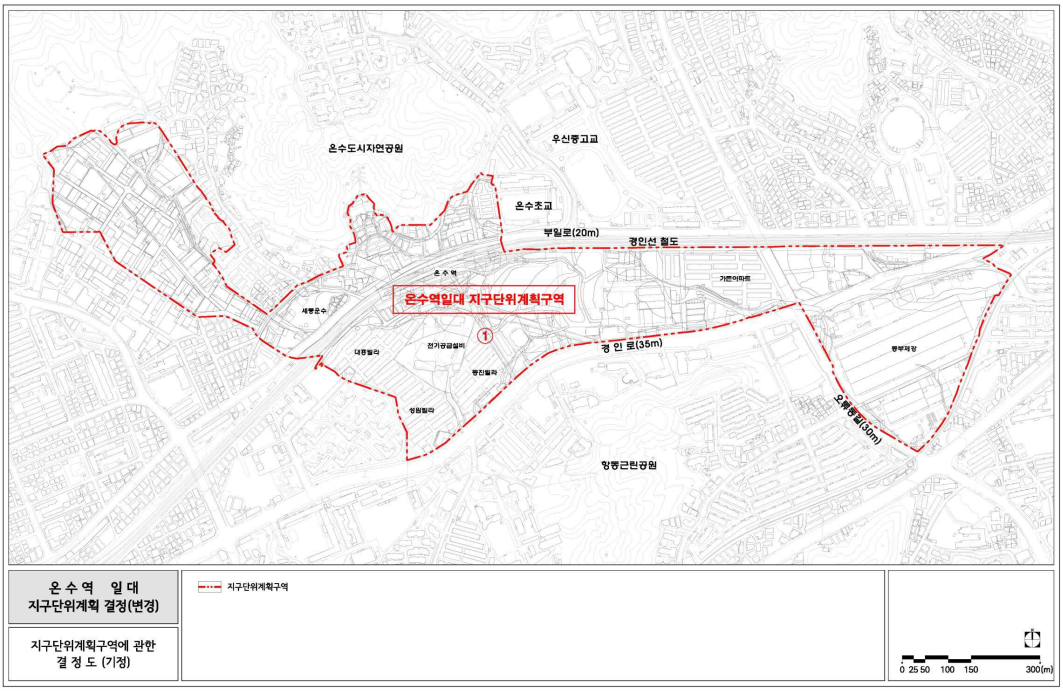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2133-4654)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 860-295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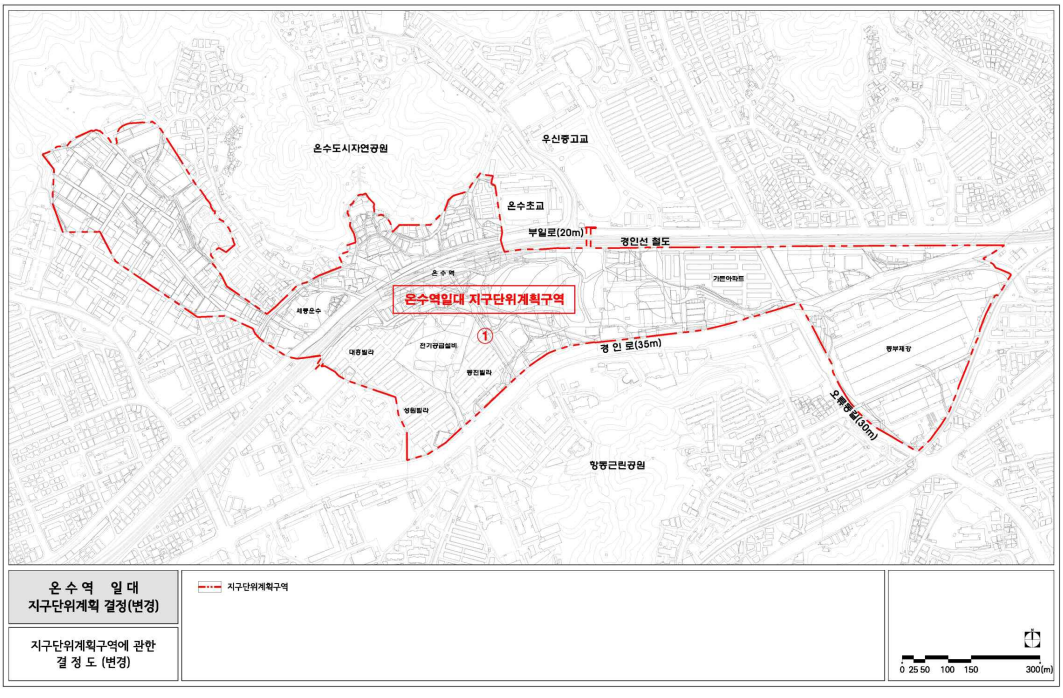
<붙 임>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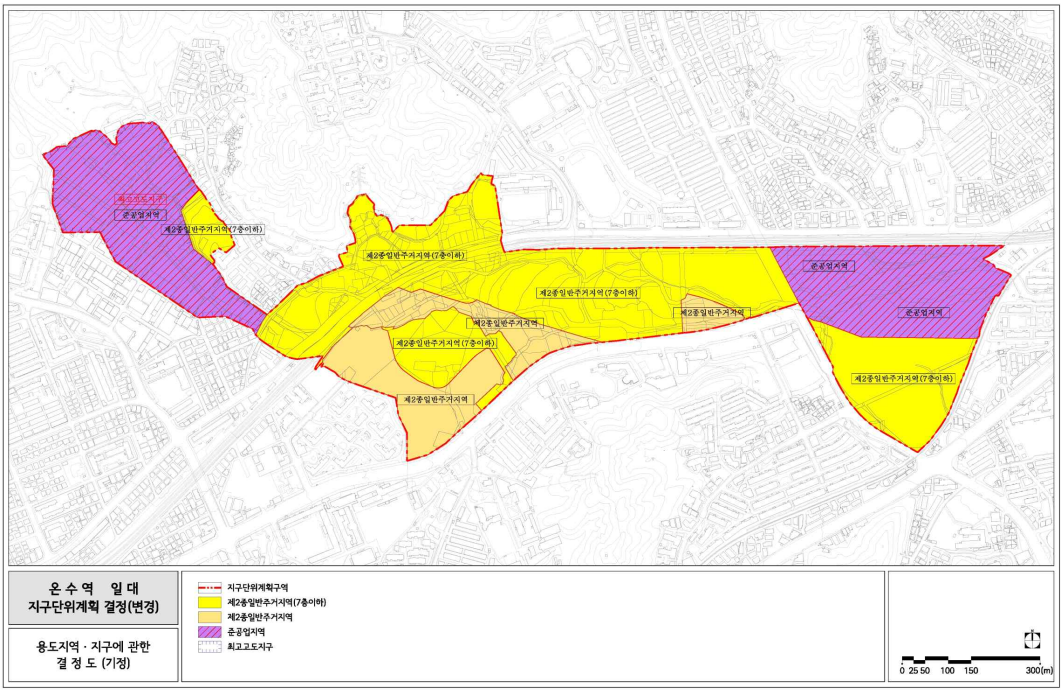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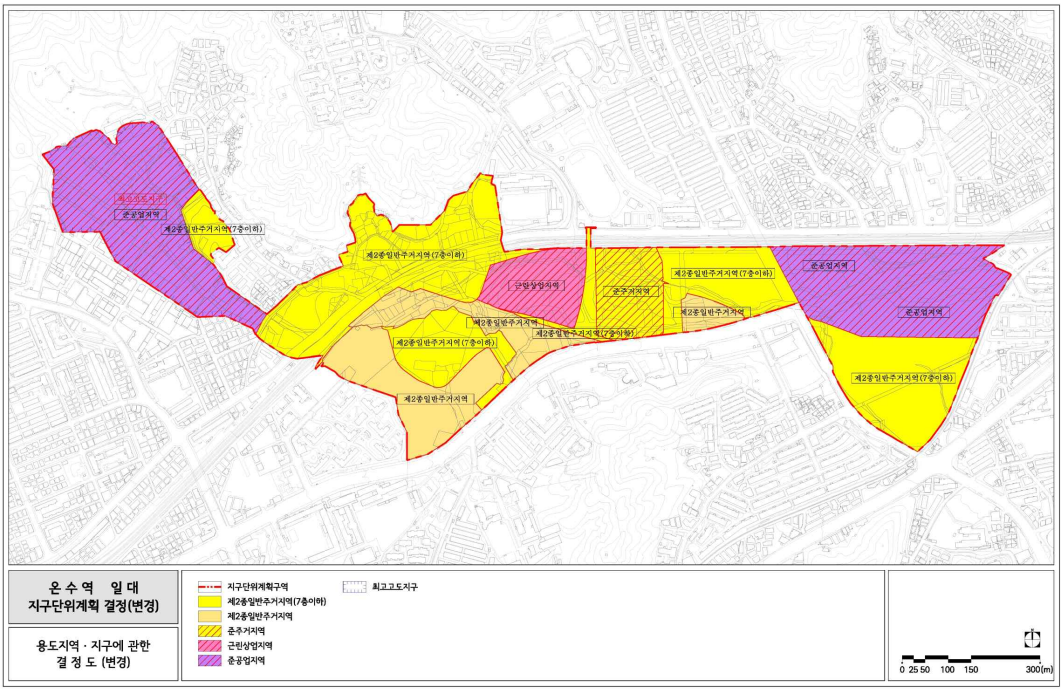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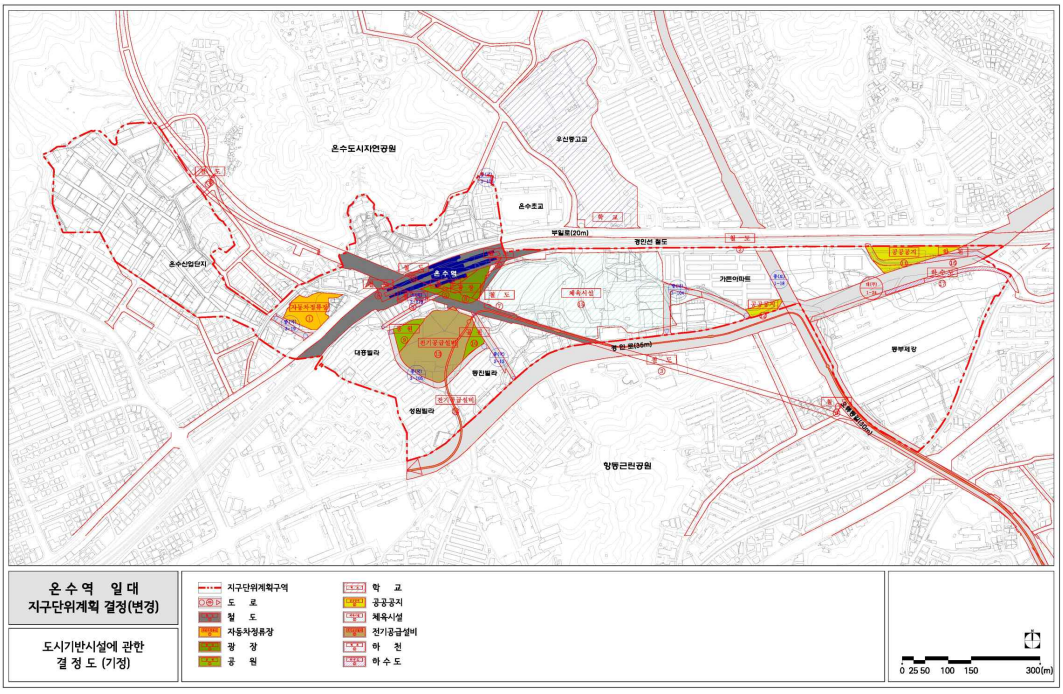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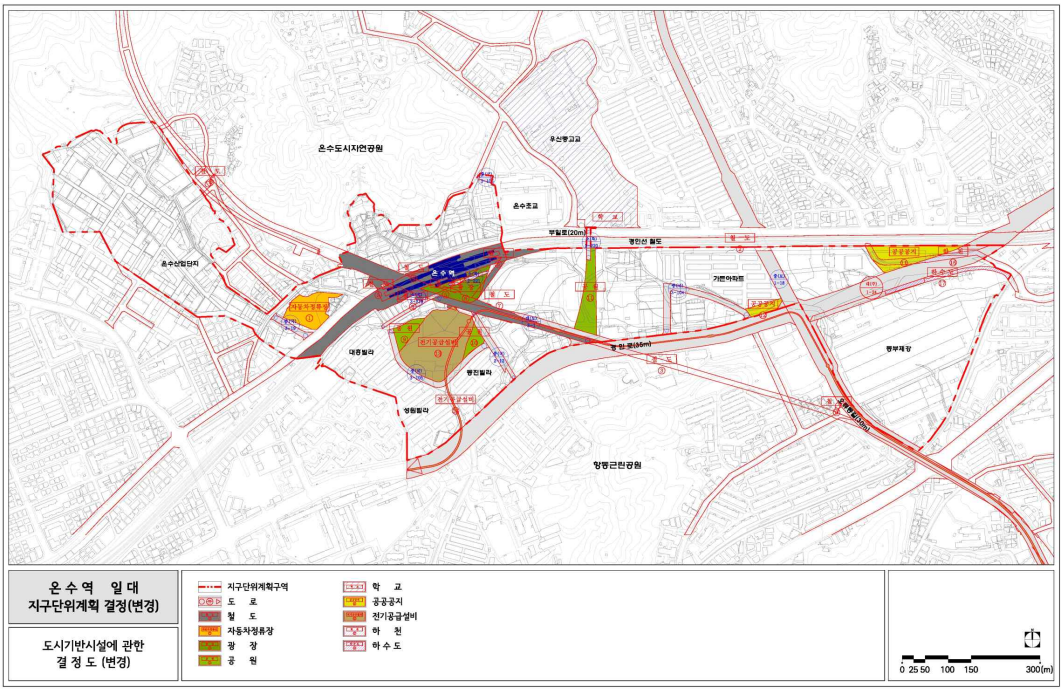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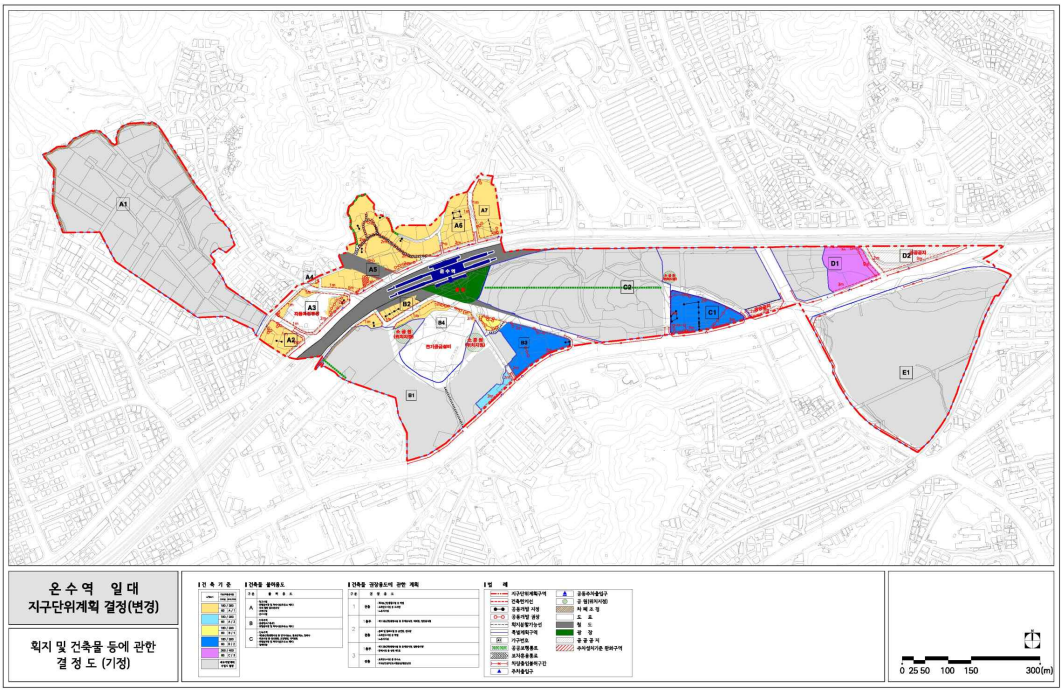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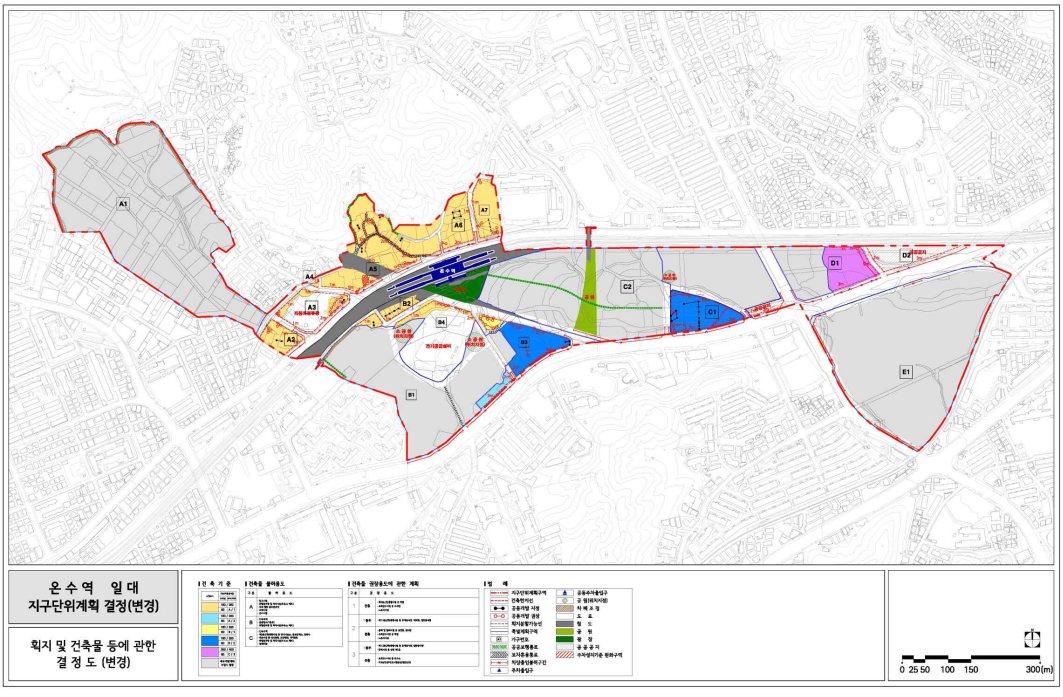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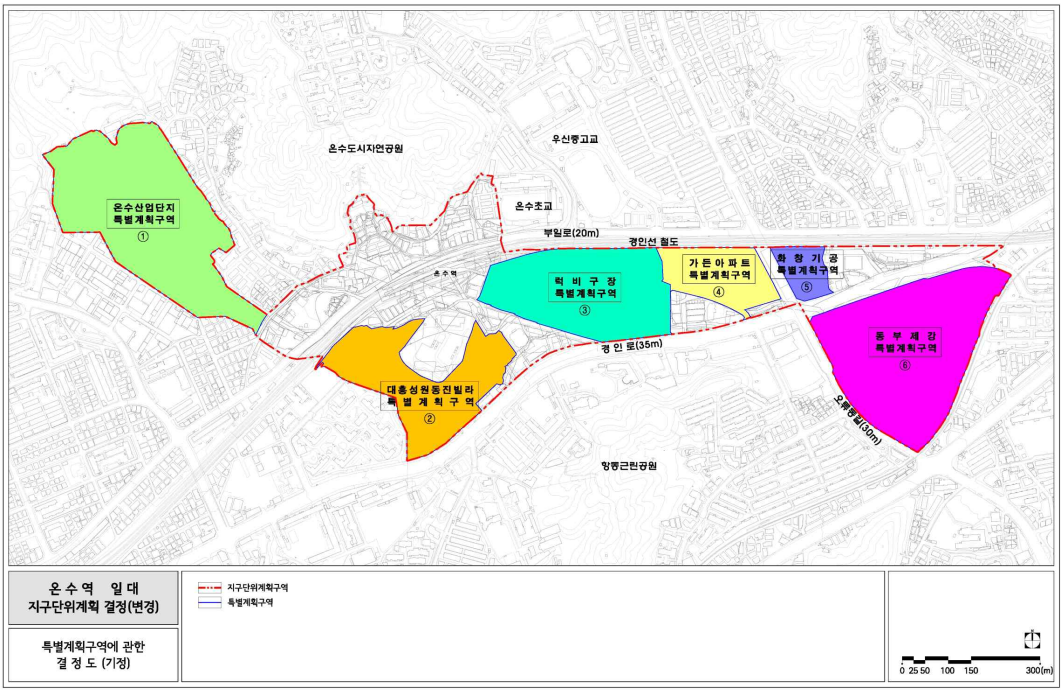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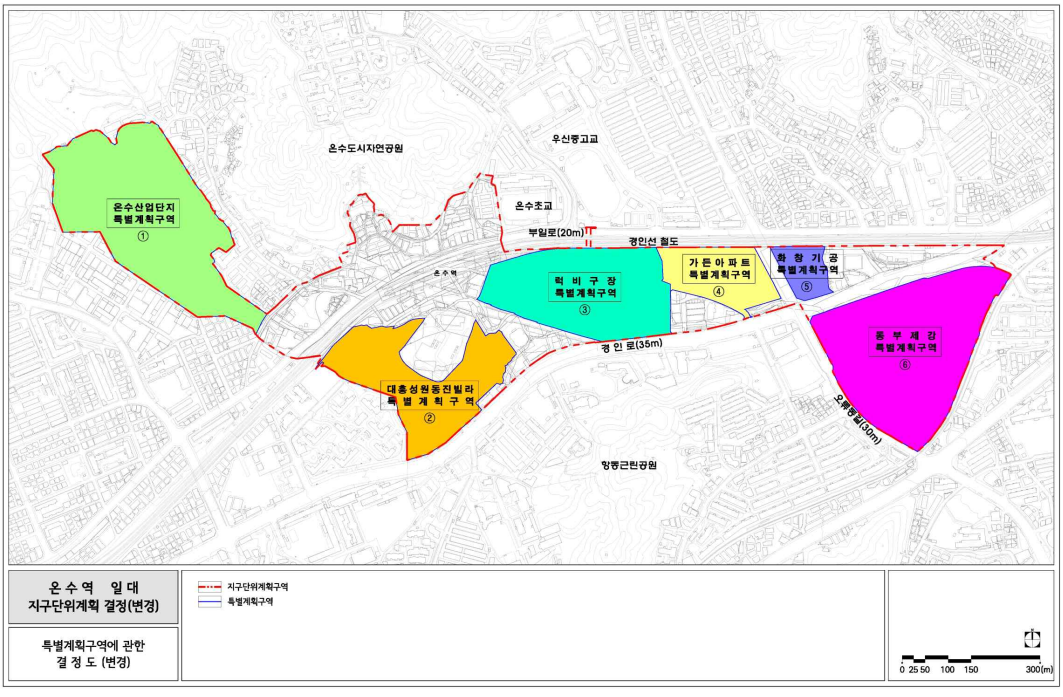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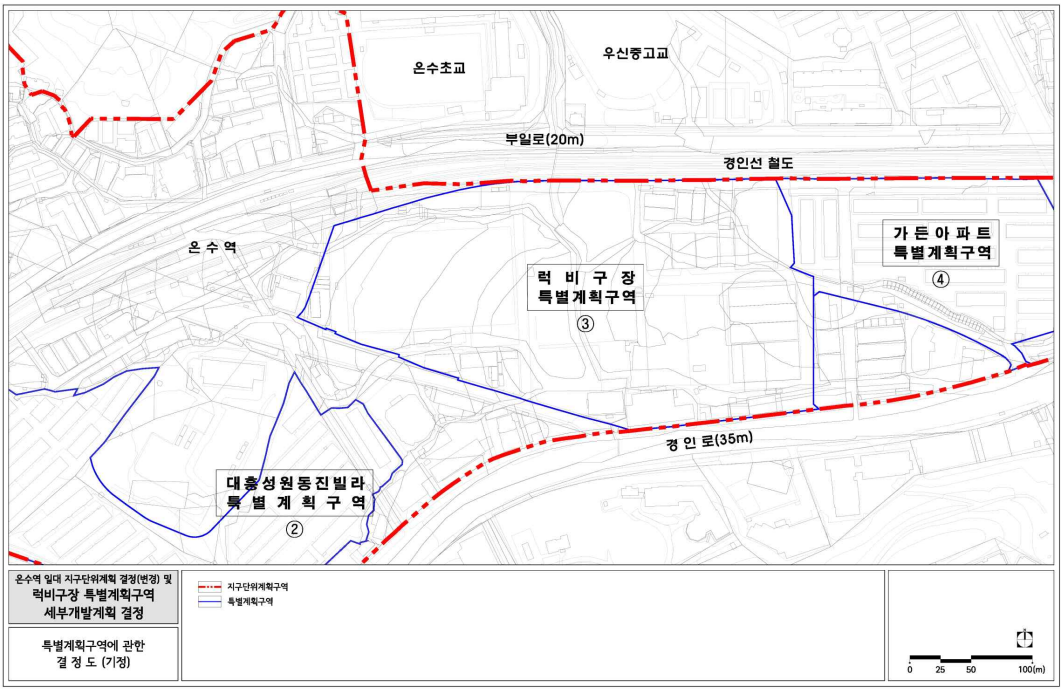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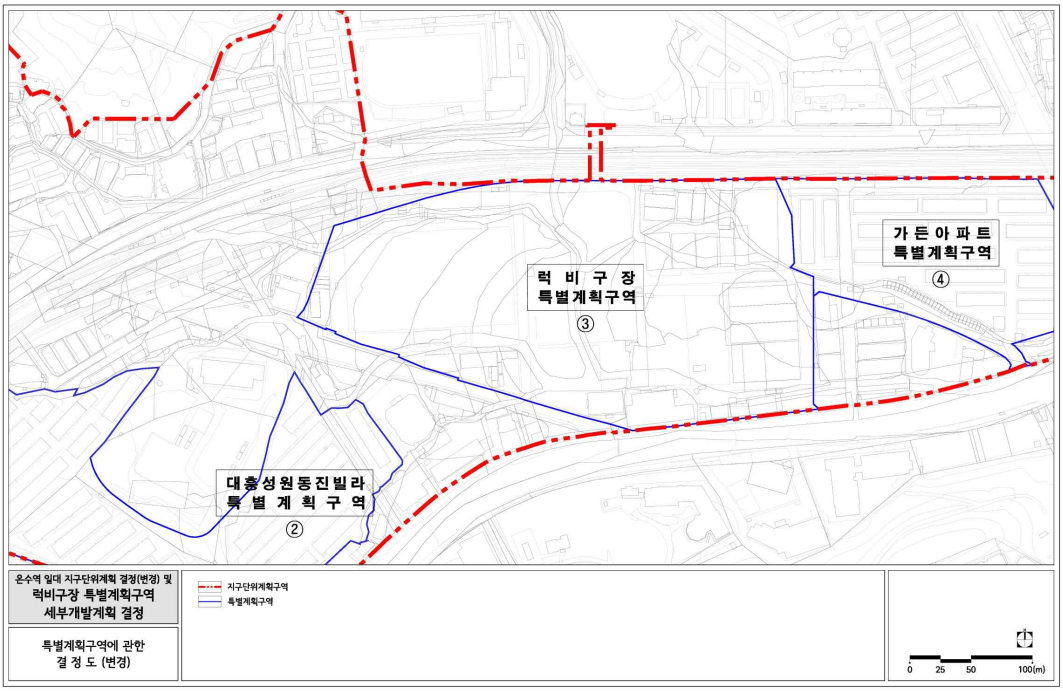


□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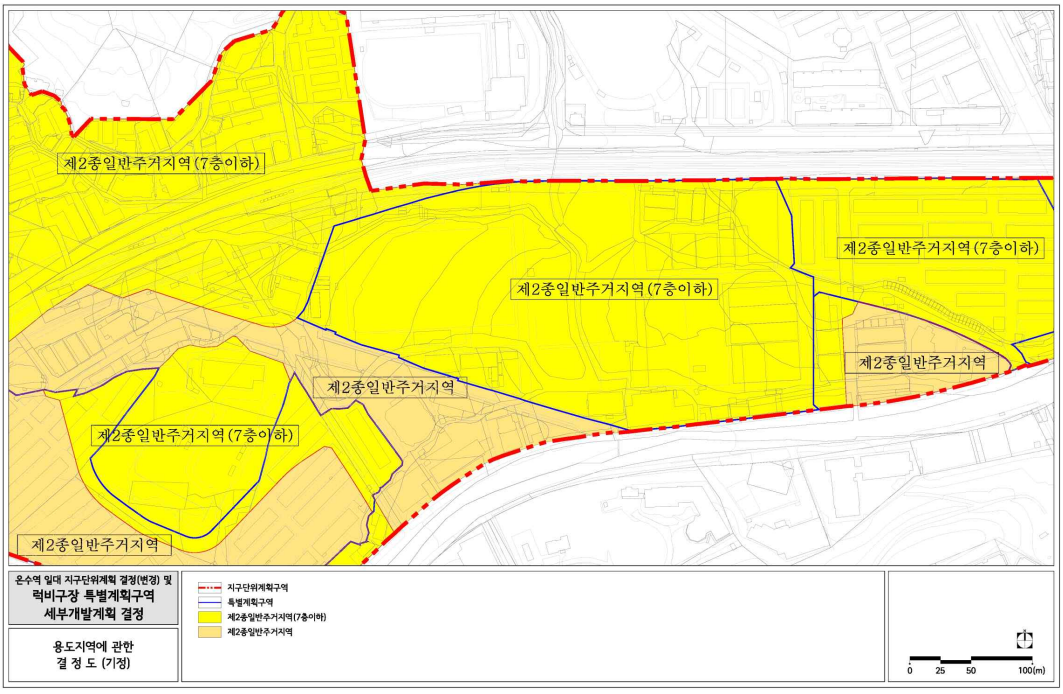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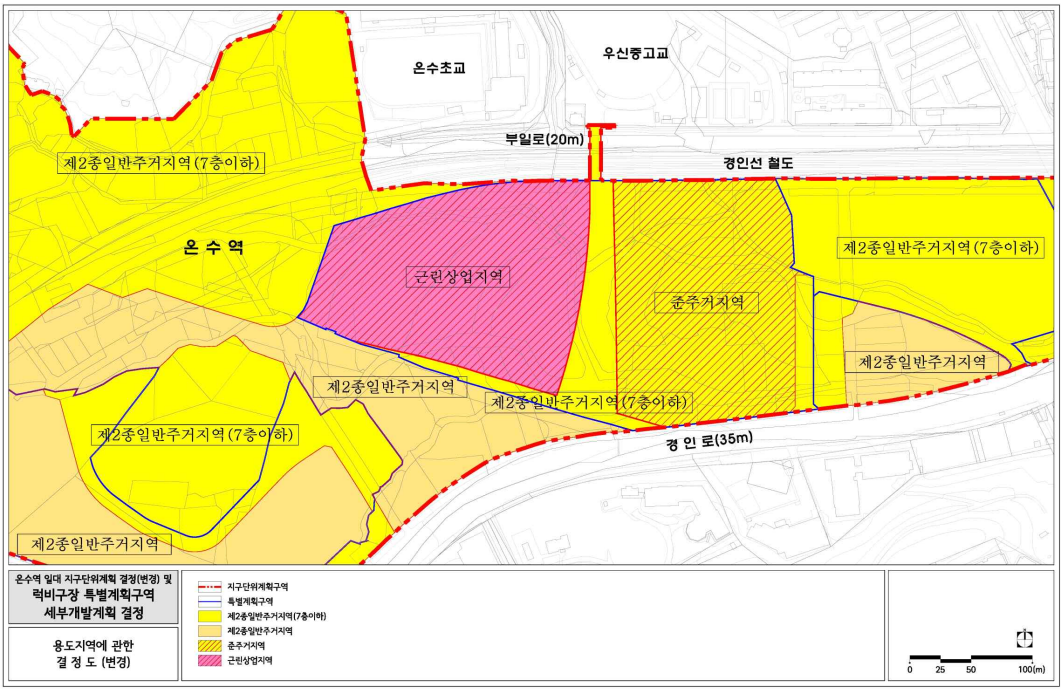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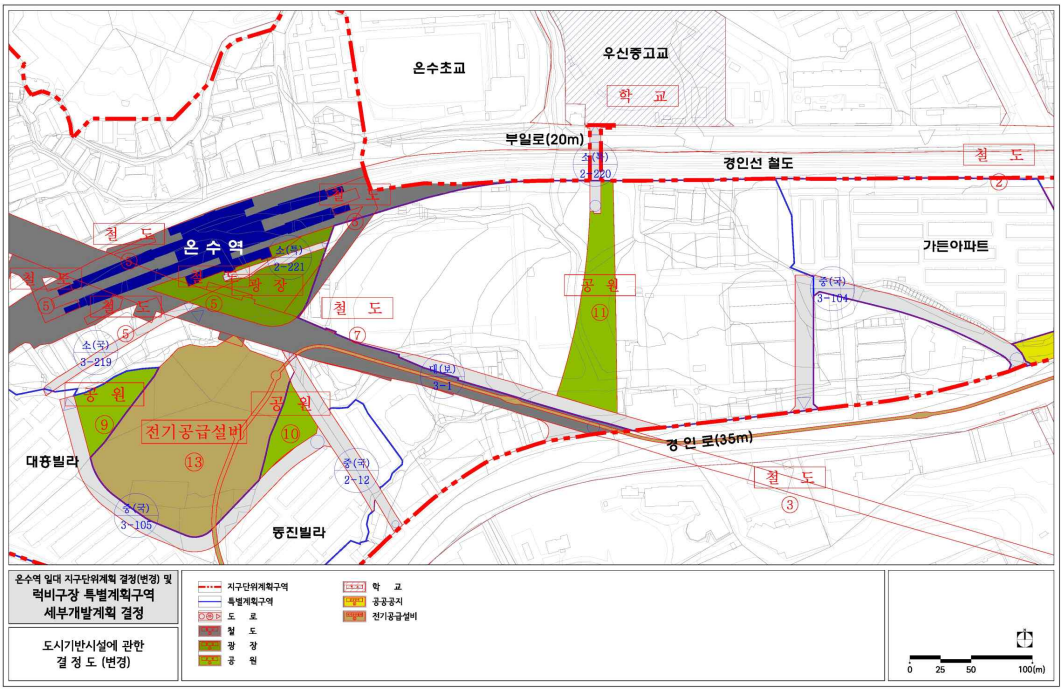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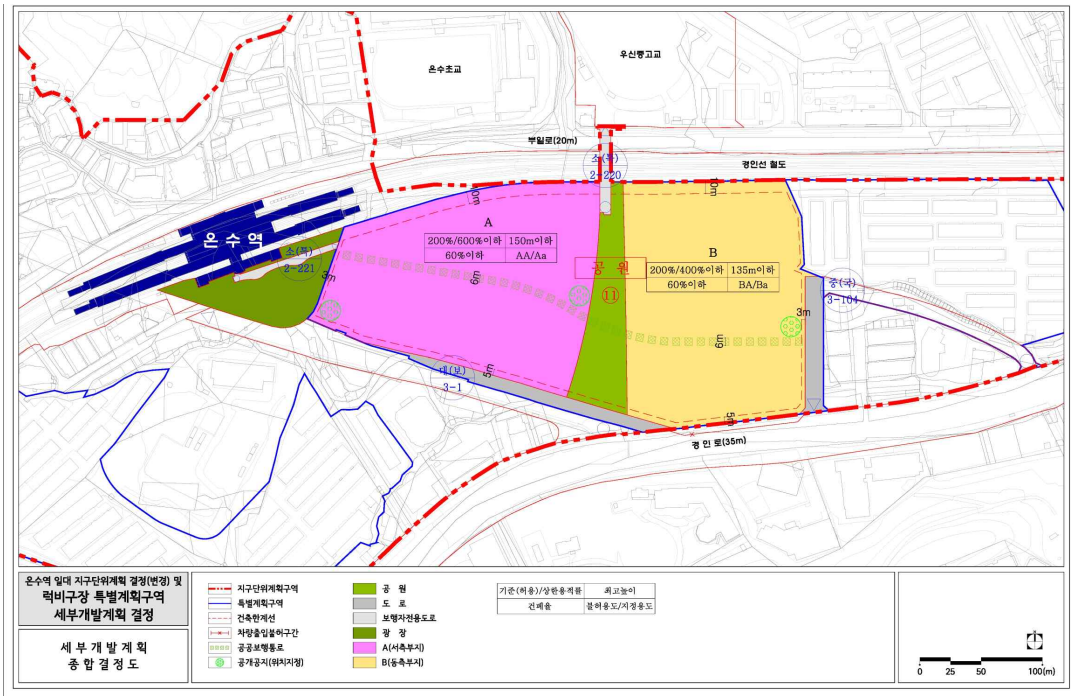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이찬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2번길 *6-*, **9호(신북면)	일시 : 2024-01-04 00:10 장소 : 서울시 고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전인찬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2길 *0, **3호(화곡동)	일시 : 2024-04-18 23:35 장소 : 서울시 일원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김동봉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0-* ,*호(청학동)	일시 : 2024-04-22 21:45 장소 : 서울시 삼성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박현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2-*2(서상동)	일시 : 2024-04-23 09:00 장소 : 서울시 일원동 남부순환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구영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0번길 *4, **1호(병방동)	일시 : 2024-04-14 18:40 장소 : 서울시 삼성동 동부간선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4.7.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4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6.27.~2024.7.11.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바른개발산업 (대표 배수일)	건축 공사업 02-169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5 303호 (마곡동, 메트로비즈타워)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미보완	등록말소	2024.7.19.(금) 10: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성민수	법 제83조 제3호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4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6.27.~2024.7.11.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소노이엔씨 종합건설 (대표 오주현)	건축 공사업 01-38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12 , 402호 (화곡동)	○ 보증가능금액 실효 - 2024.4.18.담보권실행(출자좌수 일부 취득)	영업정지	2024.7.19.(금) 14: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성민수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4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1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35852817	강서구 초록마을로34길 84 50O호(화곡동 은아맨션)	상하수도요금	21.03~24.03	19회	283,76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건물	강서구 초록마을로34길 84 50O호(화곡동 은아맨션)	최□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 12	283,760원	2024년 6월 3일

4.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1.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26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및 소재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1.(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공사명)	예정된 처분내용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처분 근거
(주)인우종합건설 (장익수)	건축공사업 01-41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25 , 201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02-6번지)	과태료	2024. 8. 31.(토)	법 제99조 제3호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2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불능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윤*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일시: 2023-01-25 07:11 위반장소: 광나루로(한남동~성수동) 내용: 002다6677(굴삭기,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 적재물:바가지)	처분일: 2024. 02. 26.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4.04.30. 독촉일: 2024. 05. 13.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4. 07.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30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6월 27일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고
1	(주)피닉스씨엠씨 (2003-3)	김경수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업무정지 6개월 ('24.6.27~' 24.12.26)	

1.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31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유특허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해외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유특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처분종류: 통상실시권 허락)

가. 국내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전기차량의 소방용 상부 관통형 관창	10-2672107	통상실시권 허락	2024-05-30
특허	2	차량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장비	10-2671916	통상실시권 허락	2024-05-30
특허	3	침수 대응을 위한 차량 진입 차단 장치	10-2668881	통상실시권 허락	2024-05-21
특허	4	수도관 세척 성능 평가 시스템 및 수도관 세척 성능 평가 방법	10-2666969	통상실시권 허락	2024-05-13
특허	5	고가 사다리차	10-2666225	통상실시권 허락	2024-05-10
특허	6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상수도 원격 검침 이상 데이터의 감시 및 교정하는 방법	10-2665080	통상실시권 허락	2024-05-07
특허	7	투신자살 방지용 안전휀스 어셈블리	10-2659167	통상실시권 허락	2024-04-16
특허	8	소방용 공기 호흡기	10-2651183	통상실시권 허락	2024-03-21
특허	9	자동 수관 정리 및 건조대	10-2648490	통상실시권 허락	2024-03-13
특허	10	사출 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노즐 장치 및 노즐 사용자 경고 시스템	10-2644354	통상실시권 허락	2024-03-04
특허	11	상수도 관로의 자동 드레인 시스템	10-2643359	통상실시권 허락	2024-02-28
특허	12	응집제 주입 감시 시스템 및 이것을 이용한 응집제주입 감시 방법	10-2638855	통상실시권 허락	2024-02-16
특허	13	미세플라스틱 입자 포집기	10-2623676	통상실시권 허락	2024-01-08
특허	14	소방용 라이트 라인 장치	10-2623673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08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5	유출 트러프에 설치되는 이물질 필터링 장치	10-2623229	통상실시권 허락	2024-01-08
특허	16	안전덮개	10-2605569	통상실시권 허락	2023-11-20
특허	17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측시스템	10-2594820	통상실시권 허락	2023-10-24
특허	18	높이 상승 기능을 갖는 투신자살 방지용 안전휀스	10-2554348	통상실시권 허락	2023-07-06
특허	19	휴대용 자동심폐소생장치	10-2554486	통상실시권 허락	2023-07-06
특허	20	소방차 자체분무 자동화시스템	10-2577798	통상실시권 허락	2023-09-07
특허	21	소방호스의 고층 이송을 위한 호스 지지 중계기	10-2572494	통상실시권 허락	2023-08-25
특허	22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광학 센서의 교정 방법 및 장치	10-2390910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21
특허	23	휴대 가능한 연기차단어셈블리	10-2478647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13
특허	24	개선된 수중교각 청소장치	10-2079903	통상실시권 허락	2020-02-14
특허	25	질식소화포를 상단에 구비한 튜브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539154	통상실시권 허락	2023-05-26
특허	26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장치	10-2491008	통상실시권 허락	2023-01-17
특허	27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성분을 제어하는 방법	10-2485386	통상실시권 허락	2023-01-02
특허	28	휴대 가능한 연기차단어셈블리	10-2478647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13
특허	29	영양염류의 회수 및 처리가 가능한 반류수 처리시스템	10-2477025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8
특허	30	부상식 수조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475355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2
특허	31	활성탄 팽창률 측정장치	10-2475354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2
특허	32	온도센서를 구비한 소방장갑	10-2475353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2
특허	33	차량화재진압용 상방방사관창	10-2474445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1
특허	34	보행자용 바닥 신호등 장치	10-2460291	통상실시권 허락	2022-10-25
특허	35	원터치 폴딩형 질식소화포 전기차량 화재진압장치 (차량화재진압을위한폴딩형소방장비)	10-2452851	통상실시권 허락	2022-10-05
특허	36	잉여슬러지를 반류수 및 하수처리공정으로 공급하는 하수 처리 장치 (하수의생물학적처리공정에서발생한잉여슬러지를이용한하수처리시스템)	10-2431186	통상실시권 허락	2022-08-05
특허	37	드론 스테이션이 구비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모듈 결합형 스마트 폴	10-2429271	통상실시권 허락	2022-08-01
특허	38	전기차 충전소가 구비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모듈 결합형 스마트 폴	10-2429277	통상실시권 허락	2022-08-01
특허	39	관창사다리 (내부수관을포함하는소방용사다리)	10-2427899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27
특허	40	차고 초고속 수관건조장치 (소방용수관건조장치)	10-2426685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25
특허	41	배수지 유출 유량 산출시스템	10-2424110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19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42	안전 방화 셔터	10-2420227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08
특허	43	상수도관 잔류염소 제어방법	10-2415636	통상실시권 허락	2022-06-28
특허	44	교량 추락사고 방지장치	10-2401106	통상실시권 허락	2022-05-18
특허	45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광학 센서의 교정 방법 및 장치	10-2390910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21
특허	46	전기안전 교육장비	10-2390914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21
특허	47	중앙분리대 자동개폐 시스템	10-2337001	통상실시권 허락	2021-12-03
특허	48	안전난간 구조체	10-2325549	통상실시권 허락	2021-11-08
특허	49	전자동 소화전 개폐장치	10-2318503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22
특허	50	지주결합용 블록형 함체	10-2314505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13
특허	51	구조용 리프트 장치	10-2313671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12
특허	52	수질사고 방지 시스템	10-2313085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08
특허	53	세척브러쉬를 이용한 상수도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10-230090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9-06
특허	54	고전압을 이용한 동물 포획장치	10-2298039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30
특허	55	소방 훈련용 장치	10-2295387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24
특허	56	여과지 내의 활성탄층 역세척 시스템	10-2294957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23
특허	57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방법	10-2289906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09
특허	58	하수관로 메탄가스 폭발 실험장비	10-2283462	통상실시권 허락	2021-07-23
특허	59	고압에어를 이용한 상수도권 세척장치	10-2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21-05-27
특허	60	지하철 영상효과 및 급정거 체험시스템	10-2256610	통상실시권 허락	2021-05-20
특허	61	도시형 침수 체험 시스템	10-225213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5-10
특허	62	보수 핀을 이용하여 오염을 제어하는 여과막 모듈	10-224772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4-27
특허	63	염화칼슘 등 제설제에 의한 피해방지 장치	10-222915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3-11
특허	64	소화기호스 자동올림장치를 구비한 소화기	10-220900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22
특허	65	소화기호스 자동 올림을 위한 안전핀을 구비한 소화기	10-2209004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22
특허	66	하수 처리 장치	10-2200986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05
특허	67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20-12-09
특허	68	하수슬러지의 인 회수용 필터프레스 장치 및 이를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인 회수 방법	10-2191378	통상실시권 허락	2020-12-03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69	하수 처리장치에 사용되는 발전 및 발열 시스템	10-2188934	통상실시권 허락	2020-12-01
특허	70	휴대형 스마트 소방장비	10-2188041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5
특허	71	매설관 모니터링 장치	10-2185326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3
특허	72	소방차량충돌 방지장치 및 소방차량 충돌방지 제어방법	10-2184190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3
특허	73	아우트리거 설치 위치의 표시가 가능한 특수차	10-218418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3
특허	74	분사장치	20-0492709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17
특허	75	압축장치를 일체로 구비한 로프 발사총	10-2181838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17
특허	76	전동식 압축기를 구비한 로프 발사총	10-218187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02
특허	77	올림식 사다리 지지 장치 및 이를 설치하는 설치 방법	10-2175339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20
특허	78	시인성이 향상된 안전핀을 구비한 소화기	10-216998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20
특허	79	전자석 체결구조를 구비하여 공기통 교환이 용이한 공기호흡기	10-216998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20
특허	80	링크 구조를 구비하여 공기통 교환이 용이한 공기호흡기	10-2169988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16
특허	81	상수도관 내부 수중 촬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상수도관 내부 촬영 방법	10-2169121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16
특허	82	부식평가 실험 장치	10-2169118	통상실시권 허락	2020-07-06
특허	83	다기능 소방호스	10-2133095	통상실시권 허락	2020-07-03
특허	84	해충 제거 장치	10-2132565	통상실시권 허락	2020-05-27
특허	85	자동 개폐구조를 갖는 그레이팅	10-2118165	통상실시권 허락	2020-05-14
특허	86	개선된 수중교각 청소장치	10-2079903	통상실시권 허락	2020-02-14
특허	87	영상통화 자동전환을 이용한 재난 신고 시스템 및 그방법	10-2113419	통상실시권 허락	2020-04-08
특허	88	질식소화포를 상단에 구비한 튜브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539154	통상실시권 허락	2023-05-26
특허	89	부식 평가 시험 장치	10-2101126	통상실시권 허락	2020-04-02
특허	90	드론을 활용한 수중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10-2099056	통상실시권 허락	2020-03-20
특허	91	오존 및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	10-2094097	통상실시권 허락	2020-03-02
특허	92	혼화장치	10-2086256	통상실시권 허락	2020-02-20
특허	93	어깨 지지부 및 이를 포함하는 주들것 (1)	10-2074580	통상실시권 허락	2019-11-19
특허	94	교량의 배수 감시시스템	10-2044964	통상실시권 허락	2019-10-11
특허	95	일차 슬러지를 재순환하는 것을 이용한 하수 처리 장치	10-2020743	통상실시권 허락	2019-09-04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96	환기용 필터장치	10-2018002	통상실시권 허락	2019-08-28
특허	97	발광 헬멧	10-2015243	통상실시권 허락	2019-08-21
특허	98	가림막 및 그 가림막을 이용한 들것	10-2006856	통상실시권 허락	2019-07-29
특허	99	포장체의 온도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포장체의 차열성능 평가방법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71609	통상실시권 허락	2019-04-17
특허	100	교량 무인 점검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34490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26
특허	101	방수 겹이음 시공 공법 및 이를 위한 방수 겹이음 시공장치	10-1929499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10
특허	102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06546	통상실시권 허락	2018-10-02
특허	103	변형 가능한 환자 이송 장비	10-188906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09
특허	104	비상 탈출 장치	10-1881455	통상실시권 허락	2018-07-18
특허	105	맨홀 덮개 개폐 장치	10-1865366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31
특허	106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시공 방법	10-186454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특허	107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10-186454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특허	108	드레인 밸브	10-1861844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1
특허	109	프리스트레스 도입형 강재 및 이의 제작방법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7984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0
특허	110	밸브 상태 확인장치	10-1847732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04
특허	111	비산측정용 고효율 시료포집 장치	10-182413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1-25
특허	112	하수관로 물 돌리기 시스템	10-181488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2-27
특허	113	칼슘제를 이용한 수돗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1805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9
특허	114	소방용 스탠드 파이프	10-179638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03
특허	115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785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9
특허	116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P)의 회수 방법	10-178524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8
특허	117	배출수지 순차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78309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2
특허	118	가로등 부하선로 측정장치 및 그 방법	10-177282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8-23
특허	119	도로포장용 차열성 도료조성물	10-175494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특허	120	역류 방지용 수도 미터기(서울시 지역 제한)	10-173989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19
특허	121	환자 이송용 들것	10-17143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02
특허	122	조류퇴치장치	10-1743707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30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23	다기능 안전벨트	10-172363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30
특허	124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2)	10-17057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2-06
특허	125	복합 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10-1683630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1
특허	126	출동정보전달 시스템	10-156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02
특허	127	등기구	10-1696149	통상실시권 허락	2017-01-06
특허	128	중온화 펠렛형 아스팔트용 박리방지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수분저항성이 우수한 중온화 아스팔트 혼합물	10-168711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9
특허	129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6873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12
특허	130	다기능 안전면체	10-169252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28
특허	131	다기능 구조낭	10-1674165	통상실시권 허락	2016-11-02
특허	132	물 흐름 감지형 제수밸브	10-164317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21
특허	133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19
특허	134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15
특허	135	심폐소생술 실습장치(1)	10-1610289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1
특허	136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웹 페이지 생성 장치 및 제공 시스템	10-1592496	통상실시권 허락	2016-02-01
특허	137	흙 콘크리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7579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2-02
특허	138	무장애 스마트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10-1574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27
특허	139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140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141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통상실시권 허락	2015-08-05
특허	142	흉부 압박 시스템	10-153241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6-23
특허	143	야간 관측이 용이한 하천 수위 측정장치	10-151959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5-06
특허	144	플라스터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14809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17
특허	145	가교형 받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06
특허	146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의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478422	통상실시권 허락	2014-12-24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47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10-142475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7-23
특허	148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투입량 결정방법	10-1400950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149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150	장거리방수용 방수포	10-139566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51	구명장치	10-139566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52	토석류 저감 장치	10-1395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53	통합건설 정보관리 시스템	10-139566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54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칼라 아스팔트 조성물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9241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4-29
특허	155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특허	156	방화커튼장치	10-134304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2
특허	157	내식성이 향상되는 수도시설용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후처리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0998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특허	158	휴대용 검사장치	10-1279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159	굴착방지 가변형 제수밸브	10-1279625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160	국지도로용 광방향성 반사블록을 구비한 BUG제어 LED조명등(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13-04-24
특허	161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3-11
특허	162	요동방지 호스지지체	10-123454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2-13
특허	163	투수포장 구조체	10-122507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6
특허	164	오거장비용 가림막 자동화 장치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24693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5
특허	165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1-21
특허	166	유지보수 발판이 구비된 도로 전광표시	10-119745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30
특허	167	DMP 개질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10-1195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168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붙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장치	10-1195199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169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70	DMP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10-1188092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171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10-118806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172	복합형 빗물받이 뚜껑 및 그 시공구조	10-1188005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173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지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배플	10-1179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174	수도계량기 카운터 걸림 검사정치	10-1179023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175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4
특허	176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177	표면장력 저감을 이용한 막의 완결성 시험방법	10-11646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178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10-1131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23
특허	179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15
특허	180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30
특허	181	자가 공기호흡장치	10-108372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9
특허	182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2
특허	183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0-12
특허	184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통상실시권 허락	2011-09-26
특허	185	전염소 투입률 산출 시스템 및 방법	10-1043521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5
특허	186	무동력으로 초기 기동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3
특허	187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2-24
특허	188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2-24
특허	189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10-099479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1-10
특허	190	바이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9-09
특허	191	방음벽 지주의 연결구조물	10-097663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11
특허	192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통상실시권 허락	2010-07-07
특허	193	후타재가 필요없는 교량용 핑거 조인트 결합 구조물	10-09576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04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94	이동식 소방호수 두루마리 장치	10-09550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20
특허	195	다기능 세척장치	10-095229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02
특허	196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코니칼 튜브	10-0947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0-03-09
특허	197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통상실시권 허락	2010-01-06
특허	198	식생블록 녹화용 모듈	10-0925849	통상실시권 허락	2009-11-02
특허	199	누설방지장치	10-0922996	통상실시권 허락	2009-10-14
특허	200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10-0890246	통상실시권 허락	2009-03-17
특허	201	하수관거 차수로봇용 가물막이 수밀 패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86461	통상실시권 허락	2009-02-24
특허	202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10-0834690	통상실시권 허락	2008-08-12
특허	203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7-18
특허	204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4365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6-27
특허	205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 시스템	10-085293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5-27
특허	206	미세먼지 청소차(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10152	통상실시권 허락	2008-02-27
특허	207	수도관의 부식억제 방법	10-0797847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8
특허	208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등주	10-079644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5
특허	209	자동제어를 이용한 선택적 전처리 막여과 고도처리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9189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28
특허	210	미끄럼방지용 다짐롤러장치	10-0784031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03
특허	211	기초구조물과 분리결합이 용이한 가로등주	10-077581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1-06
특허	212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통상실시권 허락	2007-08-02
특허	213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 등급코드를 이용한 운전모드 선택장치 및 그 운영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40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214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공정 제어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39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215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씰 보호부재	10-070094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3-22
특허	216	복공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66596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1-02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실용신안	1	제설재 살포장치용 비산방지장치	20-0486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27
실용신안	2	대기전력 차단용 검전 플러그	20-048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20
실용신안	3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장치	20-0485115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2
실용신안	4	다짐도 평가장치	20-0485051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6
실용신안	5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장치	20-0484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실용신안	6	친환경 교육용 원형 상자텃밭	20-048315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4
실용신안	7	그레이팅 개폐기	20-0481637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8	다기능 방화담요	20-0481506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9	잔수제거용 호스말이	20-04807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06-22
실용신안	10	소화기용 도구	20-047269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디자인	1	나비 애벌레 사육키트	30-1258673	통상실시권 허락	2024-04-23
디자인	2	휀스	30-1159841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12
디자인	3	휀스	30-1142145	통상실시권 허락	2021-12-10
디자인	4	저금통	30-1102997	통상실시권 허락	2021-03-30
디자인	5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2)	30-0962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6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1)	30-0962209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7	상수도용 공기밸브 뚜껑	30-09082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2
디자인	8	관이음매용 플랜지(거치대를 장착한 밸브)	30-0902760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9	맨홀받침 블록(1)(2)(매몰형 지하식 소화전 맨홀하부 기초블록)	30-0902711-0001/000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10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30-081472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18
디자인	11	수도용 가변 이형관(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30-072573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1-13
디자인	12	가로등	30-074344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디자인	13	가로등	30-0723292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나. 해외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비고
특허	1	흉부압박시스템	일본	JP/2015-036270	639149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31	국내특허 10-1532418
특허	2	소화장치	중국	CN/201310158852 9	103372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6-03-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3	소화장치	일본	JP/2013-95853	568174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1-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미국	US/2011/0220558	883471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9-1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5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중국	CN/200980122574	102066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6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일본	JP/2011-512410	535651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0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7	조류퇴치장치	미국	US/2014/631663	965535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3	국내특허 10-1743707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각 시유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창의행정담당관 주무관 정훈선 앞
- 이메일 : nusnuh@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특허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해외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특허권 실시료 견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견적금액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견적금액은 예상 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로 한다.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3) 실시료 견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 체결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 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견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산내용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계약 체결시 확정함)
- 기본율 : 기본 3% (계약 체결시 확정함)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 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주무관 정훈선(☎ 02-2133-7828, nusnuh@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특허권 처분)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10-0000000호		
⑤ 발명 (고안) 의 명칭				
⑥처 분 의 종 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2 . . - 202 . . (년간) 지 역 : 대한민국 전역 내 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⑧ 견 적 금 액		(예시) 금 96(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합계					

5. 시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실 시 료 견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 견적금액	*금 96C천원*

[예시]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C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C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C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C개 × 40C천원/개 × 80% × 3% =96C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24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35호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의 주소로 피청구인 답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및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및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3. 대상 및 내용
- 대 상: 청구인 김○○
(서행심 2024-342 이행강제금 정리보류 결정결의 등 취소청구)
- 내 용: 피청구인 답변서 송달
- 사 유: 청구서 기재 주소(송달장소)등에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

4. 공고기간: 2024. 6. 27. (목) ~ 2024. 7. 10. (수) (14일간)

5. 송달방법: 서울특별시 시보 게재

6.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 답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2133-66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3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34136014	강서구 곰달래로47길 45 303호	상하수도요금	21.06~24.02	17회	398,560원
033182257	강서구 까치산로14길 50-6 202호	상하수도요금	21.03~24.03	19회	445,130원
031807613	강서구 까치산로14길 41-6 501호	상하수도요금	21.03~24.03	19회	111,24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건물	강서구 곰달래로47길 45 303호	오□윤	강서구 곰달래로47길 45	398,560원	2024년 6월 3일
건물	강서구 까치산로14길 50-6 202호	권□형	강서구 까치산로14길 50-6	445,130원	2024년 6월 3일
건물	강서구 까치산로14길 41-6 501호	진□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78번길 42-2	111,240원	2024년 6월 3일

4.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1.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4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주)경원디앤피]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나 현재 영업소재지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6. 27.(목) ~ 2024. 7. 11.(목)

2.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행정처분(3차 - 등록취소)</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5">대표 정성필 [(주)경원디앤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12, 2층(서초동, 석탑빌딩)</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행정처분(3차 - 등록취소)</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3차
- 예방과-9984(2024.6.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청문 계획[(주)경o디앤피-등록취소]”</td></tr>
<tr><td rowspan="4">청문실시</td><td>기관명</td><td>서초소방서</td><td>부서명</td><td>예방과</td><td>담당자</td><td>김보미</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td><td>전화번호</td><td>02-6981-5904</td></tr>
<tr><td>일 시</td><td colspan="3">2024년 7월 23일(화) 10:00</td><td>장소</td><td>서초소방서 3층 창의실</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급</td><td colspan="4">서초소방서 소방경</td></tr>
<tr><td>성 명</td><td colspan="4">○○○</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섬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문회 미참석 또는 의견서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인 (행정처분 3차 – 등록취소)가 청문실시일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서식 7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7.28>

증거조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증명할 사실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7. 11.>

문서 [ ] 열람 [ ] 복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 또는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위 처분 또는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사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4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용마터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방화~사가정선(특별시도 42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용마터널(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중형	대형	경차	소형	중형	대형
통행료	850	1,700	2,600	3,300	850	1,700	2,900	3,8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중 형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 승합차,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이하)	2종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 승합차, 2축 5.5톤~10톤 이하 화물차)	3종
대 형	3축, 대형 화물차(10톤 초과)	4종
	4축이상, 대형 화물차(10톤 초과)	5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용마터널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3.566km)
요금소 : 용마터널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 제설차량은 제설기간(11.15~익년 3.15)에 한해서 감면함

9. 통행료 수납방법 : 유인식(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무인식(하이패스)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4.7.1.(월)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4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강남순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강남순환로(특별시도 07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강남순환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중형	경차	소형	중형
통행료	금천TG	900	1,800	2,900	950	1,900	3,200
	선암TG	900	1,800	2,900	950	1,900	3,2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중 형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 승합차,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미만)	2종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 승합차, 2축 5.5톤~10톤 미만 화물차)	3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강남순환로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12.4km)
요금소 : 금천, 선암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차량 및 제설차량
※ 제설차량은 제설기간(11.15~익년 3.15)에 한해서 감면함

9. 통행료 수납방법 : 유인식(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무인식(하이패스)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4.7.1.(월)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4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신월여의지하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신월여의지하도로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터널(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경차	소형
통행료	1,300	2,600	1,350	2,7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신월여의지하도로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7.53km)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9. 통행료 수납방법 : 무인식(하이패스) 및 영상 인식에 의한 후불 고지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4.7.1.(월)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4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서부간선지하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3. 통행료 수납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경차	소형
통행료	1,350	2,700	1,400	2,8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서부간선지하도로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 금천구 독산동(10.33km)
요금소 : 서부간선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9. 통행료 수납방법 : 유인식(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무인식(하이패스) 및 영상 인식에 의한 후불 고지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4.7.1.(월)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4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94호(1976.4.3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96호(2001.1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33호(2020.12.1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기본계획 수립)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일대 세종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2133-8411, fax : 2133-0739)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4, fax : 411-1753)

다.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일대 세종대학교에 대하여 기결정되었던 대양복합관 외 3개동의 건축계획을 취소하고 금회 혁신성장시설인 애지헌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학교	대 학 (세종대)	합 계		117,804.2	-	117,804.2	서고시 제94호 (1976.04.30)	
			제1캠퍼스	광진구 군자동 98일대	108,268.2	-	108,268.2		
			제2캠퍼스	광진구 군자동 111-1일대	9,086.0	-	9,086.0		
			제3캠퍼스	광진구 군자동 275-2일대	450.0	-	450.0		

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주요 내용

- 밀도계획 : 조례용적률 완화 19.42%(1캠퍼스 4구역, 혁신성장시설 21,020.76㎡)
- 높이계획 : 4구역 일부 (기정) 56m(12층) 이하 → (변경) 80m(13층) 이하
- 혁신성장계획 : 4구역 내 애지헌 혁신성장시설 신설

바.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51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0.(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yka1303@seoul.go.kr
 팩스: 02-2133-1076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4. 7. 10. ~ 2024. 7. 24.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4년 3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3202105	기타	2024-06-11 10:4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열차	2024-03-18 11:55
2	1078833202106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4 11:11
3	1078833202107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4 14:39
4	1078833202108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4 13:52
5	1078833202109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5 11:37
6	1078833202110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7 13:23
7	1078833202111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7 14:01
8	1078833202140	기타	2024-06-07 18:0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4-03-28 10:27
9	1078833202141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28 10:35
10	1078833202142	기타	2024-06-11 10:23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열차	2024-03-29 11:07
11	1078833202143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29 11:33
12	1078833202144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29 12:12
13	1078833202145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16 10:58
14	1078833202146	폐문부재	2024-06-11 10:46	4712**-*******	손*선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길 8-6	열차	2024-03-19 14:06
15	1078833202147	기타	2024-06-11 10:23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열차	2024-03-23 10:52
16	1078833202151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14 11:33
17	1078833202153	폐문부재	2024-06-11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4-03-19 10:53
18	1078833202154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20 10:57
19	1078833202155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20 11:15
20	1078833202157	기타	2024-06-10 06:13	6903**-*******	박*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5다길	열차	2024-03-07 10:23
21	1078833202162	주소불명	2024-06-03 11:18	5410**-*******	홍*목	서울 구로구 개봉로 17길 18-6	열차	2024-03-30 12:28
22	1078833202073	기타	2024-06-11 09:42	5902**-*******	권*철	서울시 종로구 종로 356-5	열차	2024-03-13 10:15
23	1078833202074	기타	2024-06-11 09:42	5902**-*******	권*철	서울시 종로구 종로 356-5	열차	2024-03-13 11:30
24	1078833202075	기타	2024-06-11 10:42	5309**-*******	김*경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64길	열차	2024-03-28 10:56
25	1078833202112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7 14:20
26	1078833202113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7 14:4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27	1078833202114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09 10:31
28	1078833202115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14 11:21
29	1078833202116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14 14:45
30	1078833202117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14 15:23
31	1078833202118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15 13:25
32	1078833202077	기타	2024-06-11 06:59	4406**-*******	김*옥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05 13:35
33	1078833202078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08 13:23
34	1078833202079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10 11:09
35	1078833202080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11 13:27
36	1078833202081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13 13:47
37	1078833202082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14 14:36
38	1078833202083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21 10:56
39	1078833202119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15 14:35
40	1078833202120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21 10:48
41	1078833202121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21 11:12
42	1078833202122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25 11:33
43	1078833202123	폐문부재	2024-06-11 12:19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3-28 10:48
44	1078833202084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22 13:31
45	1078833202085	기타	2024-06-11 10:42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열차	2024-03-01 10:48
46	1078833202086	기타	2024-06-11 10:42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열차	2024-03-09 12:39
47	1078833202087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02 12:58
48	1078833202088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05 13:48
49	1078833202089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21 11:11
50	1078833202090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31 10:51
51	1078833202128	기타	2024-06-10 18:00	4708**-*******	진*복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24 도시개발아파트	열차	2024-03-16 14:38
52	1078833202129	기타	2024-06-10 08:00	5602**-*******	최*숙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7길 18-26(개봉동)	열차	2024-03-31 11:32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53	1078833202130	기타	2024-06-11 10:23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열차	2024-03-04 11:36
54	1078833202131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04 13:03
55	1078833202132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05 10:34
56	1078833202091	폐문부재	2024-06-10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4-03-04 11:02
57	1078833202092	폐문부재	2024-06-10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4-03-29 10:47
58	1078833202093	폐문부재	2024-06-10 10: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4-03-14 09:00
59	1078833202094	주소불명	2024-06-03 14:23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4-03-19 09:19
60	1078833202095	수취인불명	2024-06-03 13:34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2	열차	2024-03-23 17:09
61	1078833202134	기타	2024-06-07 18:0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4-03-05 11:23
62	1078833202135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07 10:37
63	1078833202137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19 10:45
64	1078833202133	기타	2024-06-11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3-05 10:53
65	1078833202138	기타	2024-06-11 06:59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4-03-21 10:27
66	1078833202139	기타	2024-06-11 10:23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열차	2024-03-22 13:45
67	1078833202098	주소불명	2024-06-04 14:51	6110**-*******	이*근	서울시 시루봉로 29길3	열차	2024-03-07 11:00
68	1078833202099	이사불명	2024-06-03 10:13	5112**-*******	이*환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8번길 23	열차	2024-03-04 13:27
69	1078833202100	이사불명	2024-06-03 10:13	5112**-*******	이*환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8번길 23	열차	2024-03-07 11:05
70	1078833202101	이사불명	2024-06-03 10:13	5112**-*******	이*환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8번길 23	열차	2024-03-08 13:25
71	1078833202102	이사불명	2024-06-03 10:13	5112**-*******	이*환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8번길 23	열차	2024-03-11 11:22
72	1078833202103	기타	2024-06-11 10:4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열차	2024-03-16 10:46
73	1078833202104	기타	2024-06-11 10:4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열차	2024-03-18 10:58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5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6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3호터널	2023-12-18 08:47:35	113로5322	10,300	김*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2길
2	남산3호터널	2023-12-18 09:38:11	66거9812	10,300	P**O X*****U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로
3	남산3호터널	2023-12-18 11:32:58	116허7207	10,300	주식회사 데****카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4	남산3호터널	2023-12-18 12:22:49	171루4346	10,300	주식회사 시**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5	남산1호터널	2023-12-18 13:32:46	42구7180	10,300	조*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6	남산1호터널	2023-12-18 15:06:31	55러6868	10,300	박*우	경기도 평택시 관동길
7	남산1호터널	2023-12-18 15:18:01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8	남산1호터널	2023-12-18 16:06:30	287도7954	10,300	H***G I* S**G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
9	남산1호터널	2023-12-18 17:05:53	140오3952	10,300	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	남산1호터널	2023-12-18 17:16:03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11	남산1호터널	2023-12-18 17:24:35	123나8714	10,300	이*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2	남산1호터널	2023-12-18 17:41:33	231라1211	10,300	서*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34번길
13	남산1호터널	2023-12-18 18:21:03	32우7995	10,300	홍*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내문호길
14	남산1호터널	2023-12-18 18:33:36	07우7185	10,300	박*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장로
15	남산3호터널	2023-12-18 18:50:22	57부9312	10,300	P********O D********N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16	남산1호터널	2023-12-18 19:07:57	15라3761	10,300	최*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14번길
17	남산1호터널	2023-12-18 19:10:04	392나6903	10,300	김*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7길
18	남산1호터널	2023-12-18 19:37:15	48마2146	10,300	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0길
19	남산1호터널	2023-12-18 19:38:18	11로7611	10,300	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0	남산1호터널	2023-12-19 07:34:55	60주1462	10,300	이*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21	남산3호터널	2023-12-19 08:07:15	12우2029	10,300	양*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22	남산3호터널	2023-12-19 09:08:45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23	남산1호터널	2023-12-19 09:18:31	103로8317	10,300	주식회사 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24	남산3호터널	2023-12-19 10:19:11	48어9588	10,300	배*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2길
25	남산3호터널	2023-12-19 10:20:17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26	남산3호터널	2023-12-19 10:34:57	48어9588	10,300	배*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2길
27	남산1호터널	2023-12-19 11:27:16	140오3952	10,300	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8	남산3호터널	2023-12-19 12:05:45	138두3079	10,300	나****경 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9	남산1호터널	2023-12-19 14:15:45	173가1791	10,300	신*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0	남산3호터널	2023-12-19 14:17:59	19러1171	10,300	P**O S*****I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489번나길
31	남산1호터널	2023-12-19 14:28:49	69거5006	10,300	송*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32	남산1호터널	2023-12-19 14:48:49	60저4869	10,300	임*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3	남산3호터널	2023-12-19 16:08:23	182다8245	10,300	보*****점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34	남산1호터널	2023-12-19 16:12:41	350부4284	10,300	정*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5	남산1호터널	2023-12-19 16:19:25	55어8685	10,300	주식회사 에***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0길
36	남산1호터널	2023-12-19 16:31:56	31루8822	10,300	이*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37	남산3호터널	2023-12-19 16:42:32	113러6106	10,300	김*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38	남산1호터널	2023-12-19 18:28:32	22가7391	10,300	연*연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39	남산3호터널	2023-12-20 09:21:20	112가1757	10,300	주식회사 에******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40	남산1호터널	2023-12-20 09:24:14	54모1603	10,300	김*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75번길
41	남산1호터널	2023-12-20 09:26:56	103로8317	10,300	주식회사 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42	남산1호터널	2023-12-20 10:22:20	06너2705	10,300	K*M K***G J*N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43	남산1호터널	2023-12-20 12:15:28	104허9032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44	남산1호터널	2023-12-20 13:23:44	108더2354	10,300	김*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45	남산1호터널	2023-12-20 14:33:34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46	남산3호터널	2023-12-20 14:48:04	121고6408	10,300	주식회사 라*******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4길
47	남산3호터널	2023-12-20 15:03:38	286버6167	10,300	유한회사 동****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4길
48	남산1호터널	2023-12-20 15:34:24	349루9836	10,300	박*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46번길
49	남산3호터널	2023-12-20 15:45:45	393고2248	10,300	이*빈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50	남산1호터널	2023-12-20 17:53:08	136로4524	10,300	송*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51	남산1호터널	2023-12-20 19:25:52	66누6466	10,300	유*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8길
52	남산3호터널	2023-12-20 19:26:53	11로6600	10,300	이*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1길
53	남산1호터널	2023-12-21 08:32:35	10가3507	10,300	안*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54	남산3호터널	2023-12-21 08:51:34	113로5322	10,300	김*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2길
55	남산1호터널	2023-12-21 09:16:46	48누3123	10,300	김*영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56	남산1호터널	2023-12-21 11:15:15	174보1122	10,300	우*****탈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57	남산1호터널	2023-12-21 12:46:39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58	남산3호터널	2023-12-21 14:26:44	21부0770	10,300	문*윤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425번길
59	남산1호터널	2023-12-21 14:52:14	34오4959	5,150	(주)씨*****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60	남산1호터널	2023-12-21 16:23:03	277조5927	10,300	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0길
61	남산1호터널	2023-12-21 16:48:34	54다6138	10,300	어*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45길
62	남산3호터널	2023-12-21 18:24:31	18어8340	10,300	이*한	경기도 화성시 지산2길
63	남산1호터널	2023-12-21 18:36:30	286구2174	10,300	박*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64	남산1호터널	2023-12-21 18:56:38	310부9159	10,300	이*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0가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65	남산1호터널	2023-12-21 19:03:31	03러3052	10,300	박*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66	남산1호터널	2023-12-21 19:21:53	160나8728	10,300	김*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서이로
67	남산1호터널	2023-12-21 19:24:54	66누6466	10,300	유*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8길
68	남산1호터널	2023-12-21 19:37:33	38누4262	10,300	(주)브**********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9	남산3호터널	2023-12-21 20:43:29	125호2865	10,300	주식회사 아****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70	남산1호터널	2023-12-21 20:46:25	286구2174	10,300	박*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1	남산3호터널	2023-12-21 20:52:30	106서4195	5,150	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5길
72	남산1호터널	2023-12-22 10:30:12	03주5337	10,300	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73	남산1호터널	2023-12-22 10:34:34	57머0582	5,150	이*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74	남산1호터널	2023-12-22 11:04:13	142도7318	10,300	배*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75	남산3호터널	2023-12-22 11:10:46	23버8897	10,300	윤*승	경기도 광주시 태성1로
76	남산1호터널	2023-12-22 11:14:44	04우9224	10,300	임*주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77	남산1호터널	2023-12-22 11:42:30	64로6201	10,300	K*U G******N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40길
78	남산1호터널	2023-12-22 11:53:19	55어1122	10,300	한*****부(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태봉로
79	남산1호터널	2023-12-22 13:26:12	158구3084	10,300	마*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1길
80	남산3호터널	2023-12-22 14:37:29	60러5627	10,300	후*******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81	남산1호터널	2023-12-22 14:43:11	312구7037	10,300	주식회사 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82	남산1호터널	2023-12-22 14:46:05	13조1271	10,300	박*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83	남산1호터널	2023-12-22 14:54:22	62고7305	10,300	K**N V******R S********H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38번길
84	남산1호터널	2023-12-22 15:12:09	06어6025	10,300	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85	남산3호터널	2023-12-22 15:53:39	66누6466	10,300	유*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8길
86	남산3호터널	2023-12-22 17:01:30	106다1641	10,300	(주)다**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87	남산3호터널	2023-12-22 17:16:11	292우2004	10,300	차*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102번길
88	남산1호터널	2023-12-22 18:04:47	24다8119	10,300	권*택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89	남산1호터널	2023-12-22 18:06:16	43수8668	10,300	전****상-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남산1호터널	2023-12-22 18:24:40	102다6544	10,300	민*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91	남산1호터널	2023-12-22 18:35:21	14더6278	10,300	B*******E, M******A A**E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92	남산3호터널	2023-12-22 18:36:09	142도7318	10,300	배*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93	남산1호터널	2023-12-22 18:43:39	281너1132	10,300	김*실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233번길
94	남산1호터널	2023-12-22 19:04:47	21누0809	10,300	홍*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5	남산1호터널	2023-12-22 19:43:36	27소6027	10,300	신*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96	남산1호터널	2023-12-22 19:52:09	36보3101	10,300	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97	남산3호터널	2023-12-22 20:32:18	56마0415	10,300	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2길
98	남산1호터널	2023-12-26 08:54:25	20버3432	10,300	이*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280번길
99	남산1호터널	2023-12-26 09:45:56	290우8545	10,300	주식회사 언***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00	남산3호터널	2023-12-26 10:21:26	146하9602	10,300	주식회사 신***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01	남산3호터널	2023-12-26 10:33:43	100두7941	10,300	이*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9길
102	남산1호터널	2023-12-26 11:09:31	51부6688	10,300	김*초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03	남산1호터널	2023-12-26 11:11:41	180로6886	10,300	김*옥	경기도 광주시 옥토골길
104	남산1호터널	2023-12-26 11:47:01	47가7710	10,300	이*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105	남산1호터널	2023-12-26 12:45:00	24로1898	10,300	이*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06	남산3호터널	2023-12-26 13:48:58	43수7006	5,150	P**O D*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07	남산3호터널	2023-12-26 14:07:00	63더8859	10,300	이*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16번길
108	남산3호터널	2023-12-26 14:23:25	15가5740	10,300	전*범	경기도 시흥시 문화마을로16번길
109	남산3호터널	2023-12-26 14:42:21	398버2864	5,150	(주)유*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110	남산3호터널	2023-12-26 14:59:26	59마5691	10,300	한*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11	남산1호터널	2023-12-26 15:08:23	398조1845	10,300	이*윤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289번길
112	남산1호터널	2023-12-26 15:57:39	100조3438	10,300	고*욱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13	남산1호터널	2023-12-26 17:14:30	67주9729	10,300	박*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4번길
114	남산3호터널	2023-12-26 17:37:38	173무3013	10,300	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15	남산1호터널	2023-12-26 18:47:54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16	남산1호터널	2023-12-26 20:03:58	285모2292	10,300	박*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117	남산1호터널	2023-12-27 07:25:56	60주1462	10,300	이*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18	남산3호터널	2023-12-27 07:47:17	17더9072	10,300	박*성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19	남산1호터널	2023-12-27 08:07:27	212구7240	10,300	유한회사 원****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20	남산1호터널	2023-12-27 12:35:42	20하0499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121	남산3호터널	2023-12-27 12:53:37	54무6008	10,300	우*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275번길
122	남산3호터널	2023-12-27 12:56:10	387오7068	10,300	주식회사 티**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23	남산3호터널	2023-12-27 13:15:18	10머4665	10,300	한*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24	남산3호터널	2023-12-27 13:18:59	36거8792	10,300	(주)육**업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수회길
125	남산1호터널	2023-12-27 13:30:28	31서6820	5,150	송*근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126	남산3호터널	2023-12-27 13:49:23	46더0313	10,300	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27	남산1호터널	2023-12-27 13:56:42	48무9803	10,300	S**N C******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28	남산1호터널	2023-12-27 13:57:43	184서9933	10,300	이****팅 유한책임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29	남산1호터널	2023-12-27 14:00:48	55오0794	10,300	(주)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30	남산3호터널	2023-12-27 14:27:54	31로4151	10,300	안*영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296번길
131	남산1호터널	2023-12-27 15:05:49	05러4285	10,300	주식회사 다*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32	남산3호터널	2023-12-27 15:21:36	31서6820	5,150	송*근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133	남산1호터널	2023-12-27 15:45:11	379더2383	10,300	오***든 매***트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34	남산1호터널	2023-12-27 15:52:51	356노1023	10,300	P*I R****I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135	남산1호터널	2023-12-27 16:04:57	46수4297	10,300	윤*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36	남산1호터널	2023-12-27 16:27:11	172수9006	10,300	김*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길
137	남산3호터널	2023-12-27 16:59:51	11보7615	10,300	이*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328번길
138	남산3호터널	2023-12-27 17:47:55	17더9072	10,300	박*성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39	남산1호터널	2023-12-27 18:32:34	15나2972	10,300	글******아 주식회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로239번길
140	남산1호터널	2023-12-27 18:40:25	398노2643	10,300	주식회사 뷰****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41	남산1호터널	2023-12-27 19:04:32	13머7911	10,30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42	남산1호터널	2023-12-27 19:18:02	36노0854	10,300	오*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143	남산3호터널	2023-12-27 20:24:04	163부3659	10,300	김*미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44	남산1호터널	2023-12-27 20:35:50	327누1719	10,300	최*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1길
145	남산1호터널	2023-12-27 20:43:06	149가3381	10,300	유*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46	남산1호터널	2023-12-28 07:12:31	68너4002	10,300	김*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3가길
147	남산1호터널	2023-12-28 07:39:48	12누5442	10,300	김*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21길
148	남산1호터널	2023-12-28 07:48:37	09모6100	10,300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49	남산1호터널	2023-12-28 09:20:47	16두9008	10,300	주식회사 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150	남산3호터널	2023-12-28 10:47:10	51부6688	10,300	김*초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51	남산3호터널	2023-12-28 11:00:01	69마3904	5,150	정*영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209번길
152	남산1호터널	2023-12-28 11:09:17	51부6688	10,300	김*초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53	남산1호터널	2023-12-28 11:36:22	108더2354	10,300	김*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154	남산1호터널	2023-12-28 12:17:36	69오7465	10,300	도*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3길
155	남산1호터널	2023-12-28 12:37:06	66노2530	5,150	오*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37번길
156	남산1호터널	2023-12-28 13:03:25	159고5755	10,300	김*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44번길
157	남산1호터널	2023-12-28 14:52:25	164가1636	5,150	박*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당간지주길74번길
158	남산1호터널	2023-12-28 14:58:37	68주1540	10,300	최*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159	남산1호터널	2023-12-28 15:36:52	15너6659	10,300	최*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60	남산1호터널	2023-12-28 16:18:35	114거4094	10,300	L* M***N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16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61	남산1호터널	2023-12-28 16:28:06	06두2268	10,300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62	남산1호터널	2023-12-28 16:56:59	198거2550	10,300	주식회사 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1길
163	남산3호터널	2023-12-28 17:02:30	58너1999	10,300	김*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64	남산1호터널	2023-12-28 17:09:20	35보4071	10,300	최*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5	남산1호터널	2023-12-28 18:26:33	280두7081	10,300	추*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66	남산1호터널	2023-12-28 18:46:42	370보8480	10,300	주식회사 세**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터2길
167	남산1호터널	2023-12-28 18:49:41	280두7081	10,300	추*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68	남산1호터널	2023-12-28 18:54:55	68소0447	5,150	M* N***L S****Y T****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431번길
169	남산3호터널	2023-12-28 19:25:23	192마9842	5,150	이*희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70	남산3호터널	2023-12-28 19:59:44	293다1644	10,300	(주)더***스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71	남산1호터널	2023-12-28 20:16:11	20나8587	10,300	케*****즈 협**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72	남산1호터널	2023-12-28 20:38:07	272주8277	10,300	에*****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3	남산1호터널	2023-12-28 20:56:34	33가1629	10,300	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174	남산1호터널	2023-12-29 07:16:35	17저9053	10,300	박*좌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175	남산3호터널	2023-12-29 09:32:32	65조4710	5,150	심*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176	남산3호터널	2023-12-29 10:28:11	15라5240	10,300	김*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53번길
177	남산3호터널	2023-12-29 10:44:04	51부6688	10,300	김*초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78	남산1호터널	2023-12-29 10:50:27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79	남산1호터널	2023-12-29 10:54:34	15라5240	10,300	김*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53번길
180	남산1호터널	2023-12-29 11:27:38	35러1237	10,300	주-엘*******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181	남산1호터널	2023-12-29 11:39:01	329조7590	10,300	임*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82	남산3호터널	2023-12-29 12:21:09	60구5597	10,300	노*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원로97길
183	남산1호터널	2023-12-29 13:12:05	225나2284	10,300	유*원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84	남산3호터널	2023-12-29 13:28:35	50부8231	10,300	S*****N M*****D A***D M*****D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85	남산1호터널	2023-12-29 14:06:16	04모3453	10,300	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86	남산1호터널	2023-12-29 14:12:30	192마9842	5,150	이*희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87	남산1호터널	2023-12-29 14:31:45	27거7807	10,300	국*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3길
188	남산1호터널	2023-12-29 14:37:30	45무0639	5,150	김*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27번길
189	남산1호터널	2023-12-29 15:27:05	242더1583	10,300	S****E J****A A*****M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90	남산3호터널	2023-12-29 15:41:21	42더9390	10,300	안*근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208번길
191	남산3호터널	2023-12-29 16:24:37	49버7839	10,300	안*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1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92	남산3호터널	2023-12-29 16:29:48	25부7431	10,300	주식회사 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93	남산1호터널	2023-12-29 17:07:03	307보8484	10,300	W****S T*****L T**I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94	남산1호터널	2023-12-29 17:23:03	42더9390	10,300	안*근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208번길
195	남산1호터널	2023-12-29 17:23:27	61저9475	10,300	오*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6길
196	남산1호터널	2023-12-29 19:05:20	48소5710	10,300	신*현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197	남산1호터널	2023-12-29 20:24:08	383누3334	10,300	이*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6번길
198	남산3호터널	2023-12-29 20:28:12	53보4854	10,300	주식회사 프***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236번길
199	남산3호터널	2023-12-29 20:52:36	35마3200	10,300	K*M Y*****N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0	남산1호터널	2023-12-29 20:55:26	30노9680	10,300	박*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82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4-01-16 07:32:53	13서2443	10,300	박*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4길
2	남산1호터널	2024-01-16 08:43:47	313주2555	10,300	김*은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2길
3	남산1호터널	2024-01-16 09:04:22	367오5454	10,300	김*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4	남산1호터널	2024-01-16 10:07:35	103라5310	10,300	박*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5	남산1호터널	2024-01-16 11:11:23	65수4902	10,300	주식회사 트**랩	경기 광주시 오포읍 봉공길171번길
6	남산1호터널	2024-01-16 11:15:17	06어1920	10,300	주-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6길
7	남산1호터널	2024-01-16 14:00:57	222머8044	10,300	이*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8	남산1호터널	2024-01-16 14:29:15	36머6808	10,300	김*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뒤골길
9	남산3호터널	2024-01-16 15:12:12	41조4281	10,300	송*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8길
10	남산1호터널	2024-01-16 17:00:58	37마0390	10,300	주식회사 비*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11	남산3호터널	2024-01-16 17:07:57	280무2922	10,300	J*N J****I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
12	남산1호터널	2024-01-16 17:27:30	155호6011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13	남산1호터널	2024-01-16 17:27:33	115하1203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14	남산3호터널	2024-01-16 18:19:56	140소2558	10,300	김*양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15	남산3호터널	2024-01-16 19:24:50	69저4216	10,300	S******A N****A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8번길
16	남산1호터널	2024-01-17 08:00:38	20조2752	10,300	김*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3길
17	남산1호터널	2024-01-17 09:23:59	203오7963	10,300	김*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18	남산1호터널	2024-01-17 11:26:39	14도1573	10,300	조*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골길
19	남산1호터널	2024-01-17 13:09:28	224로5934	10,300	글********팅(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20	남산1호터널	2024-01-17 13:42:32	103로8317	10,300	주식회사 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21	남산1호터널	2024-01-17 13:55:09	46저6758	10,300	주식회사 프*****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	남산3호터널	2024-01-17 14:17:49	49버7839	10,300	안*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1길
23	남산1호터널	2024-01-17 14:46:19	56누0700	10,300	차*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24	남산3호터널	2024-01-17 14:54:15	10주9253	10,300	김*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5	남산1호터널	2024-01-17 15:00:18	107라4599	10,300	김*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10길
26	남산1호터널	2024-01-17 15:05:02	12구4524	10,300	아***인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	남산1호터널	2024-01-17 15:38:47	310나6949	10,300	주식회사 알***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8	남산1호터널	2024-01-17 16:08:27	40거1422	10,300	김*왕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29	남산1호터널	2024-01-17 17:03:41	67마8560	10,300	주식회사 피****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0	남산3호터널	2024-01-17 17:41:10	152더1572	10,300	김*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31	남산3호터널	2024-01-17 18:03:58	384누5891	10,300	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32	남산1호터널	2024-01-17 18:42:39	52고3871	10,300	노*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3	남산3호터널	2024-01-17 19:01:31	369무7071	10,300	주식회사 라***폼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34	남산1호터널	2024-01-17 19:25:34	263머8767	10,300	주식회사 히****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35	남산1호터널	2024-01-17 19:39:41	205보1257	10,300	주식회사 세**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36	남산1호터널	2024-01-18 07:24:32	13서2443	10,300	박*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4길
37	남산3호터널	2024-01-18 07:37:48	16나5916	10,300	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5길
38	남산3호터널	2024-01-18 11:35:34	33부5712	10,300	김*식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검바위길
39	남산1호터널	2024-01-18 13:17:01	195노9359	10,300	(주)사****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40	남산1호터널	2024-01-18 13:31:09	194조5202	10,300	주식회사 농****인 주*****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41	남산1호터널	2024-01-18 14:03:51	60저4869	10,300	임*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42	남산1호터널	2024-01-18 14:21:15	155머2458	10,300	안*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43	남산3호터널	2024-01-18 15:01:21	50우2524	10,300	김*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시천길
44	남산3호터널	2024-01-18 18:17:03	47러9188	10,300	김*미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63번길
45	남산3호터널	2024-01-18 18:35:15	18라0556	10,300	원*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46	남산1호터널	2024-01-18 19:13:21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47	남산3호터널	2024-01-18 19:18:57	13러0530	10,300	김*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5길
48	남산1호터널	2024-01-18 19:33:21	52로8441	10,300	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49	남산1호터널	2024-01-18 19:43:44	115러2849	10,300	이*영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9번길
50	남산1호터널	2024-01-18 20:39:08	272주8277	10,300	에*****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남산1호터널	2024-01-19 07:29:50	63머5868	10,300	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2	남산3호터널	2024-01-19 07:38:57	16나5916	10,300	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5길
53	남산1호터널	2024-01-19 08:49:16	45주5261	10,300	조*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54	남산3호터널	2024-01-19 08:58:57	57모2354	10,300	다*****자 창**제 협**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5	남산1호터널	2024-01-19 09:52:59	23다8149	10,300	J*N Y******G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6	남산3호터널	2024-01-19 10:55:41	69조0123	10,300	방*셉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57	남산1호터널	2024-01-19 11:50:41	290소8916	10,300	이*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다길
58	남산1호터널	2024-01-19 12:21:02	284두4640	10,300	임*훈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등산길
59	남산3호터널	2024-01-19 13:58:18	62마1433	10,300	정*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0길
60	남산1호터널	2024-01-19 15:13:46	47나0219	10,300	박*기	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38번길
61	남산3호터널	2024-01-19 17:33:33	59로1752	10,300	B******H U*****N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다길
62	남산3호터널	2024-01-19 17:51:47	15가5901	10,300	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20길
63	남산3호터널	2024-01-19 18:01:13	56너9023	10,300	(주)캠***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64	남산1호터널	2024-01-19 19:06:35	199두8862	10,300	주식회사 캄*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21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65	남산1호터널	2024-01-19 19:25:26	31고9308	10,300	강*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66	남산3호터널	2024-01-19 19:26:47	390주1736	10,300	기*(주)(상*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67	남산1호터널	2024-01-19 19:45:09	111다1759	5,150	전*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홍천강변길
68	남산3호터널	2024-01-19 19:55:08	393고2248	10,300	이*빈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69	남산1호터널	2024-01-22 07:02:22	107버1397	10,300	A****V B*******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4길
70	남산1호터널	2024-01-22 07:03:49	53소9672	10,300	P*K *N *U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실록1길
71	남산1호터널	2024-01-22 07:25:45	16어3441	10,300	이*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62번길
72	남산1호터널	2024-01-22 09:42:33	149도5621	10,300	김*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73	남산1호터널	2024-01-22 10:47:10	38마4272	10,300	도*엔(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74	남산1호터널	2024-01-22 13:00:39	68두8264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9길
75	남산3호터널	2024-01-22 13:05:57	51머7935	10,300	주식회사 조*****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76	남산3호터널	2024-01-22 13:19:52	175보8580	10,300	㈜풍*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가능골2길
77	남산3호터널	2024-01-22 15:33:24	30저5904	10,300	정*룡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78	남산1호터널	2024-01-22 17:16:58	17두7669	10,300	(주)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79	남산3호터널	2024-01-22 17:57:27	67마5044	10,300	김*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80	남산1호터널	2024-01-22 18:22:49	69조4741	10,300	양*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81	남산1호터널	2024-01-22 18:42:51	135너9342	10,300	I******A A*****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82	남산1호터널	2024-01-22 18:51:39	221고5778	10,300	L* X*****O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83	남산1호터널	2024-01-22 19:51:13	267모3013	10,300	임*섭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46번길
84	남산3호터널	2024-01-23 07:06:15	16두0368	10,300	이*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85	남산1호터널	2024-01-23 07:53:44	244어7948	5,150	D***S C*******A C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86	남산1호터널	2024-01-23 08:55:29	125호4839	10,300	아****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87	남산1호터널	2024-01-23 11:11:26	145호6752	10,300	롯**탈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남산1호터널	2024-01-23 12:06:11	26러1957	10,300	주식회사 고*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89	남산1호터널	2024-01-23 13:42:06	61소0600	10,300	엄*광	경기도 광주시 수레안길
90	남산1호터널	2024-01-23 14:03:15	32너4604	10,300	주식회사 비**토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91	남산3호터널	2024-01-23 15:54:36	205서9929	10,300	플******앤(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2	남산3호터널	2024-01-23 18:30:50	290너9249	10,300	김*민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93	남산1호터널	2024-01-23 18:42:54	125누9271	10,300	박*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94	남산1호터널	2024-01-23 19:16:57	36머6808	10,300	김*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뒤골길
95	남산1호터널	2024-01-23 19:35:29	52머1598	10,300	전*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명4길
96	남산1호터널	2024-01-23 20:27:54	133노3603	10,300	김*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4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97	남산1호터널	2024-01-23 20:49:00	278수8069	5,150	유*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98	남산1호터널	2024-01-23 20:52:03	17너1514	10,300	윤*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마길
99	남산1호터널	2024-01-24 07:21:15	14라3963	10,300	코****티(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100	남산1호터널	2024-01-24 07:41:33	21라4512	10,300	B******T J***S B**E B*Y	경기도 평택시 국제로
101	남산1호터널	2024-01-24 08:47:25	330오5415	10,300	주식회사 어*******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102	남산1호터널	2024-01-24 09:31:53	49노3002	10,300	최*희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03	남산1호터널	2024-01-24 10:39:41	38마4272	10,300	도*엔(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04	남산3호터널	2024-01-24 10:42:04	225라8585	10,300	J*N G*****I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105	남산1호터널	2024-01-24 11:37:22	141어1607	10,300	노*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586번길
106	남산1호터널	2024-01-24 12:07:39	36주4757	10,300	성*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54번길
107	남산3호터널	2024-01-24 12:11:54	313루2555	10,300	(주)디**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15번길
108	남산3호터널	2024-01-24 12:54:28	228구2171	10,300	백*우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19번길
109	남산3호터널	2024-01-24 13:36:05	209무2388	10,300	주식회사 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10	남산3호터널	2024-01-24 15:23:53	253소7304	5,150	정*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11	남산1호터널	2024-01-24 16:58:43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112	남산1호터널	2024-01-24 17:39:57	10주9158	10,300	주*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24길
113	남산1호터널	2024-01-24 17:51:27	36머6808	10,300	김*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뒤골길
114	남산3호터널	2024-01-24 17:54:51	29오5121	10,300	고*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5	남산1호터널	2024-01-24 18:18:53	09가3890	10,300	최*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116	남산1호터널	2024-01-24 18:36:39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17	남산1호터널	2024-01-24 18:53:42	68주7231	10,300	박*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18	남산1호터널	2024-01-24 19:21:39	135너9342	10,300	I******A A*****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19	남산1호터널	2024-01-24 19:22:54	49가6876	10,300	이*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0길
120	남산1호터널	2024-01-24 20:29:54	107가8279	10,300	이*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25다길
121	남산1호터널	2024-01-24 20:40:09	60너2941	10,300	장*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30번길
122	남산1호터널	2024-01-24 20:58:46	278가3244	10,300	김*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7길
123	남산3호터널	2024-01-25 07:32:17	194두1400	10,300	홍*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124	남산1호터널	2024-01-25 11:56:57	133러9408	10,300	방*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가길
125	남산1호터널	2024-01-25 14:35:07	261구5434	10,300	원**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126	남산3호터널	2024-01-25 14:41:45	124서2628	10,300	(주)동**핑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127	남산1호터널	2024-01-25 15:20:49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128	남산1호터널	2024-01-25 16:11:43	05구5261	10,300	이*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29	남산1호터널	2024-01-25 16:47:04	48너3044	10,300	김*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30	남산1호터널	2024-01-25 17:03:42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31	남산3호터널	2024-01-25 17:18:06	18고0110	10,300	강*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132	남산1호터널	2024-01-25 18:38:26	36머6808	10,300	김*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뒤골길
133	남산1호터널	2024-01-25 18:54:23	40루8562	10,300	박*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134	남산1호터널	2024-01-25 20:07:20	67오2855	10,300	류*환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135	남산3호터널	2024-01-25 20:39:25	18노1019	10,300	N******E J**K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415번길
136	남산1호터널	2024-01-25 20:46:29	228무8672	10,300	심*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8길
137	남산1호터널	2024-01-26 08:23:02	316로8379	10,300	강*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38	남산1호터널	2024-01-26 08:54:44	62구2103	10,300	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39	남산1호터널	2024-01-26 10:08:25	53보9965	10,300	여*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0	남산1호터널	2024-01-26 10:36:58	51두2658	10,300	김*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도화길
141	남산1호터널	2024-01-26 11:07:08	53나6961	10,300	이*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99번길
142	남산1호터널	2024-01-26 11:12:16	168나7928	10,300	A*********V R*******N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21길
143	남산3호터널	2024-01-26 13:39:04	127구4864	10,300	회***발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함박로
144	남산3호터널	2024-01-26 14:21:24	07가1568	10,300	자***지 유한회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하정2길
145	남산1호터널	2024-01-26 15:35:10	30버0900	10,300	에***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46	남산3호터널	2024-01-26 16:20:04	369보1140	10,300	송*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02번길
147	남산1호터널	2024-01-26 17:24:53	392서9887	10,300	현*환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36길
148	남산1호터널	2024-01-26 17:38:27	273너1161	10,300	문*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49	남산3호터널	2024-01-26 19:00:22	05거2240	10,300	윤*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150	남산3호터널	2024-01-26 19:27:07	10머7769	10,300	박*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복주산길
151	남산1호터널	2024-01-26 19:33:25	307고3816	10,300	A* M******R S**D M******R H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52	남산1호터널	2024-01-26 19:47:22	39어7541	10,300	임*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153	남산3호터널	2024-01-26 19:53:44	63두2454	10,300	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54	남산1호터널	2024-01-26 20:00:44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55	남산1호터널	2024-01-26 20:03:50	153하8913	10,300	(주)모***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156	남산3호터널	2024-01-26 20:05:13	69서2687	5,150	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157	남산1호터널	2024-01-26 20:16:39	114머1761	10,300	이*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58	남산1호터널	2024-01-29 08:25:38	316로8379	10,300	강*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59	남산1호터널	2024-01-29 10:57:14	38마4272	10,300	도*엔(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0	남산1호터널	2024-01-29 11:08:39	168조6085	10,300	원***벌(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5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61	남산1호터널	2024-01-29 11:45:44	40서9848	10,300	S**N X****E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다길
162	남산1호터널	2024-01-29 11:59:38	62마6953	10,300	(주)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63	남산1호터널	2024-01-29 12:20:41	173너2964	10,300	편*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
164	남산3호터널	2024-01-29 14:51:28	163조6105	10,300	주식회사 빨**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165	남산3호터널	2024-01-29 17:48:42	49호2498	5,150	(주)클****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6	남산1호터널	2024-01-29 19:26:14	346고3854	10,300	김*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80번길
167	남산1호터널	2024-01-29 20:19:06	14라7461	10,300	이*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219길
168	남산1호터널	2024-01-30 08:16:10	316로8379	10,300	강*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9	남산3호터널	2024-01-30 08:49:59	57보8332	10,300	노*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70	남산3호터널	2024-01-30 11:33:05	330조4228	10,300	한*진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171	남산3호터널	2024-01-30 12:24:18	05더5497	10,300	현****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72	남산1호터널	2024-01-30 12:46:59	12러5024	10,300	이*태	경기도 평택시 서두물로35번길
173	남산1호터널	2024-01-30 12:48:04	22다0254	10,300	주**크(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9길
174	남산1호터널	2024-01-30 16:43:43	11러1313	10,300	주식회사 트*****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175	남산1호터널	2024-01-30 17:13:59	393노6788	10,300	L* Y****G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9길
176	남산1호터널	2024-01-30 17:51:10	05모1233	10,300	음*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0길
177	남산1호터널	2024-01-30 18:58:25	20머9747	10,300	박*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78	남산1호터널	2024-01-30 19:36:37	36부7907	10,300	주식회사 신****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79	남산1호터널	2024-01-30 19:38:24	50나6899	10,300	노**인 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80	남산1호터널	2024-01-30 19:46:55	31소6529	10,300	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81	남산3호터널	2024-01-30 19:49:30	39오7286	10,300	최*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182	남산1호터널	2024-01-30 20:03:51	129저5371	10,300	(주)공*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83	남산1호터널	2024-01-30 20:36:44	359다1675	10,300	양*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184	남산1호터널	2024-01-31 07:20:22	119오9558	5,150	박*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마길
185	남산1호터널	2024-01-31 08:44:35	27노9140	10,300	F**G G*****G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186	남산1호터널	2024-01-31 10:26:38	66구9829	10,300	S**G S***G H**N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87	남산1호터널	2024-01-31 10:42:51	114모2493	10,300	L* Z******O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188	남산1호터널	2024-01-31 10:47:53	53라8883	10,300	조*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7길
189	남산3호터널	2024-01-31 10:54:02	316라9307	10,300	C***G K**N Y***G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0	남산1호터널	2024-01-31 11:06:40	56부2508	10,300	(주)아*****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0길
191	남산1호터널	2024-01-31 11:46:56	31머0700	10,300	(주)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반정로
192	남산1호터널	2024-01-31 11:51:16	196러6993	5,150	최*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346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93	남산1호터널	2024-01-31 12:39:32	21거4700	10,300	김*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194	남산1호터널	2024-01-31 13:34:37	140소1848	10,300	K*O D**A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6길
195	남산1호터널	2024-01-31 15:07:22	196러6993	5,150	최*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346번길
196	남산1호터널	2024-01-31 15:31:32	337수6463	10,300	주식회사 클******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53번길
197	남산1호터널	2024-01-31 17:05:27	64저1746	10,300	주식회사 쁘*****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98	남산3호터널	2024-01-31 17:07:59	68조3802	10,300	주식회사 계*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9	남산3호터널	2024-01-31 19:03:03	45노9097	10,300	마****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00	남산1호터널	2024-01-31 19:07:45	153하8913	10,300	(주)모***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201	남산1호터널	2024-01-31 19:38:43	43주1358	10,300	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원6길
202	남산1호터널	2024-01-31 20:22:28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4-01-02 07:20:31	60주1462	10,300	이*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2	남산1호터널	2024-01-02 08:23:55	34두2579	10,300	강*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3	남산1호터널	2024-01-02 09:14:53	28고2395	10,300	이*****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4	남산3호터널	2024-01-02 09:18:19	69라7719	5,150	안*훈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206번길
5	남산1호터널	2024-01-02 09:59:15	38마4272	10,300	도*엔(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6	남산1호터널	2024-01-02 10:14:58	08구1434	10,300	R*****O J***S D***D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7	남산3호터널	2024-01-02 10:55:40	68조8150	5,150	노*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8	남산3호터널	2024-01-02 11:15:53	160호5635	10,300	(주)카*****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9	남산1호터널	2024-01-02 11:34:45	28서2186	10,300	서*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63번길
10	남산1호터널	2024-01-02 11:35:51	69라7719	5,150	안*훈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206번길
11	남산3호터널	2024-01-02 12:50:32	128허1282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12	남산1호터널	2024-01-02 13:02:34	46고7248	10,300	차**********인	전라북도 정읍시 남북로
13	남산3호터널	2024-01-02 15:36:22	393고2248	10,300	이*빈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	남산1호터널	2024-01-02 15:55:27	57루6003	10,300	손*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4길
15	남산1호터널	2024-01-02 16:08:20	65구0253	10,300	권*경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쉼터7길
16	남산1호터널	2024-01-02 16:21:36	18부5583	10,300	김*우	경기도 이천시 대산로288번길
17	남산1호터널	2024-01-02 16:21:52	34어6444	10,300	주식회사 디******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174번길
18	남산1호터널	2024-01-02 16:22:17	34두8643	10,300	전*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19	남산3호터널	2024-01-02 16:31:44	302조1096	10,300	주식회사 케*****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0	남산3호터널	2024-01-02 18:06:14	49모4855	10,300	박*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15번길
21	남산3호터널	2024-01-02 19:06:45	48라5131	10,300	양*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7길
22	남산1호터널	2024-01-02 19:08:23	167무7288	10,300	오*정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23	남산3호터널	2024-01-02 19:48:58	104하2444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24	남산1호터널	2024-01-03 07:34:59	326모2238	10,300	안*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이로
25	남산1호터널	2024-01-03 08:04:14	140오3952	10,300	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	남산3호터널	2024-01-03 09:36:21	226부3436	10,300	원*정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336번길
27	남산1호터널	2024-01-03 10:06:31	30모6599	10,300	김*명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28	남산3호터널	2024-01-03 10:13:49	45구2287	10,300	주식회사 광***영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29	남산1호터널	2024-01-03 10:38:35	65무8821	5,150	김*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30	남산1호터널	2024-01-03 10:50:41	43부2561	10,300	송*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372번길
31	남산3호터널	2024-01-03 12:26:08	19부9279	10,300	최*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2	남산1호터널	2024-01-03 12:46:05	30모6599	10,300	김*명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3	남산3호터널	2024-01-03 13:19:27	22서4924	10,300	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4	남산3호터널	2024-01-03 15:33:12	129모4918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35	남산3호터널	2024-01-03 15:33:37	10조3678	10,300	L*E B* J*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36	남산1호터널	2024-01-03 15:48:28	23누7487	10,300	한*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37	남산1호터널	2024-01-03 16:14:15	38무6762	10,300	주식회사 브****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4길
38	남산3호터널	2024-01-03 16:17:27	49호2498	5,150	(주)클****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	남산1호터널	2024-01-03 17:16:22	190구3896	10,300	김*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40	남산1호터널	2024-01-03 18:20:31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41	남산1호터널	2024-01-03 18:22:02	21무0898	10,300	민*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2	남산3호터널	2024-01-03 19:14:56	184로8552	5,150	문*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1길
43	남산1호터널	2024-01-03 19:38:06	185가3491	10,300	정*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길골길
44	남산3호터널	2024-01-03 19:40:33	385조5125	10,300	박*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45	남산3호터널	2024-01-03 20:37:55	03버0658	10,300	L*N F*****U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46	남산1호터널	2024-01-03 20:46:13	11거3506	10,300	주식회사 정**재	경기도 하남시 항동
47	남산3호터널	2024-01-03 20:50:50	124러6227	5,150	전*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7길
48	남산3호터널	2024-01-04 08:50:41	362너6831	10,300	박*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49	남산3호터널	2024-01-04 08:59:30	65조4710	5,150	심*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50	남산3호터널	2024-01-04 10:11:02	14소4069	10,300	서*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1	남산3호터널	2024-01-04 10:16:57	34두2579	10,300	강*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52	남산1호터널	2024-01-04 10:25:11	61다5814	10,300	허*복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535번길
53	남산3호터널	2024-01-04 11:57:26	53다8885	10,300	평**업(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40길
54	남산1호터널	2024-01-04 12:24:02	393마9793	10,300	주식회사 재**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남동안길
55	남산3호터널	2024-01-04 13:29:57	278오1335	10,300	주식회사 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56	남산1호터널	2024-01-04 13:38:24	24무6175	10,300	정*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65번길
57	남산3호터널	2024-01-04 14:26:45	27모0205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	남산1호터널	2024-01-04 15:20:45	04어2138	10,300	초*****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9	남산1호터널	2024-01-04 15:51:32	14모7960	10,300	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3길
60	남산3호터널	2024-01-04 15:53:16	64저9028	10,300	안*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29번길
61	남산1호터널	2024-01-04 16:45:27	382나7733	10,300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	남산1호터널	2024-01-04 17:32:21	149노9251	10,300	박*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63	남산1호터널	2024-01-04 17:36:46	149노9251	10,300	박*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64	남산1호터널	2024-01-04 17:57:40	60호2900	10,300	하*춘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65	남산1호터널	2024-01-04 18:03:12	09로6829	10,300	김*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6	남산3호터널	2024-01-04 19:09:41	16노9213	10,300	박*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가길
67	남산1호터널	2024-01-04 19:17:41	304두2990	10,300	최*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236번길
68	남산3호터널	2024-01-04 20:19:37	340누7457	10,300	L* D*****Y A**********H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55길
69	남산1호터널	2024-01-04 20:26:43	39조3098	10,300	박*남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52번길
70	남산1호터널	2024-01-04 20:30:35	346버6140	10,300	안*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71	남산1호터널	2024-01-05 07:10:58	300루1707	10,300	김*성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72	남산3호터널	2024-01-05 08:34:23	362너6831	10,300	박*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73	남산1호터널	2024-01-05 09:15:05	258너7578	10,300	김*현	광주광역시 남구 백양로51번길
74	남산3호터널	2024-01-05 09:56:18	58러5555	10,300	(주)캠**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75	남산3호터널	2024-01-05 10:01:23	28수7562	5,150	주식회사 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	남산3호터널	2024-01-05 10:06:32	198마5848	10,300	A******N A****N K**E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77	남산1호터널	2024-01-05 11:08:57	251가1682	10,300	주식회사 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0길
78	남산1호터널	2024-01-05 11:42:41	05저0693	10,300	배*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929번길
79	남산1호터널	2024-01-05 12:04:12	287부8308	10,300	황*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0	남산1호터널	2024-01-05 12:07:12	346라6942	10,300	이*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81	남산1호터널	2024-01-05 13:00:07	59무2271	10,300	김*수	경기도 동두천시 벌마들로25번길
82	남산1호터널	2024-01-05 14:19:10	331누2541	10,300	김*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83	남산1호터널	2024-01-05 15:02:35	06다2725	10,300	주식회사 멀***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4	남산3호터널	2024-01-05 16:15:19	176수8238	10,300	오*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15번길
85	남산3호터널	2024-01-05 16:52:06	52소6414	10,300	김*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86	남산1호터널	2024-01-05 17:57:32	32로4133	10,300	윤*성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7	남산3호터널	2024-01-05 18:47:39	47소5598	10,300	주식회사 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9길
88	남산3호터널	2024-01-05 19:00:18	69서2687	5,150	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89	남산1호터널	2024-01-05 19:24:44	336보8467	10,300	서*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1마길
90	남산3호터널	2024-01-05 19:28:02	31고0596	10,300	윤*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91	남산1호터널	2024-01-05 20:04:34	110다6621	10,300	김*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92	남산1호터널	2024-01-05 20:07:27	172허1411	10,300	주식회사 카*****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93	남산1호터널	2024-01-05 20:24:07	153저4556	10,300	성*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94	남산1호터널	2024-01-05 20:57:39	300구8600	10,300	주식회사 윈***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95	남산1호터널	2024-01-05 20:59:00	163모2444	10,300	주식회사 케*****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96	남산3호터널	2024-01-08 07:15:32	16부8407	10,300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97	남산3호터널	2024-01-08 08:51:42	59로0979	10,300	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98	남산1호터널	2024-01-08 09:15:39	29도3934	10,300	(주)에******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9	남산1호터널	2024-01-08 09:24:30	18보2733	10,300	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1길
100	남산1호터널	2024-01-08 10:01:47	59버9166	10,300	정*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9길
101	남산3호터널	2024-01-08 13:14:53	58저6377	10,300	조*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2	남산1호터널	2024-01-08 13:17:09	173너2964	10,300	편*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
103	남산1호터널	2024-01-08 13:54:39	56모7534	10,300	신*성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1길
104	남산1호터널	2024-01-08 14:25:12	42노5764	10,300	김*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래비로
105	남산3호터널	2024-01-08 14:41:54	160호5627	10,300	주식회사 카*****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106	남산1호터널	2024-01-08 15:09:19	39소8017	10,300	김*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07	남산1호터널	2024-01-08 15:32:21	185더9021	10,300	P*N A****I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108	남산3호터널	2024-01-08 15:45:56	51머7935	10,300	주식회사 조*****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09	남산1호터널	2024-01-08 16:47:32	58주0223	10,300	주식회사 디***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10	남산1호터널	2024-01-08 16:57:52	66로1832	10,300	문*록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111	남산3호터널	2024-01-08 17:39:17	105루5000	10,300	전*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1길
112	남산1호터널	2024-01-08 17:46:52	183구8073	10,300	명*학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50번길
113	남산3호터널	2024-01-08 17:48:08	104오6201	10,300	제*홈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14	남산1호터널	2024-01-08 17:59:36	43머0979	10,300	아***인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15	남산1호터널	2024-01-08 18:09:01	160버6342	10,300	유*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16	남산1호터널	2024-01-08 18:25:20	51노6037	10,300	임*묵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75번길
117	남산1호터널	2024-01-09 07:32:15	60우2026	10,300	주식회사 그*킨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3길
118	남산1호터널	2024-01-09 09:10:27	164주9933	10,300	김*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1길
119	남산1호터널	2024-01-09 09:30:43	316노9135	10,300	정*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120	남산1호터널	2024-01-09 10:21:26	69너4376	10,300	송*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화로1길
121	남산1호터널	2024-01-09 10:25:54	51고7393	10,300	전*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9길
122	남산3호터널	2024-01-09 11:00:25	216노2050	10,300	이*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123	남산3호터널	2024-01-09 11:54:24	244너4640	10,300	최*탁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24	남산3호터널	2024-01-09 12:23:31	36저8100	10,300	정*길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125	남산1호터널	2024-01-09 13:13:54	387고8716	10,300	박*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5길
126	남산1호터널	2024-01-09 13:23:04	31모1351	10,300	K*M A***M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6번길
127	남산1호터널	2024-01-09 14:01:32	51고7393	10,300	전*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9길
128	남산1호터널	2024-01-09 14:55:13	150머3297	10,300	이*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96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29	남산1호터널	2024-01-09 15:11:40	53구4461	10,300	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130	남산3호터널	2024-01-09 15:16:55	294도1484	10,300	K*****V A*******K A******Z U**I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말로
131	남산1호터널	2024-01-09 15:17:33	150거6611	10,300	정*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0번길
132	남산3호터널	2024-01-09 15:56:54	278부2600	10,300	정*석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19번길
133	남산1호터널	2024-01-09 16:45:42	304주9802	10,300	우*순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오덕로
134	남산3호터널	2024-01-09 16:55:19	15가4782	10,300	장*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135	남산1호터널	2024-01-09 17:08:45	340로5926	10,300	김*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36	남산1호터널	2024-01-09 17:27:02	65마5980	10,300	G***Z M***E A*******R E*****N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37	남산1호터널	2024-01-09 17:45:01	333루5854	10,300	구*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138	남산1호터널	2024-01-09 17:59:52	03보1770	10,300	주*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39	남산1호터널	2024-01-09 18:21:45	113오9502	10,300	C**A C***A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40	남산1호터널	2024-01-09 19:03:51	148라9517	10,300	이*민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6번길
141	남산1호터널	2024-01-09 19:42:49	01라6453	10,300	이*원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42	남산1호터널	2024-01-09 19:54:02	290어7154	10,300	채*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백길164번길
143	남산1호터널	2024-01-09 20:19:30	167허5565	10,300	제******탈(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144	남산1호터널	2024-01-10 07:37:52	13서2443	10,300	박*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4길
145	남산1호터널	2024-01-10 08:12:41	46도9170	10,300	굳*굳-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46	남산1호터널	2024-01-10 10:26:12	42거5741	10,300	박*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527번길
147	남산3호터널	2024-01-10 10:47:24	04노1433	10,300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221번길
148	남산3호터널	2024-01-10 12:05:53	18무4093	5,150	대*****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149	남산1호터널	2024-01-10 12:12:35	162마5994	10,300	Q**N C*****N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150	남산1호터널	2024-01-10 12:19:51	149라6266	10,300	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51	남산3호터널	2024-01-10 14:14:08	12조4090	10,300	주식회사 세*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152	남산1호터널	2024-01-10 14:27:23	31우3621	10,300	이*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3	남산1호터널	2024-01-10 14:59:31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54	남산1호터널	2024-01-10 15:37:46	24루2958	10,300	고*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3길
155	남산1호터널	2024-01-10 15:40:54	41누0760	10,300	정*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156	남산1호터널	2024-01-10 16:27:25	289소3253	10,300	농****인 청*팜 주식회사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장선소계로
157	남산1호터널	2024-01-10 16:49:05	149노9251	10,300	박*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8	남산3호터널	2024-01-10 17:09:33	69가0438	10,300	박*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30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59	남산1호터널	2024-01-10 18:20:37	150더9854	10,300	주식회사 엔****씨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60	남산1호터널	2024-01-10 18:57:51	41누0760	10,300	정*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161	남산1호터널	2024-01-10 19:07:36	49버3949	10,300	주*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162	남산3호터널	2024-01-10 19:24:12	51주3690	5,150	이*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78번길
163	남산3호터널	2024-01-10 19:33:11	159도3209	10,300	최*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26번길
164	남산1호터널	2024-01-10 19:39:42	16무9293	10,300	신*철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49번길
165	남산1호터널	2024-01-10 19:44:18	42거3795	10,300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3길
166	남산1호터널	2024-01-10 19:49:02	14더7720	10,300	주식회사 계****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67	남산3호터널	2024-01-10 20:03:28	29마0612	10,300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68	남산1호터널	2024-01-10 20:22:26	37거5617	10,300	김*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69	남산1호터널	2024-01-10 20:51:39	61도6262	10,300	한*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70	남산3호터널	2024-01-11 08:36:52	13두7536	10,300	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171	남산1호터널	2024-01-11 09:34:47	37소1524	10,300	L********N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72	남산3호터널	2024-01-11 10:03:45	67러9303	10,300	구*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7길
173	남산1호터널	2024-01-11 10:21:31	10더6304	10,300	연*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174	남산3호터널	2024-01-11 10:50:14	51주3690	5,150	이*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78번길
175	남산1호터널	2024-01-11 11:25:12	64너0893	10,300	임*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76	남산1호터널	2024-01-11 11:31:53	64너0893	10,300	임*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77	남산1호터널	2024-01-11 11:33:51	304누5013	10,300	김*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178	남산1호터널	2024-01-11 11:38:46	35누2125	10,300	씨********트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화가길
179	남산1호터널	2024-01-11 11:54:31	177서1970	10,300	김*서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1길
180	남산3호터널	2024-01-11 12:03:06	67러9303	10,300	구*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7길
181	남산1호터널	2024-01-11 12:21:47	30우1196	10,300	홍*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182	남산1호터널	2024-01-11 13:09:43	34마9763	10,300	주*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183	남산3호터널	2024-01-11 14:05:32	55너2760	10,300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84	남산1호터널	2024-01-11 14:26:47	07마0112	10,300	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5	남산1호터널	2024-01-11 14:29:57	148더2400	10,300	최*봉	경기도 평택시 비전6길
186	남산1호터널	2024-01-11 14:36:19	177서1970	10,300	김*서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1길
187	남산1호터널	2024-01-11 15:01:50	02오8130	10,300	최*연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
188	남산1호터널	2024-01-11 15:16:51	26로0365	10,300	학******졸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17번길
189	남산1호터널	2024-01-11 15:37:14	269누6669	5,150	김*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90	남산1호터널	2024-01-11 15:39:11	393고2248	10,300	이*빈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91	남산3호터널	2024-01-11 15:42:20	175수7311	10,300	주식회사 도*****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92	남산3호터널	2024-01-11 16:01:21	50부8231	10,300	S*****N M*****D A***D M*****D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93	남산3호터널	2024-01-11 16:16:06	30우1196	10,300	홍*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194	남산3호터널	2024-01-11 16:25:48	107버1397	10,300	A****V B*******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4길
195	남산1호터널	2024-01-11 16:58:29	385수8062	5,150	조*봉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196	남산1호터널	2024-01-11 17:09:48	61도6262	10,300	한*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97	남산3호터널	2024-01-11 17:13:06	31오7783	5,150	한*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7길
198	남산1호터널	2024-01-11 18:35:19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99	남산3호터널	2024-01-11 19:07:22	04거2512	10,300	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200	남산3호터널	2024-01-11 19:33:02	295다8121	10,300	이*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01	남산3호터널	2024-01-11 19:46:54	51주3690	5,150	이*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78번길
202	남산1호터널	2024-01-11 19:56:15	193버2278	10,300	오*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74길
203	남산1호터널	2024-01-12 09:22:43	175구4754	10,300	K*N A****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6길
204	남산1호터널	2024-01-12 09:51:45	27거7988	10,300	P*K K********N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북길
205	남산1호터널	2024-01-12 10:42:52	05다4026	10,300	강*성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206	남산1호터널	2024-01-12 10:50:49	177서1970	10,300	김*서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1길
207	남산1호터널	2024-01-12 11:11:37	140두1572	10,300	주식회사 이*******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08	남산3호터널	2024-01-12 11:58:16	173무3013	10,300	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209	남산1호터널	2024-01-12 12:24:06	145하7000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210	남산3호터널	2024-01-12 12:54:27	367구6204	10,300	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3길
211	남산1호터널	2024-01-12 13:47:26	14주9772	10,300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212	남산1호터널	2024-01-12 14:00:42	66거9812	10,300	P**O X*****U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로
213	남산3호터널	2024-01-12 14:57:00	158수1747	5,150	(주)오*****티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1길
214	남산1호터널	2024-01-12 16:30:15	23구7865	10,300	홍*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8길
215	남산3호터널	2024-01-12 16:32:54	159두3141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6	남산1호터널	2024-01-12 16:41:44	355서2587	10,300	윤*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217	남산1호터널	2024-01-12 17:48:44	125러7028	10,300	조*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218	남산1호터널	2024-01-12 17:54:12	07로0450	10,300	장*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
219	남산1호터널	2024-01-12 18:02:44	115무7200	10,300	고*희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220	남산3호터널	2024-01-12 18:35:56	16부8407	10,300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21	남산1호터널	2024-01-12 18:40:32	104누9137	10,300	주식회사 데***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222	남산3호터널	2024-01-12 19:06:01	27어8299	10,300	이*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6길
223	남산3호터널	2024-01-12 19:08:12	41부5925	10,300	W****T C****S S*****L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24	남산1호터널	2024-01-12 20:08:28	164라5504	10,300	L*N M*****G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225	남산3호터널	2024-01-15 08:13:00	10도7205	5,150	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226	남산1호터널	2024-01-15 08:36:15	316로8379	10,300	강*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27	남산1호터널	2024-01-15 09:41:25	30소3939	10,300	방*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28	남산3호터널	2024-01-15 10:12:42	288두7840	10,300	이*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5길
229	남산3호터널	2024-01-15 10:32:28	324두2915	10,300	박*기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30	남산1호터널	2024-01-15 10:48:21	231나4557	10,300	김*승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231	남산3호터널	2024-01-15 11:05:09	36머1678	10,300	김 *균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80번길
232	남산1호터널	2024-01-15 11:14:58	11보7135	10,300	(주)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3	남산1호터널	2024-01-15 13:03:42	58누1533	10,300	(주)컨***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234	남산1호터널	2024-01-15 13:28:43	268나8591	10,300	노무법인 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35	남산1호터널	2024-01-15 13:29:44	11무1714	10,300	엄*찬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서로17번길
236	남산1호터널	2024-01-15 13:50:17	10무1900	5,150	김*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237	남산1호터널	2024-01-15 17:55:13	125하1846	10,300	(주)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238	남산1호터널	2024-01-15 19:02:28	21모1583	10,300	(주)대****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239	남산1호터널	2024-01-15 20:42:35	41가4458	10,300	변*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실로
240	남산3호터널	2024-01-15 20:43:42	155호6011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241	남산3호터널	2024-01-15 20:48:03	115하1203	10,300	주식회사 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4길
242	남산3호터널	2024-01-15 20:57:42	36보9745	10,300	이*희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가성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3-10-12 07:47:13	133하5026	10,300	조*석	경기도 용인시
2	남산1호터널	2023-10-19 07:28:09	133하5026	10,300	조*석	경기도 용인시
3	남산1호터널	2023-11-02 07:20:43	125호8002	10,300	이*호	서울시 종로구
4	남산3호터널	2023-11-07 17:22:54	62소8404	10,300	주*******콤	서울시 금천구
5	남산1호터널	2023-11-08 16:40:14	128호9376	10,3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6	남산1호터널	2023-11-09 20:52:46	192허2505	10,300	바********사	서울시 강남구
7	남산3호터널	2023-11-17 10:46:24	171하4863	10,300	김*연	서울시 마포구
8	남산3호터널	2023-11-17 11:14:54	140호7347	10,300	백*훈	경기도 하남시
9	남산1호터널	2023-11-17 11:55:43	125하1821	10,300	주*********스	서울시 마포구
10	남산1호터널	2023-11-17 17:41:35	305버6999	10,300	김*훈	경기도 성남시
11	남산1호터널	2023-11-20 15:12:45	101하6141	10,300	최*우	서울시 강남구
12	남산3호터널	2023-11-20 19:14:50	128호5357	10,300	주*********스	서울시 마포구
13	남산3호터널	2023-11-20 20:19:11	128호5357	10,300	주*********스	서울시 마포구
14	남산1호터널	2023-11-21 10:39:52	181보7868	10,300	주********털	서울시 강남구
15	남산3호터널	2023-11-21 12:54:23	181보7868	10,300	주********털	서울시 강남구
16	남산3호터널	2023-11-22 12:25:13	45누8603	10,300	기*필	서울시 동작구
17	남산1호터널	2023-11-22 15:08:38	174하8599	10,300	전*진	서울시 금천구
18	남산1호터널	2023-11-23 11:03:55	122허3284	10,300	윤*봉(윤*획)	서울시 성동구
19	남산3호터널	2023-11-23 15:04:27	157하1328	10,300	주*******텍	경기도 광주시
20	남산1호터널	2023-11-24 12:07:05	194하5069	10,300	㈜*******크	경기도 화성시
21	남산1호터널	2023-11-24 20:22:45	312누6634	10,300	조*진	서울시 성동구
22	남산1호터널	2023-11-24 20:30:42	388서9812	10,300	유*원	서울시 동작구
23	남산1호터널	2023-11-27 14:16:57	390무7853	10,300	이*혁	제주 서귀포시
24	남산1호터널	2023-11-27 14:48:50	265오9402	10,300	최*자	서울시 성동구
25	남산1호터널	2023-11-27 18:20:08	157허6147	10,300	주*******스	서울시 금천구
26	남산1호터널	2023-11-27 19:58:06	195호1377	10,300	일******사	경북 경주시
27	남산1호터널	2023-11-28 08:02:28	186노8425	10,300	웰******날	서울시 강남구
28	남산3호터널	2023-11-28 13:56:04	128하3118	10,300	박*원	전라남도 무안군
29	남산1호터널	2023-11-28 19:44:37	105조7575	10,300	김*미	경기도 하남시
30	남산1호터널	2023-11-29 10:51:01	154호2380	10,300	한*수	경기도 평택시
31	남산1호터널	2023-11-29 13:08:29	109호2073	5,150	이*현	서울시 용산구
32	남산3호터널	2023-11-29 17:51:42	122하9192	10,300	㈜**수	경기도 안양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3	남산3호터널	2023-11-29 20:24:22	169하4636	10,300	농**********㈜	충청북도 괴산군
34	남산1호터널	2023-11-30 11:50:37	140호5925	10,300	㈜**********아	인천광역시 서구
35	남산3호터널	2023-11-30 18:26:44	169하3006	10,300	엘*********장	경기도 안양시
36	남산1호터널	2023-11-30 20:44:32	140호5707	10,300	㈜*****업	경기도 화성시
37	남산1호터널	2023-12-15 12:38:17	35호0209	10,300	코**트(함*우)	경기도 광주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3-07-06 14:40:12	161하8517	10,300	박*옥	경기도 가평군
2	남산1호터널	2023-09-18 09:17:19	26호2101	10,300	김*우	서울 은평구
3	남산3호터널	2023-11-28 11:20:12	109호1655	10,300	문*철	경기도 고양시
4	남산1호터널	2023-11-28 20:31:55	239서2561	10,300	인*****스	서울 성동구
5	남산1호터널	2023-12-04 08:28:30	369보1175	10,300	주****니	서울 중구
6	남산3호터널	2023-12-04 14:53:07	181보7868	10,300	주********털	서울특별시 강남구
7	남산1호터널	2023-12-04 16:19:01	181보7868	10,300	주********털	서울특별시 강남구
8	남산1호터널	2023-12-05 17:41:04	175하2079	10,300	고*상	서울 강남구
9	남산3호터널	2023-12-05 20:55:05	122하3238	10,300	조*자	경기 남양주시
10	남산3호터널	2023-12-06 10:58:55	133하6808	10,300	유*현	충남 아산시
11	남산1호터널	2023-12-06 17:32:01	122호7023	10,300	김*수(준**팅)	경기도 고양시
12	남산3호터널	2023-12-07 18:43:21	41버4426	10,300	한*필	서울 중구
13	남산1호터널	2023-12-08 09:21:22	41버4426	10,300	한*필	서울 중구
14	남산1호터널	2023-12-08 12:25:21	152하6259	10,300	이*규	대구광역시 달서구
15	남산1호터널	2023-12-08 12:35:05	128호2819	5,150	권*수	서울 강남구
16	남산3호터널	2023-12-08 14:06:51	128호2819	5,150	권*수	서울 강남구
17	남산3호터널	2023-12-08 15:17:07	172하3279	10,300	이*환	경기 포천시
18	남산1호터널	2023-12-08 18:10:25	154호2380	10,300	한*수	평택시 포승읍
19	남산1호터널	2023-12-08 18:15:38	41버4426	10,300	한*필	서울 중구
20	남산1호터널	2023-12-11 09:02:13	332누2540	10,300	㈜*********션	서울특별시 서초구
21	남산1호터널	2023-12-11 09:17:54	41버4426	10,300	한*필	서울 중구
22	남산3호터널	2023-12-11 10:29:12	178구8726	10,300	㈜***스	서울 마포구
23	남산1호터널	2023-12-11 10:38:52	177허5578	10,300	엘**********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24	남산1호터널	2023-12-11 13:51:08	128호2819	5,150	권*수	서울 강남구
25	남산1호터널	2023-12-11 15:32:07	104허6967	10,300	주*********씨	경기도 고양시
26	남산1호터널	2023-12-11 15:55:40	186수5825	10,300	주********쳐	경기 하남시
27	남산1호터널	2023-12-11 18:15:01	172허3242	10,300	신*호	경기 의정부시
28	남산1호터널	2023-12-11 18:16:48	41버4426	10,300	한*필	서울 중구
29	남산1호터널	2023-12-11 18:55:50	194호5097	10,300	엄*웅(살**태)	경기도 파주시
30	남산1호터널	2023-12-12 11:07:00	157허3635	10,300	㈜***타	경기 용인시
31	남산1호터널	2023-12-12 12:52:44	194하5289	10,300	베***원(서*주)	울산광역시 남구
32	남산1호터널	2023-12-12 13:56:34	157허3635	10,300	㈜***타	경기 용인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33	남산3호터널	2023-12-13 07:32:25	345조1025	10,300	한*지	경상남도 진주시
34	남산1호터널	2023-12-13 09:57:32	37서7838	10,300	백*화	서울 종로구
35	남산1호터널	2023-12-13 13:55:08	109호1768	10,300	김*자	경기도 용인시
36	남산1호터널	2023-12-13 16:24:31	192라6302	10,300	민*홍	경기도 안성시
37	남산1호터널	2023-12-13 19:07:55	172호7948	10,300	한*********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38	남산1호터널	2023-12-14 07:56:00	128호2819	5,150	권*수	서울 강남구
39	남산3호터널	2023-12-14 13:19:23	112부1277	10,300	안*정	인천 미추홀구
40	남산3호터널	2023-12-14 13:39:48	26너6410	10,300	김*태	경기 성남시
41	남산1호터널	2023-12-14 15:05:18	157하3827	10,300	안*영	서울 영등포구
42	남산1호터널	2023-12-14 16:24:50	128호2819	5,150	권*수	서울 강남구
43	남산3호터널	2023-12-14 18:41:43	122호8271	10,300	최*선	경기도 양주시
44	남산1호터널	2023-12-15 14:52:19	330서6679	10,300	멜*****널	경남 창녕군
45	남산1호터널	2023-12-18 09:47:38	126호1806	10,300	코***니(박*영)	경기 구리시
46	남산1호터널	2023-12-18 18:48:40	159호9265	10,300	전*근	경기도 성남시
47	남산1호터널	2023-12-19 07:29:53	128호2819	5,150	권*수	서울 강남구
48	남산1호터널	2023-12-19 09:24:37	128호2819	5,150	권*수	서울 강남구
49	남산1호터널	2023-12-21 14:00:16	375노9961	10,300	㈜*********트	서울 용산구
50	남산3호터널	2023-12-21 15:41:18	175허7305	10,300	큐*****원	경기 용인시
51	남산1호터널	2023-12-22 07:35:07	199가8338	10,300	㈜******니	경기도 광주시
52	남산1호터널	2023-12-22 09:26:56	199가8338	10,300	㈜******니	경기도 광주시
53	남산3호터널	2023-12-22 12:57:39	63하9690	10,300	㈜**********널	서울 영등포구
54	남산1호터널	2023-12-26 17:19:20	166호7022	10,300	씨***********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55	남산3호터널	2023-12-27 18:25:36	133하5332	10,300	권*미	서울 성북구
56	남산1호터널	2023-12-27 19:12:51	175하5933	10,300	박*환	경기 양주시
57	남산1호터널	2023-12-28 13:28:31	175하2287	5,150	이*지	울산 중구
58	남산1호터널	2023-12-29 08:10:02	143호2547	10,300	이*관(간*****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59	남산1호터널	2023-12-29 17:14:47	159호1235	10,300	최*란	서울 동작구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3-07-19 14:23:25	152수9087	10,300	김*은	경기 하남시
2	남산1호터널	2023-07-19 14:23:25	152수9087	10,300	김*은	경기 하남시
3	남산3호터널	2023-08-07 09:37:13	169하1347	5,150	윤*연	경기 의정부시
4	남산1호터널	2023-08-14 08:21:21	122러3625	10,300	이*영	경기 의정부시
5	남산3호터널	2023-08-24 09:02:57	122하8937	10,300	김********소	서울 서초구
6	남산1호터널	2023-08-30 07:24:27	44호9794	10,300	정*영	경기 오산시
7	남산1호터널	2023-12-04 19:54:50	109하6873	10,300	조*진	경기 고양시
8	남산1호터널	2023-12-13 09:49:35	153호7018	10,300	구********부	서울 종로구
9	남산1호터널	2023-12-18 10:10:59	169하6145	10,300	구*혁	서울 강남구
10	남산1호터널	2023-12-18 12:49:18	21수9639	10,300	이*주	경기도 성남시
11	남산1호터널	2023-12-18 14:51:02	21수9639	10,300	이*주	경기도 성남시
12	남산1호터널	2023-12-18 16:33:02	15모7511	10,300	주********룹	서울 강남구
13	남산3호터널	2023-12-19 16:51:02	196가7531	10,300	고******사	경북 칠곡군
14	남산1호터널	2023-12-19 18:56:51	175허4755	5,150	엘**********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5	남산3호터널	2023-12-19 20:38:15	245노6727	10,300	주********라	경기 김포시
16	남산1호터널	2023-12-20 20:10:56	116하1362	10,300	㈜****이	서울 양천구
17	남산3호터널	2023-12-21 11:27:56	09로7836	10,300	이*희	경기 수원시
18	남산1호터널	2023-12-22 07:04:13	396더3976	10,300	정*호	경기도 파주시
19	남산3호터널	2023-12-22 16:26:46	171호5310	10,300	주******크	인천 연수구
20	남산1호터널	2023-12-22 18:31:14	53하4467	10,300	최*	서울 강남구
21	남산1호터널	2023-12-26 17:11:36	154호2410	10,300	윤*훈	경기 안성시
22	남산1호터널	2023-12-26 17:12:40	167호4945	10,300	손*영	경기도 수원시
23	남산1호터널	2023-12-26 18:18:36	278부1898	10,300	주*****다	경기 용인시
24	남산3호터널	2023-12-26 20:25:32	142호1406	10,300	주******스	서울 마포구
25	남산1호터널	2023-12-27 14:41:27	397두2184	10,300	가*****원	서울 강남구
26	남산1호터널	2023-12-28 08:56:37	238고3010	10,300	윤*기	충청남도 천안시
27	남산1호터널	2023-12-28 17:07:37	140호6411	10,300	주********믹	서울 강남구
28	남산3호터널	2023-12-28 18:16:23	173우7868	10,300	한********㈜	서울 영등포구
29	남산1호터널	2023-12-28 20:56:08	50무7482	10,300	윤*태	서울특별시 성북구
30	남산1호터널	2023-12-29 19:47:25	152호2299	10,300	서*혁	경기도 평택시
31	남산1호터널	2023-12-29 20:06:16	157호8872	10,300	한*호	경기 의정부시
32	남산3호터널	2024-01-08 08:48:01	177허5581	5,150	엘*********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5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4002	24. 6. 13.	세원아이엔씨 주식회사 이상화 110111-72672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제 14층 제1407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 애스턴)
2	204003	24. 6. 14.	주식회사 링크앤존 김대환 110111-499738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24, 2층(동소문동4가, 제이앤미라클빌딩)
3	204004	24. 6. 19.	주식회사 파이어독스 박근범 110111-566832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7, 1203호, 1204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4	204005	24. 6. 19.	주식회사 인터포스트 김선옥 110111-895225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11길 19, 2층 201호(상봉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6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0.(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0183878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5나길 1-4 (누하동 118-5)	수도요금	2021.2.28외 19납기	20회	44,400원	2024 4. 12. ~ 2024. 4.30. 2024..5.1.~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2209955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5나길 1-4 (누하동 118-5)	송*자	420518-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5나길 1-4 (누하동 118-5)	44,400원	2024. 7.1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008983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1길 16-2 (통인동 130)	수도요금	2021.8.31. 외 16납기	17회	418,050원	2024 4. 12. ~ 2024. 4.30. / 2024..5.1.~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2209956‣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1길 16-2 (통인동 130)	박*철	8010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7, 2층 (필운동)	418,050원	2024. 7.11. ~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23284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길 22-4, 102호 (청운동 ,분홍빌라)	수도요금	2021. 8.31. 외 17납기	18회	348,920원	2024 4. 12. ~ 2024. 4.30. / 2024..5.1.~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2209954‣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길 22-4, 102호 (청운동 ,분홍빌라)	전*숙	540612-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홍천강변길 516-21(남산면)	348,920원	2024. 7.11. ~

3.「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4. 07. 10.)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권희영 주무관(☎ 02-3146-210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희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99 2동 21*호 (연수동)	위반일시: 2024-04-17 06:21 위반장소: 서대문구 북아현동 810 충정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t, 초과값: 4t,서울06하733*)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5-27 납기일: 2024-07-31
박설희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56번길 4-7 40*호(은행동)	위반일시: 2024-05-02 10:16 위반장소: 마포구 신공덕동 1-48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75t, 초과값: 1.75t,경기06소677*)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5-27 납기일: 2024-07-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영민	경기도 광명시 덕단이로 115 202동 10**호 (광명동)	위반일시: 2024-02-05 09:54 위반장소: 덕양구 덕은동 556-2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35t, 초과값: 1.35t,006나631*)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3-25 납기일: 2024-05-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경남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3번길 1* (성남동)	위반일시: 2024-02-07 14:58 위반장소: 용산구 이촌동 301-5 한강로다리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35t, 초과값: 4.35t,서울06거840*)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3-25 납기일: 2024-05-31
윤재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40길 14-* (대흥동)	위반일시: 2024-02-16 10:40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6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2t, 초과값: 1.2t,서울06너524*)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3-25 납기일: 2024-05-31
김현태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70 201동 21**호 (가정동)	위반일시: 2024-02-17 09:34 위반장소: 마포구 공덕동 108-47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5m, 초과값: 0.25m,92너35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3-25 납기일: 2024-05-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7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민생노동국장의인	2.4㎝×2.4㎝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7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여성가족실장의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7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정원도시국장의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푸른도시여가국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78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79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국장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장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0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미래청년기획관의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미래청년기획단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교통실장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도시교통실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디지털도시국장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디지털정책관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신설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건설기술정책관인	2.4㎝×2.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정책관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정책관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재난안전실장의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재난안전관리실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주택실장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장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경제실장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경제정책실장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8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복지실장인	2.4㎝×2.4㎝		

□ 공인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복지정책실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92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0.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4. 7. 31.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40301-005	11-17-09809	최병화	최*학	2024-05-29 13: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27번길	180,000
2	봉안	19940321-001	11-17-09849	전남수	김*하	2024-05-28 09:21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구 다산로24길	100,000
3	봉안	19940325-004	11-17-09852	조래구	임*택	2024-05-29 13: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이천시 마도로223번길	100,000
4	봉안	19940326-001	11-17-09854	한복순	김*구	2024-05-29 09: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00,000
5	봉안	19970520-001	12-05-05134	김영준	김*배	2024-05-29 09: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000
6	봉안	19990301-015	41-01-02895	이종천	이*수	2024-05-28 14: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금하로	100,000
7	봉안	19990301-021	41-01-05190	문삼례	채*오	2024-05-29 12: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고읍북로	180,000
8	봉안	19990301-022	41-01-04115	최귀남	최*원	2024-05-29 13: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풍무로69번길	100,000
9	봉안	19990302-002	41-01-05196	박용해	박*열	2024-05-28 09: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100,000
10	봉안	19990302-004	41-01-05198	최은창	이*삼	2024-05-29 14: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100,000
11	봉안	19990302-016	41-01-05210	유재춘	김*덕	2024-05-28 09: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180,000
12	봉안	19990302-017	41-01-05211	강창민	강*철	2024-05-28 09:16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인천 남동구	100,000
13	봉안	19990303-014	41-01-05233	홍하운	홍*훈	2024-05-28 15:53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100,000
14	봉안	19990304-018	41-01-05264	김성태	김*현	2024-05-28 11:3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100,000
15	봉안	19990305-006	41-01-05277	이성열	이*면	2024-05-29 10:48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용산구 장문로45가길	180,000
16	봉안	19990305-013	41-01-05284	김희경	이*주	2024-05-29 12: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7	봉안	19990305-016	41-01-05287	심동순	윤*현	2024-05-28 13: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당동	180,000
18	봉안	19990306-014	41-01-05306	강필희	박*근	2024-05-28 13: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경인로536번길	100,000
19	봉안	19990306-023	41-01-05315	윤예금	김*순	2024-05-28 08:44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90,000
20	봉안	19990307-016	41-01-05338	지승춘	백*순	2024-05-29 10: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5,000
21	봉안	19990308-008	41-01-05348	이정랑	정*환	2024-05-29 08: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장현로47번길	100,000
22	봉안	19990308-012	41-01-05352	장철환	장*노	2024-05-29 10: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100,000
23	봉안	19990309-003	41-01-05363	박희영	김*진	2024-05-29 10: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2길	100,000
24	봉안	19990309-007	41-01-05367	정태순	남*웅	2024-05-27 15:3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포천시 성장로	100,000
25	봉안	19990309-017	41-01-05376	김순자	강*옥	2024-05-28 11: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심학산로	45,000
26	봉안	19990309-018	41-01-05377	임성녀	최*집	2024-05-28 13: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00,000
27	봉안	19990310-005	41-01-05173	신기북	장*순	2024-05-28 13: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금하로24나길	100,000
28	봉안	19990310-019	41-01-05397	최철	최*우	2024-05-29 10: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100,000
29	봉안	19990311-017	41-01-05416	손분용	남*규	2024-05-29 14:0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966번길	100,000
30	봉안	19990311-024	41-01-05423	안창록	안*형	2024-05-27 13:1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화성시 병점2로	180,000
31	봉안	19990312-002	41-01-05429	김정임	송*진	2024-05-28 10: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용호1로21번길	100,000
32	봉안	19990312-012	41-01-05438	송공엽	한*윤	2024-05-28 13: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45,000
33	봉안	19990313-001	41-01-05449	김홍식	김*혜	2024-05-29 10: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4	봉안	19990313-022	41-01-05470	유금단	김*현	2024-05-27 09:2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42길	100,000
35	봉안	19990314-010	41-01-05481	천창광	천*수	2024-05-29 10: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18길	100,000
36	봉안	19990314-012	41-01-05483	유성룡	유*호	2024-05-29 09: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통일로72길	100,000
37	봉안	19990314-020	41-01-05484	박석랑	추*호	2024-05-28 11:0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306번길	180,000
38	봉안	19990316-013	41-01-05533	정석진	정*종	2024-05-28 11:4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광명시 목감로	100,000
39	봉안	19990316-018	41-01-05538	장두원	이*석	2024-05-28 11: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5길	100,000
40	봉안	19990316-019	41-01-05539	라정선	안*섭	2024-05-28 12: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3길	180,000
41	봉안	19990317-005	41-01-05543	최병화	최*철	2024-05-27 11:5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광명시 광명동	180,000
42	봉안	19990318-021	41-01-05586	김보근	김*	2024-05-30 09:3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180,000
43	봉안	19990320-001	41-01-05614	최만섭	최*인	2024-05-28 09:1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100,000
44	봉안	19990320-004	41-01-05616	주영희	주*식	2024-05-29 13: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전남 여수시 봉계대곡길	100,000
45	봉안	19990320-018	41-01-05630	김태연	이*우	2024-05-29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21길	100,000
46	봉안	19990320-023	41-01-05635	황성철	황*진	2024-05-28 11:0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100,000
47	봉안	19990321-002	41-01-05640	김동순	노*성	2024-05-27 13:2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0,000
48	봉안	19990321-011	41-01-05649	정제균	정*익	2024-05-28 11: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토금남로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9	봉안	19990321-021	41-01-05290	김낙균	김*봉	2024-05-28 11: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4길	180,000
50	봉안	19990322-010	41-01-05650	강창용	강*호	2024-05-29 11: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부산 동래구 동래로159번길	180,000
51	봉안	19990322-027	41-01-05680	박등자	유*열	2024-05-28 11:5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북구 장월로	50,000
52	봉안	19990323-001	41-01-05683	박명순	김*례	2024-05-29 09: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행선로	100,000
53	봉안	19990323-004	41-01-05686	김숙녀	김*호	2024-05-29 11:3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00,000
54	봉안	19990323-009	41-01-05691	정태순	오*교	2024-05-29 12: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구월로64번길	100,000
55	봉안	19990323-010	41-01-05692	강필중	황*정	2024-05-28 13: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동구 송현로	100,000
56	봉안	19990324-002	41-01-05710	김상현	김*복	2024-05-29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전북 군산시 신지길	100,000
57	봉안	19990324-003	41-01-05711	임을빈	임*순	2024-05-29 13: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000
58	봉안	19990324-015	41-01-05723	양윤덕	임*웅	2024-05-27 14:0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구로구 고척1동	45,000
59	봉안	19990325-025	41-01-03669	최연학	최*복	2024-05-28 09: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북 상주시 원장2길	100,000
60	봉안	19990326-021	41-01-05779	백락도	백*경	2024-05-28 11:1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진흥로15길	180,000
61	봉안	19990326-022	41-01-05780	김옥경	백*경	2024-05-28 11:1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진흥로15길	180,000
62	봉안	19990326-026	41-01-05784	정윤섭	정*주	2024-05-28 13:41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00,000
63	봉안	19990327-001	41-01-05793	최옥순	박*선	2024-05-28 10: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능동로19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64	봉안	19990327-007	41-01-05799	장선애	김*식	2024-05-28 09:1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100,000
65	봉안	19990327-019	41-01-05811	전부전	이*배	2024-05-29 09: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응암로25길	100,000
66	봉안	19990327-024	41-01-05816	오용안	오*숙	2024-05-28 09:1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100,000
67	봉안	19990327-025	41-01-05817	김용섭	김*중	2024-05-28 10:0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작구 매봉로	100,000
68	봉안	19990328-016	41-01-05839	김현수	김*희	2024-05-29 11: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00,000
69	봉안	19990328-027	41-01-05850	김옥자	김*정	2024-05-28 12:0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소사로147번길	90,000
70	봉안	19990329-018	41-01-05428	오성호	오*운	2024-05-29 11: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번2동	50,000
71	봉안	19990330-014	41-01-05878	김기태	김*철	2024-05-28 10:53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0,000
72	봉안	19990330-026	41-01-05890	김득록	김*근	2024-05-28 14: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19길	25,000
73	봉안	19990331-019	41-01-05909	조연휘	조*환	2024-05-29 12: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50,000
74	봉안	19990331-025	41-01-05915	김진용	김*욱	2024-05-28 13: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43번길	180,000
75	봉안	19990331-030	41-01-05919	이연희	마*환	2024-05-28 10: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태안군 동문7길	180,000
76	봉안	20010413-033	63-01-16830	이향선	이*래	2024-05-28 16:09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00,000
77	봉안	20040309-001	73-04-23410	유장순	유*호	2024-05-27 15:0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동구	75,000
78	봉안	20040310-003	73-04-23414	손봉기	선*호	2024-05-29 10: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구산동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79	봉안	20040313-001	73-04-23429	양석순	양*호	2024-05-28 09: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전남 목포시 관해로5번길	75,000
80	봉안	20040316-005	73-04-23442	장복이	배*정	2024-05-30 09:3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75,000
81	봉안	20040318-006	73-04-23455	정옥임	심*섭	2024-05-30 08:53	미배달 기타(반송함수거) (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평택시 원평로25번길	75,000
82	봉안	20040319-003	73-04-23458	윤방자	이*미	2024-05-28 08:41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75,000
83	봉안	20040319-005	73-04-23459	박경녀	박*주	2024-05-29 12:2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울산 남구 번영로107번길	75,000
84	봉안	20090301-004	71-03-01584	강순임	이*석	2024-05-29 10:3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	75,000
85	봉안	20090303-001	71-03-01656	신동현	장*미	2024-05-29 12: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75,000
86	봉안	20090306-006	71-03-01814	임정환	황*화	2024-05-29 10: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00,000
87	봉안	20090306-007	71-03-01828	이점순	이*출	2024-05-28 11: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	75,000
88	봉안	20090311-006	71-03-01951	박지용	박*민	2024-05-29 09: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서달로	75,000
89	봉안	20090312-001	71-03-01971	김정자	양*진	2024-05-29 11:0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당로13라길	75,000
90	봉안	20090317-003	71-04-02131	송태섭	송*희	2024-05-29 14:1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당진시 구래3길	75,000
91	봉안	20090327-008	71-04-02513	조규분	박*수	2024-05-27 08:58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광진구	75,000
92	봉안	20090328-004	71-04-02542	서종수	서*수	2024-05-29 12: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39길	75,000
93	봉안	20140304-003	62-01-07602	배순진	강*주	2024-05-28 11: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사당로29라길	25,000
94	봉안	20140304-005	62-01-07605	최응상	최*권	2024-05-29 09: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주흥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95	봉안	20140306-003	62-01-07707	한소영	김*진	2024-05-28 15:1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6번길	25,000
96	봉안	20140307-010	62-01-07942	추수정	나*규	2024-05-28 10:1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25,000
97	봉안	20140307-011	62-01-07945	이영순	강*해	2024-05-27 09:4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엘지로	25,000
98	봉안	20140311-003	62-01-08672	박창선	박*국	2024-05-27 10:3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술이홀로998번길	25,000
99	봉안	20140311-005	62-01-08706	강신천	강*웅	2024-05-29 12: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6가길	25,000
100	봉안	20140311-006	62-01-08791	유계숙	권*기	2024-05-28 09: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전 서구 갈마로245번길	25,000
101	봉안	20140314-001	62-01-09034	김행순	김*기	2024-05-27 09:06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6나길	25,000
102	봉안	20140317-001	62-01-09239	김경남	강*욱	2024-05-28 09: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25,000
103	봉안	20140318-003	62-01-09510	우갑제	우*범	2024-05-28 12: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25,000
104	봉안	20140321-006	62-01-09890	이은순	김*진	2024-05-28 12:0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000
105	봉안	20140323-002	62-01-10002	정학수	정*옥	2024-05-28 10: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2길	25,000
106	봉안	20140323-004	62-01-10068	이승규	이*국	2024-05-28 09: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포천시 봉솔로1길	25,000
107	봉안	20140324-003	62-01-10221	조정순	안*섭	2024-05-28 09:4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만양로	25,000
108	봉안	20140327-004	62-01-10647	최기숙	백*현	2024-05-29 12: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행운10길	50,000
109	봉안	20140328-003	62-01-10700	박삼율	박*성	2024-05-27 09:47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중앙로34가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10	봉안	20140331-005	62-01-11040	박현식	박*식	2024-05-29 08: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칠봉산로34번길	25,000
111	봉안	20190301-007	60-01-28140	윤경한	윤*한	2024-05-29 08:5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13길	25,000
112	봉안	20190301-008	60-01-28141	나승도	나*빈	2024-05-28 09: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3길	25,000
113	봉안	20190303-002	60-01-28166	김동범	김*자	2024-06-05 11:41	미배달 기타(반송함발견) (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25,000
114	봉안	20190312-001	60-01-28417	남석대	남*두	2024-05-29 13: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25,000
115	봉안	20190321-007	61-01-02962	양승열	양*모	2024-05-28 11: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100번길	25,000
116	봉안	20190329-010	62-01-06150	문명석	박*혁	2024-05-29 10:3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25,000
117	봉안	20190330-009	62-01-06520	김광제	김*숙	2024-05-28 10: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마장로264번길	25,000
118	봉안	20190330-016	72-09-06418	박순이	박*경	2024-05-28 09: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광명시 안현로	25,000
119	봉안	20190331-005	62-01-06634	최숙자	장*진	2024-05-28 09:03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5,000
120	분묘	19940301-005	16030225	강금진	강*원	2024-05-28 12: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소사로170번길	181,500
121	분묘	19940309-002	16030254	이용순	고*봉	2024-05-29 11:3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181,500
122	분묘	19940310-004	16030258	박정희	한*숙	2024-05-28 08:4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서울 중랑구 면목6동	181,500
123	분묘	19940310-008	16030262	조종목	조*일	2024-05-28 13: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효성2동 뉴서울3차아파트	181,500
124	분묘	19940312-003	16030270	박종옥	박*준	2024-05-28 10: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181,500
125	분묘	19940314-004	16030282	김영돌	김*용	2024-05-28 12:3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상도4동	181,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26	분묘	19940315-004	16030286	송문섭	구*순	2024-05-28 09: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화곡5동	181,500
127	분묘	19940320-005	16040020	김숙정	배*명	2024-05-28 13:5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81,500
128	분묘	19940321-001	16040022	서순길	박*일	2024-05-29 10: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황금로89번길	181,500
129	분묘	19940321-004	16040025	박동진	박*영	2024-05-27 14:4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19길	181,500
130	분묘	19940322-003	16040029	신관철	신*진	2024-05-29 11: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선릉로126길	181,500
131	분묘	19940331-004	16040075	이병욱	이*현	2024-05-28 12: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81,500
132	분묘	19990310-001	18170164	이동례	이*철	2024-05-29 12: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255번길	137,500
133	분묘	19990314-004	18170171	나귀임	김*	2024-05-28 13: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37,500
134	분묘	19990314-006	18170173	윤성룡	윤*근	2024-05-29 12:5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북구 번동	137,500
135	분묘	19990324-004	18170183	유진욱	유*순	2024-05-28 10: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7,500
136	분묘	19990327-010	18190008	홍성진	홍*기	2024-05-28 11: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당산로131번길	137,500
137	분묘	19990331-003	18190018	윤형	이*이	2024-05-28 12: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137,500
138	분묘	20040316-003	2003352	강학천	강*명	2024-05-28 09:49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노원로	228,250
139	분묘	19701117-015	103640	최학신	최*관	2024-05-29 10: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덕릉로41길	235,060
140	분묘	19890214-004	201449	오갑록	오*일	2024-05-28 13: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280,370
141	분묘	19920510-005	401013	김수산	김*천	2024-05-29 13: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280,3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9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1.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통지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9581668	금천구 문성로1길 4*, *동 103호	수도 요금	2021. 9 외 14납기	15회	3,922,480원	압류통지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금천구 문성로1길 4*, 제1층 제3호	장*옥	630618-******* (등기번호 1126804751917폐문부재)	서울시 금천구 문성로1길 4*, *동 103호	3,922,480원	2024. 6.3.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9581668	금천구 문성로1길 4*, *동 103호	수도 요금	2021. 9 외 14납기	15회	3,922,480원	압류통지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금천구 문성로1길 4*, 제1층 제3호	박*순	620519-******* (등기번호 1126804751918폐문부재)	서울시 금천구 문성로1길 4*, *동 103호	3,922,480원	2024. 6.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김세영(☎02-3146-1195)에게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96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처분 통보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을 미유지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및 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10개소) (붙임 명단 참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개소, 유치업자 8개소
  ※ 등록취소 처분되었음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6조에 의한 과징금에 처할 수 있음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안내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전자소송(ecfs.scourt.go.kr)도 가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1, hyunewh@seoul.go.kr)

[붙임] 등록취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11개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일자)
의료기관	M-2021-01-07-6315	서초아이누리한의원 (황*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서초동, 희원빌딩) 2층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의료기관	M-2021-01-08-6149	정석성형외과의원 (서*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4 (논현동, 1st Avenue) 11층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18-01-01-3482	주식회사 예미뷰티 (인*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당산동3가) 4층,4292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19-01-02-3622	보아스(BOAS) (l**l)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6길 92-14 (구의동) 제4층 제401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19-01-01-3637	주식회사 메디칼코리아센터 (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8길 7 (대치동) 지하1층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19-01-01-3666	주식회사 여행버스 (최*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8, 215호(구로동, 신안타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21-01-01-4320	주식회사 메디아 (박*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6(동교동, LC TOWER) 5층 520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21-01-01-4329	주식회사 카리스비즈 (조*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0길 22-24 (석관동) 1층 101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21-01-01-4336	주식회사 에드케어 (이*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서초동, 강남효성해링턴타워) 비1층 107-38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유치업자	A-2021-01-01-4339	납세정의신문 ㈜ (박*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9 (서초동, 이레 오피스텔) 402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등록취소 ('24.7.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97호

도시관리계획(상계 · 중계 · 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 중계 · 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4.6.27. ~ 2024.7.11.)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02-2133-8376)
-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02-2116-3852)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상계(1 · 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및 마들역 주변	2,663,453.0	-	2,663,453.0	-
기정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일원	1,556,949.5	-	1,556,949.5	-
기정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일원	1,431,597.7	-	1,431,597.7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상계(1 · 2단계) 택지개발지구, 중계,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상계(1 · 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9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4.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4. 7.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재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2024.7.1.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문화재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문화재관리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2㎝			
	문화재관리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문화유산활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2024.7.1.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문화유산활용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문화유산활용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2㎝			
	문화유산활용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0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1.(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행정절차법」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는 마스킹 처리.

당사자	명칭(성명)	김*배
	차량번호	서울86*6269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70 화성향남부영10단지 1001동 *01호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 -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1공모 가담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제13호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주유소 간 거리 32km / 주유간격 9분) - 2024-05-27 08:46:49 / 396,055원 / 263.68리터 / 대*셀프주유소(경기 평택시) - 2024-05-27 08:56:39 / 70,000원 / 48.31리터 / 남*대로주유소(경기 오산시)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환수 (47,530원)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현 지입차주에게 처분 예정
당초제출기간	2024년 6월 28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918638425 93 ‣반송사유 : 폐문부재

당사자	명칭(성명)	이*도	
	차량번호	서울91*853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66 118동 *04호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1일 4회 이상 주유) -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8호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28조제1항제10호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총 주유량 : 144.82리터, 탱크용량 : 48리터) - 2024-05-17 01:45:10 / 27,026원 / 26.18리터 / 대*에너지산업 - 2024-05-17 04:29:29 / 36,065원 / 35.08리터 / 보*물산(주) - 2024-05-17 12:47:35 / 45,000원 / 43.47리터 / 케*알산업(주) - 2024-05-17 15:17:05 / 40,815원 / 40.09리터 / (주)썬엘 청주 ○ 위반내역 (총 주유량 : 172.58리터, 탱크용량 : 48리터) - 2024-05-25 02:25:45 / 46,129원 / 46.88리터 / 공*로충전소 - 2024-05-25 05:07:37 / 41,283원 / 38.26리터 / ㈜더*이유통 - 2024-05-25 12:15:50 / 46,509원 / 43.1리터 / ㈜오*석유 - 2024-05-25 17:03:40 / 47,000원 / 44.34리터 / ㈜부*충주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41,78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6월 28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918638425 90 ‣반송사유 : 폐문부재

당사자	명칭(성명)	김*식	
	차량번호	서울85*7716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74 122동 180*호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 -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1공모 가담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제13호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주유소 간 거리 318km / 주유간격 123분) - 2024-05-31 20:52:44 / 66,780원 / 45리터 / 중*주유소(강원 홍천군) - 2024-05-31 22:55:50 / 45,000원 / 31리터 / 정*휴게소(하)주유소(전북 정읍시)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11,57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6월 28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918638425 95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당사자	명칭(성명)	김*희	
	차량번호	서울91*6815	
	주 소	0285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10길 5*(안암동3가)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 -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1공모 가담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제13호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주유소 간 거리 226km / 주유간격 69분) - 2024-05-09 09:05:15 / 59,560원 / 40리터 / 은*수주유소(전북 남원시) - 2024-05-09 10:15:10 / 60,000원 / 39.34리터 / 환*주유소(충북 음성군) ○ 위반내역 (주유소 간 거리 83km / 주유간격 34분) - 2024-05-21 18:04:00 / 69,310원 / 46.82리터 / 소*리주유소(충북 음성군) - 2024-05-21 18:38:39 / 45,450원 / 30리터 / 기*나라주유소(경기 광주시)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23,79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6월 28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918638425 96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당사자	명칭(성명)	한*철	
	차량번호	서울84*7251	
	주 소	07533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76 802동 *02호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단기간 반복주유) -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8호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유가보조금 을 지급받은 경우 - 제28조제1항제10호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총 주유량 : 103리터, 탱크용량 : 65리터) - 2024-05-03 11:57:53 / 31,180원 / 20리터 / 상림주유소 - 2024-05-03 12:12:21 / 61,360원 / 40리터 / 지*스칼텍스(주)국도주유소 - 2024-05-03 12:15:52 / 65,962원 / 43리터 / 지*스칼텍스(주)국도주유소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15,69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6월 28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918638426 02 ‣반송사유 : 폐문부재

3. 처분근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7월 11일(목)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3층 물류정책과 (팩스번호 02-768-8943)
- 담 당 자 : 신용현(02-2133-4097) globalhunter@seoul.go.kr

5.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명칭)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02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인셀덤 에이스	서울 후 제883호	장영애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101동 14층 1402호 (개봉동,두산아파트)	소재지 ('24.6.4)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356, 2층 (오류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101동 14층 1402호 (개봉동,두산아파트)
2	유니베라 한성대리점	서울 후 제326호	백경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7, 3층 307호 (203호 임대)(삼선동5가, 광남제니텔)	소재지 ('24.6.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7, 3층 202,203,307호(삼선동5가, 광남제니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7, 3층 307호 (203호 임대)(삼선동5가, 광남제니텔)
3	한중성 인터내셔날	서울 후 제2860호	신화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7길 12-16, 지층(공릉동)	소재지 ('24.6.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41, 220호 (장항동, 청원레이크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7길 12-16, 지층(공릉동)
4	로원인셀덤	서울 후 제2217호	송성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가길 59-8, 3층 (누상동)	소재지 ('24.6.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가길 59-8, 1층 (누상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가길 59-8, 3층 (누상동)
5	인셀덤 (노블레스리치)	서울 후 제2722호	김서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상가동 B블럭 1층 164호(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재지 ('24.6.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182호 (대치동, 한보미도상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상가동 B블럭 1층 164호(대치동, 은마아파트)
6	인셀덤 땡큐땡큐 대리점	서울 후 제2016호	이혜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23길 15, 106동 202호(오금동, 신승파크빌)	폐업 ('23.9.30)		
7	인셀덤 스타 위드	서울 후 제1681호	이강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4다길 26, 401호(홍제동, 현대빌)	폐업 ('24.6.14)		
8	인셀덤 가락점	서울 후 제2481호	이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3길 6-9(문정동)	폐업 ('24.6.17)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9	태영	서울 후 제2477호	안태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 1동 305호(양재동, 도곡한신빌라)	폐업 ('24.6.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06호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체납)고지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따라 변상금 독촉(체납)고지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건　　명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체납)고지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부과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두○조○협동조합 (11**51-01**260)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	- 무단점유재산 :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 - 점유기간 : 2023.03.01.~2023.07.06. - 점유면적 : 3,372㎡ - 부과내역 : 총액 2,058,355,950원 · 변상금 : 2,000,792,180원 · 연체료 : 57,563,770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23번길 20-10, 4**호	폐문부재

※ 공시송달기간 : 2024.6.27. ~ 2024.7.11.(15일간)
※ 공시송달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5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등)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비영리민간단체 현행화 필요 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문화예술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등) 현행화가 필요한 30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 및 회신이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사)서울문화포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4층	손봉호	2011-03-22	문화예술과
2	관악미디어 공동체 "동동"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707-1, 208동 303호	김금희	2004-11-17	문화예술과
3	다솜메아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13, 1301호	안정강	2004-12-22	문화예술과
4	도서관운동연구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5-32	이혜연	2000-05-12	문화예술과
5	무궁화 사랑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314호	윤국자	2000-05-15	문화예술과
6	문화나눔공동체 "꿈이 자라는 씨앗"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101-74, 1층	이천수	2007-08-28	문화예술과
7	미래문화창조	서울시 중구 신당2동 357-10, 2층	김용인	2009-07-31	문화예술과
8	민족교육문화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8-209	박종오	2000-06-10	문화예술과
9	민족정기수호중앙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3-B1	이한천	2001-03-28	문화예술과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0	민족혁필화보존협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23-191	박동해	2001-02-28	문화예술과
11	바른언어 실천연합 서울시지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73, 301호	박갑수	2000-05-10	문화예술과
12	밝은미소&밝은사회 문화예술운동본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7, 서울종합예술학교내	박경희	2007-02-08	문화예술과
13	사단법인 독서르네상스운동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6, 6층	박철원	2015-05-26	문화예술과
14	사단법인 문화예술연합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 20-1, 1층	남용우	2009-02-27	문화예술과
15	사단법인 한국문화 복지교육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76	오수원	2013-04-10	문화예술과
16	사단법인 한중예술협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90-1, 4층	오남진	2013-12-02	문화예술과
17	살롱그랑에존느 한국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 809호	민경갑, 박광진	2000-11-04	문화예술과
18	서울공연기관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00(예술의전당)	문호근	2001-04-06	문화예술과
19	전통문화사랑모임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08	이정열	2004-06-11	문화예술과
20	책읽는라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8가길 14, 2층	한지훈	2014-02-07	문화예술과
21	청계천사랑	서울시 중구 입정동 3-2, 403호	이응재	2007-02-06	문화예술과
22	퇴계활인심방보존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5, 301호	피영준	2001-03-28	문화예술과
23	한국문화예술봉사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6길 23, 403호	박성목	2014-08-05	문화예술과
24	한국스피치토론 문화진흥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내	신계륜	2000-11-29	문화예술과
25	한국실버문화예술단	서울시 도봉구 창동 27, 창동주공19단지 노인정지하	장정자	2011-12-27	문화예술과
26	한국아르브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1106호	김통원	2010-05-21	문화예술과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27	한국의생활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52, 801호	오이순	2003-03-19	문화예술과
28	한국장애인문학협회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0-9, A동 201호	최현숙	2009-12-30	문화예술과
29	한국종합연예인단	서울시 종로구 종로 258, 626호	박재복	2015-05-19	문화예술과
30	한류문화교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711호	이규원	2001-02-27	문화예술과

2.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이창선 주무관(02-2133-2562)
3. 회신기간 : 2024. 7. 12.(금)
4. 별도 연락 · 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1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반송(수취인 · 폐문부재)으로 인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9932130	영등포구 디지털로56길 16(대림동)	상 · 하수도요금	2023-06 ~2024-04	6	551,730
023404841	영등포구 디지털로56길 16(대림동)	상 · 하수도요금	2023-06, 12 2024-02, 04	4	1,242,25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영등포구 디지털로56길 16(대림동)	이O수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3길 3-9,8동 301호(삼동, 한일하이츠)	1,793,980	2024. 6. 1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승렬(☎02-3146-4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22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수정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의거 행정처분(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수정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나눔은행	노원구 동일로 1063	장창영	2012. 7. 6.
2	햇살을 나르는 사람들	종로구 난계로25길 32, 405호	이계정	2011. 1. 26.
3	복나눔 사람들	중구 을지로17길 30, 205호	장재호	2010. 10. 21.
4	녹색한국사회복지국민연합	강남구 봉은사로49길 21-7	황지하	2009. 3. 2.
5	한국복지회	영등포구 경인로 882	양창부	2006. 2. 15.
6	이웃을 돕는 사람들	강북구 미아동 645-112	김동흔	2003. 3. 27.
7	SOS기금회	관악구 신림동 655-1	임현주	2002. 3. 20.
8	참전유공자회	강동구 풍성로 295, 1층	유천수	2000. 5. 25.
9	참사랑봉사회	종로구 혜화로10길 15-9	소규원	2000. 5. 18.

5. 공고기간: 2024. 6. 27.(목) ~ 2023. 7. 11.(목)

6. 청문일시: 2024. 7. 12.(금) 14:00 ~ 16:00

7. 청문장소: 서울특별시청 본관(지상3층) 소회의실3

8. 청문주재자: 김화철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 법률지원과에 청문 변호사 협조요청

9.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5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2024.3.16.)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미디어재단티비에스		직위	(전)대표이사		성명	정태익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6,402	0	1,298	15,104	
배우자	잡종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25-203번지 16,515.00㎡ 중 1,180.00㎡	16,402	0	1,298	15,104	지가변동

▶ 건물(소계)			3,478,440	0	0	3,478,44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 137.10㎡ 중 68.50㎡	1,356,010	0	0	1,356,010	
본인	상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건물 80.43㎡	383,210	0	0	383,21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 137.10㎡ 중 68.50㎡	1,356,010	0	0	1,356,010	
장남	상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건물 81.84㎡	383,210	0	0	383,21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8,930	0	3,930	35,00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GLC220d 배기량(2,143cc)	33,250	0	3,250	30,000	감가상각 반영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K5 배기량(1,999cc)	5,680	0	680	5,000	감가상각 반영
▶ 예금(소계)			719,438	77,128	77,280	719,286	
본인		(주)KEB하나은행 240,952(5,829 감소), DB손해보험(주) 25,610(272 증가), NH투자증권 20,660(2,128 감소), 농협은행 3,794(215 증가), 삼성생명보험 10,800, 신한은행 14,395, 우리은행 2, 한국투자증권 59,161(7,843 감소)	390,687	59,236	74,549	375,374	지출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3,888(1,872 증가), NH투자증권 6,830(562 증가), 국민은행 69(53 증가), 농협은행 34,500(1,000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3,714, 중소기업은행 5,083(628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83,41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60,000, 흥국생명보험 60,0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7,847(86 증가)	271,142	4,769	568	275,343	

장남		(주)KEB하나은행 28,296(3,206 증가), NH투자증권 10,073(851 증가), 교보생명보험 6,700(200 증가), 국민은행 7,937(7,387 증가), 농협은행 3,512(5 감소), 미래에셋증권 29(10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0(6 감소), 신한은행 9, 우리은행 14(14 증가), 케이뱅크 5, 토스뱅크(주) 300, 하나증권 0(942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11,694(265 증가)	57,609	13,123	2,163	68,569	
▶ 증권(소계)			**290,388**	**79,025**	**10,622**	**358,791**	
본인	상장주식	Alphabet 15주(15주 증가), Apple 17주, Microsoft 15주, Nvidia 70주, Salesforce 20주, 삼성전자 120주, 카카오뱅크 23주	73,049	40,980	1,102	112,927	주로 취임 전 보유했던 장기 해외주식들의 가액증가에 기인함. 특히 AI와 관련한 특정 종목의 급등에 영향을 받음.
배우자	상장주식	Amazon.com 60주, Apple 16주, DeltaAir 113주, MetaPlatforms 6주, Microsoft 10주, NAVER 43주, Netflix 5주, Nvidia 19주, Salesforce 18주, Southwest 32주, Starbucks 46주, Tesla 42주, UnitedArlns 50주, 삼성전자 281주, 카카오 264주	119,575	16,084	8,403	127,256	
장남	상장주식	Amazon.com 80주, MetaPlatforms 8주, Microsoft 32주, NAVER 17주, Nvidia 9주, Salesforce 15주, Southwest 40주, Starbucks 19주, 대한해운 1주(1주 증가), 대한해운보통주 0주(1주 감소), 마이크로소프트 57주, 삼성전자 60주, 한미반도체 196주	97,764	21,961	1,117	118,608	주로 취임 전 보유했던 장기 해외주식들의 가액증가에 기인함. 특히 AI와 관련한 특정 종목의 급등에 영향을 받음.
▶ 채무(소계)			**462,684**	**0**	**10,682**	**452,002**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232,000	232,000	0	0	232,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임대보증금	1	0	0	1	
장남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0(10,682 감소), 농협은행 220,000	230,682	0	10,682	220,000	
장남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임대보증금	1	0	0	1	
▶ 회원권(소계)			**8,710**	**0**	**0**	**8,710**	
본인	콘도미니엄	델피노리조트	8,710	0	0	8,710	
▶ 가상자산(소계)			**0**	**49,777**	**0**	**49,777**	
장남		도지코인 5,500.15개(5,500.15개 증가), 비트코인 0.3579042개(0.3579042개 증가), 이더리움 2.39124611개(2.39124611개 증가), 이더리움페어 2.39124611개(2.39124611개 증가), 이더리움피오더블유 2.39124611개(2.39124611개 증가)	0	49,777	0	49,777	최초 신고자체 및 가격변동
총 계			**4,089,624**	**205,930**	**82,448**	**4,213,106**	**증감액: 123,482천원 (가액변동: 60,388천원)**

○ 신 규(2024.3.19.)

소속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직위	의원	성명	정시온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예금(소계)			11,627	
본인		DB손해보험(주) 922, 국민은행 10,555, 신한은행 150	11,627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부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1,62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0.75점”을 “총 0.75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30점을 넘지 못한다.

⑥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복되는 기간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해당 월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33조의3 중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으”을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3항부터 제6항의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으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근무경력 가산점 의무 부여 조항 신설

나.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반영 필요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중 평정 결과에 주요 요소가 아닌 ‘종합평정 의견 공개’의 실효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개 항목에서 제외

라. 그 외 평정규칙 조항 번호 개정에 따른 교육규칙 조항 등 기타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마련

-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시점, 월 부여 가산점, 최대 가산점, 중복 가산점 처리방법을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고 동 규칙에 반영(제33조의2)
- 그 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제33조의2)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적용 신설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 제정(부칙)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요소 중 ‘종합평정 의견’ 삭제

- 동 규칙의 지난 개정 시[규칙 제1052호, 2023.1.19. 개정, 2024.1.20. 시행] 평정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결과 중 ①평정자의 평정등급, ②평정점수 및 ③종합평정 의견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③종합평정 의견의 경우 평정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요소가 아닌 점 등 공개 실효성 및 결과 입력 등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외(제33조의3)

다. 평정규칙 문구 개정에 따른 동 교육규칙 문구 정비

-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과 기타 명확한 문구 해석을 위한 문구 정비(제33조의2)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4-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79호(2023.11.09.)로 결정되고 중구 고시 제2024-18호(2024.03.14.)로 결정(변경)한 우리 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사업
- 명칭 : 서울시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관련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규모 : L=10.55m, B=4.5m H= 3.7m 보행자 전용 지하도로 개설
- 면적 : 6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이민석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3323호(영덕동, 유타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內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사항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을지로2가 193-2	도	도로	4,664.5	56.46	국토교통부	-	-	-	-
2	을지로2가 185	대	대지	2,735.4	6.8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	-	-
합계		-		7,399.9	63.30	-	-	-	-	-

다.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에 비치.

◈ 용산구고시 제2024-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시특별시고시 제535(1978.10.13.)호 및 서울시 고시 제2017-170호(2017.05.18.)로 결정 고시, 용산구 고시 제2020-108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하고, 용산구 고시 제2022-105호(20222.6.21.)로 실시계획 고시(변경)된『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로과:☎2199-7853, 건설관리과:☎:219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구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서계동 229-14 ~ 서계동 236-11	폭:15m 연장:216m	용산구청장	서울시고시 제535호 (1978. 10. 13.)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1) 기정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4.06.23.까지
2)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5.06.23.까지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별첨(변경없음)

라.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별첨(변경없음)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토지조서 등 1부. 끝.

□ 위치도 및 현장사진


GS수퍼마켓
세광아트홀
계림모텔
대도식당
부뚜막
소아제일약국
청파도서관
뚜레쥬르
KB국민은행
만리서재
모아미니수퍼
청파동
자치회관별관
석기정돌솥
부대찌개삼겹살
금강모텔
청파
어린이공원
서계종합
제일빌딩
서계노인여가
복합센터
제일빌딩
코레일유통
롯데리아
민족사랑교회
투다리
현대슈퍼
24시
천지일보
국립극단
서계빌딩
백성희장민호극장
연합빌딩
서계빌딩
케이문
개미식당
에프엔디
카페지오
청파로89길
청파로85길
만리재로


주차문의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서계동 229-14	대	145.8	140.9	강*이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 1**동 8**호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근저당권 지상권	
							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상록마을 1**-1***	근저당권	
2	서계동 229-15	대	48.1	48.1	이*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 1**동 8**호 (우두동, 롯* 인** 아파트)				
3	서계동 229-16	대	109.9	109.9	정*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				
4	서계동 229-17	대	10.1	10.1	이*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 1**동 8**호 (우두동, 롯* 인** 아파트)				
5	서계동 234-46	대	240.8	120.4	고*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3길 **, 1**동 1***호 (만리동1가, ********)				1/2
				120.4	문*수	서울시 서계동 2**-** *동 *층				1/2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6	서계동 8-1	대	32.8	16.4	박*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1/2
				16.4	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2**동 8**호 (서현동,우****)				1/2
7	서계동 20-1	대	21.2	21.2	이*훈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 6**동 1***호 (진관동, 은**** 상***)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0 [건물] 서계동 20 외 1필지
8	서계동 21-2	대	19	19	박*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1*(구로동)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9	서계동 234-45	대	7.5	7.5	정*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 1**동 1***호 (래****아파트)				
10	서계동 234-7	대	18.8	18.8	정*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 1**동 1***호 (래****아파트)				
11	서계동 234-44	대	134.6	134.6	이*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서계동)				
12	서계동 234-11	대	17.5	17.5	박*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1**동 1***호 (우동, 해운대 ** **** 오피스텔)				
13	서계동 234-43	대	15.3	15.3	박*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1**동 1***호 (우동, 해운대 ** **** 오피스텔)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4	서계동 234-12	대	6.6	6.6	박*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1**동 1***호 (우동, 해운대 ** **** 오피스텔)				
15	서계동 234-42	대	119	109.1/3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109.1/3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8**동 1***호 (부림동, **아파트)				1/3
				109.1/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시티)				1/3
16	서계동 22-6	도	2.3	2.3	윤*중	아산시 온천대로 1***, *층(온천동)				
17	서계동 22-4	대	2.2	2.2	윤*중	아산시 온천대로 1***, *층(온천동)				
18	서계동 23-2	대	5.5	5.5	윤*중	아산시 온천대로 1***, *층(온천동)				
19	서계동 24	도	0.5	0.5	김*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 1**동 1***호(호계동, ****)				
20	서계동 24-6	대	6.3	6.3	장*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서계동)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21	서계동 24-5	대	1.2	1.2	장*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서계동)				
22	서계동 25-2	대	2.7	2.7	장*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서계동)				
23	서계동 26-2	대	0.2	0.2	김*식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				
24	서계동 235-32	대	69.9	62/3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62/3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8**동 1***호 (부림동, **아파트)				1/3
				62/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				1/3
25	서계동 235-9	대	145	0.7/3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0.7/3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0.7/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				1/3
26	서계동 235-12	대	36.7	36.7	이*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 1**동 5**호 (신내동, ***아파트)				
27	서계동 235-14	대	57.8	57.8	이*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1**동 7**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28	서계동 235-31	대	85.4	85.4	이*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 1**동 2***호(신공덕동, *****공덕아파트)				
29	서계동 235-30	대	89.6	89.6	강*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30	서계동 235-23	대	80.3	80.3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31	서계동 235-24	대	28.8	28.8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32	서계동 235-29	대	27.5	27.5	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 3**호 (화곡동)				
33	서계동 237-56	대	12.8	12.8	강*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최*순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번길 ** (송내동)	근저당권	
34	서계동 237-55	대	7.4	7.4	강*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최*순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번길 ** (송내동)	근저당권	
35	서계동 236-29	대	6.3	6.3	이*희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 1**동 1***호(금호동2가, 신******아파트)				
36	서계동 236-46	대	64.3	64.3	최*찬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 1**동 1***호(금호동2가, 신******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37	서계동 236-30	대	28.4	28.4	최*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 **아파트 2**동 2***호				
38	서계동 236-45	대	33.2	33.2	정*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번길 **, *동 5**호 (상현동, 광교*차 ****시티)				
39	서계동 236-44	대	0.9	0.9	박*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2***호 (한강로3가, GS******)				
40	서계동 236-10	대	37.7	37.7	정*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아파트 1**동 6**호				
41	서계동 236-37	대	41.8	41.8	박*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2***호 (한강로3가, GS******)				
42	서계동 236-38	대	8.3	8.3	정*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아파트 1**동 6**호				
43	서계동 237-54	대	38.6	38.6	이*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 **아파트 *동 3**호				
44	서계동 237-26	대	28.4	28.4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45	서계동 237-52	대	59.4	59.4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46	서계동 237-51	대	30.9	30.9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47	서계동 237-50	대	10.3	10.3	임*현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3**동 9**호(역삼동, *******)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7-4 [건물] 서계동 237-4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48	서계동 238-1	대	330.1	2	정*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4길 **, 3**동 6**호 (삼성동, *******아파트)	종로 세무서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근저당권	공동담보 [건물] 서계동 238-1
49	서계동 7-6	대	19.7	19.7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				
50	서계동 7-9	대	18.3	18.3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				
51	서계동 7-8	대	42.2	42.2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				
52	서계동 7-7	대	4.8	4.8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서계동 8-1	가건물 (창고)	판넬	20.7	박*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2**동 8**호 (서현동,**아파트)				
2	서계동 20-1	1층 건물	벽돌조	14.7	이*훈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 6**동 1***호 (진관동, ***** **마을)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0 [토지] 서계동 20-1
3	서계동 20-1	2층 건물	벽돌조	14.7	이*훈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 6**동 1***호 (진관동, ***** **마을)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0 [토지] 서계동 20-1
4	서계동 21-2	1층건물 출입구	벽돌조	5.7	박*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길 **-**(구로동)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5	서계동 21-2	2층건물	벽돌조	5.7	박*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길 **-**(구로동)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6	서계동 21-2	1층건물	벽돌조	12.0	박*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길 **-**(구로동)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7	서계동 21-2	2층건물	벽돌조	12.0	박*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길 **-**(구로동)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8	서계동 21-2	가건물	목조	3.1	박*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길 **-**(구로동)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9	서계동 24-6	화단	벽돌조	1.4	장*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서계동)				
10	서계동 229-15	1층건물	콘크리트	61.9	이*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 1**동 8**호 (우두동, 롯* 인** 아파트))				물건주인확인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1	서계동 229-16	1층건물	벽돌조	58.2	정*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				
12	서계동 234-7	1층건물	콘크리트	27.1	정*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 1**동 1***호 (*****아파트)				물건주인확인
13	서계동 234-42	가설물	콘크리트 벽돌	47.1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동 1***호 (부림동, **아파트)				1/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				1/3
14	서계동 234-42	창고	콘크리트	2.5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동 1***호 (부림동, **아파트)				1/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				1/3
15	서계동 234-44	1층건물	목조기와 지붕	50.0	이*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서계동)				
16	서계동 234-44	1층건물	목조기와 지붕	20.7	이*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서계동)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7	서계동 234-44	창고및보일로	목조기와지붕	3.6	이*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서계동)				
18	서계동 234-44	창고및보일로	목조기와지붕	7	이*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서계동)				
19	서계동 234-44	창고	목조기와지붕	4.1	이*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서계동)				
20	서계동 235-12	1층건물	목조기와지붕	34.7	이*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 1**동 5**호 (신내동, ***아파트)				
21	서계동 235-12	가건물및출입구	목조기와지붕	13.4	이*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 1**동 5**호 (신내동, ***아파트)				
22	서계동 235-14	1층건물	목조	41.3	이*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1**동 7**호				
23	서계동 235-14	가건물및출입구	목조	15.7	이*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1**동 7**호				
24	서계동 235-23	지층	콘크리트	54.5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25	서계동 235-23	1층건물	콘크리트	54.5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26	서계동 235-23	2층건물	콘크리트	47.1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27	서계동 235-23	1층건물	콘크리트	24.2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28	서계동 235-23	계단	철	1.5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29	서계동 235-23	계단	철	1.5	나*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				
30	서계동 235-29	가건물	판넬	0.7	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 3**호 (화곡동)				
31	서계동 235-29	1층건물	콘크리트	21.1	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 3**호 (화곡동)				
32	서계동 235-30	옥탑	패널	40.7	강*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3	서계동 235-30	가건물		3.2	강*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4	서계동 235-30	1층건물	철근콘크리트	87.9	강*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35	서계동 235-30	2층건물	철근콘크리트	87.9	강*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6	서계동 235-30	가설물		2.9	강*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7	서계동 235-31	1층건물	목조세멘기와	69.3	이*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 1**동 2***호(신공덕동, *****공덕아파트)				
38	서계동 235-31	가건물및촬입구	목조세멘기와	16.9	이*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 1**동 2***호(신공덕동, *****공덕아파트)				
39	서계동 236-10	1층건물	목조세멘기와	41.7	정*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아파트 1**동 6**호				
40	서계동 236-30	1층건물	목조	33.1	최*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 **아파트 2**동 2***호				1/2
					강*선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 **아파트 2**동 2***호				1/2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김*봉	서대문구 만리동2가 1**-*				제1호
41	서계동 236-37	지층	콘크리트	32.7	박*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2***호 (한강로3가, GS******)				
42	서계동 236-37	1층건물	콘크리트	33.1	박*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2***호 (한강로3가, GS******)				
43	서계동 236-37	화장실	콘크리트	3.7	박*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2***호 (한강로3가, GS******)				
44	서계동 236-38	1층건물	목조세멘기와	21.0	정*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아파트 1**동 6**호				
45	서계동 236-38	지층	목조세멘기와	21.8	정*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아파트 1**동 6**호				
46	서계동 236-38	계단	콘크리트	4.9	정*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아파트 1**동 6**호				
47	서계동 236-45	2층건물	목조세멘기와	10.9	정*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번길 **, *동 5**호 (상현동, 광교*차 ****시티)				
48	서계동 236-45	1층건물	목조세멘기와	41.6	정*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번길 **, *동 5**호 (상현동, 광교*차 ****시티)				
49	서계동 236-46	창고		1.5	김*영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76길 *-*, 4**호(수유동, **빌라)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50	서계동 236-46	1층건물	콘크리트	40.7	김*영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76길 *-*, 4**호(수유동, **빌라)				
51	서계동 237-23	가설물	콘크리트	5.8	김*희	서울시 서대문구 만리동2가 1*				
52	서계동 237-23	가설물	콘크리트	29.1	김*희	서울시 서대문구 만리동2가 1*				
53	서계동 237-26	1층건물	목조기와 지붕	27.8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1/3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1/3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1/3
54	서계동 237-50	가건물		5.7	김*길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				
55	서계동 237-52	데크	데크	7.1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1/3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1/3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56	서계동 237-52	2층건물	콘크리트	68.7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1/3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1/3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1/3
57	서계동 237-52	1층건물	콘크리트	73.2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1/3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1/3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1/3
58	서계동 237-52	가건물		1.4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1/3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1/3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1/3
59	서계동 237-52	창고	콘크리트	15.8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1/3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1/3
60	서계동 237-52	보일러		0.2	안*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 1*동 3**호(이촌동, **맨션)				1/3
					염*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동 1***호(반포동, ****아파트)				1/3
					염*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1/3
61	서계동 237-55	화단	벽돌	1.8	강*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최*순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1**번길 ** (송내동)	근저당권	
62	서계동 229-15	담장	벽돌		이*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 1**동 8**호 (우두동, 롯* 인** 아파트)				물건주인확인
63	서계동 229-16	담장	콘크리트		정*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				
64	서계동 234-7	담장 및 출입구	콘크리트		정*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 1**동 1***호 (*****아파트)				
65	서계동 234-11	대문	콘크리트		박*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 1**동 1***호				
66	서계동 234-42	담장 2개소	콘크리트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동 1***호 (부림동, **아파트)				1/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				1/3
67	서계동 234-42	대문	콘크리트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동 1***호 (부림동, **아파트)				1/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				1/3
68	서계동 234-44	담장 3개소	콘크리트		이*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서계동)				
69	서계동 234-7	출입구	콘크리트		정*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 1**동 1***호 (*****아파트)				
70	서계동 235-14	담장	콘크리트		이*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1**동 7**호				
71	서계동 235-29	담장	콘크리트		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 3**호 (화곡동)				
72	서계동 235-32	담장 및 대문	콘크리트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 1**동 6**호(대치동, ** ** ****)				1/3
					김*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동 1***호 (부림동, **아파트)				1/3
					김*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동 3**호 (자양동, ** ****)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73	서계동 236-46	대문 및 담장	콘크리트		최*찬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 1**동 1***호(금호동2가, 신******아파트)				
74	서계동 236-37	담장	콘크리트		박*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2***호 (한강로3가, GS******)				
75	서계동 237-55	담장	콘크리트		강*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위치)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계동 236-11	덕트공사	가나안기업	1식	최*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2	서계동 236-30	의류임가공	-	1식	소*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3	서계동 235-21	의류임가동	KS-10	1식	문*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 2**호				지층
4	서계동 229-16	의류임가공	퀄리티	1식	윤*동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 **빌라 2**호				1층
5	서계동 236-11	철학관	철학관	1식	조*자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6	서계동 236-11	의류임가공	쎄라	1식	서*선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7	서계동 236-10	의류임가공	보라패션	1식	이*주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4길 **				1층

연번	소재지 (위치)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서계동 235-23	의류임가공	단추	1식	윤*영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9	서계동 235-23	의류임가공	스랍	1식	이*숙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지층
10	서계동 235-21	의류임가공	주연	1식	최*석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8*-4* **빌라 ****				2층
11	서계동 235-21	의류임가공	호영사	1식	김*길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				지층
12	서계동 235-16	의류임가공	백호	1식	박*숙	인천시 계양구 양지말3길 *-* *동 3**호				1층
13	서계동 235-14	일반음식점	소셜나인	1식	최*애황*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층				1층
14	서계동 234-46	이미용	아인아르떼	1식	정*철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15	서계동 229-9	의류임가공	부흥사	1식	오*민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연번	소재지(위치)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	서계동 20	의류임가공	서부사	1식	황*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1층
17	서계동 20	의류임가공	이브	1식	한*만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				2층
18	서계동 21	의류임가공	경서	1식	박*철	서울시 마포구 임정로25길 **-* 1**동 1**호				1층
19	서계동 21	의류임가공	봄날	1식	한*선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				2층
20	서계동 21	의류임가공	-	1식	장*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				2층
21	서계동 237-52	의류임가공	강패턴실	1식	강*순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22	서계동 237-26	의류임가공	선어패럴	1식	기*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1*				1층
23	서계동 235-14	일반음식점	소셜나인	1식	황*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층				1층
24	서계동 235-14	일반음식점	나인로드	1식	최*애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층				1층
25	서계동237-54	건자재소매	서계종합건재	1식	장*숙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				1층
26	서계동 236-38	의류도매	프라미스제이	1식	한*원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 *층				1층

◈ 성동구고시 제2024-79호

행당6,7구역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84(2009.03.0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성동구 고시 제2022-56(2022.3.24.)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된 성동구 행당동 130-125 일대 행당6,7구역 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8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성 동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공원 높이를 낮춰 경관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 도모

2.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30-125번지 일대

3. 공원면적 : 변경없음(14,430.3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4)

행당 6, 7구역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총괄표[위치: 성동구 고산자로 8라길(행당동 130-125번지)일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 (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14,430.30	5,505.09	1.00	102.00	102.00	246	14,430.30	5,534.98	2.00	161.88	161.88	261	
기반시설	소 계	3,899.52	3,899.52				-	3,728.18	3,728.18				-	감 171.34㎡
	도 로	3,289.60	3,289.60				-	3,033.00	3,033.00				-	감 256.60㎡
	광 장	609.92	609.92				-	695.18	695.18				-	증 85.26㎡
조경시설		372.63	372.63				33	217.22	217.22				32	감 155.41㎡
휴양시설		677.88	677.88				71	834.07	834.07				93	증 156.19㎡
유희시설		173.79	173.79				5	289.47	289.47				7	증 115.68㎡
운동시설		275.67	275.67				13	302.36	302.36				11	증 26.69㎡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105.60	105.60	1.00	102.00	102.00	2	103.80	103.80	1.00	102.00	102.00	1	감 1.80㎡
관리시설		-	-				122	59.88	59.88	1.00	59.88	59.88	117	증 59.88㎡
녹지 및 기타		8,925.21	-				-	8,895.32	-				-	감 29.89㎡
시 설 률 (법정 40%)		(5,505.09 / 14,430.30) × 100 = 38.14%						(5,534.98 / 14,430.30) × 100 = 38.35%						
건 폐 율 (법정 20%)		(102.00 / 14,430.30) × 100% = 0.71%						(161.88 / 14,430.30) × 100% = 1.12%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건축물(m2)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건축물(m2)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14,430.30	5,505.09		1	102.00	102.00	246			14,430.30	5,534.98		2	161.88	161.88	261	
기반시설	소 계			3,899.52	3,899.52					-			3,728.18	3,728.18						감 171.34㎡
	도 로	-	행당동130-125	3,289.60	3,289.60						-	행당동130-125	3,033.00	3,033.00						감 256.60㎡
	광 장	가	〃	609.92	609.92						가	〃	695.18	695.18						증 85.26㎡
		가-1	〃	(241.22)	(241.22)						가-1	〃	(372.82)	(372.82)						
		가-2	〃	(212.33)	(212.33)						가-2	〃	(172.71)	(172.71)						
		가-3	〃	(121.78)	(121.78)						가-3	〃	(121.78)	(121.78)						
		가-4	〃	(34.59)	(34.59)						가-4	〃	(27.87)	(27.87)						
조경시설	소 계			372.63	372.63					33			217.22	217.22					32	감 155.41㎡
	플랜터	①	행당동130-125	(277.49)	(277.49)					31	①	행당동130-125	(136.98)	(136.98)					28	
	수경(벽천폰드)	②	〃	(41.70)	(41.70)					1	②	〃	(41.71)	(41.71)					1	
	바닥분수	③	〃	(53.44)	(53.44)					1	③	〃	(30.00)	(30.00)					1	
	가벽(경관옹벽)										④		(8.42)	(8.42)					1	
	출입방지휀스										⑤		(0.11)	(0.11)					1	
휴양시설	소 계			677.88	677.88					71			834.07	834.07					93	증 156.19㎡
	파고라	④	행당동130-125	(95.94)	(95.94)					6	⑥	행당동130-125	(143.30)	(143.30)					9	
	앉음벽	⑤	〃	(74.44)	(74.44)					12	⑦	〃	(75.88)	(75.88)					16	
	평의자	⑥	〃							18	⑧	〃							32	
	등의자	⑦	〃							35	⑨	〃							36	
	데크쉼터-1	나-1	〃	(72.31)	(72.31)						나-1	〃	(71.95)	(71.95)						
	데크쉼터-2	나-2	〃	(26.20)	(26.20)						나-2	〃	(27.80)	(27.80)						
	데크쉼터-3	나-3	〃	(36.69)	(36.69)						나-3	〃	(27.80)	(27.80)						
	데크쉼터-4	나-4	〃	(28.25)	(28.25)						나-4	〃	(27.80)	(27.80)						
	데크쉼터-5	나-5	〃	(26.37)	(26.37)						나-5	〃	(29.27)	(29.2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건축물(m2)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건축물(m2) 연면적	공작물(기)	
	데크쉼터-6	나-6	〃	(33.57)	(33.57)						나-6	〃	(32.00)	(32.00)						
	데크쉼터-7	나-7	〃	(14.70)	(14.70)						나-7	〃	(32.00)	(32.00)						
	데크쉼터-8	나-8	〃	(15.10)	(15.10)						나-8	〃	(69.73)	(69.73)						
	데크쉼터-9	나-9	〃	(32.00)	(32.00)						나-9	〃	(135.94)	(135.94)						
	데크쉼터-10		〃								나--10	〃	(109.20)	(109.20)						(신설)
	휴게쉼터-1	나--10	〃	(93.23)	(93.23)						나--11	〃	(19.40)	(19.40)						
	휴게쉼터-2	나--11	〃	(84.42)	(84.42)						나--12	〃	(32.00)	(32.00)						
	휴게쉼터-3	나-12	〃	(44.66)	(44.66)															(폐지)
유희시설	소 계			173.79	173.79					5			289.47	289.47					7	증 115.68㎡
	유희공간-1	다-1	행당동130-125	(173.79)	(173.79)						다-1	행당동130-125	(289.47)	(289.47)						
	조합놀이대	⑧	〃							1	⑩	〃							1	
	그네	⑨	〃							1	⑪	〃							1	
	흔들놀이대	⑩	〃							2	⑫	〃							2	
	시소	⑪	〃							1	⑬	〃							2	
	네트놀이대										⑭	〃							1	
운동시설	소 계			275.67	275.67					11			302.36	302.36					11	증 26.69㎡
	운동공간-1	라-1	행당동130-125	(34.49)	(34.49)						라-1	행당동130-125	(51.27)	(51.27)					1	(지붕형 운동시설)
	운동공간-2	라-2	〃	(90.93)	(90.93)						라-2	〃	(152.11)	(152.11)						
	운동공간-3	라-3	〃	(98.98)	(98.98)						라-3	〃	(98.98)	(98.98)						
	야외체육시설	⑫	〃							10	⑮	〃							10	
	지붕형 운동시설	⑬	〃	(51.27)	(51.27)					1										(폐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 계			105.60	105.60		1	102.00	102.00	2			103.80	103.80		1	102.00	102.00	1	감 1.80㎡
	화장실	마-1	행당동130-125	(102.00)	(102.00)		(1)	(102.00)	(102.00)		마-1	행당동130-125	(102.00)	(102.00)		(1)	(102.00)	(102.00)		
	음수전	⑭	〃	(3.60)	(3.60)					2	⑯	〃	(1.80)	(1.80)					1	
관리시설	소 계			-	-					122			59.88	59.88		1	59.88	59.88	117	증 59.88㎡
	관리사무소										바-1	행당동130-125	(59.88)	(59.88)		(1)	(59.88)	(59.88)		(신설)
	계단	⑮	행당동130-125							14	⑰	〃							6	기존3개소포함
	안내판	⑯	〃							3	⑱	〃							7	기존1개소포함
	CCTV	⑰	〃							7	⑲	〃							9	기존1개소포함
	공원등	⑱	〃							40	⑳	〃							56	기존5개소포함
	볼라드등	⑲	〃							58	㉑	〃							37	기존11개소포함
녹지 및 기타	소 계			8,925.21	-					-	㉒	〃	8,895.32						2	(신설)
	녹지 및 기타	-	행당동130-125	(8,925.21)								행당동130-125	8,895.32	-						감 29.89㎡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1,023.7	3,289.60				
변경					923.1	3,033.00				
당초	소로	소계			1,023.7	3,289.60				
		3	1	5	136.0	680.00	주진입로	부출입구	소3-11	
		3	2	4	27.0	108.00	연결로	부출입구	소3-1	
		3	3	5	12.0	60.00	연결로	부출입구	광장-3	
		3	4	2.5	8.0	20.00	연결로	휴게쉼터-1	소3-1	
		3	5	2.5	34.0	85.00	연결로	소3-7	소3-4	
		3	6	2.5	14.0	35.00	연결로	소3-11	운동공간-3	
		3	7	3	85.0	255.00	연결로	소3-11	소3-11	
		3	8	3	14.0	42.00	연결로	소3-11	소3-7	
		3	9	2	30.0	60.00	연결로	소3-11	소3-11	
		3	10	2	50.0	100.00	연결로	광장-4	소3-11	
		3	11	4	128.0	512.00	주진입로	광장-4	광장-2	
		3	12	2	26.0	52.00	연결로	소3-11	소3-11	
		3	13	3	5.0	21.00	연결로	부출입구	소3-12	
		3	14	2.5	28.0	70.00	주진입로	소3-11	소3-15	
		3	15	3	107.0	321.00	연결로	소3-14	광장-2	
		3	16	3	16.0	48.00	연결로	소3-11	소3-15	
		3	17	2.5	14.0	35.00	연결로	소3-11	소3-15	
		3	18	2.5	21.0	52.50	연결로	소3-15	소3-11	
		3	19	1.5	4.0	6.00	연결로	소3-15	운동공간-2	
		3	20	2.5	15.0	37.50	연결로	소3-21	소3-15	
		3	21	1.2	14.0	16.80	연결로	소3-22	소3-20	
		3	22	1.2	17.5	21.00	연결로	소3-21	유희공간-1	
		3	23	2	3.0	6.00	연결로	부출입구	소3-6	
		3	24	3	50.0	150.00	주진입로	부출입구	부출입구	
		3	25	3	54.0	162.00	연결로	소3-24	소3-27	
		3	26	2.5	53.0	132.50	연결로	소3-25	소3-25	
		3	27	3.5	57.0	199.50	연결로	소3-25	소3-15	
		3	28	1.5	1.2	1.80	연결로	광장-1	소3-2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소로	소계			923.1	3,033.00				
		3	1	8	95.0	589.95	주진입로	남쪽진입로	소로 3-7	
		3	2	4	27.0	106.95	연결로	동남쪽진입로	소로 3-1	
		3	3	5	11.0	55.30	연결로	화장실	광장 가-3	
		3	4	2.5	8.0	19.40	연결로	데크쉼터 나-10	소로 3-1	
		3	5	2.5	17.0	41.60	연결로	입구광장 가-2	운동공간 라-3	
		3	6	3.5	18.0	64.15	연결로	입구광장 가-2	소로 3-7	
		3	7	3	242.0	730.65	연결로	입구광장 가-1	입구광장 가-1	
		3	8	3.5	16.0	206.50	연결로	소로 3-7	소로 3-15	
		3	9	3.5	58.0	57.60	연결로	소로 3-15	소로 3-7	
		3	10	3	31.0	94.80	연결로	소로 3-13	광장 가-4	
		3	11	2	15.0	32.25	주진입로	광장 가-4	소로 3-10	
		3	12	3	38.0	111.70	연결로	소로 3-1	소로 3-7	
		3	13	4	29.0	119.40	주진입로	서남쪽 진입로	소로 3-7	
		3	14	1.5	43.0	63.80	연결로	소로 3-7	소로 3-7	
		3	15	1.5	39.0	57.90	연결로	소로 3-7	소로 3-14	
		3	16	3	2.5	7.80	연결로	소로 3-14	유희공간 다-1	
		3	17	2.0	3.0	5.00	연결로	소로 3-7	운동공간 라-2	
		3	18	1.5	3.0	5.60	연결로	소로 3-7	운동공간 라-2	
		3	19	2.5	46.6	116.60	연결로	소로 3-21	소로 3-7	
		3	20	2.5	52.0	129.60	연결로	소로 3-21	소로 3-21	
		3	21	3	46.0	139.15	연결로	소로 3-22	소로 3-7	
		3	22	3	65.0	194.40	연결로	북서쪽 진입로	향토유적부지	
		3	23	2	3.0	5.90	주진입로	북동쪽 진입로	소로 3-5	
		3	24	4.5	15.0	77.00	연결로	향토유적부지	입구광장	

□ 지형도면(조성계획도)



□ 지형도면(조성계획도)



◈ 은평구고시 제2024-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1969. 1. 18.)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30호(2009. 12. 24.)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도로의 연결성이 없는 비정형화된 구간을 제외하고 증산로 15길의 도로 선형을 직선으로 유지되도록 변경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	10~15	집산도로	300	신사동 187-3	신사동 163-1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3호 (1969. 1. 18.)	- 선형 일부조정 및 부지면적의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 시·종점 변경 없음
변경	중로	3	-	10~15	집산도로	300	신사동 187-3	신사동 163-14	일반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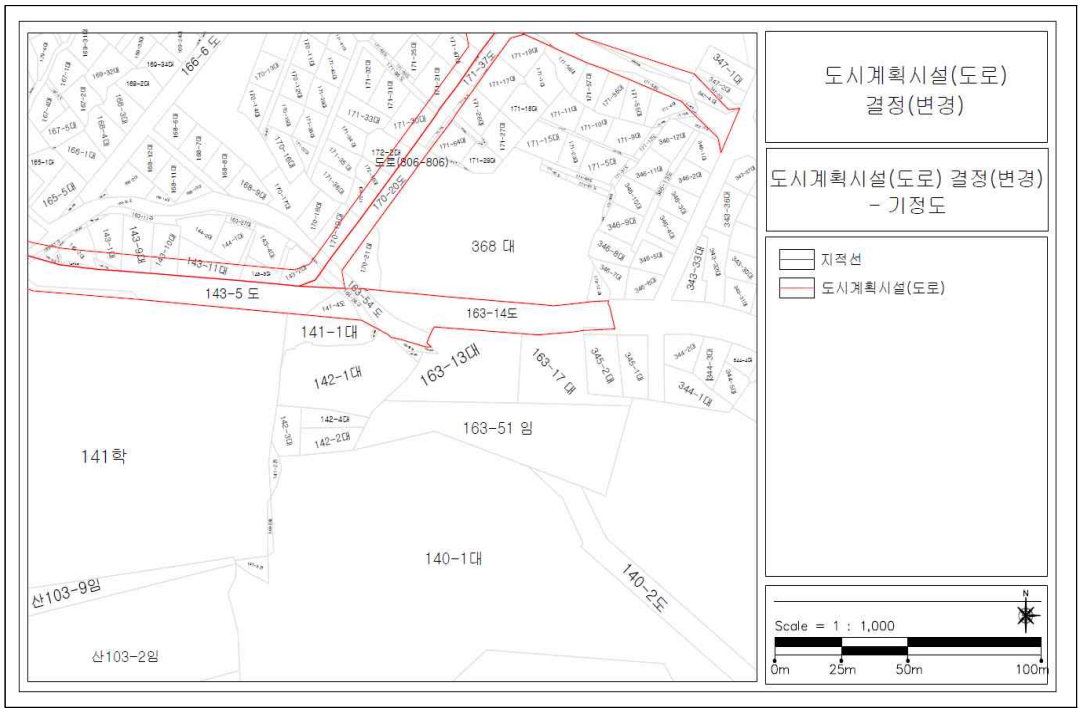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류	중로3류	- 선형 일부조정 · 신사동 163-28, 163-54, 163-14 필지 · 부지면적의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4,093㎡ → 3,977㎡(감 116㎡)) - 시·종점 변경 없음	- 연결성이 없는 비정형화된 구간을 제외하고, 증산로15길의 선형이 직선으로 유지되도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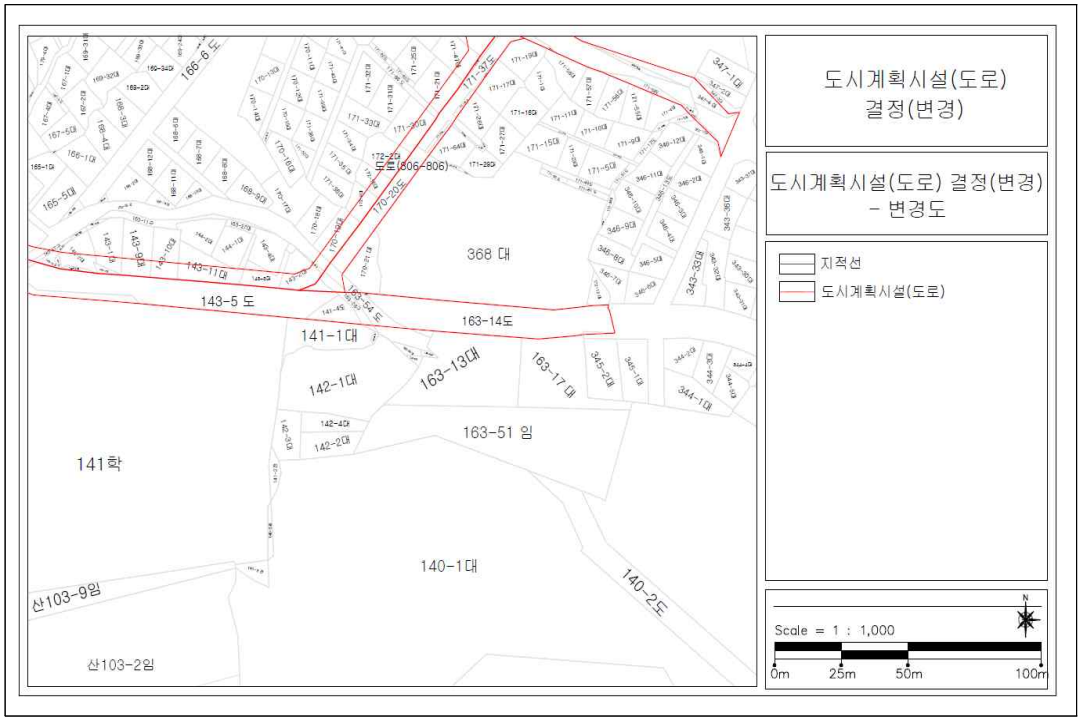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변경)



◈ 동작구고시 제2024-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취소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실효) 고시

동작구 고시 제2023-51호(2023.5.4.), 제2024-7호(2024. 1. 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실효·취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실효)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1. 실시계획 실효·취소 사항

가. 실효·취소 대상 및 내용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구분	위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효	상도동(대3-18)~(중3-35)	317	12	2,235	실시계획인가일~2023. 12. 31.	제2023-51호
취소	상도동(대3-18)~(중3-35)	317	12	2,235	실시계획인가일~2024. 12. 31.	제2024-7호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동작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 수용·사용할 토지·건물사항: 실시계획 참조

다. 실효·취소 일자: 2024. 6. 27.

라. 실효사유: 사업시행기간 도과에 따른 효력 상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실효(부분)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미집행 부분 실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0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총독부772호 (1936.12.26.)	
변경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0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총독부772호 (1936.12.26.)	미집행 부분 실효

나. 실효일자: 2024. 6. 27.

다. 실효사유: 실시계획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부분)

라. 지형도면: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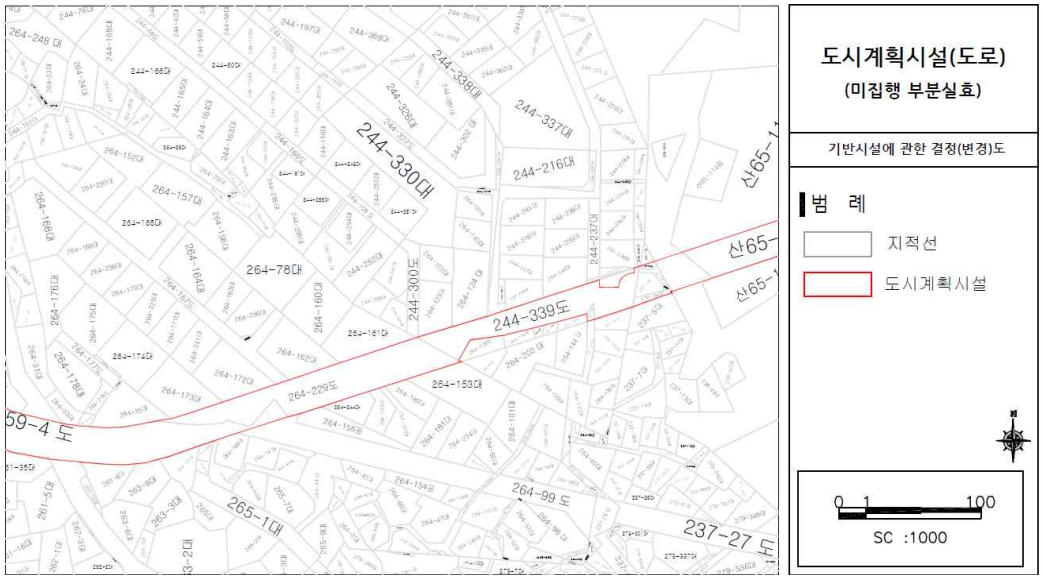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 도시계획과(02-820-93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 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기 정)



(변 경)



◈ 동작구고시 제2024-8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총독부 고시 제1936-772호(1936.12.2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4-81호(2024.6.27)호로 미집행 (부분)실효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0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총독부772호 (1936.12.26.)	부분 실효
변경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03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총독부772호 (1936.12.26.)	선형 변경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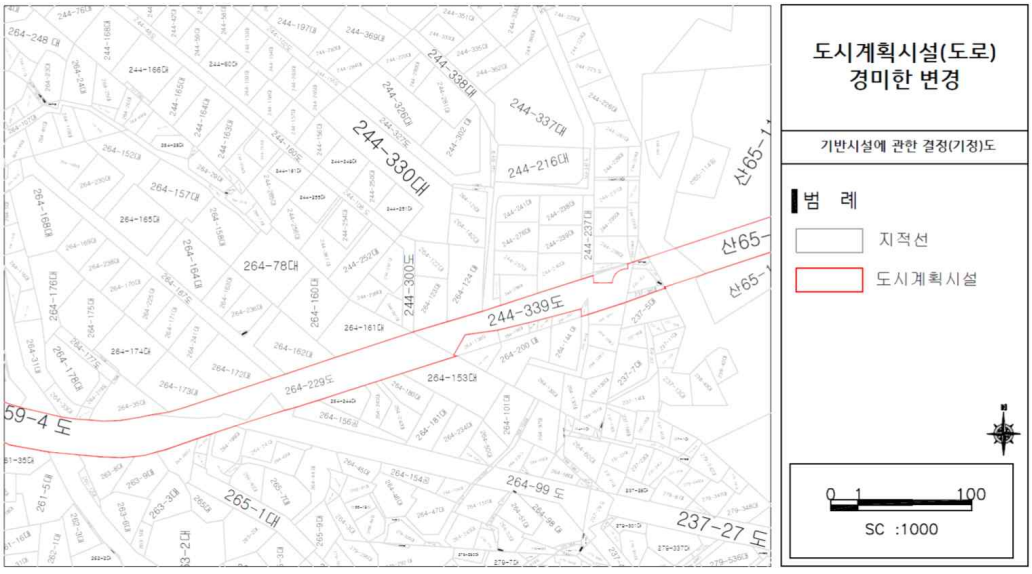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7	중로3-37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	부분실효 전 도시계획시설선으로 변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사업 재추진

다. 관계도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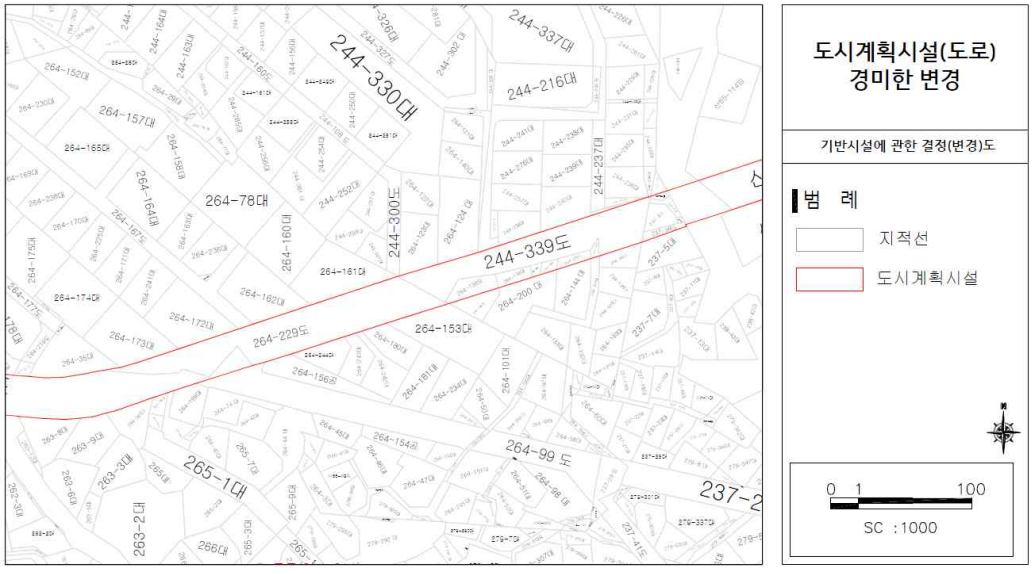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 도시계획과(02-820-93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기 정)



(변 경)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24-101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695호(1990.10.19.)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22-20호(2022.02.03)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272-1번지 일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정거장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72-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사업

나) 명 칭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답십리역 8번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연 번	사업내용	규 모(m)		면 적(m2)
		폭 원	길 이	
1	출입구 이설공사	4.8	47.69	229
2	환기구 이설공사	2.15	3.8	1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나) 주 소 : 서울 성동구 용답중앙11길12, 3층(용답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나)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연 번	소재지	지 목	지적(㎡)	사용할 토지면적 (㎡)	소유자	비 고
1	성동구 용답동 102-1	도로	1104.5	172.4	서울특별시	철도(정거장) 편입
2	성동구 용답동 102-1	도로	1104.5	-82.2	서울특별시	철도(정거장) 제척
3	성동구 용답동 102-24	대지	142.2	45.0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철도(정거장) 편입
계				135.2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준공 후 무상귀속(관련기관)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성동구 고산자로 270, 11층)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02-2286-6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4-1194호

도시관리계획[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4. 6. 27. ~ 2024. 7. 11.(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장승배기로 161, 4층)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도동 194-27번지 일원	-	증) 22,748.2	22,748.2	-	-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의견서 제출방법 : Fax 02-820-9798, e-mail lch0409@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의견서 제출 가능
[서울시도시계획포털 사이트 및 QR코드]
- 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seoul.go.kr)
※ '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선택 후 주민의견서 작성(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6.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4-1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총독부 고시 제1936-772호(1936.12.2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4-83호(2024.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1호(2020.06.18.), 동작구고시 제2022-185호(2022.12.8.), 동작구고시 제2022-208호(2022.12.29.), 동작구고시 제2023-51호(2023.5.4.), 동작구고시 제2024-7호(2024.1.28.)로 (변경)실시계획 하였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림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사업규모
상도동(대3-18)~(중3-35)	1,030	12	12,36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부(보상 부분)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 ~ 2025. 12. 31.까지 ※ 사업기간 조정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조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동작구 상도동	264-135	대	30	30	이**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46, ***동 ****호 (북변동, 풍년마을)				
2	동작구 상도동	264-148	대	17	17	주식회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15 **호				
3	동작구 상도동	264-149	대	7	7	주식회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15 **호				
4	동작구 상도동	264-136	대	43	43	주식회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15 **호				
5	동작구 상도동	264-138	도로	76	76	이**	동작구 성대로 *** (상도동)				
6	동작구 상도동	244-382	대지	1	1	차**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71번길 39, ***동 ****호 (송내동, 뉴서울아파트)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상도동 264-138	주택	시멘트블록조	106	37	이**	동작구 성대로 *** (상도동)				상도동 264-186
2	상도동 244-339	점포	시멘트블록조	66	41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1길 * (상도동)				상도동 244-291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1-38, *동 ***호 (홍제동, 세희아트빌)				

◈ 동작구공고 제2024-12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안) 열람공고

1. 동작구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동작구 노량진로 73, 유한양행 3층)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안)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구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상도동 283-226	-	증) 3,096.5	3,096.5	-	

2)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면적 : 3,096.5㎡	•1986년부터 보육시설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건축물 안전문제 발생 등) •상도권역 생활권 지역에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3) 도로 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구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도로	도로	상도동 283-226	317	감) 317	0	-	

4) 도로 폐지사유

시설명	폐지내용	폐지사유	비고
도로	•도로 변경결정(폐지) •면적 : 317㎡	•결정 근거가 부존재하는 미집행 시설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	

라. 열람도서 :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의견서 제출방법 : (e-mail)hjeong2009@dongjak.go.kr, (Fax)02-820-9988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5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169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6. 27.~2024. 07. 10.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4. 07. 10.~2024. 07. 23. (14일)
6.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등록내역-사전통지 (2024년06.21. 152건)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1	700724-*******	신*두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하90**)이륜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하부보도주변	2024-05-11 09:20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68
2	870324-*******	김*연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3호38**)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신천나들목 주변	2024-04-27 17:26	50,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로 236
3	850617-*******	김*하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9누51**)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주변	2024-04-27 16:29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4	880428-*******	홍*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7**)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흑석초교후문주변	2024-05-10 23:05	50,00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2길 33
5	750327-*******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머58**)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흑성초교볼라드주변	2024-05-11 2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5
6	860529-*******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대문차**)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주변	2024-05-14 14:59	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39
7	601209-*******	김*하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67구81**)자동차	망원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	2024-05-12 18:17	5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
8	750426-*******	박*란서*석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26더30**)자동차	망원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	2024-05-12 22:24	50,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299
9	880820-*******	황*혁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154호88**)자동차	망원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출입구주변	2024-04-29 22:20	50,000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5길 21
10	284111-*******	조*국(주)*앤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5호16**)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주변	2024-04-14 16:07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
11	770415-*******	이*철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3나55**)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주변	2024-04-27 16:41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12	630204-*******	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0호91**)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2024-05-04 16:00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83
13	800730-*******	송*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1호8**) 자동차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2024-04-27 16:59	5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00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14	681001-*******	박*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파**)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2024-05-12 14:07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5길 14
15	880620-*******	천*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2주07**)자동차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2024-05-12 16:30	50,00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85
16	720824-*******	문*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카8**)이륜차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2024-05-12 16:34	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0
17	800128-*******	김*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6도07**)자동차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2024-05-12 10:32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18	921130-*******	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카0**)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주변	2024-05-12 19:30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8길 10
19	920411-*******	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은평파1**)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2024-05-12 10:30	5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40길 10
20	951008-*******	U*****RAT JONUGL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파3**)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2024-05-13 19:58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길 60
21	951016-*******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북구미파8**)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주변	2024-05-13 20:13	5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30
22	940427-*******	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차**) 이륜차	이촌한강공원내 잠수교 북단 교각하부	2024-05-07 22:34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8가길 26
23	900608-*******	이*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나**) 이륜차	이촌한강공원내 태니스장 입구 잔디위	2024-05-10 09:20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4길 23
24	940903-*******	송*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0너54**)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1편의점 주변	2024-05-09 19:56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5길 8
25	550315-*******	박*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70구07**)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 주변	2024-05-10 13:16	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 3
26	021106-*******	황*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파0**)이륜차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2024-05-11 01:02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67
27	950201-*******	하*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노원차5**)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2024-05-11 00:20	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6길 31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28	940201-*******	최*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노원차9**)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2편의점 주변	2024-05-11 02:46	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1길 53
29	940127-*******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랑하5**)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2편의점 주변	2024-05-11 02:48	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50길 86
30	940327-*******	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0어16**)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12 16:53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30길 21
31	971228-*******	신*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5루42**)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 주변	2024-05-12 17:40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가길 26
32	950914-*******	방*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83저85**)자동차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2024-05-12 19:02	50,000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36
33	990628-*******	김*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노20**)자동차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2024-05-12 19:06	50,00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478
34	800525-*******	곽*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5호72**)자동차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	2024-04-14 15:5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35	811227-*******	강*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노14**)자동차	강서한강공원 내 개화나들목 회전교차로 주변	2024-05-12 16:4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36	760713-*******	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74호5**)자동차	여의도한강공원 아라호주변	2024-04-09 20:52	50,000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17
37	950423-*******	Y*****N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중타6**) 이륜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양화안내센터앞 꽃밭 안전지대	2024-05-13 22:51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7길 20
38	961012-*******	S*****GHA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동작차**) 이륜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양화안내센터앞 꽃밭 안전지대	2024-05-13 22:51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6나길 20
39	870612-*******	이*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영등포**) 이륜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제3주차장인근 인도위	2024-05-15 09:05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50
40	550909-*******	권*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3호15**)자동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제3주차장 진입로 입구	2024-04-17 22:37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95
41	930426-*******	유*은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54구7**)자동차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옆녹지	2024-05-05 10:40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8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42	730730-*******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02두76**)자동차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옆녹지	2024-05-05 10:42	5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6
43	811024-*******	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서울강남타05**)이륜차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자전거길	2024-05-08 14:45	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8길 31
44	731228-*******	김*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강서차**)이륜차	여의도한강공원 마리나낚시허용구간주변	2024-05-11 16:47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47
45	850601-*******	J*****I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오산아2**)이륜차	강서한강공원 내 방화대교 하부 자전거대여소 주변	2024-05-14 08:56	50,000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55
46	870115-*******	이*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용산카**) 이륜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제3주차장 뒤쪽 보도	2024-05-16 21:00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8길 59
47	871214-*******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버025**)자동차	강서한강공원 내 원형 교차로	2024-05-18 16:12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90
48	510821-*******	안*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8우90**)자동차	강서한강공원 내 원형 교차로	2024-05-18 16:19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6길 40
49	830428-*******	이*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4도72**)자동차	강서한강공원 내	2024-05-19 22:45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53
50	800813-*******	정*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강서카**) 이륜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양평	2024-05-19 16:30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0길 44
51	671105-*******	김*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8루26**) 자동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양평나들목 입구 앞	2024-05-19 16:2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52	770324-*******	김*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9거41**) 차량	양화센터 한강공원 양평나들목 입구 앞	2024-05-19 16:29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길 18
53	841111-*******	전*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3가62**) 차량	양화센터 한강공원 양평나들목 입구 앞	2024-05-19 16:27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19
54	901102-*******	김*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강서차**) 이륜차	양화센터 한강공원 제3주차장 안전지대	2024-05-20 18:52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1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55	120111-*******	㈜**환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37주21**) 차량	양화센터 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21 09: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3
56	580416-*******	L*****NGLU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관악파**)이륜차	여의도한강공원 마리나요트장진입로주변	2024-05-16 03:09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다길 28
57	960827-*******	송*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15거2**)자동차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주변	2024-05-01 09:00	5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7
58	800418-*******	이*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0너78**)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2024-05-16 13:45	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7다길 25
59	931229-*******	전*성김*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74로75**)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슬로프 주변	2024-05-18 08:41	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 33
60	691217-*******	황*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다11**)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진입로 주변	2024-05-18 16:47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다길 98
61	950803-*******	신*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8더22**)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 주변	2024-05-18 16:58	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
62	951122-*******	K*****OVDMITRI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나84**)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주변	2024-05-18 23:19	50,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57
63	940323-*******	유*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6서76**)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주변	2024-05-18 23:20	5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68
64	861210-*******	심*환심*기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모23**)자동차	난지한강공원내 안내센터앞 도로	2024-05-19 16:13	5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04
65	970420-*******	심*혁심*학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5수90**)자동차	난지한강공원내 안내센터앞 도로	2024-05-19 16:24	50,000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62
66	900527-*******	정*석정*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89소50**)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입로 주변	2024-05-19 13:23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4길 51
67	610904-*******	김*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수96**)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입로 주변	2024-04-19 13:24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길 60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68	830319-*******	하*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0러43**)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2024-05-19 14:27	50,0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7
69	890730-*******	이*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4조76**)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2024-05-19 14:28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0길 39
70	870203-*******	김*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0보17**)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2024-05-19 14:29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1
71	600208-*******	오*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9어03**)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2024-05-19 14:31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70길 14
72	690219-*******	이*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5조18**)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도로 주변	2024-05-19 16:52	5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43
73	700916-*******	한*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조52**)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도로 주변	2024-05-19 16:54	5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52
74	970217-*******	나*용김*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누84**)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도로 주변	2024-05-19 16:57	50,000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291
75	981006-*******	서*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5부34**)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사무실 주변	2024-05-19 20:1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88
76	600123-*******	이*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0구13**)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사무실 주변	2024-05-19 20:19	5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8
77	971123-*******	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1더87**)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사무실 주변	2024-05-19 20:21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5길 19
78	890512-*******	박*민성*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무04**)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사무실 주변	2024-05-19 20:21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1
79	931115-*******	이*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2라28**)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사무실 주변	2024-05-19 20:20	50,000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
80	730805-*******	한*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나들목 주변	2024-05-19 18:45	7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0길 4
81	970213-*******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하3**)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주변	2024-05-20 20:42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6나길 12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82	860321-*******	김*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도40**)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도로 주변	2024-05-19 16:53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39
83	900702-*******	이*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북파8**)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45번교각 주변	2024-05-22 20:43	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18
84	791120-*******	유*만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85서73**)자동차	망원한강공원내트레일러주차장주변	2024-05-19 17:17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00
85	990722-*******	천*환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마포차95**)이륜차	망원한강공원내망원나들목회전교차로주변	2024-05-20 04:43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2
86	520222-*******	박*용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서대문자97**)이륜차	망원한강공원내GS2호편의점주변	2024-05-21 17:11	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91
87	701103-*******	서*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7허64**)자동차	난지한강공원내 버스정류장앞 도로	2024-05-04 12:2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58
88	910503-*******	김*환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161호43**)자동차	망원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	2024-05-12 18:18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0
89	840209-*******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2루63**)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주변	2024-05-04 16:02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3길 35
90	900731-*******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김포카8**)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주변	2024-04-30 00:18	50,000	서울시 용대문구 답십리로59길 63
91	811003-*******	한*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하09**)자동차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주변	2024-05-01 19:30	50,00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87길 15 302호
92	900311-*******	우*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다12**)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18 18:10	50,000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71
93	590714-*******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9나30**)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18 18:10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48
94	781128-*******	이*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바1**)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2024-05-18 18:18	50,000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양덕길 76
95	891228-*******	정*수김*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파0**)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18 19:5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터산4길 7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96	720516-*******	어*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3**)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18 20:00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5길 88
97	751106-*******	J****JIE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송파타4**)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주변	2024-05-19 12:19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38
98	370420-*******	윤*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작차**) 이륜차	이촌한강공원내 예술공원 하부 산책로	2024-05-18 14:42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6길 39
99	910815-*******	한*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가8**)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제1주차장 주변	2024-05-14 21:53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4다길 9
100	930218-*******	최*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7**)이륜차	뚝섬한강공원 족구장 주변	2024-05-14 22:33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7길 56
101	570208-*******	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2고89**)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2024-05-18 10:25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길 15
102	790725-*******	신*창윤*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너77**)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18 18:13	50,000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36
103	284211-*******	(주)**안전도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오69**)자동차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2024-05-18 18:10	50,00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20
104	750214-*******	한*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가91**)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3주차장주변	2024-05-12 17:05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5	630421-*******	윤*정이*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2무22**)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	2024-05-12 16:24	5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00
106	920614-*******	이*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5노75**)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잠원나들목주변	2024-05-12 19:03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3길 29
107	800328-*******	조*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9어01**)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	2024-05-19 14:39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1
108	851205-*******	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1보04**)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	2024-05-19 14:38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7길 52
109	870626-*******	이*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4러19**)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	2024-05-19 14:40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110	790529-*******	김*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4누99**)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	2024-05-19 14:41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17길 17
111	741130-*******	김*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4부99**)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수영장주변	2024-03-31 16:23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2	110111-*******	약**산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5호84**)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양곡도선장주변	2024-05-04 09:42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113	590625-*******	이*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7하91**)자동차	잠원한강공원 내 안내센타주변	2024-05-01 15:08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58
114	801111-*******	김*광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동타15**)이륜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새내나들목 주변	2024-05-18 14:53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2
115	810923-*******	임*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4고62**)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회전교차로	2024-05-18 16:17	50,000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286
116	960103-*******	김*현이*영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다39**)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회전교차로	2024-05-18 16:35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9
117	590725-*******	김*송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서85**)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회전교차로	2024-05-18 17:03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20
118	580219-*******	황*봉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9두01**)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회전교차로	2024-05-18 18:56	50,00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07
119	860301-*******	조*행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96너11**)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회전교차로	2024-05-18 19: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292
120	621014-*******	이*성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부천나25**)이륜차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플레이스 앞	2024-05-18 19:21	5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751
121	820616-*******	박*철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9루55**)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 나들목 도로 주변	2024-05-18 20:53	50,000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38
122	830521-*******	송*의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5고08**)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 나들목 도로 주변	2024-05-18 21:00	50,00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723
123	861112-*******	권*윤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5누83**)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 나들목 도로 주변	2024-05-18 21:29	50,000	부산광역시 서구 중앙공원로 21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124	730423-*******	채*철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0가79**)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제4주차장 입구옆 도로 주변	2024-05-18 21:46	5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96
125	010923-*******	장*용장*호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소72**)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제4주차장 입구옆 도로 주변	2024-05-18 21:47	50,00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만곡동3길 6
126	630928-*******	황*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8다90**)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제4주차장 입구옆 도로 주변	2024-05-18 21:50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3길 16
127	900705-*******	김*형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0소49**)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론볼링장 옆 도로 주변	2024-05-18 21:26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3
128	880520-*******	심*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3가04**)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하부 주차금지구역	2024-05-19 19:00	50,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11
129	110111-*******	㈜**에이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2루17**)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주변 이열주차	2024-05-19 18:41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217
130	800217-*******	최*용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6마35**)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옆 임시화장실 주변	2024-05-19 18:49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1길 25
131	591121-*******	우*정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3머56**)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옆 임시화장실 주변	2024-05-19 16:29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길 3
132	740724-*******	김*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4서98**)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선착장주차장 입구주변	2024-05-19 17:07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23
133	730830-*******	김*겸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7나86**)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	2024-05-19 19:00	50,00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한들5길 6
134	621020-*******	추*욱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3버79**)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제4주차장옆 도로주변	2024-05-25 06:30	5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135	811127-*******	홍*원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러20**)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헬기장주변	2024-05-25 18:59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23
136	560725-*******	이*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로62**)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나들목주변	2024-05-25 19:16	50,00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신1길 11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137	110111-*******	주식회사화인**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보35**)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신천나들목주변	2024-05-25 19:24	50,000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두로 100
138	950803-*******	신*섭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8버22**)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3주차장주변	2024-05-25 19:42	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
139	880322-*******	전*훈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5라44**)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나들목주변	2024-05-25 19:16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82
140	911024-*******	이*한윤*숙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48부51**)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새내나들목앞주변	2024-05-27 03:08	50,000	경기도 양주시 엄상동길 64
141	851119-*******	지*윤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3호59**)자동차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진입로	2024-05-12 18:40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36
142	730805-*******	한*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나들목 육갑문 주변	2024-05-23 20:49	7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0길 4
143	950129-*******	박*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바0**)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서래나루 주변	2024-05-24 08:39	50,0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60
144	900605-*******	신*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부산해운대차**)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하류 교각40번 주변	2024-05-25 13:26	50,00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94
145	880421-*******	이*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9가18**)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슬로프장 주변	2024-05-25 19:17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3길 45
146	810823-*******	이*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5고89**)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슬로프장 주변	2024-05-25 19:1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35
147	720402-*******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7고18**)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지에스편의점 주변	2024-05-25 19:51	50,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270
148	940607-*******	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5**)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세빛섬 주변	2024-05-25 21:49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149	940903-*******	송*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0너54**)자동차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2024-05-27 22:51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5길 8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150	760111-*******	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강원평창가7**)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서래2교 주변	2024-05-28 15:11	50,0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방축동길 25
151	970404-*******	김*호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양천카61**)이륜차	망원한강공원내GS1호편의점주변	2024-05-29 19:14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6길 19
152	520418-*******	이*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거0**)이륜차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상류 교각45번 주변	2024-05-30 20:43	50,000	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95

기 타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24-2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주)대연소방 (204-81-93871)	제 서울(동대문)- 2024-0004호 (2024-06-18)	박광봉 (1961. 01.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길 37 (신설동)	02-922-8227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42-1292로 연락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경안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4-59, 11층 12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84-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64, 경기도 광주시 역동 220
 - 면 적: 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수문조사장비 설치
 - 내 역: PAVOs 수위 · 유속계, 태양열 전지판 각 1식(총 3개소)

5. 점용기간: 2024.6.17.~2029.6.16.

6. 공사기간: 2024.8.1.~2024.9.1. 기간 중 1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2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5
- 면 적 : 일시 13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나이아가라 호텔 앞 열수송관 교체공사
- 내 역 : 열수송관(600A) 40m 교체

5. 점용기간 : 2024.06.03. ~ 2024.06.2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3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시설안전연구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5-5 외 2필지

 - 면 적 : 일시 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반조사

5. 점용기간 : (당초) 2024.5.28.~2024.6.15.(기간 중 2일)
 (변경) 2024.7.1.~2024.7.28.(기간 중 2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32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76-2번지 등 10필지
 - 면 적 : 13,63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 개 요 : 올림픽대로 연결 버스전용 감속차로(L=226.0m, B=3.5m)
 버스정류장 8면(회차형 버스정류장 6면, 예비 2면)
 기존 보행육교 E/S, E/V, 계단 연결, 횡단보도 신설, 제설장비 보관소 등

5. 점용기간 : 2023.01.18. ~ 2027.12.31.

6. 공사기간 : (당초) 2023.01.18. ~ 2024.04.30.
 (변경) 2023.01.18. ~ 2024.06.30.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